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홍콩 · 대만 ·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ontents

홍콩

제1장 수출 현안	5
제2장 통관 제도	9
제3장 검역제도	45
제4장 라벨링 제도	63
제5장 수입 규제 사례	80

대만

제1장 수출 현안	91
제2장 통관 제도	95
제3장 검역 제도	135
제4장 라벨링 제도	163
제5장 통관 문제 사례	204
제6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214
부록	217

베트남

제1장 통관 제도	247
제2장 관세 제도	265
제3장 검역 제도	274
제4장 라벨링 제도	280
부록	294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홍 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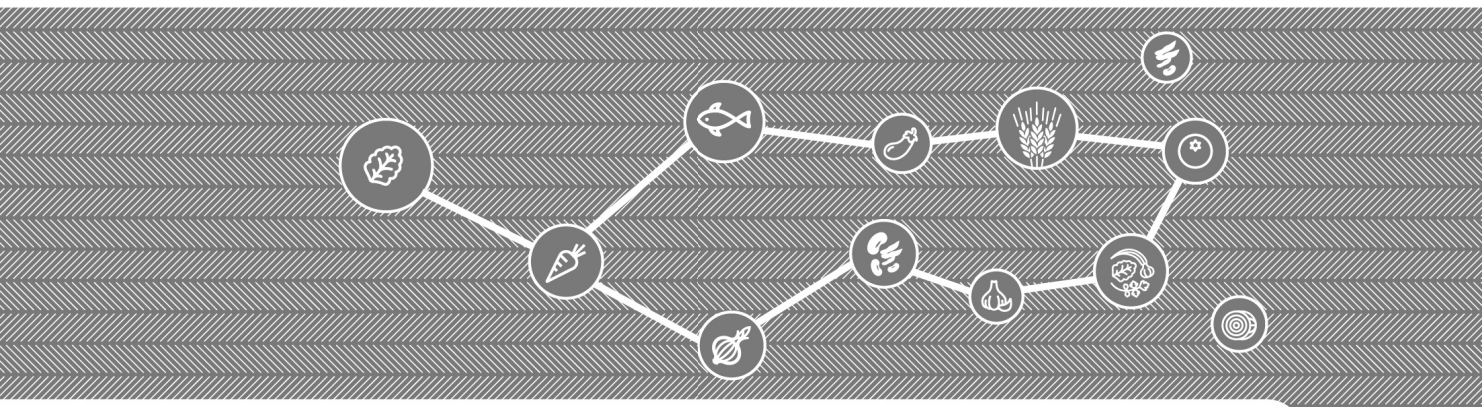

제1장 수출 현안

제2장 통관 제도

제3장 검역 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수입 규제 사례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홍 콩

Contents

제1장 수출 현안 **5**

제1절 수출여건 및 식품 시장 동향 5

제2절 수출동향 7

제2장 통관 제도 **9**

제1절 일반사항 9

제2절 품목별 통관 제도 20

참고 통관부서 연락처 43

참고 자료출처 44

제3장 검역 제도 **45**

제1절 일반사항 45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46

참고 자료출처 62

제4장 라벨링 제도 **63**

제1절 일반사항 63

제2절 품목별 라벨링 방법 65

제3절 라벨링 사례 74

참고 자료출처 79

제5장 수입 규제 사례 **80**

제1절 대(對) 한국 수입규제 동향 80

제2절 수출품 선적 시 유의사항 85

제 1 장 수출 현안

제1절 수출여건 및 식품시장 동향

1. 수출여건

홍콩 및 중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른 식품 소비 확대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홍콩의 물류 및 관광산업이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소매업도 활기를 띠면서 홍콩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소비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GDP 증가율 : ('14) 2.8% → ('15) 2.4% → ('16) 1.9% → ('17.상반기) 4.1%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나 품질 및 가격경쟁 치열

○ 농식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홍콩은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한국산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 간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2. 식품 시장 동향

수입식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홍콩의 식품 산업은 내수시장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중국산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자주 화제가 되면서 한국 및 일본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간편 및 포장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 여성의 경제참여 일반화로 인해 간편식품 및 포장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처는 재래시장에서 슈퍼마켓, 마트 등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 협소한 주택면적으로 가정 내 식품 보관을 선호하지 않고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고, 대포장 대신 소포장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유기농 식품의 소비 확대

○ 과거에는 비교적 고가인 탓에, 일부 부유층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 주로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유기농 식품 코너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제품에 대한 높은 수용도

○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농식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치열하며,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유입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도 매우 높다.

슈퍼마켓 체인 발달

○ 홍콩에는 주거지 및 시내 곳곳에 큰 슈퍼마켓 체인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유통업체별로 일반 식품매장, 수입식품 전문매장, 고급 식품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홍콩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로는 Wellcome, Parknskop 등이 있다.

* 그 외, CITY SUPER, YATA, JUSCO 등은 비교적 고가·고급 수입식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편의점(Seven 11, Cirkle-K, V>nGo)에서는 간단한 즉석식품과 음료, 간식거리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제2절 수출동향

1. 수출실적

2017년 11월 말 현재 351.8백만 불로 전년 동기(352.9백만 불) 대비 0.3% 감소

○ 딸기는 수출 주 품종인 매향 외 설향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9.3백만 불→13.6 46.1%) 하였으나, 닭고기는 AI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4.6백만 불→2.0 △56.2%) 하면서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단위 : 톤, 천불, %)

구 분	2016년	2016년 1~11월 (A)		2017년 1~11월 (B)		증감률(B/A)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88,594	199,461	352,950	199,223	351,838	-0.1	-0.3
신선	75,253	19,482	66,258	20,191	70,260	3.6	6.0
가공	254,984	177,178	233,263	176,573	234,266	-0.3	0.4
수산	58,357	2,801	53,429	2,459	47,312	-12.2	-11.4

2. 주요 품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

증가 품목

○ 설탕 : ('16.1~11) 41,613천 불 → ('17.1~11) 45,426 / 9.2 %↑

- 2016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설탕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설탕 국제시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콩의 과자 및 음료 제조사들의 설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 딸기 : ('16.1~11) 9,333천 불 → ('17.1~11) 13,632 / 46.1 %↑

- 2016년 말부터 기상 등 국내 재배여건 개선으로 작황 호전 및 생산량이 증가한 가운데, 수출 주력 품종인 매향 외 설향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 유자차 : ('16.1~11) 5,136천 불 → ('17.1~11) 5,213 / 1.5 %↑

- 대형 유통매장을 통한 판매 외에도 일반 음식점 및 외식체인점의 유자차 메뉴 편입으로 유자차 수요가 소폭 상승했다.

감소 품목

○ 궐련 : ('16.1~11) 26,875불 → ('17.1~11) 22,817 / 15.1 %↓

- 홍콩항에서 환적되어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던 담배의 환적항이 싱가포르 등으로 변경되면서 대홍콩 수출실적이 감소하였다.

○ 닭고기 : ('16.1~11) 4,610천 불 → ('17.1~11) 2,018 / 56.2 %↓

- 2016년 말부터 한국 내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산 냉동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다.

○ 굴 : ('16.1~11) 11,931불 → ('17.1~11) 6,703 / 43.8 %↓

- 2016년 중국 굴 양식장 오염 등으로 인해 한국산 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금년도는 굴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작년 대비 전반적인 굴 수출이 감소하였다.

제 2 장 통관 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관리 법률체계

관련법 및 규정 일반

○ 사회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홍콩 입법 제어에 의한 불법 통관 예방 및 밀수품 밀수 금지 검출을 통해 공공의 건강을 유지하고 세계 각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다.

○ 홍콩은 일반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정책을 펴고 있어 일반 수출입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 절차가 없다.

○ 일부 품목은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 홍콩 수출의 경우 수출 후 14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서를 내면 통관이 완료된다.

○ 한편 통관 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홍콩 세관의 지시사항에 따라 진행하거나, 관련 절차를 선사나 운송사, 관할 세관 등에 문의할 수 있다.

○ 홍콩의 통관 및 검역 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수출입 일반 : Import and Export(Registration) Regulations(Chapter 60)
- 관세 일반 :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Cap. 109)
- 식품검역 일반 :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홍콩의 식품위생 관련 기관 로고

香港特別行政區政府 食物及衞生局 |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政府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香港特別行政區 衞生署 | 香港特別行政區政府 漁農自然護理署

주 : 왼쪽부터(상위기관) 식품위생국, 식품환경위생서, 위생서, 어·농업자연보호서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관세 관련 주요 내용

○ '관세 품목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Cap. 10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4가지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 신고 및 수출입 시 취급 방법을 다룬다.

▌홍콩의 관세 품목 조례 개황▐

구성	주요 내용	관세 여부
PART Ⅰ	서론(preliminary)	-
PART Ⅱ	일반 제품(general)	비관세
PART Ⅲ	주류(liquors)	일부 관세
PART Ⅳ	담배(tobacco)	관세
PART Ⅴ	하이드로카본 오일(hydrocarbon oil)	관세
PART Ⅵ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관세

자료원 : 전자판 홍콩 법례(HongKong e-Legislation)

○ 홍콩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이나, 담배·주류·하이드로카본 오일·메틸알코올의 경우에만 품목과 무게에 따라 과세한다.

- 주류는 2008년 2월부터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관세가 변경되어, 30% 미만의 주류·와인·맥주류 등은 비관세이다.
- 홍콩 정부는 2007년 80%에서 40%로 반감한 와인세율을 2008년에는 0%로 조정하였다. 이로써 홍콩은 세계에서 부가가치세와 와인세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와인세 감면으로 인해 홍콩은 2012년까지 10억 홍콩달러, 2017년까지 30억 홍콩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수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1. 탄화수소	관세율
항공기 연료	HK$ 6.51/litre
디젤 연료	HK$ 2.89/litre
유황 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중국 제조	HK$ 468/kg
수입 시가	HK$ 2,455/kg

수입 담배	HK$ 1,906/1000개비
일반 담배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한 그 외 모든 담배	HK$2,309/kg
3. 주류	
와인	0%
알코올 30% 이하 주류 (맥주 등)	0%
알코올 30% 이상 주류 (위스키 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자료원 : 홍콩 세관

○ 관련 사항 문의처

- 담당부서: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HK Customs and Excise)의 세관 관리부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 주소 : 7/F, Harbour Building, 38 Pier Road, Central, Hong Kong
- 전화 : (852) 2852-3275 / 팩스: (852) 2581-0218

○ 수입 규제 담당기관

- 기관명: 소비세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전화: (852) 2815-7711 / 이메일: customsenquiry@customs.gov.hk
- 홈페이지: www.customs.gov.hk
- 주요업무 : 수출입 통관, 소비자 보호, 관세 부과 물품 확인, 라이선스와 허가신청, 수출입신고,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류 검사

2. 통관수속

수출입 신고 관련 주요 내용

○ 홍콩은 수출입 자유방임정책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 낮은 관세율과 간단한 수출입 절차는 홍콩무역의 장점이며, 편리한 인프라시설로 수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 전체 품목 가운데 97% 이상이 비과세 물품으로 B/L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화주의 직접 화물 수취가 가능하다.
- 한편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홍콩 내 판매하기 위해 수출국의 보건당국이 발급한 공식 보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상품의 통관은 주로 송장(manifests)과 같은 서류검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선택적 기준의 실질조사(physical examination)가 이뤄진다. 이 경우 선택된 물품은 관세청 담당자에 의해 조사 목적으로 보관될 수 있다.

▌선적 절차▐

순 서	절 차
1	선적
2	수출입 신고서 제출 (수출 후 14일 이내)
3	화물 도착 통지
4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를 선정해 통관 대행 (필요시)
5	수출 완료

자료원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수출입시 어떤 품목이든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HK Customs and Excise)의 감독관에게 해당 품목의 수입 및 수출이 있은 후 14일 이내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는 도착 신고(arrival declaration)와 수입 신고(import declaration)로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e-form' URL : http://www.info.gov.hk/digital21/eform/english/about_e_form_01.html

○ 대부분의 상품은 신고 후 3~7일 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된다.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의 경우는 수출입 규정, 비축 물자 규정 등에 의해 홍콩 도착 7일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 수출입 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은 환적화물(일부 품목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 HK$ 4,000(약 US$ 513) 미만의 우편물, 견본품, 광고목적의 HK$ 1,000(약 US$ 128) 미만의 수입품, 전시품,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 증정품, 중고 공(空) 컨테이너, 인가한 배에 의한 포획어류 등이다.
- 신고면제 품목에 해당해 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면제 품목의 카테고리를 적하목록(cargo manifest)에 분명히 명시토록 운송자(carriers/ forwarders)에게 고지한다.

○ 통관 시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Bill of Entry(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상업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필요시), 화물 검사 증명서(필요시)이다.

○ 수입 신고 서류로는 송장(manifests),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그 외 유사한 서류, 인보이스 또는 패킹 리스트, 기타 수입 라이선스 서류가 있다.

수출입 관련 라이선스 비용

○ 對 홍콩 수입시 "The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Cap 403)"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 특히 수입 검역이 까다로운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라이선스(license)와 함께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증명서(certificate) 등을 갖춰야 한다.

○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발급하며 라이선스 비용이 청구된다.
- 라이선스 종류와 각각의 규정된 비용은 아래 참조

▌홍콩 수출입시 라이선스 종류와 비용▐

구분	세부내역	비용
제조자의 라이선스	탄화수소 오일 제조 라이선스	24,650HKD
	담배 제조 라이선스	22,700HKD
	주류 제조 라이선스	22,700HKD
	주류 취급 라이선스	22,700HKD
	증류기(재정국이 승인한 교육, 과학, 자선단체 목적)	무료
창고 라이선스	일반 보세 창고 라이선스	24,350HKD

구분	세부내역	비용
	공공 보세 창고 라이선스	24,350HKD
	허가받은 창고 라이선스	24,350HKD
수출입 라이선스	수출입 라이선스	1,200HKD
	특별 수입 라이선스	1,200HKD
라이선스의 개정	라이선스 개정 및 내용 변경	515HKD
대체 수령	대체 수령	200HKD

자료원 : 홍콩 세관

○ 라이선스 신청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담당부서 : Office of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Licence Unit
- 주소 : 3/F, Customs Headquarters Building222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 전화 : (852)3759-2374 / Fax : (852)2542-4660

▌홍콩의 수입 검역이 까다로운 항목▐

위험 약물 (Dangerous Drugs)		화학물 (Controlled Chemicals)		의약품 (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ines)	
중국산 한약 (Chinese Herbal Medicines and Proprietory Chinese Medicines)		가축 (Live Animals)		식물과 식물해충 (Plants & Plant Pests)	
쌀,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육 (Rice, Frozen or Chilled Meat and Poultry)		게임 (Game)		기타 금지 품목 (Other Prohibited Goods)	

자료원 : 홍콩 세관 및 thenounproject

▌수출입 신고서 양식 ▌

香 港 海 關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HONG KONG

船隻抵港申報表
Vessel Arrival Declaration

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

船名 Name of Vessel ..... 船隻呼號 Call Sign .....
航行次數 Voyage No. ..... 泡位 Buoy No. .....
到港日期及時間 Date & Time of Arrival .....

(1) 船舶資料 Shipping Particulars

船東名稱
Name of owner.....
國籍
Nationality ..... 註冊港口
Port of Registry .....
噸位 — 毛重
Tonnage Gross ..... 註冊長度
Registered Length .....
— 淨重
Net ..... 載客量
Passenger Capacity .....
建造年份
Construction Year.....
代理名稱
Name of Agent .....
地址
Address .....
電話
..... Tel. No. .....

(2) 航程表 Voyage Itinerary

本船抵達香港前三個月內曾沿途停泊之港口。
Ports has been called by the vessel during the 3 months before the date of its arrival in Hong Kong.

所經埠 *Name of Port called*	到達日期 *Date of Arrival*	離開日期 *Date of Departure*
.....	.....	.....
.....	.....	.....
.....	.....	.....
.....	.....	.....
.....	.....	.....
.....	.....	.....
.....	.....	.....

(3) 艙單 Cargo Manifests

茲證明所附的貨物艙單其所載為在本船上輸入或輸出香港的貨物詳情。
I hereby certify that the attached manifests contain full particulars of the cargo being imported or exported in or on the vessel.

港口名稱 *Name of Port*	提單號數 *Bill of Lading No.*	頁數 *No. of Pages*
.....	..... 至 to	.....
.....	..... 至 to	.....
.....	..... 至 to	.....
.....	..... 至 to	.....

茲證明本船並無貨物由
I hereby certify that there is no cargo from ..... being discharged in Hong Kong.
(港口名稱 Name of Port)
埠運來香港卸下。

只供海關填寫
For Official Only
已核對航海日誌，證實資料真確 Ship log verified and certified correct by
..... 簽署 Signature .....
(海關人員姓名、職階及所屬組別)
Name/Rank/No./Unit/Division of attending officer
時間 Time/日期 Date: ..... hrs. on ...../...../.....
(時間 Time) 日 D 月 M 年 Y

簽署
Signature .....
姓名及職位
Name & Rank .....
日期
Date .....

CED 114 (Rev. 01/98)

자료 : 홍콩 세관

3. 화물의 통관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

○ 홍콩은 화물 통관시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을 20가지로 분류하고 관련부서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 한편, 수입을 위한 수입자 라이선스 및 유통을 위한 도소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삼 등의 한약재는 허가받은 수입자만이 취급 가능하다.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 |

마약류	광학디스크 기기
의약품	복사기
동물	화학약품
살충제	멸종 위기 동식물
폭발물	무기
쌀	섬유
냉동육	가금류
오존 파괴물질	라디오 운송장비
좌측 운전용 차량	방사성 물질 및 기기(X-ray 장치 등)
엔진(111.9kw 초과)	전략물자(메모리칩, 광섬유, 핵무기 관련 물질 등)

자료 : 홍콩 관세청

항구

○ 화물 통관은 카이청(KWAI CHUNG)항과 빅토리아(VICTORIA)항을 이용한다.

- 카이청(KWAI CHUNG)은 신계(新界, NEW TERRITORIES)에 소재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홍콩 전체 물동량의 약 60% 이상을 처리하다.
- 빅토리아항은 홍콩섬과 홍콩 반도(九龍半島)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만 양쪽 해안의 크고 작은 부두로 홍콩 전체 물동량의 30~40%를 담당한다.

○ 최근 물동량은 정체 상태로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지위를 상하이(上海)항과 선전(深圳)항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홍콩 물류업계는 양안(중-대만) 관계 개선으로 점차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한편 간편한 조세제도, 첨단 항구 인프라, 우수한 인력 등으로 당분간 홍콩의 물류 허브 지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반드시 환적에 따르는 비용과 추가 소요기간(약 1~2일)을 감안해야 한다.
- 2016년 기준 컨테이너 비용(부산·인천→홍콩)은 일반 컨테이너 20ft USD 200~350불, 40ft USD 350~550불이며 냉동컨테이너는 20ft USD 600~750불, 40ft USD 700~850불이다.

국제공항

○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홍콩국제공항 또는 첵랍콕 공항)는 홍콩섬과 주룽반도 서쪽에 위치한 란타우섬 북쪽에 위치한다.
- 1998년 7월 6일에 개항하였으며 24시간 운영된다.

○ 홍콩 국제공항은 전 세계 약 90여 개 항공사가 입주해 있으며,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공항(the Best Airport Worldwide)으로 선정되었다.
- 전체 면적은 영국의 히스로 공항과 비슷한 378만 평(1,255ha)으로 홍콩의 구 카이탁 공항의 4배이며 인천국제공항(335만 평)보다 더 크다.
- 매일 약 900회 이상의 비행기가 중국 대륙의 45개 지역을 포함하여 160개 도착지로 연결된다.
- 매시간 49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세계 3위 규모로 연평균 4,500만 명의 여객(공항 처리 가능 최대 여객수: 8,700만 명)이 이용하며 360여만 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하다.
- 홍콩공항 웹사이트 URL : www.Hongkongairport.com/eng/index.jsp

○ 홍콩 공항의 여객 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년 2월 제2호 여객 터미널을 신규 개장하였으며 신축한 제2청사로 인해 홍콩 공항은 여객운송 능력이 향상되었다.
- 쇼핑몰, 국제전시센터, 골프코스, 스카이피어, 호텔, 오피스타워 등 시설을 갖춰 공항에서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국제공항으로 성장했다.

○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한국에서 홍콩으로 오는 항공편은 대한항공·아시아나를 비롯, 캐세이퍼시픽, 타이 항공, 진에어, 홍콩 익스프레스 등이 있다.
- 타이항공 및 진에어 등 저가항공의 경우 공항 도착 후 공항 내 셔틀열차를 타야 해 입국 시간이 더 소요된다.
- 홍콩 공항 일반 문의 : (852) 2815 7711 - 근무 시간: 24시간

○ 홍콩으로 수출입시 운송방법별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대 홍콩 수출입시 운송방법별 문의처▐

운송방법	연락처	팩스
항공	(852) 2116-4130 / 2286-0157 (24시간 이용 가능)	(852) 2116-4201
해상	(852) 2410-8045	(852) 2420-2429
해상 화물	(852) 2534-7188 (24시간 이용 가능)	(852) 2854-1280
육로	(852) 2482-8758	(852) 2482-2552
열차	(852) 2954-0219 / 2774-3494	(852) 2363-8242

자료 : 홍콩 통계청

4. 원산지 규정

식품류는 홍콩 보건위생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의무

○ 홍콩의 기본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홍콩 보건위생법에 의해 수입 해당 당국의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발급받은 식품 허가 증명서와 생산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 도착 신고서(좌) 및 수입 신고서(우)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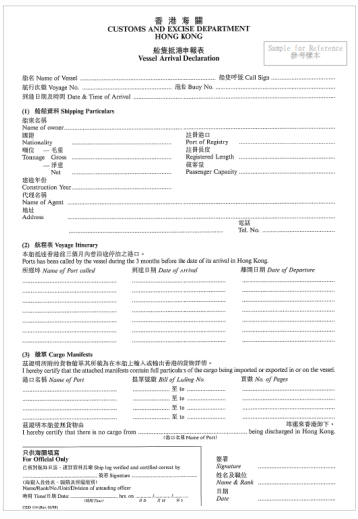
香 港 海 關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HONG KONG
船隻抵港申報表
Vessel Arrival Declaration
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
船名 Name of Vessel
呼號 Call Sign
航行次數 Voyage No.
船隻 Buoy No.
到達日期及時間 Date & Time of Arrival
(1) 船舶資料 Shipping Particulars
船東名稱
Name of owner
國籍 Nationality
噸位 — 毛重 Tonnage Gross
— 淨重 Net
建造年份 Construction Year
代理名稱 Name of Agent
地址 Address
註冊港口 Port of Registry
註冊長度 Registered Length
載客量 Passenger Capacity
電話 Tel. No.
(2) 航程表 Voyage Itinerary
本船抵達香港前三個月內曾停泊港口如下。
Ports has been called by the vessel during the 3 months before the date of its arrival in Hong Kong.
所經港 Name of Port called
到達日期 Date of Arrival
離開日期 Date of Departure
(3) 艙單 Cargo Manifests
茲證明所附的貨物艙單其所載為在本船上進入或檢出香港的貨物詳情。
I hereby certify that the attached manifest contain full particulars of the cargo being imported or exported in or on the vessel.
過境港名稱 Name of Port
艙單號數 Bill of Lading No.
頁碼 No. of Pages
至 to
茲證明本船並無貨物由
I hereby certify that there is no cargo from
(港口名稱 Name of Port)
being discharged in Hong Kong.
只供海關填寫
For Official Only
已收到船舶日誌，證實資料及艙單/Ship log verified and certified correct by
簽署 Signature
姓名及職位 Name & Rank
日期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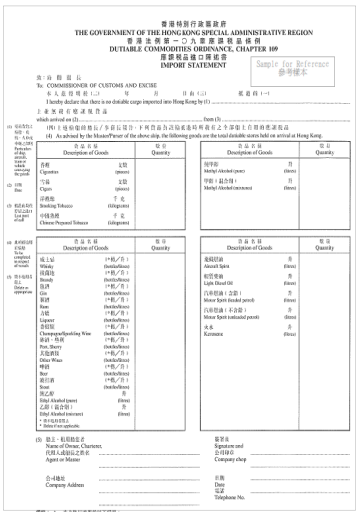
香港特別行政區政府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香港法例第一〇九章應課稅品條例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CHAPTER 109
原產地品進口報關書
IMPORT STATEMENT
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
To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I hereby declare that there is no dutiable cargo imported into Hong Kong by (1)
which arrived on (2)
(4) As arrived by the Master/Purser of the above ship, the following goods are the total dutiable stores held on arrival at Hong Kong.
Description of Goods
Quantity
香煙 Cigarettes (pieces)
雪茄 Cigars (pieces)
洋煙絲 Smoking Tobacco (kilogrames)
中特製煙 Chinese Prepared Tobacco (kilogrames)
甲醇（超合理） Methyl Alcohol (overproof) (litres)
甲醇（超合理） Methyl Alcohol (underproof) (litres)
威士忌 Whisky (bottles/litres)
白蘭地 Brandy (bottles/litres)
酒精 Gin (bottles/litres)
蘭酒 Rum (bottles/litres)
上述 Liqueur (bottles/litres)
雪利 Sherry (bottles/litres)
其他酒精飲料 Other Wines (bottles/litres)
啤酒 Beer (bottles/litres)
酒精酒 Stout (bottles/litres)
無乙醇 Ethyl Alcohol (pure) (litres)
乙醇（超合理） Ethyl Alcohol (overproof) (litres)
航空燈油 Aircraft Spirit (litres)
輕質柴油 Light Diesel Oil (litres)
汽車燃油（含鉛） Motor Spirit (leaded petrol) (litres)
汽車燃油（不含鉛） Motor Spirit (unleaded petrol) (litres)
火水 Kerosene (litres)
(5) 船主、船長或主事人 Name of Owner, Charterer, Agent or Master
簽署及印章 Signature and Company chop
公司地址 Company Address
日期 Date
電話 Telephone No.

자료 : 홍콩 세관

5. 구비서류

- 적하 목록
- 수입/수출 라이선스
- 식품의약안정청 통보서
- 선하 증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 등 유사 서류
- 화물 선적서류 -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등

○ 수출입 통관 기본 규정 참조 URL :

- www.censtatd.gov.hk/FileManager/EN/Content_93/B8XX0022.pdf

제2절 품목별 통관 제도

1. 일반 포장 제품

수입규제 및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

○ 우유·유제품·냉동식품·당과류·육류·가금류 등 위험성이 높은 식품들은 보건과 지자체 조례(cap 132)의 법 적용을 받는다.

○ 야생 동물류·육류·가금류 등 수입은 식품 및 환경위생서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식품환경위생서에서 인정한 공급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홍콩 법령 : 홍콩 세관 - Chapter 132AK, Laws of Hong Kong

○ 수입 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따라 수입국 식품청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없거나 식품환경위생서의 공식적인 사전 허가가 없을 시, 어떠한 육류 및 가금류도 홍콩 수입이 불가하며 위반 시 HK$50,000의 벌금이나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한다.

○ 여행자는 일반적으로 타국의 식품청은 식품 거래상에게만 사업상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을 인지해, 야생 동물류·육류·가금류 등을 홍콩으로 반입하기 위해 인증서를 얻고자 하는 경우, 수입국의 관련 기관 확인 및 개인 공식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입 가이드 내 품목 분류▐

No.	항 목
Ⅰ	중국산 냉동 닭의 수입 가이드
Ⅱ	냉동 당과류 및 식품 수입 가이드
Ⅲ	게임, 육류 및 가금류 수입 가이드
Ⅳ	우유와 우유 음료 수입 가이드
Ⅴ	해산물 수입 가이드
Ⅵ	냉동 육류, 냉장 육류, 냉동 가금류와 냉장 가금류의 수입 허가 신청 가이드
Ⅶ	식품 리콜 가이드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중국산 냉장 닭고기

○ 홍콩은 식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산 냉동 닭고기의 수입에 대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비에 적합지 않은 어떠한 식품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홍콩 세관 Chapter 132 관련 법령 및 조례 제54에 규정

○ 가이드의 '냉장 닭고기'는 도축 후 바로 냉동전 과정을 거치고, 0~4℃에서 보관하는 닭고기를 의미한다.

○ 도매시장과 도축장에서 살아있는 가축류 역시 홍콩 식품관리국 만감토(Man Kam To, 文錦渡)에서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수입업자 관련 사항
- 중국에서 냉장 닭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식품환경위생서에서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냉동 닭고기 관련 발급한 수입허가는 6개월 동안 유효하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수입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조건 부합 제품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수입된 냉장 닭고기는 불량 처리하여 처분된다.

○ 수입 라이선스
- 홍콩 식품위생서는 이러한 식품의 수입 라이선스 발급 책임에 책임을 지며 중국 냉장 닭고기 수입업자는 각 냉장 닭고기 수하물에 대해서 위생서에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냉장 닭고기 수입 허가 신청은 아래 양식을 따르며 모든 관련 세부사항들은 신청 시 제출한다.
- 별첨 원본 URL :
  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iles/fehb161.pdf
- 수입 허가 신청기관 우편 발송 주소 또는 방문 신청 주소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Centre for Food Safety
  Food Surveillance & Control Division 43rd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Telephone Enquiry Number : (852) 2867-5560 / 팩스 : (852) 2521-4784

▌식품환경위생서의 냉장 닭고기 수입허가 신청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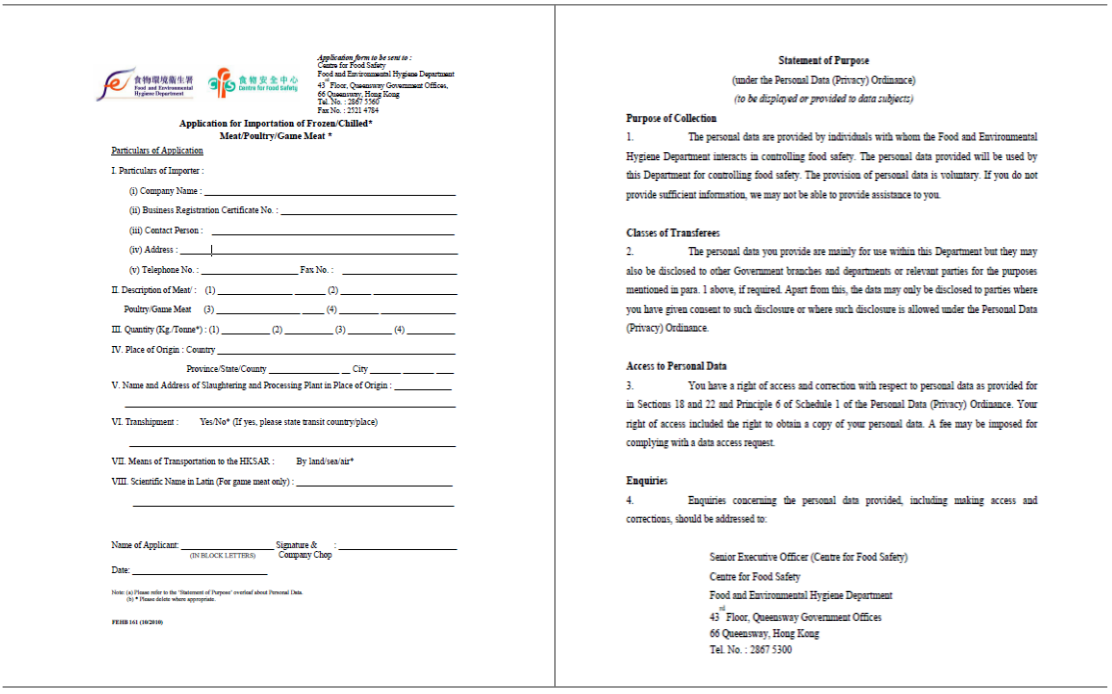

食物環境衞生署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食物安全中心
Centre for Food Safety

Application form to be sent to :
Centre for Food Safe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43rd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Tel. No. : 2867 5300
Fax No. : 2521 4784

Application for Importation of Frozen/Chilled* Meat/Poultry/Game Meat *

Particulars of Application

I. Particulars of Importer :
(i) Company Name : _____
(ii)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No. : _____
(iii) Contact Person : _____
(iv) Address : _____
(v) Telephone No. : _____ Fax No. : _____

II. Description of Meat/ Poultry/Game Meat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III. Quantity (Kg./Tonne*)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IV. Place of Origin : Country _____
Province/State/County _____ City _____

V. Name and Address of Slaughtering and Processing Plant in Place of Origin : _____

VI. Transhipment : Yes/No* (If yes, please state transit country/place)

VII. Means of Transportation to the HKSAR : By land/sea/air*

VIII. Scientific Name in Latin (For game meat only) : _____

Name of Applicant: _____ (IN BLOCK LETTERS) Signature & Company Chop : _____

Date: _____

Note: (a) Please refer to the 'Statement of Purpose' overleaf about Personal Data.
(b) * Please delete where appropriate.

FEHB 161 (10/2010)

Statement of Purpose
(under the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to be displayed or provided to data subjects)

Purpose of Collection

1. The personal data are provided by individuals with whom 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interacts in controlling food safety. The personal data provided will be used by this Department for controlling food safety.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is voluntary. If you do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we may not be able to provide assistance to you.

Classes of Transferees

2. The personal data you provide are mainly for use within this Department but they may also be disclosed to other Government branches and departments or relevant parties for the purposes mentioned in para. 1 above, if required. Apart from this, the data may only be disclosed to parties where you have given consent to such disclosure or where such disclosure is allowed under the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Access to Personal Data

3. You have a right of access and correction with respect to personal data as provided for in Sections 18 and 22 and Principle 6 of Schedule 1 of the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Your right of access included the right to obtain a copy of your personal data. A fee may be imposed for complying with a data access request.

Enquiries

4. Enquiries concerning the personal data provided, including making access and corrections, should be addressed to:

Senior Executive Officer (Centre for Food Safety)
Centre for Food Safe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43rd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Tel. No. : 2867 5300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냉장 닭고기는 반드시 위생서에서 허가받은 공장에서 가공 처리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공장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원본 URL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1a.html#3

▌식품환경위생서의 냉장 닭고기 수입허가공장▐

	공장명	공장주소
1	廣州市大鵬家禽養殖有限公司 (早禽加工廠)	廣州市白雲區神山鎮大石崗村 (土名) 基下黃泥堆
2	廣州市江豊實業有限公司卓味家禽加工廠	廣州市白雲區江高鎮江村村塔山
3	廣州市火村家禽深加工廠	廣州是蘿崗區火村黃崗坑蝦公山
4	廣東溫氏佳潤食品集團有限公司 (新興肉食品加工廠)	廣東省新興縣勒竹鎮
5	惠州順興食品有限公司	中國惠州市福田鎮福中路
6	虎門聯歡家禽加工廠	東莞市虎門白沙三村
7	佛山市高明海達高新科技孵化養殖基地有限公司加工廠	佛山市高明區高明大道中 6號
8	廣州市榮利家禽有限公司	廣東省廣州花都區新華?九塘林科所西則
9	河源市匯先豊食品有限公司	河源市東源縣駱湖鎮楊坑村 205國道邊
10	五豊食品深圳有限公司家禽加工廠 (早禽加工廠)	深圳市羅湖區清水河一路

	공장명	공장주소
11	深圳市光明華僑食品有限公司 (旱禽加工廠)	深圳市寶安區光明華僑畜牧場光明大街
12	深圳市寶安公明華馬山頭三鳥加工廠 (旱/水禽加工廠)	深圳市公明鎭馬山頭
13	深圳市龍崗區邢記綜合農場 (旱禽加工廠)	深圳龍崗區同樂㘭屋吭脏內
14	珠海經濟特區科泰有限公司畜禽食品廠 (旱/水禽加工廠)	珠海市唐家灣鎭會同社區
15	海南 (潭牛)文昌鷄股分有限公司	海南省海口市美蘭區三江鎭蘇尋三村委會樓前坡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중국 냉장 닭고기의 수입 조건

- 냉장 닭고기 수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출입국 검역국이 발행하는 공식 보건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 수입 라이선스는 검역국의 수입 등록 부서에서 사전에 취득해야 하고 확인을 위해 제출한다.
- 냉장 닭고기는 허가받은 공장에서 도축·포장해야 한다.
- 냉장 닭고기 표면에 식별 스탬프를 표시하며, 식별 스탬프가 없는 경우는 압류·폐기 처분한다.
- 냉장 닭고기는 0~4℃에서 저장해야 하고, 공장 내 가공 단계서부터 수입 냉장 닭고기가 홍콩의 소매상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8℃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냉장 닭고기는 식품환경위생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운반하고, 차량은 '수입 냉장 닭고기 및 부산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 차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의 조건을 준수한다.
- 냉장 닭고기는 식품의약품 규정 Cap 132 Schedule 3에 따라 레이블 밀봉 용기에 개별 포장해야 하며, 용기의 겉면에는 'CIQ 中國檢驗檢疫' 홀로그램과 가공 공장의 등록번호 및 생산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 도착 당일, 모든 냉동 닭고기 수하물은 식품관리국 만캄토 검역소·국제공항 식품검역소·청샤완 도매 식품시장 해안 사무소·웨스턴 도매식품시장 해안 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고, 통관되기 전 위생서는 지정한 곳에서 보건 검사·검역을 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나 대리상은 냉장 닭고기 수화물이 보건 검역조사관이 지정하는 날짜에 검역을 위해 지정장소로 위탁해야 한다.
- 닭고기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용기·포장 재료·얼음 등은 반드시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깨지거나 결함이 있는 용기에 담긴 닭고기는 폐기한다.
- 수입 냉장 닭고기는 조작하지 않고 위생서에서 허가받은 식품 판매점이나 노점상 그리고 허가받은 상점에 본래의 포장 그대로 배송한다.
- 수하물은 홍콩 도착 동시에 허가받은 식품 판매점과 중국 냉장 닭고기를 공급받는 모든 노점상들의 이름·주소·목록·상점 공급량을 위생부에 보고하고 부적절한 경우 폐기한다.

○ 수입 냉장 닭고기 및 부산물 수송 차량 준수 사항

- 수송차량은 수입된 냉장 닭고기 및 부산물을 운송하기 위해 밀폐된 형태로 0~4℃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장치와 어떠한 경우에도 8℃를 넘지 않는 운송 칸을 구비한다.
- 수입 냉동 닭고기나 부산물을 별도 저장하기 위해 배송차량 운송 칸에서는 행거 레일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 수송차량은 운송 동안 운송 칸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온도 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자가 쉽게 운송 칸 내부의 온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차량 외부에 배치한다.
- 수입 닭고기와 부산물을 수송하기 위해 허가받은 차량의 운송 칸은 반드시 깨끗하고, 먼지 또는 다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물건을 선적하고 하역하기 전에 또는 관할 보건 검사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
- 수송차량의 운송 칸은 수입된 냉장 닭고기나 부산물의 운반에만 사용하며, 살아있는 닭이나 기타 상품을 운송하면 안 된다.
- 수입 냉장 닭고기 및 부산물의 온도 요구사항은 닭고기의 모든 부위에 적용한다.
- 수송차량의 운송 칸의 모든 문·창문은 식품의 선적과 하역을 제외하고 항상 닫혀있어야 하며, 냉장 장치는 선적·하역 시 계속 작동해야 한다.
- 수송차량의 운송 칸에는 식품의 선적과 하역·세척·소독·운송 칸의 유지 보수의 목적 외에 어떤 인원도 탑승을 금하며, 운송 칸의 냉장 장치와 온도계는 항상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냉장 닭고기 검역 모습▐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수하물의 도착

- 수입된 육류 그리고 가금류는 규정에 따라 육류 배송인 경우 홍콩 식품관리국 만감토(Man Kam To), 항공 배송의 경우 홍콩 국제공항, 또는 해운 운송인 경우 청샤완 도매시장·웨스턴 도매 시장으로 지정된 국경을 통해 들어와야 하며, 해당 위생서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미생물 및 화학 검사 등 다양한 식품안전 분석을 위해 각 검사소에서 식품 샘플을 모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과 지자체 관례 62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계약 이행 수입업자를 필요한 공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5일 안에 냉장 닭고기 수입업자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한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된 샘플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며, 수입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으므로 위생서는 샘플이 수집된 시점에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 통지에는 식품 샘플로 수집한 정확한 물품과 수량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 대금 지불을 위해서 수입업자는 위생서에 청구서를 보낼 수 있다.

냉동 과당류

○ 홍콩은 식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공공보건과 지자체 관례, 관련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부 법 조항은 Chapter 132AK, Laws of Hong Kong을 참조한다.

○ 조례 제54에 규정에 냉동 당과류 관례의 규제는 냉동 당과류에 대한 법적 요건과 표준을 명시하고 있다.

○ 공공 보건과 지자체 규범 62항에 따라 각 국경 검사소는 미생물·화학실험을 포함한 분석을 위해 식품의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 위생서는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된 샘플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며 수입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으므로, 위생서는 샘플이 수집된 시점에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 통지에는 식품 샘플로 수집된 정확한 물품과 수량을 제시하며 이후 대금 지불을 위해 수입업자는 위생서에 청구서를 보낼 수 있다.

○ 식품 수입업자

- 냉동 수입업자는 수출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냉동 당과류 수입이 홍콩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식품 수입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홍콩으로 수입하는 모든 냉동 당과류 식품은 환경위생서의 승인을 받은 제조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수입업자는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냉동 당과류 처리 공장의 이름과 주소
- 냉동 당과류 생산국의 법률
- 냉동 과당류의 레이블이 붙은 포장과 빈 용기
- 냉동 당과류의 열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와 처리 공장의 설비나 수자원 공급 등을 포함한 설비 정보
- 생산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 착색 원료, 소독기와 당 성분 등과 같은 재료 세부사항과 냉동 당과류 내에서의 각 재료들의 용량

○ 수입상은 먼저 허가를 취득하고 식품환경위생서가 요청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당과류 홍콩 수입이 가능하다.

- 위생서가 수입 식품 검사에 대한 특별 절차를 만들 권한이 있다.
- 냉동 당과류의 수하물이 도착하고 판매되기 전 상품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서에서 샘플링하며, 위생서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판매 허가서'를 발행한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제조원의 허가 신청을 받은 12일 이내로 수입 사항을 진행한다.

- 실제 배송물 도착일과 도착 통지를 받은 일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방출 허가서'를 발급한다.

○ 신청 문의는 식품안전과 및 식품환경위생서로 가능하다.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전화 : (852) 2867-5990 또는 24시간 핫라인 (852) 2868-0000

| 냉장 닭고기 검역 모습 |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 수입 및 유통 신청서▐

원본 URL : 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drs/files/FEHB245.pdf

申請可以電子表格遞交，但須加上數碼簽署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by e-form which must be digitally signed

請將申請書交回：
香港灣仔皇后大道東 258 號 1 樓 119 室
食物進／出口組
食物進口商／分銷商登記及進口審證辦事處
電話號碼：2156 3017／2156 3034　傳真號碼：2156 1015
電郵地址：fso_enquiry@fehd.gov.hk

Application form to be sent to :
Food Importer/Distributor Registration
and Import Licensing Office
Food Import & Export Section
Room 119, 1/F, 258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Tel. No. : 2156 3017/2156 3034 Fax No. : 2156 1015
E-mail address : fso_enquiry@fehd.gov.hk

食物安全條例
FOOD SAFETY ORDINANCE
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登記申請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填寫此表格前，請參閱第 30 頁的「填表須知」)
(Please read the 'Guide to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at page 30 before completing this form)

甲部 Part A

請根據食物業務的法律地位選擇填寫 甲部(1)、甲部(2) 或 甲部(3)
Please base on status of the food business and fill in either Part A(1), Part A(2) OR Part A(3)

甲部(1) Part A(1) (如屬**公司**申請，請填寫甲部(1)) **(Please fill in Part A(1) if applicant is a Body Corporate)**	公司名稱： Name of Corporation :	
	業務名稱#： Name of Business# :	
	獲授權人姓名： Name of Authorised Person :	
	商業登記／其他登記*號碼(請註明) (附註 1)： Business Registration/Other Registration* No. (please specify) (Note 1) :	

	註冊辦事處地址#： Registered Office Address# :	
	聯絡地址： Correspondence Address :	
	電話號碼#： Tel. No.# :	傳真號碼： Fax No. :
	電郵地址： Email Address :	
甲部(2) Part A(2) (如屬**個人**申請，請填寫甲部(2)) **(Please fill in Part A(2) if applicant is an Individual)**	申請人姓名： Name of Applicant :	
	香港身分證／其他身分證明文件*號碼(請註明) (附註 2 及 3)： Hong Kong Identity Card/Other Proof of Identity * No. (please specify) (Note 2 & 3) :	
	業務名稱#： Name of Business# :	
	商業登記號碼(附註 1)： Business Registration No. (Note 1) :	
	業務地址#： Business Address# :	
	聯絡地址： Correspondence Address :	
	電話號碼#： Tel. No.# :	傳真號碼： Fax No. :
	電郵地址： Email Address :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 수입·식품 유통 등 등록 갱신 신청서▐

원본 URL : http://www.cfs.gov.hk/english/public/public_fifdrs/files/FEHB248.pdf

食物環境衞生署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食物安全中心
Centre for Food Safety

請將申請書交回：
香港灣仔皇后大道東 258 號 1 樓 119 室
食物進／出口組
食物進口商／分銷商登記及進口審證辦事處
電話號碼：2156 3017／2156 3034　傳真號碼：2156 1015
電郵地址：fso_enquiry@fehd.gov.hk

Application form to be sent to :
Food Importer/Distributor Registration
and Import Licensing Office
Food Import & Export Section
Room 119, 1/F, 258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Tel. No. : 2156 3017/2156 3034 Fax No. : 2156 1015
E-mail address : fso_enquiry@fehd.gov.hk

續期申請亦可經網上辦理，請瀏覽網頁 https://www.fics.gov.hk
Application for renewal can also be made online. Please visit https://www.fics.gov.hk

食物安全條例
FOOD SAFETY ORDINANCE
登記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續期申請
Application for Renewal of Registration as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填寫此表格前，請參閱第 5 頁的「填表須知」)
(Please read the 'Guide to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at page 5 before completing this form)

甲部 Part A

登記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資料 Particulars of Registered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姓名／公司名稱*(中文)：
Name/Company Name* in English :
香港身分證／商業登記／其他身分證明文件*號碼(請註明)： Hong Kong Identity Card/Business Registration/Other Proof of Identity* No. (please specify) :
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登記號碼：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Registration No. :

FEHB 248 1

乙部(1) Part B(1)

請注意：乙部(1)只適用於公司及合夥申請，如屬個人申請，請填寫乙部(2)
Attention : Part B(1) is applicable to body corporate and partnership. If the applicant is an individual, please complete Part B(2)

聲明 DECLARATION

本人 (請以正楷填寫姓名) (香港身分證／其他身分證明文件號碼)
I, _____ (English Name in Block Letters) (HKID Card/Other Proof of Identity No. _____) am

為上述業務的

☐ 東主 Proprietor	☐ 合夥人 Partner	☐ 董事 Director	☐ 獲正式授權的負責人 Responsible person duly authorised by the Company/Partnership

現謹此申請辦理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的續期登記，並作以下聲明：
of the above business and hereby apply for renewal of registration as a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and declare that :

(a) 本人獲正式授權代表上述公司／合夥提出此項申請並作出聲明，以辦理食物進口商及／或食物分銷商的續期登記，並完全明白夾附的《用途聲明》。
I am duly authorised to make this application and declaration on behalf of the above-named company/partnership for renewal of registration as a food importer and/or food distributor and fully understand the "Statement of Purpose" as attached.

(b) 本人證實較早前向食物環境衞生署署長(署長)申報作為食物進口商／食物分銷商登記的資料並無修訂及正確無誤／於最近不多於30天內有所變更*。本人明白有關的資料如有所變更，需根據法例於變更發生後30天內通知署長。
I confirm that the particulars previously provided to the Director of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the Director) for registration as a food importer/food distributor remain unchanged and are true and correct/have been changed recently within a period of not more than 30 days*. I understand that according to the law, I need to notify the Director of any changes to the particulars within 30 days after the changes occurred.

簽署
Signature : _____

職銜
Position held : _____

日期
Date : _____

公司印章
Company chop : _____
(適用於公司申請 Applicable to body corporate)

FEHB 248 2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야생 동물류, 육류 및 가금류

○ 수입과 수출 조례 법령(Chapter 60)에 따라 냉동·냉장한 소·양고·돼지고기·가금류는 라이선스 관리를 받아야 한다.

○ 신청 세부사항은 식품 위생서에서 발간한 '냉동육류·냉장 육류·냉동 가금류·냉장 가금류 수입 라이선스 신청 가이드' 참조한다.

- 참고 URL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 수입 육류·가금류 규정

- 식품환경위생안전서가 공식 인정하는 관할 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가진 육류·가금류만 수입 가능하다
- 공식 인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관할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고자 할 시 서면으로 관련 기관이나 정부에 식품환경위생서에 신청하고, 관련국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동물 질병 상황이나 육류나 가금류의 위생 기준에 관한 법률
  (b) 육류·가금류의 처리 공장의 위치, 처리 시설과 처리 과정, 생산, 저장 및 배송 정보
  (c) 도축 전후 과정에서의 육류·가금류의 검사 상세 내용과 검사 과정 담당 책임자
  (d) 공식 수의과와 건강 인증서의 샘플
  (f) 공식 수의과와 건강인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관할 기관의 공식 명칭

○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인증서가 있는 육류·가금류 수입은 식품환경위생서의 사전 허가가 불필요하다.

○ 수입 금지 육류·가금류 수입

- 수입 육류·가금류 규정 4(1)(b)에 따라 금지된 육류·가금류의 위탁품을 수입하기 전 식품환경위생서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허가 신청 수입업자는 paragraphs 8(a)·(f)에서 지정한 정보와 원산지 국가의 정부로부터 금지된 육류나 가금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수입업자는 위탁물 환적 전 위생서에 수입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한다.

-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공인 인증서
- 밀봉된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어떤 손상이나 퇴화 없이 적절히 운송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환적 인증서

달걀

○ 수입 야생 육류·육류·가금류·달걀류 관리 규정(제132AK장) 내 달걀류 수입 조치가 2015년 12월 5일부로 재시행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에서 달걀류 수입이 불가하다.
- 위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 해당 달걀류가 환적되었으나 환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 위생국이 발행한 서면 허가서가 없을 경우
- 위생국의 추가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달걀 수입 전 식품환경위생서 위생주임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 달걀류 수입상은 반드시 '식품안전조례 제162장'에 따라 식품환경위생서 서장으로부터 등록한 식품 수입상이어야 한다.

○ 달걀류 수입상은 식품환경위생서 또는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FEHB 270 양식이나 전자양식인 e-FEHB 270을 사용해 서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시 제출서류
- 해당 수입 달걀류의 종류 및 수량
- 해당 달걀류의 홍콩 도착 예상일 및 운송방법
- 해당 달걀류가 컨테이너 적재로 운반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 및
- 해당 수입 달걀류의 운송경로 확인에 필요한 모든 관련 문서

○ 제출처는 식품안전센터 식품수출입팀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 우편 송부 또는 팩스 (852-2521-4784)로 제출한다.
- 신청 획득 후 관련 서면 허가는 신청인이 직접 수취하거나 신청인에 송부한다.
- 신청비는 무료이다.

○ 서면허가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수입한 달걀류의 총량이 비준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면 허가를 사용하여 1회 이상 운송 가능하므로 별도 수입허가증이 필요 없다.

○ 달걀류 수입 서면 허가 발급의 경우(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 가능하다.

우유 및 우유음료

○ 홍콩은 우유와 우유음료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Chapter 132 관련 법령, 조례 제54에 기반을 둔다.
- 조례 제54에 규정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지 못한 어떠한 식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유와 우유음료의 규정은 법적 요건과 표준을 명시하고 있다.

○ 수입업자는 아래 주소에서 주요 조례 및 관련 법안 책자의 구매가 가능하다.
- 주소 : Room 626, 6/F, North Point Government Offices, 333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 수입 신청 주의사항
- 제조업체의 허가 승인 신청
- 홍콩에 수입하는 모든 우유·유제품 음료는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승인한 제조업체의 제품만 수입 가능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서의 부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 홍콩에 우유·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업체는 제품 수입 전 다음의 정보를 제공
  a. 우유,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b. 우유, 유제품 생산에 관련하여 생산 당국의 허가서
  c. 라벨이 첨부된 우유, 유제품의 빈 용기
  d. 우유, 유제품 및 가공 공장의 생산 설비와 물공급 시설, 편의 시설, 열처리 방법 등 정보
  e. 생산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f. 제품의 유통기한을 증명하는 제조업체의 인증서

○ 우유·유제품은 수화물의 홍콩 도착 전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의 허가를 받아야 홍콩 수입이 가능하다.
- 공공 보건 지자체 조례 제59(1)(c)에 따라 식품환경위생서가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특별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수하물이 도착해 출고·판매 이전에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의 샘플을 제공, 위생서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판매 허가서'를 발행한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제조원의 허가 신청을 받은 12일 이내로 진행한다.
- 실제 배송물의 도착일·도착 통지받은 일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14일 내 '방출 허가서'를 발급한다.

○ 신청 및 문의는 식품 안전과와 식품 및 환경 위생서가 담당한다.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전화 : (852) 2867-5990 또는 24시간 핫라인 (852) 2868-0000

수산물

○ 홍콩은 공공 보건과 지자체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청 법령 (Cap 132- 조례 제54항) Part V와 부속 법률에 식품 안전 관리의 법적 틀을 두고 있다.
- 해산물은 수확 구역이나 처리 과정에서 미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위험 식품군으로 간주한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수입 해산물에 생산국의 보건 당국으로부터 발행 받은 보건 인증서를 취득하도록 강력 권장한다.
- 관련 간행물 구매지 주소 : Room 626, 6/F, North Point Government Offices, 333,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 수입자 관련 사항
- 식품 수입업자는 수출국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수입 수산물이 홍콩 법률을 따르는데 보장할 책임을 진다.

○ 수하물의 도착
- 공공 보건과 지자체 규제 59(1)(c)는 식품 및 환경 위생부에 수입된 식품을 검사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한다.
- 해산물 수하물이 홍콩의 입국 지점에 도착했을 때, 위생부가 검역 또는 샘플링 할 수 있다.
- 또한, 검사 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보건 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위생서는 제품 판매 전에 검사를 위해 수하물에서 샘플을 가져갈 수 있다.
- 샘플에 관련 신청은 식품환경위생서 식품 안전과로 가능하다.

냉동육류, 냉장육류, 냉동 가금류, 냉장 가금류

○ 2012년 2월 1일부터 식품 안전 규제가 홍콩 전반에 실시하면서, 냉동 육류·냉장 육류· 냉동 가금류·냉장 가금류 수입은 수입 라이선스를 가진 식품 수입업자, 식품 유통업자로 등록된 수입업자, 식품 안전규제에 면제된 식품 취급업자에게만 허가증 발급한다.
- 수입 업체가 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안전 조례에 따라 식품환경위생서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 규정이나 등록 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의 '식품 수입업자와 식품 유통업자를 위한 등록 절차 가이드'를 참조한다.
- 참고 웹사이트 URL : www.foodsafetyord.gov.hk
- 개인적인 용도로 15kg 이하의 수하물을 홍콩으로 수입코자 할 경우 육류나 가금류의 수입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 수입자는 다음 주소의 식품환경위생서의 식품 수입업자·유통업자 등록과 수입 라이선스 사무소에 수입 라이선스 신청한다.
- 주소 : Room 119, 1/F, 258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 냉동 육류·냉장 육류· 냉동 가금류·냉장 가금류의 각 수화물은 하나의 수입 라이선스로 처리 가능하다.

○ 수입 라이선스의 신청 시 수입 라이선스 신청서 3부를 작성한다.
- 수입 라이선스 신청서는 수하물 수출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보건 인증서 또는 식품 및 환경 위생부의 부서장으로부터 받은 특정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 수입업자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신청서 수령 이후 식품환경위생서는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 신청자는 식품환경위생서에서 라이선스를 받을 때 확인서를 제출한다.

○ 일반적으로 수입 라이선스는 신청 후 24시간 뒤 발급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청일, 발급일 제외)

○ 수입 라이선스의 신청 절차는 무료이며 수입 라이선스 양식은 비용이 부과된다.

○ 수입 라이선스 양식은 무역 및 산업국 발급과 양식 판매 사무국에 직접 가서 구매하거나 정보 서비스국의 간행물 판매 사무국에서 취득 가능하다.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주문 URL : http://www.info.gov.hk/isd/form/order.htm 또는 http://www.bookstore.gov.hk

○ 수입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발급 날짜로부터 6주간, 1번의 선적에 대해 유효하다.

○ 허가증은 수입업자에게 2부(원본과 복사본)의 라이선스가 발급되며 복사본은 수입업자가 보관한다.

- 육류나 가금류의 수입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식품을 수입한 14일 이내에 수입 라이선스의 원본을 목록과 함께 무역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 냉장 저장 창고 등록

- 식품환경위생서의 냉장 상점 라이선스는 수입된 육류 및 가금류를 냉장 보관 창고로 자동적으로 등록하며, 식품 사업을 위해 냉동 또는 냉장 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는 등록된 수입업자는 자신의 허가받은 식품업체를 수입 육류나 가금류의 냉장 저장 창고로 등록해야 한다.

식품 리콜

○ 식품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에 유해한 식품에 대한 판매, 유통 그리고 소비행위를 금지하는 행동을 정의한다.

- 대부분의 경우 식품 취급업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지며, 홍콩 정부는 식품의 리콜을 자발적으로 실행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식품 리콜 규정을 제정했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식품안전 규정 제30항에 따라 공공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공급을 금지
- 식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
- 식품에 대한 압류, 격리, 처분이나 처리를 명령
- 식품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가

▌리콜 관련 식품 진행 과정▐

문제 제품 리콜
↓
리콜 대상 제품은 '리콜 통지 양식'을 작성해 식품환경위생담당자에게 통지
↓
대상 리콜 식품에 관하여 식품안전위생서와 협의
↓
소비자에게 통지
↓
제품 회수. 관련 제품 재고 처분 및 폐기
↓
리콜 제품 관련 처분 보고서 제출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리콜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식품환경위생서는 소비자들이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일반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콜에 대해서 홍보한다.
- 소비자 건강의 위급 상황 시 식품환경위생서는 가능한 근거들을 기준으로 리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식품환경위생서장은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리콜에 대한 식품업계의 역할

- 기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기 위한 후속 조처 그리고 리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확인을 포함한 다양한 규정 등의 리콜 과정에 대한 준수를 책임진다.
- 리콜은 식품환경위생서와 협의를 거쳐, 리콜 전략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 한다.
- 리콜 과정에서는 기업의 직원은 최신 정보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리콜에 해외 수출 품목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해야 하고, 리콜 된 재고에 대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리콜 개시

- 리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 거래상에 보고된 보고서와 불만들이 모여 시작되며, 보고서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의료 관계자, 정부 기관, 소비자 등을 통해 전달된다.

- 해외 제조 식품에 관한 리콜은 해외 신문이나 보건 당국들의 유사 출간물 또는 당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보고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
-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콜은 가능한 짧은 기간 내 수행한다.
- 어떠한 비상 상황에도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식품 거래상에게 개별 리콜 규정을 만들기를 권고하고 있다.
- 리콜 절차는 유통과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와 식품 환경 위생서에 문제를 알리며, 잠재적으로 불안전한 식품을 시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식품환경위생서 고지

- 투명하고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한 최선책으로, 식품 취급상들은 즉각적으로 리콜에 대한 원인과 공공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그 어떠한 의견이라도 함께 식품 환경 위생서에 보고해야 한다.
- 'The Voluntary Food Recall Notification Form'을 신청하고 적절한 조치도 제안한다.
- 리콜 신청서 양식 URL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8_recallform.html
- 리콜 관련 문의 이메일 : Food_Recall_Notification@fehd.gov.hk
- 전화 : (852) 2867-5567 / 팩스 : (825) 2521-4784

○ 소비자에게 고지

- 정보는 신문 기사나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미디어에 유료 광고, 공공 안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한 상점에 포스터를 개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한다.
- 소비자의 질의에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문의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리콜 평가 기준

- 리콜에 대한 즉각적인 안내나 미디어를 통해 공급이나 수입을 금지
- 고객 문의 서비스를 구축
- 수입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매업자들 간의 리콜에 관해 동의 또는 관련 식품의 회수를 위한 편리하고 적절한 장소 등과 같은 공급과 수입 금지와 관련된 동의
- 최종 소매상으로부터 해당 식품의 즉각적인 철수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반품하는 물건을 저장하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적절한 저장 장소 마련
-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의 저장창고로 회수한 식품에 대한 즉각 반품과 적절한 폐기 처리
- 취급업자의 입장에서 리콜 식품에 대한 기록이 적절하게 보관되는지 확인

- 결함의 원인과 후속 조치에 대한 조사(개선 방법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식품 환경 위생서에 보고)

○ 회수 조치

- 소매상은 관련 식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해야 하고,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에게 반납이 유보되는 동안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식품들을 보관해야 한다.
- 생산업자는 리콜 식품을 별도 보관하고, 다른 가공 처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소매상은 유통업자에게 반품하기 위해서 회수한 품목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기록하고 적절한 상품 확인을 통해 리콜한 식품은 다른 식품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에 따로 저장, 배송 실수 등을 막기 위해서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 상품 회수

- 상품은 슈퍼마켓으로 회수하거나 유통체인을 통해 또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다.
- 상품은 중앙 지점으로 회수하거나, 광범위 유통 상품의 경우 주요 회수 지점으로 회수한다.
- 회수 물품은 다른 식료품과 격리 보관하며, 회수된 물품의 수량과 일괄 처리 코드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한다.
- 회수 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시장에 나오기 전 수정이나 재가공을 거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품은 폐기된다.

○ 최종보고서 제출

- 유통업자는 리콜 완료 시점에서 한 달 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 내 포함해야 할 내용

(a) 리콜 시행 배경
(b) 매스컴 홍보의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취급업자가 취한 조치
(c) 홍콩과 해외 관련 집단의 유통 규모
(d) 리콜 결과(회수 물품의 수량, 총계, 등)
(e) 폐기방법 또는 회수된 식품의 처리 기록
(f) 결함 사유와 미래에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조사 보고서

① 보고서는 리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적절한 보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식품안전 위생서는 감사를 강화하거나 리콜 조치의 연장 또는 식품 안전 명령 등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건강식품

인삼

○ 홍콩은 인삼 제품 무관세로 홍콩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으며 수입절차 또한 일반 상품과 동일하고 원산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다.

○ 인삼은 일반식품이 아닌 중약으로 취급하며 도소매업자의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인삼가공제품은 중성약으로 분류되나 사실상 중성약 등록 없이 판매 가능하다.

○ 인삼 관련 명칭
- 인삼 원자재 : Wholesaler License in Chinese Herbal Medicine.
- 인삼 제품 : Wholesaler License in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 통관 관련 법률 : 수출입 법률(홍콩 특별행정부 법률 제60장)
- 일반식품 취급 및 수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입 법률 중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의 적용을 받는다.
- 일반 식품 중 의약(Medicine) 성분이나 의학적 효과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Cap. 138)' 법률을 따르며, 중약(Chinese medicine) 성분으로 구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Chinese Medicine Ordinance(Cap. 549)' 적용을 받는다.
- 중약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약은 크게 일반 약초(herbal)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일반 중약(Chinese herbal medicines)과 캡슐, 가루 등 가공 중약품에 해당하는 중성약(proprietary Chinese medicines)으로 구분된다.
- 인삼의 경우 백삼, 홍삼 등 뿌리인삼 제품은 일반 중약에, 인삼차, 농축액 등 기타 인삼 가공 제품은 중성약으로 분류한다.

▌식품 및 중·의약품 구분 및 적용 법률▐

종류	기준	적용 법률
일반식품	기타 모든 식품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의약품	의약성분·의약효과 문구 포함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Cap. 138)
중약품	중약 성분 포함	Chinese Medicine Ordinance(Cap. 549)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중약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 중성약 생산·도매업자는 반드시 취급 전 관련 법률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중성약 소매업자는 홍콩 중약 의회(Chinese Medicines Council of HK)의 중약 이사회(Chinese Medicines Board)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중약 종류 및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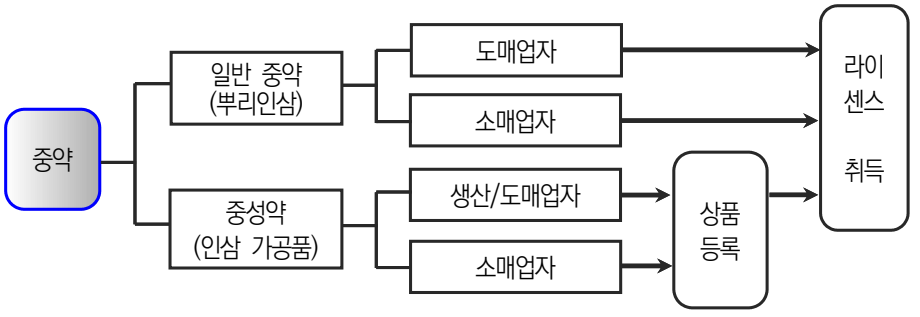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및 자체 제작

○ 인삼, 화기삼 등 대부분의 뿌리인삼 제품은 일반 중약(총 574종)으로 중약 법률인 Cap. 549법에 따라 중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뿌리인삼 종류는 다음과 같다.

▌중약 적용 뿌리인삼의 보통명칭 및 기타 특성▐

학 명	보통명	기타명	분포지역	형태
Panax ginseng C.A.Meyer	인 삼	고려인삼, 고려삼, Korean Ginseng	한국, 만주	사람 모양
Panax quinquefolium L.	화기삼	미국삼, 캐나다삼, American Ginseng	북미 동부	원추형
Panax notoginseng Burkillr	삼칠삼	전칠삼, 삼칠, Chinese Ginseng	중국 운남, 광서	소형 당근
Panax japonicum C.A. Meyer	죽절삼	소삼, 죽절삼칠, Japanese Ginseng	일본, 중국 운남	대나무 뿌리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뿌리인삼 중약 관련 라이선스 취득은 신청서를 홍콩 중약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0년에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한 대상은 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다.

- 변경 신청 : Transitional licensing of Chinese medicines traders
- 소매업자 : Retailer Licence in Chinese herbal medicines
- 도매업자 : Wholesaler Licence in Chinese herbal medicines

○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홍콩 중약 의회의 건강 부문 중약 섹션에(Chinese Medicines Section of the Department of Health) 우편이나 방문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홍콩 중약 의회의 '중약 이사회'에 의해 평가되며, 모든 서류와 수수료 지급이 입증되면 중성약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proprietary Chinese medicine)가 최종 발급되어 5년간 유효기간을 인정한다.

▌중약 라이선스 취득 문의처▐

구분	홍콩섬(HK Island)	구룡(Kowloon)
주소	Chinese Medicines Division, Department of Health, 32/F, Wu Chung House, 213 Queen's Road East, Wanchai, HK	Chinese Medicines Section, Department of Health, Chinese Medicine Council of HK, 2/F, Public Health Laboratory Centre, 382 Nam Cheong St., KL, HK
연락처	852-2574-9999	852-2319-5119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제출서류 양식 다운 URL : http://www.cmchk.org.hk/pcm/eng/idx_reg03a.htm

○ 중약 라이선스 발급 및 중성약 등록 신청 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다.

▌중약 라이선스 취득 관련 비용▐

구분	비용 내역	금액
라이센스	일반 중약 도매업자 라이선스 발급비	HK$1,210
	일반 중약 소매업자 라이선스 발급비	HK$1,090
	중성약 도매업자 라이선스 발급비	HK$1,210
	중성약 생산업자 라이선스 발급비	HK$3,180
등록	단일성분(single ingredient) 중성약 등록 신청비	HK$500
	복합성분(multiple ingredients) 중성약 등록 신청비	HK$1,000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중성약 제품 등록 문의처

- 주소 : Pharmaceutical Service, Department of Health, 3/F, Public Health Laboratory Centre, 382 Nam Cheong St., KL, HK
- 연락처 : (852) 2319-8460

▌중성약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종류▐

일반 서류(General documents)	범주 1	범주 2	범주 3
1. 일반 신청서 양식 및 체크리스트 (Application form &appropriate checklist)	P	P	P
2. 신청비(Application fee)	P	P	P
3. 신청업체 담당자의 개인 정보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in-charge of the company)	P	P	P
4. 제품 생산업체 또는 판매 연혁 관련 입증서류 (Documentary proofs of manufacture or sales history of the product)	P	P	P
5. 원산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생산 허가증 사본 (Copy of manufacturing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untry of origin)	P	P	P
6. 원산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무료 판매 서류 사본 (Copy of free sale documentation of the product issued by the country of origin)	P	P	P
7. 제품 샘플 및 판매 포장 원본 (Product samples and prototype sales pack)	P	P	P
8. 법률에 준하는 라벨링 및 포장상품 삽입 내용 (Label &package insert that have complied with the laws)	P	P	P
9. 소유주 제조법(Master formula)	P	P	P
제품 안전성 서류(Product safety documents)			
1. 중금속 및 독성 요소 테스트 결과 보고서 (Heavy metals and toxic elements test report)	P	P	P
2. 살충제 잔여 테스트 결과 보고서(Pesticide residues test report)	P	P	P
3. 세균 한도 테스트 결과 보고서(Microbial limit test report)	P	P	P
4. 실제 유독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Acute toxicity test report)	P	P	P
5. 장기간 유독성 테스트 보고서(Long-term toxicity test report)	×	P	P
6. 현지 유독성 테스트 보고서(Local toxicity test report)	P	P	P
7. 돌연변이 테스트 결과 보고서(Mutagenicity test report)	×	P	P
8. 발암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Carcinogenicity test report)	×	P	P
9. 번식 및 재발 유독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 (Reproductive and development toxicity test report)	×	P	P
10. 제품 안전성 서류 요약 보고서 (Summary report on product safety documents)	P	P	P

제품 효용성 서류(Product efficacy documents)			
1. 처방 공식화 해석 및 원리 (Interpretation and principle of formulating a prescription)	P	P	P
2. 제품 효용 관련 참고 자료 (Reference materials on product efficacy)	P	P	P
3. 주요 약력학 연구 보고서 (Principal pharmacodynamic studies report)	×	×	P
4. 일반 약력학 연구 보고서 (General pharmacological studies report)	×	×	P
5. 임상실험 계획 및 요약 보고서 (Clinical trial protocol and summary report)	×	×	P
6. 제품 효용성 서류 관련 요약 보고서 (Summary report on product efficacy documents)	P	P	P
제품 품질 서류(Product quality documents)			
1. 생산 방법(Manufacturing method)	P	P	P
2. 천연 약품의 물리화학적 소유권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rude drugs)	P	P	P
3. 제품 분류, 분석 방식 및 증명서 (Product specification, method and certificate of analysis)	P	P	P
4. 촉진/일반 안정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 (Accelerated stability test report or general stability test report)	P	×	×
5. 실시간 안정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Real-time stability test report)	×	P	P

참고 통관부서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무시간
항공 운송	(852) 2116-4130	(852) 2116-4201	24시간
해상 운송 Containerized Cargo	(852) 2410-8045	(852) 2420-2429	08:00~22:30(월-금) 09:00~17:00 (토)
해상 운송 -Sea Cargo	(852) 2534-7188	(852) 2854-1280	24시간
해상 운송 River Trade Vessels Cargo	(852) 2180-8977	(852) 2180-8976	08:15~18:15(월-금) 08:15~16:30 (토)
육상 운송 Lok Ma Chau Control Point	(852) 2482-8758	(852) 2482-2552	24시간
Lok Ma Chau Spur Line Control Point	(852) 2486-0222	(852) 3404-6066	06:30~22:30
Man Kam To Control Point	(852) 2679-2000	(852) 2679-5828	07:00~22:00
Sha Tau Kok Control Point	(852) 2674-4384	(852) 2674-9345	07:00~20:00
Shenzhen Bay Control Point	(852) 3527-0069	(852) 3527-0829	06:30~24:00
철도 운송	(852) 2957-0219	(852) 2363-8242	06:15~24:00

참고 자료출처

웹사이트 및 관련법규

구분	웹 사이트
홍콩 세관	www.customs.gov.hk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www.rocars.gov.hk/en/landing_page.html
세관 관리부	7/F, Harbour Building, 38 Pier Road, Central, Hong Kong
수입 규제 담당기관	customsenquiry@customs.gov.hk
홍콩 식약청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2.html
홍콩 세관 통관, 라이선스 발급 안내	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
홍콩 식품 환경위생국	http://www.fehd.gov.hk/english/publications/code/code_index.htm
홍콩 세관 - 수입 조례 법령 60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홍콩 식품안전청 - 냉동 과자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
홍콩 식품안전청 - 육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홍콩 식품안전청 - 유제품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
수출입 통관 기본 규정	http://www.censtatd.gov.hk/FileManager/EN/Content_93/B8XX0022.pdf
수출입 신고 문서 요청	Completion of Import/Export Declarations and Data Requirement
수입/수출 등록처 및 연락처	전화: 852) 2158-3041 / 팩스: 852) 2521-4784
리콜 관련 문의	Food_Recall_Notification@fehd.gov.hk
중성약 제품 등록 문의처	전화 : 852) 2319-8460

제3장 검역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검역 제도 일반

관련법 및 규정 일반

○ 홍콩은 식품 수입 시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 특히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동 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 엽수류(사냥한 짐승·새 등)는 식품환경위생서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육류 및 가금류도 해당 부서에 원산지 등 사항을 제한한다.

○ 저 산성 식품의 무균처리 과정과 포장에 관한 위생 처리 규정·동물성 식품의 보건 인증서 신청·식품의 살충제 잔류 모니터링은 '제2절 품목별 검역 제도' 상세 내용 참고

식품 검역 관련 주요 내용

○ 수입업자는 식품 관련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출국의 건강 관련 기관이 발급한 위생검역 관련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 수입 엽수류·육류·가금류는 원산지와 관련한 식품당국(food authority)이 발급한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는 식품환경위생서(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가 수여한 사전 서면 허가증(prior written permission)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 과일·채소의 샘플은 살충제 잔여 테스트를 위해서 홍콩 'Man Kam To Food Control Office'에 의해 검역하며 가축 수입은 'Man Kam To'나 도매시장 및 도살장에서 검역한다.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1. 저 산성 식품의 무균처리 과정

개요

○ 저 산성 식품(low-acid food)의 무균처리·포장은 복잡한 식품 제조 공정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의 측면에서 모든 생산단계에서 주의 깊게 통제되어야 한다.
- 이 규정은 무균처리되거나 포장된 저 산성식품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수적인 안전성이나 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조언을 하기 위해 제공된다.

○ 위생 작업은 식품환경위생서의 식품안전청이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정한다.

○ 규정 관련 건의 사항은 식품환경위생서 공보자료부로 연락한다.
- 전화번호 : (852) 2381-6096

○ 상업적으로 살균된 식품은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고, 상온 저장·유통 시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가공하며 살균 처리·포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살균 처리·포장은 식품이 상업적으로 살균·냉각 및 기 살균한 포장재질에 살균되어 채워지고, 진공 밀봉 기술을 참조해 최종 제품은 살균된 식품을 멸균 포장, 즉 일반 환경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저장될 수 있도록 한 형태여야 한다.

○ 산성화를 기준으로, 식품은 저 산성 식품과 산성 식품(acidic food)으로 분류한다.
- 저 산성 식품은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으로, 열처리 후 산성 농도가 4.6 이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뜻한다. 이러한 식품들은 산성농도 4.6 이상의 환경에서 변질되기 쉽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과 같은 독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식품으로 간주한다.
- 저 산성 식품의 살균 처리·포장은 복잡한 식품 제조 과정으로 식품의 안전성·건전성의 측면에서 식품가공·충전·포장 시스템까지 통제한다.

범위

○ 밀봉된 용기에 살균한 저 산성 식품을 포장하는 과정 및 저장 처리 과정에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위생 과정
- 전통적인 통조림 제조 공정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한 저 산성 식품은 적용하지 않는다.

○ 특정 상품의 가공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식품 가공업자의 책임이다.

시설 설계와 설비

○ 살균 포장된 저 산성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와 설비는 식품환경위생서가 제시한 조건을 갖추고 라이선스 취득을 병행해야 한다.

○ 시설 간 모든 냉장 공간은 온도 측정 시설과 기록 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 원자재의 위생 가공 요건

- 가공업자는 사용되는 원재료·성분을 공급업자나 가공업자가 특정 요건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시설을 구축한다.
- 가공업자는 원재료·성분을 확인하고 검증했다는 자료를 만들고 기록을 보관한다.
- 원재료·성분은 상하지 않고 오염이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보관·유지하여 다루어야하며 적절히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재료 포장 및 제품 용기의 위생가공 요건

- 저 산성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모든 포장 재료는 오염·손상을 최소화하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보관·처리해야 하며 제품 용기 소재는 상품이 적절히 포장되고 처리 과정과 지속적인 후처리 과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선택된 밀봉 재료는 식품뿐 아니라 용기나 밀봉 시스템에도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용기 생산자와 식품 가공업자 양측은 용기와 내용물이 합의된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장할 수 있는 검사 방법과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만들어 수행해야 한다.

○ 제품 멸균 위생 가공 요건

- 멸균 포장된 저 산성 음식을 가공하기 위한 예약 과정은 책임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정해야 하며, 생산 구성요소나 생산 공식에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 예약 처리 과정이 부적절한 경우, 열처리 과정은 반드시 다시 설정해야 한다.
- 예약 처리 과정에서 명시한 모든 중요 요소는 처리과정을 충분히 자주·일정한 기간으로 측정·통제·기록해야 한다.
- 제품 살균기는 온도측정기를 충분한 개수로 적절한 장소에 배치한다.
- 제품 살균기는 신뢰할 만한 온도·시간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0.5℃ 이내 간격으로 기록하고 멸균 소독 시 최고 온도는 설치 온도계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온도 측정 기구의 정확성을 위해, 설치 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확성을 검사하고 조정해야 하고, 치 당시를 기준으로 매년 확인·보정해야 한다.

- 날짜·사용 기준·방법 등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고, 담당자는 수행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상품 대 상품 재생기가 있는 장소는 멸균하지 않은 상품의 압력보다 재생기 안의 멸균 상품의 압력이 더 크도록 설계·운용·제어해야 한다.
- 발생기 안의 누수는 멸균된 상품이 비 멸균된 상품 쪽으로 가도록 설치하고 압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살균기의 보관 부분은 상품을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설계된 공정에서 정해진 상품 공급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 멸균 전 상품 소독기와 표면에 접촉하는 모든 상품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하며, 전 생산 과정은 상업적인 멸균율을 유지해야 한다.
- 보관 시 멸균율이 떨어진 경우 보관 부문에 있는 제품 및 후속 조치에 들어있는 분량은 재가공·폐기해야 하고, 상업적 멸균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복구한 이후 공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멸균 포장 위생 가공 요건

- 제품 충전 전 충전과 포장 설비의 멸균 구역을 완비하고 적절한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해 전 생산 공정이 상업적인 수준에 맞는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멸균율이 떨어진 경우 멸균 구역은 다시 살균되어야 한다.
- 포장 재질, 사용 용기, 봉합까지 제품 충전 전 계획 공정에서 명시한 방법을 통해 멸균한다.
- 멸균 지역 내 포장 기계의 멸균율을 유지하고 포장 재질의 멸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절한 검사와 테스트를 행해야 한다.
- 용기 내 충전물은 예약 공정에서 명시한 공간 부문과 충전물의 기준치를 확보하고 제어한다.
- 제품 생산기간 동안 신뢰할 만한 밀봉을 위해서 관할 직원은 일정 간격을 두고 적절한 시각적 검사와 용기의 봉합 테스트를 수행한다.
- 밀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확인한 단계와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생산한 모든 제품은 재검사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과 동시에 취한 모든 조치는 반드시 기록한다.
- 용기는 고유한 숫자 코드와 주요한 생산 자료(생산지·날짜·시간·기계 번호 등)를 기록해야 하며, 이 코드는 향후 리콜 시 필요사항으로 반드시 기록이 필요하다.
- 완제품은 제품의 질적 저하나 용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처리, 저장되고 운송되어야 한다.

▌포장 상태 검사 모습▐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위생 관리

- 식품 취급 구역 근무자는 식품의 위생 취급과 개인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식품 오염 방지에 필요한 작업 지침과 주의사항을 이해토록 한다.
- 설비는 정식적인 청소·소독 절차를 거쳐 모든 장비와 관련 구역을 청소·소독하고 절차를 문서로 기록, 청소 요구 사항(수동 또는/그리고 CIP)·청소 타입·농도·접촉 시간·온도·압력·배송 방법·설비 부품의 청소 화합물 중요 요소 등을 기술해야 한다.

○ 품질 보증

- 생산·저장·운송 등 모든 측면을 다루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HACCP 시스템)은 예약 과정을 준수해 상품이 완성되도록 설계한다.
- 보존 검사(예를 들어 35℃±3.0℃에서 10일)는 각 생산라인의 제품을 샘플로 수행하고 기타 시간·온도의 조합은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 보존 용기의 가스 발생 및 상품 외관 변형(냄새, 산성도, 점도 등)을 관찰한다.
- 미생물 분석은 보존에 따른 별도의 비멸균 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생산 라인에서 일정 개수의 용기를 선별 시행하며 검사 결과는 보관한다.
- 보관해야 할 기록
  - 유지 보수 기록, 원료 품질 기록, 사전 처리 절차 기록, 설비 운용자, 방비 살균, UHT 처리, 멸균 포장 등 자동 기록
  - 처리 편차 기록, 완제품 검사 기록, 저장 기록(저장 폐기 관리), 청소·소독 기록
  - 기록 항목은 처리 시스템 운용자나 지정 작업자가 특정 처리 시스템 상태나, 작업이 발생하였을 때를 기록

- 모든 기록은 지정 작업자가 적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확인하며 정해진 사항 외 관찰된 내용이나 결과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기록
- 모든 기록은 참조 가능한 형태로 기록

- 상품 배송 전 공장 경영층의 관할 대표가 모든 제품을 절차에 따라 생산했다는 모든 공정 기록을 검토하며, 비정상적인 사항 발생 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공업자는 유통 업자에게 상품의 저장·취급·운송에 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취급자에게 상품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한다.
- 제조업자는 미생물 오염·손상 또는 잠재적인 건강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처리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 식품환경위생서에 즉시 보고한다.
- 제품의 리콜(긴급) 계획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한다.
- 리콜 계획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식품환경위생서는 식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식품 리콜을 수행토록 '식품 리콜 지침'을 제공한다.

무균처리 포장 적합성 체크리스트

○ 저 산성 식품의 설치
- 식품환경위생서가 제시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조건을 준수했는가.
- 모든 냉장 구역에 온도 표시 장치를 설치했는가.

○ 저 산성 식품의 원재료
- 식품환경위생서가 제시한 규정을 준수했는가.
- 원재료는 교차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저장하고 유지했는가.

○ 포장재료 및 제품 용기
- 포장 재료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저장·처리했는가.
- 제품 용기와 밀봉은 식품환경위생서가 제시한 규정을 준수했는가.

○ 제품 살균
- 예측한 처리 과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작했는가.
- 중요 요소는 충분히 자주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관찰·기록했는가.
- 생산자 소독기는 살균 온도를 기록하는 온도 기록 장치가 구비되었는가.
- 온도 측정 장치는 살균소독기에 설치하고, 멸균 공정 동안 적정 살균 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했는가.
- 상품 대 상품 생성기의 살균제품의 압력은 비살균 제품의 압력보다 큰가.
- 소독기 유지 튜브는 제품 예정 절차에서 지정한 충분한 유지시간을 제공토록 설계했는가.

- 모든 제품 소독기와 상품 접촉면들에 대한 살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했는가.

○ 살균 포장
- 살균 프로그램은 멸균 구역·포장 재질에 구축·구현했는가.
- 검사 프로그램은 포장 재질과 멸균 구역의 멸균율을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다.
- 상품 충전은 사양을 따라야 한다.
- 검사 프로그램은 용기의 밀봉상태를 모니터하도록 설계·구현했는가.
- 용기는 식별 코드를 표기했는가.
- 완성 제품은 오염 및 손상을 막도록 주의 깊게 처리·저장·운송했는가.

저 산성식품의 포장에 관한 위생처리 규정 개요

○ 포장 장비는 공급업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유지한다.

○ 모든 일반 위생 관행은 공공건강과 지방자체 규범에 따른 법규를 지키고, 식품환경 위생서가 명시한 라이선스 요구사항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청소 및 소독 절차는 구체적인 청소 방법(수동으로 그리고/또는 CIP) 뿐만 아니라 청소 화합물의 주요 요소(유형, 농도, 접촉 시간, 온도 등)를 나타내야 한다.

○ 모든 포장 재질과 식품 준비 장비는 생산 전·후 살균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식품 취급자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토록 만들어야 한다.

품질보장

○ 상품 샘플은 상품의 품질·안전성을 위해서 평가한다.

○ 예정된 절차의 영구 기록은(준비, 가공, 포장, 보관, 유통, 운송, 교육, 유지 보수 등) 유지한다.

○ 리콜 계획·인원은 미리 수립한다.

○ 리콜 계획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 가공업자는 식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모든 기본적인 위생 활동을 지방자치조례 법령 및 식품환경위생서에서 명시한 라이선스 조건을 따라야 한다.

2. 동물성 식품 건강 증명서 신청

개요

○ 유럽 연합(EU) 회원국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코자 하는 홍콩 수출업자에게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FEHD)는 동물·가금류·어류 성분 포함 식품에 대한 보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는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보건 증명서 발급 전 EU위원회 관련 지침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식품 설비·생산과정을 확인한다.

○ 인증 조건 : 해당 사항 없음(수입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이)

○ 관련 조례 : 해당 사항 없음

○ EU위원회 관련 지침 : 어류 제품은 지침 91/493/EEC, 육류 제품은 지침 7/99/EEC · 92/118/EEC

○ 인증서 효력: 미지정(수입 회원국에 따름)

신청 절차

○ 보건 증명서 신청서는 아래의 식품환경위생서의 동물보건부문에서 무료 제공한다.

○ 신청자 또는 대리자는 수의보건부문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인증 비용을 지불한다.(증명서 당 HK$7,165)
- 신청서 내 정보 기입 사항 : 상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 가금류 또는 어류 재료의 정확한 설명, 포장 및 중량의 상세 설명, 식별 표시(들), 최종 국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가금류·어류의 원산지, 수탁자 및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 홍콩 내 식품 설비의 이름과 주소, 화물 출발 예상 날짜, 화물 선박이나 화물의 항공편 번호(해당되는 경우)의 이름 등 정보
- 식품환경위생서의 요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요청 서류에 응해야 한다.

○ 식품의 설비나 제조 공정에 관한 점검은 신청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지며, 점검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내 식품환경위생서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미이행 시 인증 비용 회수가 불가하다.

- 신청자는 식품환경위생서가 점검 후 요구하는 모든 세부 자료와 문서들을 30일 이내 제공하지 않거나 지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보건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인증 비용 회수가 불가하다.
- 식품환경위생서의 점검 후 요구사항 준비 완료 시 2일 이내에 보건 인증서 발급한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이미 최종 국가에 배송되었거나 배송을 위해 이미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 인증서를 미발급한다.

○ 보건 인증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제품의 검사를 재신청해 식품환경위생서에서 새로운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식품환경위생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무역이나 협의와 관련된 보건 인증서를 미발행한다.

○ 2일의 처리 시간과는 별도로 제품의 현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신청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수의보건과로 문의 가능
- 전화 : (852) 2867-5428 / 팩스 : 2521-8067
- 이메일 : vphadmin@fehd.gov.hk

3. 식품 잔류농약 모니터링

식품 잔류농약 허용 기준

○ 살충제는 원치 않는 곤충·식물·곰팡이·설치류·기타 해충을 죽이거나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며, 살충제·제초제·살서제·곰팡이 방지제 등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농약이다.

○ 질병을 옮기는 해충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살충제의 사용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 살충제의 남용은 농약에 오염된 야채를 섭취해서 생긴 식중독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 농수산보존국은 살충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조례 Cap.133 제정했다.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CFS)는 홍콩의 식품 잔류농약 허용 기준(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 Cap. 132CM) 관련 2012년 6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 조례에 따라 홍콩의 잔류농약 기준치를 매년 게시한다.
- 2011년 CODEX 권장 표준을 바탕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수출하는 기타 주요국의 기준을 추가·보충해 총 584개 농식품 가운데 농약 360종류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 7,083개 항목 마련했다. (78개의 제외 대상 농약류 별도 규정)

잔류농약 초과 검출 현황

○ 식품환경위생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총 442개 식품류로 분류 ·95,000개의 샘플 조사 가운데 21개 채소·과일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었으며, 불 합격률은 전체 0.2% 미만인 것으로 발표됐다.

- 검출된 식품은 홍콩 측이 관련 수출당국 및 수입상과 지속적인 확인 및 자료 요청 중으로 필요 시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 한국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홍콩 식품안전센터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정 및 기준치 검색이 가능하므로 주력 수출 신선 품목의 경우 자주 쓰이는 농약류에 대한 기준치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홍콩의 연도별 식품 잔류농약 초과 검출 내역▐

날짜	품 목 명	농 약 명	검출 결과(ppm)	적정 기준(ppm)
2014.8.28	흰줄기콩	Acephate	4.3	1
		Carbofuran	0.36	0.1
		Methamidophos	0.34	0.05
2014.9.12	흰줄기콩	Carbofuran	0.71	0.1
2014.9.24	흰줄기콩	Carbofuran	1.4	0.1
		Chlorpyrifos	0.0332	0.01
	청줄기콩	Carbofuran	4.4	0.1
2014.10.14	중국배추	Chlorpyrifos	0.16	0.01
	중국상추(당생채)	Methomyl	0.36	0.2
	물시금치(통초이)	Dimethoate	2.804	1.0
2014.10.17	쇠비름	Dimethoate	5.2	1.0
2014.10.31	중국상추(당생채)	Methamidophos	0.11	0.05
2014.11.10	중국호박(불수과)	Methamidophos	0.61	0.05
2014.11.12	중국상추(당생채)	Methomyl	0.33	0.2
2014.11.20	중국청경채	Methamidophos	0.33	0.05
2014.11.26	구기자잎	Acetamiprid	3.979	3.0
	중국배추	Carbofuran	0.041	0.02
2014.11.27	구기자잎	Cypermethrin	8.7	2
2014.12.2	무순잎	Cypermethrin	5.3	2
	무순뿌리		0.17	0.01
	물냉이	Chlorpyrifos	0.544	0.1
	오렌지	Thiabendazole	19.58	10
2014.12.5	배	Dichlorvos	0.26	0.2
2014.12.10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76	0.1
	자몽	Thiabendazole	13	10
2014.12.11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18	0.1
	물시금치(통초이)	Chlorpyrifos	0.5	0.1
2014.12.15	중국채소(초이삼)	cyhalothrin	0.57	0.2
2014.12.17	청줄기콩	Carbofuran	0.49	0.1
2014.12.31	오렌지	Profenofods	0.5	0.1
2015.1.2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24	0.1
2015.1.5	중국상추(당생채)	methomyl	0.77	0.2
	중국상추(당생채)	dimethoate	2.6	1
2015.1.6	무	cyhalothrin	0.025	0.01
2015.1.13	중국청경채	carbofuran	0.2	0.02

날짜	품 목 명	농 약 명	검출 결과(ppm)	적정 기준(ppm)
2015.1.14	중국채소(초이삼)	cyhalothrin	0.71	0.2
	중국채소(초이삼)	cyhalothrin	0.61	0.2
2015.1.19	중국채소(애기배추)	cypermethrin	3.6	2
	청줄기콩	triazophos	0.16	0.1
2015.1.26	중국채소(애기배추)	carbofuran	0.062	0.02
2015.2.6	구기자잎	chlorpyrifos	0.39	0.1
2015.2.10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17	0.1
2015.2.12	청경채	chlorpyrifos	0.26	0.1
2015.2.18	중국채소(초이삼)	phoxim	1.1	0.05
2015.2.24	청경채	carbofuran	0.1	0.02
2015.2.24	무	cyhalothrin	0.05	0.01
2015.2.25	중국상추(당생채)	methomyl	0.37	0.2
2015.3.2	물냉이	chlorpyrifos	0.18	0.1
	중국채소(초이삼)	cyhalothrin	0.36	0.2
2015.3.3	감자	methamidophos	0.085	0.05
2015.3.4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36	0.1
2015.3.5	양배추	methamidophos	0.13	0.05
	물냉이	chlorpyrifos	1.6	0.1
2015.3.9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41	0.1
2015.3.16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28	0.1
2015.3.18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43	0.1
	배추	cyhalothrin	0.46	0.2
2015.4.13	왕고들빼기	cyhalothrin	0.39	0.2
2015.4.15	초이삼	cyhalothrin	0.34	0.2
2015.4.23	왕고들빼기	cyhalothrin	0.26	0.2
2015.5.13	수세미	cyhalothrin	0.064	0.05
2015.5.15	파	cyhalothrin	0.35	0.2
2015.5.20	귤	profenofos	0.69	0.1
2015.5.20	파프리카	profenofos	0.91	0.5
2015.5.26	시금치	chlorpyrifos	0.77	0.1
2015.5.26	시금치	chlorpyrifos	0.55	0.1
2015.6.1	물냉이	chlorpyrifos	0.14	0.1
2015.6.1	물냉이	chlorpyrifos	2.1	0.1
2015.6.1	물냉이	chlorpyrifos	0.32	0.1
2015.6.2	수세미	cyhalothrin	0.1	0.05
2015.6.2	가지	acetamiprid	0.37	0.2
2015.6.4	물냉이	chlorpyrifos	0.27	0.1

날짜	품 목 명	농 약 명	검출 결과(ppm)	적정 기준(ppm)
2015.6.4	물냉이	chlorpyrifos	0.21	0.1
2015.6.4	시금치	chlorpyrifos	0.58	5.8
2015.6.9	왕고들빼기	cyhalothrin	0.27	0.2
2015.6.9	물냉이	chlorpyrifos	0.14	0.1
2015.6.11	청줄기콩	carbofuran	0.3	0.1
2015.6.11	시금치	cypermethrin	2.4	2
2015.6.11	오렌지	profenofos	0.46	0.1
2015.6.15	배추	chlorpyrifos	0.21	0.1
2015.6.18	초이삼	cyhalothrin	0.48	0.2
2015.6.22	중국상추	methamidophos	0.099	0.05
2015.6.23	유자	profenofos	0.17	0.1
2015.7.8	미나리	chlorpyrifos	0.36	0.05
2015.7.16	망고	chlorpyrifos	0.08	0.05
2015.7.16	파프리카	profenofos	0.97	0.5
2015.7.20	까이란(chinese kale)	acetamiprid	3.41	1.2
2015.7.20	시금치	chlorpyrifos	0.28	0.1
2015.7.24	망고	chlorpyrifos	0.07	0.05
2015.8.5	까이란(chinese kale)	acetamiprid	2.0	1.2
2015.8.19	물시금치	methamidophos	0.08	0.05
2015.9.9	왕고들빼기	methomyl	0.74	0.2
2015.9.9	스노피(껍질콩)	cyhalothrin	0.28	0.2
2015.9.9	고구마	chlorpyrifos	0.11	0.05
2015.9.14	두리안	ethephon	5.2	2
2015.9.14	두리안	ethephon	5.5	2
2015.9.18	두리안	ethephon	3.2	2
2015.9.18	두리안	ethephon	3.7	2
2015.9.18	수세미	chlorpyrifos	0.1	0.05
2015.9.23	수세미	cyhalothrin	0.091	0.05
2015.9.23	중국시금치	cyhalothrin	0.42	0.2
2015.9.30	가지	acetamiprid	0.27	0.2
2015.10.2	절과(호박종류일종)	methomyl	0.16	0.1
2015.10.5	중국채소(초이삼)	cyhalothrin	0.62	0.2
2015.10.14	절과(호박종류일종)	cyhalothrin	0.16	0.05
2015.11.10	중국채소(초이삼)	methamidophos	0.39	0.05
2015.11.11	왕고들빼기	cyhalothrin	0.96	0.2
2015.11.24	중국상추	cyhalothrin	0.46	0.2
2015.11.30	중국상추	cyhalothrin	0.41	0.2

날짜	품 목 명	농 약 명	검출 결과(ppm)	적정 기준(ppm)
2015.12.3	가지	methamidophos	0.088	0.05
2015.12.3	오렌지	profenofos	0.12	0.1
2015.12.18	중국채소(애기배추)	phoxim	0.2	0.1
2015.12.31	무	cypermethrin	0.066	0.01
2015.12.31	고구마	chlorpyrifos	0.73	0.05
2015.12.31	고구마	cypermethrin	0.02	0.01
2016.1.8	중국시금치	chlorpyrifos	0.72	0.1
2016.2.4	중국채소(애기배추)	chlorpyrifos	0.22	0.1
2016.2.16	중국배추	chlorpyrifos	0.27	0.1
2016.2.24	까이란(chinese kale)	cyoermethrin	2.8	1
2016.3.4	중국채소(초이삼)	chlorpyrifos	0.28	0.1
2016.3.9	중국채소(애기배추)	carbofura	0.032	0.02
2016.3.23	중국배추	methamidophos	0.077	0.05
2016.4.5	시금치	chlorpyrifos	1.7	0.1
2016.4.14	배추	methamidophos	0.1	0.05
2016.5.6	왕고들빼기	cyhalothrin	0.66	0.2
2016.5.13	까이란(chinese kale)	cyhalothrin	0.63	0.5
2016.5.26	절과(호박종류일종)	methamidophos	0.11	0.05
2016.6.14	스노피(껍질콩)	thiamethoxam	0.04	0.01
2016.6.14	시금치	chlorpyrifos	0.54	0.1
2016.6.24	중국배추	cyhalothrin	0.45	0.2
2016.7.8	왕고들빼기	cyhalothrin	0.66	0.2
2016.7.15	중국배추	phoxim	0.95	0.1
2016.7.15	두리안	ethephon	3.8	2
2016.7.18	중국배추	chlorpyrifos	0.13	0.1
2016.7.28	중국상추(당생채)	cyhalothrin	0.45	0.2
2016.8.1	초이삼	chlorpyrifos	1.2	0.1
2016.8.8	스노피(껍질콩)	thiamethoxam	0.03	0.01
2016.8.31	고구마	chlorpyrifos	0.083	0.05
2016.9.8	중국배추	chlorpyrifos	2.1	0.1
2016.9.23	까이란(chinese kale)	difenoconazole	4.2	1.9
2016.9.28	고구마	chlorpyrifos	0.091	0.05
2016.10.3	중국상추	cyhalothrin	0.54	0.2
2016.10.6	까이란(chinese kale)	trichlorfon	2	0.1
2016.10.14	중국식여주	cypermethrin	0.092	0.07
2016.10.14	인도상추	cyhalothrin	0.27	0.2
2016.10.14	중국상추	cyhalothrin	0.49	0.2

날짜	품 목 명	농 약 명	검출 결과(ppm)	적정 기준(ppm)
2016.11.4	무	cyhalothrin	0.026	0.01
2016.11.4	인도상추	cyhalothrin	0.27	0.2
2016.11.4	인도상추	cyhalothrin	0.51	0.05
2016.11.17	까이란(chinese kale)	acetamiprid	2.6	1.2
2016.11.21	초이삼	chlorpyrifos	0.33	0.1
2016.11.23	포멜로	profenofos	0.18	0.1
2016.11.24	초이삼	chlorpyrifos	0.34	0.1
2016.11.30	중국채소(애기배추)	acetamiprid	2.3	1.2
2016.12.7	흰무	acetamiprid	0.016	0.01
2016.12.8	배	cyhalothrin	0.64	0.2
2016.12.8	갓	cyhalothrin	0.42	0.2
2016.12.9	흰무	cyhalothrin	0.073	0.01
2016.12.9	아스파라거스	chlorpyrifos	0.07	0.05
2016.12.28	까이란(chinese kale)	acetamiprid	4.3	1.2
2017.1.23	오렌지	profenofos	0.22	0.1
2017.1.26	무	cyhalothrin	0.036	0.01
2017.2.2	초이삼	cyhalothrin	0.74	0.2
2017.2.27	파프리카	Profenofos	1.1	0.5
2017.3.2	초이삼	chlorpyrifos	0.21	0.1
2017.3.14	중국배추	acetamiprid	3.3	1.2
2017.3.16	초이삼	cyhalothrin	0.97	0.2
2017.3.16	초이삼	cypermethrin	13.8	2.0
2017.3.23	초이삼	chlorpyrifos	0.43	0.1
2017.4.13	중국채소(애기배추)	chlorpyrifos	1.4	0.1
2017.4.19	고구마	cypermethrin	0.036	0.01
2017.6.5	파프리카	profenofos	2.9	0.5
2017.6.5	중국배추	chlorpyrifos	0.31	0.1
2017.7.3	오이	methomyl	0.21	0.1
2017.8.28	파파야	thiamethoxam	0.02	0.01
2017.8.28	공심채	cyhalothrin	0.43	0.2
2017.8.28	냉동 노른자액	fipronil	0.13, 0.14	0.02
2017.8.28	냉동 계란액	fipronil	0.056	0.02
2017.8.31	계란	fipronil	0.062, 0.077, 0.087	0.02
2017.9.5	두리안	ethephon	4.0	2.0
2017.10.13	중국상추(당생채)	cyhalothrin	0.62	0.2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 잔류농약 검사 방법

○ 수입 시점·유통 단계(도소매) 구분 없이 동일 적용한다.

○ 기존 수입통관 프로세스 외 필요시 랜덤으로 샘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송부한다.
- 일반식품은 24시간, 특별 품목(유제품 등)은 48시간 이내에 통관 완료한다.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제재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이 인체에 위험하지 않거나 무해할 경우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유해성 여부는 식품환경위생부의 위해성 평가로 결정한다.
- 현지 식품섭취 양상 및 안전기준치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며 위해성 평가의 경우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위해성이 판단된 식품의 경우 시장에 판매 불가하며, 전량 리콜 조치 실시 및 관련 수입상에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와 동일한 기준의 벌금형 및 구금형을 부과한다.
- 벌금 5만 HKD 및 6개월의 구금형

상세 내용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 홍콩 식품 안전센터(Communication Resource Unit)
- 전화 : (852) 2381-6096

○ 식품 잔류농약 허용 기준 가이드라인 참고 URL :
- http://www.cfs.gov.hk/tc_chi/food_leg/food_leg.html

○ 홍콩 관보 홈페이지- 잔류농약 규제 법규 참고 URL :
- http://www.gld.gov.hk/egazette/english/gazette/disclaimer.php

○ 살충제 관련 법령 : Chapter 133
- http://www.cfs.gov.hk/tc_chi/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21_Pesticide.html

○ 잔류농약 기준 검색 사이트 URL :
- http://www.cfs.gov.hk/english/mrl/mrl_preinput.php

○ 잔류농약 위반 공고 게시 URL :
- http://www.cfs.gov.hk/english/press/cfs_press_archive_e.html

4. 식품 미생물 가이드라인 개정안

개요

○ 홍콩 식품안전센터(CFS)는 2014년 8월 14일 식품 미생물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효했다.
- 개정안은 2007년 발표된 즉석식품에 대한 미생물 가이드라인 및 추가 정보를 대체한다.
- 최근 가이드라인과 영국 보건 보호 에이전시에서 발표한 '시장 진열 즉석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평가 가이드라인 (UK HPA 가이드라인)' 및 현지 상황을 반영해 개정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완료했다.

개정 내용

○ 일반 즉석식품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호기성 균락 산출, 위생 표시기 유기체, 특정 식품 매개 병원균)
- 유아, 어린이 및 의학적 목적을 위한 가루 제품과 즉석 향신료 가루 제품 및 직접 섭취하는 날 것의 쌍각류 조개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
- 천연 자연 광천수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

○ 미생물 함량 수준에 관한 명명법과 분류 개정

○ 즉석식품은 미생물 함량 수준에 따라 안전·우려·위험으로 분류하고 우려와 위험에 해당할 경우 후속 조치 예정

○ 식품안전센터 보도자료 참고 URL :
- 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4_08_14_1_e.html

참고 자료출처

웹사이트 및 관련 법규

○ 홍콩 관세청 URL :
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
- 수출입 통관, 라이선스 발급 안내 등

○ 홍콩 식품안전청 URL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fc.html
- 수입식품 검역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

○ 주요 품목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URL
- 냉동 과자류(the frozen confections)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
- 육류 등(game, meat, poultry)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 유제품 등(milk, milk beverage)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

○ 관련 사항 문의처
- 담당부서 : 위생 검역관 수출입 등록부
(Health Inspector Import/Export Registration)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연락처 및 팩스 : (852) 2156-3041 / (852) 2521-4784

제4장 라벨링 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관련법 및 규정

관련법 및 규정 일반

○ 홍콩의 식품 관련 기본 법률은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의 Part V와 Part VA를 따른다.
-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식품·식품위생·리콜·라벨링 등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식품 관련 13개의 규정이 있으며,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는 식품·의약품의 구성·라벨링 관련 규정이다.
- Food and Drugs(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는 식품·의약품 라벨링과 포장식품(prepackaged food) 라벨링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식품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다.
- 관련 홈페이지 URL : http://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html

홍콩의 식품 관련 규정 명칭

No.	명칭
1	Colouring Matter in Food Regulations
2	Dried Milk Regulations
3	Sweeteners in Food Regulations
4	Food Adulteration (Metallic Contamination) Regulations
5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
6	Food Business Regulation
7	Frozen Confections Regulation
8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s
9	Imported Game, Meat and Poultry Regulations
10	Milk Regulation
11	Mineral Oil in Food Regulations
12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
13	Slaughterhouses Regulation

자료 : 홍콩 식품안전센터

라벨링 개황

○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은 식품의 이름 또는 명칭을 명료하게 표기해야 한다.

○ 현란한 명칭을 포함한 브랜드명이나 트레이드 마크 등 소비자가 구매 시 식품 본래의 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름이나 기호 뒤에 "Brand"(牌子) 또는 "TM"(商標)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글자·기호 크기는 3mm 이상으로 표기한다.

○ 소비자가 아래와 같은 표기의 생략으로 오해할 것을 우려해 식품명에 포함하거나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식품이 분말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물리적 상태 또는 건조, 냉동건조, 응집, 훈제 또는 기타 처리한 상태

제2절 품목별 라벨링 방법

1. 기본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성분 목록(List of ingredients)

○ 포장식품은 성분 목록을 읽기 쉽게 표기 또는 라벨링 하되, 안내 서두에 ingredients(配料), composition(成分組合), contents(內含物質)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표기한다.

○ 식품 함유성분(물은 식품 전체 부피의 5%보다 적게 차지할 경우는 제외)은 식품 포장 당시 무게 또는 부피가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열거한다.

○ 식품 사용 성분이 응집 또는 탈수 형태거나, 식품 조제 과정에서 재구성될 경우 식품성분 표기 순서는 응집 또는 탈수 이전의 무게 또는 부피를 기록한다.

○ 식품이 아래 식품을 구성·함유할 경우 성분 표기 시 구체적으로 성분 명칭을 표시한다.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산물)
- 갑각류 및 그 산물
- 난류 및 그 산물
- 어류 및 그 산물
- 땅콩, 대두 및 그 산물
- 우유 및 그 산물(락토스 포함)
- 견과류 및 그 산물(식품에 아황산염이 최소 10ppm 이상 함유될 시 아황산염의 기능 및 화학부류 명시)

유통기한 표기

○ 포장식품은 적절한 유통기한을 지칭할 수 있는 읽기 쉬운 표기 또는 라벨링을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식품이 본래의 뚜렷한 가치를 존속하는 기간인 best before(此日期前最佳)를 일자로 표기한다.
- 영문 'best before'와 중문 '此日期前最佳' 표기에 이어 유효 날짜를 표기하되 날짜는 적절한 식품 저장을 전제로 무리 없이 뚜렷한 가치를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 또한 그 기간까지 뚜렷한 가치를 존속하기 위한 저장조건을 기술한다.

-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일자는 월, 일 단위로 표기한다.
- 기간이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일 경우 일자 앞에 영문 'end'와 중문 '底'를 표기한 후 년, 월 단위로 표기한다.
- 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경우 일자 앞에 영문 'end'와 중문 '底'을 표기 한 후 년, 월 단위 또는 년 단위로 표기한다.

○ 포장식품 내 상하기 쉬워 짧은 기간 사람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될 경우 "use by(此日期前食用)" 사용한다.
- 영문 "use by"와 중문 "此日期前食用" 표기에 이어 유효 날짜를 표기하되 날짜는 식품을 바르게 저장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 가능한 권장일임을 의미한다.
- 유효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 또는 영문과 중문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일 경우 일(day), 월(month), 년(year) 순서로 표기한다.
- 그 기간까지 뚜렷한 가치를 존속하기 위한 저장조건의 기술이 필요하다.

○ 유통기한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경우 예시
- 일 표기는 영문 "DD", "dd", "D" 또는 "d"와 중문 "日"을 사용한다.
- 월 표기는 영문 "MM", "mm", "M" 또는 "m"와 중문 "月"을 사용한다.
- 년 표기는 영문으로 "YY", "yy", "Y" 또는 "y" 중문으로 "年" 사용하며 일, 월, 년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L.N. 85 of 2004)

○ 유통기한은 라벨링이 아닌 다른 위치에 명시 가능하며, 이 경우 라벨 상 유통기한이 명시된 위치를 기술한다.

특별 저장 조건 및 사용방법 기술

○ 포장식품에 특별한 저장 조건이 요구될 시 내용을 읽기 가능하게 표기하거나 라벨에 기술한다.

○ 적절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시 내용을 읽기 가능하게 표기하거나 라벨에 기술한다.

제조업체·포장업체명 및 주소

○ 포장식품은 표기 및 라벨링에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의 업체명, 사업명과 주소 또는 자세한 거주지 또는 주요 사무실을 명시한다.

○ 표기 생략 가능 경우
- 원산지 명시 시

- 홍콩 내 유통 업체명 또는 브랜드 소유자명 명시 시
- 원산지 내 제조업체 및 포장업체가 홍콩 유통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에 대해 홍콩 당국에 서면으로 알렸을 경우
- 식품 원산지 및 생산국의 제조업체, 포장업체를 코드 표기 또는 라벨링 시
- 특별한 코드로 마킹 또는 홍콩 유통업체 및 브랜드명 소유자가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제조업체, 포장업체일 경우
- 공장 또는 식품 제조·포장 장소가 원산지 정부에 의해 소유·운영·관리되는 경우이거나 식품 표기 또는 라벨링에 해당 정부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알릴 경우

수량·무게·부피

○ 포장식품에 명확하게 수량, 총 무게 또는 총 부피를 표기한다.

○ 총 무게와 총 부피는 가능한 범위 내 Weights and Measures Ordinance (Cap. 68)와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et out in the First Schedule to the Metrication Ordinance (Cap. 214)에 따른다.

언어

○ 포장식품의 표기 및 라벨링은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하거나 공용 가능
- 영·중문이 혼용되었을 경우 성분목록 또한 영·중문으로 표기

○ 당국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생산·원산지국가의 언어로 표기 가능한 경우
- 제조국의 국가적·전통적인 음식
- 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식품

2. 특수성분 표기

알레르기(Allergens) 유발 성분

○ 일부 특수 알레르기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food safety)을 위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라벨링을 하도록 규정한다.

○ 최종 판매식품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90% 이상 포함 시 라벨링 성분 목록(litst of ingredients)에 표기해야 한다.
- 글루텐(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이나 부산물)을 포함하는 곡류
- 갑각류(crustacea) 및 갑각류 부산물
- 계란 및 계란 부산물
- 생선 및 생선 부산물
- 땅콩, 콩 및 그들의 부산물
- 우유 및 우유 부산물(락토스 포함)
- 견과류 및 견과류 부산물

○ 표기방 법은 각각의 재료명을 표기하고 괄호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첨부해 표기한다.
- 표기 사례 1) 밀가루(글루텐 포함 곡류), 계란, 새우(갑각류), 게살(갑각류 부산물)
- 표기 사례 2) 고등어(생선), 소이소스(콩류 부산물), 유장 단백질(우유 부산물)

식품첨가물(Food Additive)

○ 일부 방부제·색소 등 식품첨가물의 남용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식품첨가물 종류를 라벨링 하도록 규정한다.
- 참고 URL : http://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13_ins.html

○ 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식품성분이 첨가물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능 부류와 함께 특정 이름이나,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ID번호, 또는 접두사 “E”+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ID번호 성분을 표기한다.
- 표기 사례 1) Preservative (Benzoic acid) → 기능부류(특정이름)
- 표기 사례 2) Preservative (210) → 기능부류(INS ID번호)
- 표기 사례 3) Preservative (E 210) → 기능부류(“E”+INS ID번호)

- 식품 첨가물 종류
  - 산미제 Acid (酸味劑)
  - 산화방지제 Acidity regulator (酸度調節劑)
  - 항결절제 Anti-caking agent (抗結劑)
  - 소포제 Anti-foaming agent (消泡劑)
  - 항양화제 Antioxidant (抗氧化劑)
  - 증체제 Bulking agent (增體劑)
  - 호색제 Colour retention agent (護色劑)
  - 색소 Colour (色素)
  - 유화제 Emulsifier (乳化劑)
  - 유화염 Emulsifying salt (乳化鹽)
  - 고화제 Firming agent (固化劑)
  - 증미제 Flavour enhancer (增味劑)
  - 면분처리제 Flour treatment agent (麵粉處理劑)
  - 발포제 Foaming agent (發泡劑)
  - 교응제 Gelling agent (膠凝劑)
  - 상광제 Glazing agent (上光劑)
  - 수분보지제 Humectant (水分保持劑)
  - 방부제 Preservative (防腐劑)
  - 추진제 Propellant (推進劑)
  - 팽창제 Raising agent (膨脹劑)
  - 온정제 Stabilizer (穩定劑)
  - 첨미제 Sweetener (甜味劑)
  - 증조제 Thickener (增稠劑) (L.N. 226 of 2003; L.N. 85 of 2004)

3. 영양소 라벨링

개황

○ 홍콩의 식품 및 의약품 라벨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의 개정안인 "Requirements for Nutrition Labelling and Nutrition Claim"은 2008년 5월 28일 국회를 통과·발효되어 홍콩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적용한다.

○ 영양소 라벨링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의 정보에 입각한 식품선택을 돕고, 식품 제조업체 가 사용하는 표현상의 어구(formulation)에 있어 적절한 영양소 상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라벨이나 선전 문구를 규제하는데 있다.

○ 영양소 라벨링 규정은 식품 포장에 표기하는 영양소 라벨링(nutrition labelling)과 영양소 선전 문구(nutrition claims)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

○ 영양소 라벨링(nutrition labelling)

- 홍콩에서 판매하는 홍콩 포장식품의 라벨상 반드시 영양소 정보(nutrition information)를 표기해야 한다.

○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은 칼로리(energy)와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protein), 탄수화물(carbohydrates), 지방(total fat),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s), 트랜스 지방산(trans fatty acids), 염분(sodium), 당류(sugars)의 함유량이다.

- 칼로리(energy)는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전체 영양소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에너지로 CAC(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의 계산방식을 따른다.
- 칼로리를 포함한 7대 영양소 외에 비타민 등의 영양소는 자발적으로 추가 표기할 수 있으며, 탄수화물 내 식이섬유(dietary fibre) 미포함 함유량이라면, 식이섬유 함유량도 반드시 별도로 표기한다.
- 각 영양소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한 숫자로 표기하며, 최대량(maxi-mum)과 최소량(minimum) 등 범위(Ranges)로는 표기를 금한다.
- 영양소 정보는 표 형태(tabular format)로 포장식품 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공하며, 포장 표면적이 200㎠일 경우에는 선형(linear)으로 표기 가능하다.
- 영양소 라벨은 영어·중국어 또는 병용으로 표기 가능하나, 함유량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영양소 라벨링 표기 예시▐

Nutrition Information(營養資料)	
	Per 100g / 每100克
Energy/能量	398kcal/千卡
Protein/蛋白質	7.5g/克
Total Fat /總脂肪	2.6g/克
- Saturated fat/飽和脂肪	0.2g/克
- Trans fat/反式脂肪	0g/克
Carbohydrates/碳水化合物	86.1g/克
- Sugars/糖	4.0g/克
Sodium/納	105mg/毫克

자료 : 자체 제작

○ 영양소 선전 문구(nutrition claims)

- 일반적인 포장식품의 선전 문구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기 위해 쉽게 'low fat', 'high fibre', 'lower cholesterol' 등 영양소 관련 문구를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한다.
- 신규 영양소 라벨링 규정에 따라 향후 영양소 관련 모호한 선전 문구나 표현도 규제하며, 식품 포장이나 관련 광고에도 모두 적용한다.
- 규정에 맞게 라벨에 표시한 성분 목록이나 영양소 및 함유량 언급은 가능하다.
- 표현상 용어는 다음과 같이 대체되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Low : Little, Low source, Few, Contains a small amount of
  - Very Low : Extremely low, Super low
  - Free : Zero, 0, No, Contains no, Without, Off, Does not contain
  - Source : Contains, Provides, Has, With
  - High : High source, Good source of, A valuable source of, Rich in, Plenty of

▌주요 영양소 표현에 대한 조건사항▐

구성 성분	표현 방법	조건 내용
Energy (칼로리)	(1) Low	고체 식품(solid food)은 100g당 40kcal 이하 함유
		액체 식품(liquid food)은 100㎖당 20kcal 이하 함유
	(2) Free	액체 식품은 100㎖당 4kcal 이하 함유
Protein (단백질)	(1) Low	어느 식품이든 단백질이 칼로리의 5%를 이하 함유
	(2) Source	고체 식품은 단백질 100g당 중국 NRV의 10%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단백질 100㎖당 중국 NRV의 5% 이하 함유
	(3) High	고체 식품은 단백질 100g당 중국 NRV의 20%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단백질 100㎖당 중국 NRV의 10% 이하 함유
Total Fat (지방)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지방이 3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지방이 1.5g 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지방이 0.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지방이 0.5g 이하 함유
Saturated Fat (포화지방)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포화지방산이 1.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포화지방산이 0.75g 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포화지방산이 0.1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포화지방산이 0.1g 이하 함유
Trans Fat (트랜스지방)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트랜스지방산이 0.3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트랜스지방산이 0.3g 이하 함유
Cholesterol (콜레스테롤)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02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콜레스테롤 0.01g 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00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콜레스테롤 0.005g 이하 함유
Sugars (당류)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당 성분이 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당 성분이 5g 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당 콜레스테롤 0.5g 이하 함유
Sodium (염분)	(1) Low	어느 식품이든 100g/㎖당 염분 0.12g 이하 함유
	(2) Very low	어느 식품이든 100g/㎖당 염분 0.04g 이하 함유
	(3) Free	어느 식품이든 100g/㎖당 염분 0.005g 이하 함유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 규정 적용 제외 사례

- 포장 표면적이 100㎠일 경우
- 찻잎(Tea Leaves), 양념류(spices), 증류수(distilled water), 육류(raw meat), 신선과일 및 채소 상품일 경우

- 포장식품의 연간 판매(annual sales)가 30,000미만일 경우 영양소 라벨링 규정 제외
- 소량화물 라벨링 규정 제외 품목 리스트 참고 URL : http://www.cfs.gov.hk/tc_chi/programme/programme_nifl/files/SVE_exempted_product_c.pdf

○ 영양소 라벨링 규정 제외 제품은 관련 문구를 스티커로 부착해야 한다.
- 예) Nutrition Labelling Exempted(營養標籤產品)

4. 유아용 유동식·영유아용 포장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 개황

○ 영유아 보건, 영유아용 식품 선택 가이드 및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 영아용 조제분유의 영양성분과 영아용 조제분유, 유아용 유동식, 유아와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링을 규정하고 있다.

○ 영아용 조제분유에 들어가는 25가지 영양소(1+25)의 에너지 값·내용물의 라벨링을 규정한다.
- 영유아용 포장식품은 단백질·지방·탄수화물·나트륨(1+4) 등 4대 영양소와 비타민 A·비타민 D에 대한 에너지 값과 내용물의 라벨링을 의무화한다.

주요 내용

○ 영유아를 위한 의료용 특별 조제분유는 개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라벨이 붙기 때문에 영양성분과 영양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한다.

○ 기 시행 중인 영양 라벨링 제도(Nutrition Labelling Scheme)에 따라 소포장 상품 역시 영양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한다.
- 소포장 상품은 총 250평방 센티미터 미만의 용기로 포장된 유아용 유동식 또는 100평방 센티미터 미만 면적의 용기로 포장한 영유아용 포장 식품을 말한다.

○ 개정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 참고 사이트 URL : www.cfs.gov.hk/english/press/20160613_0549.html

제3절 라벨링 사례

1. 표기 사례

한국 식품의 라벨링 표기 사례

○ D사의 가공식품 라벨링 표기

- 1. 상품 명칭(영어·중문 병용), 2. 성분 목록(영어, 중문 병용) : 성분 목록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은 별도 표기, 3. 중량, 4. 유통기한, 5. 저장방법, 6. 제조사 및 수입자 주소와 연락처(원산지 추가 표기), 7. 영양소 정보 : 영양소 라벨링 규정 시행 전(2010.7.1.)부터 표기했다.

○ 한국산 신선농산물 라벨링 표기

- 1. 상품 명칭 및 원산지 : 한국산 고구마, 2. 포장날짜, 3. 저장방법, 4. 포장업체 및 유통업체를 표기했다.
- 과일·채소는 성분 목록 및 영양소 라벨링 적용 제외 항목이다.

▌한국 식품의 라벨링 표기 사례 – (좌)가공식품, (우)신선농산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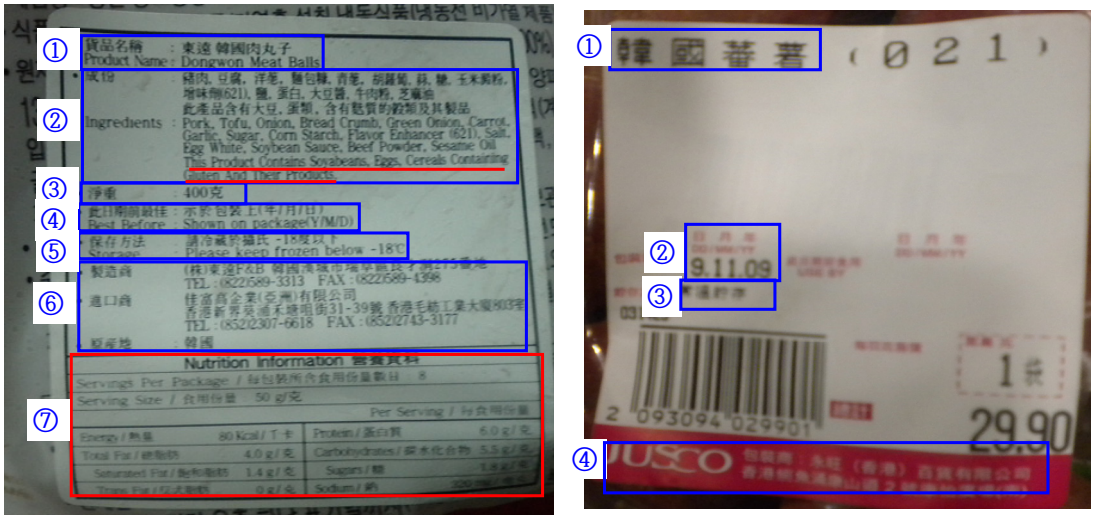

자료 : 자체 제작

2. 라벨링 부착방법

수출 농수산품의 라벨링

○ 수출 농수산품의 라벨링 부착은 한국 수출 기업이 부착해 수출하거나, 수입업체가 현지에서 제품에 직접 스티커를 이용·부착한다.

○ 대규모 수출업체의 경우 필요한 라벨링을 포함한 수출용 포장용지를 별도 제작해 수출한다.

○ 현지 수입업체에서 라벨링 시 수출업체로부터 성분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스티커를 활용해 수작업으로 부착한다.

▌D사의 홍콩·동남아 수출용 포장▐

▌현지 수입업체의 스티커▐

자료 : 자체 제작

○ 참고 자료

- 규정 세부내용 URL : 홍콩 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 웹사이트
  http://www.cfs.gov.hk/english/programme/programme_nifl/programme_nifl.html
- 영양소 구성표 URL : UN 식량농업기구(FAO) 웹사이트
  http://www.fao.org/infoods/tables_int_en.stm
- 영양소 함유량 계산 방법 URL : 미국 농업부(USDA) 웹사이트
  http://www.ars.usda.gov/Services/docs.htm?docid=9448

3. 최근 이슈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 (Trade Description Ordinance)

○ 홍콩 관세청은 자국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광고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품 설명 관련 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을 개정했다.
- 법무부 통과: 2012년 7월 17일, 발효: 2013년 7월 19일

○ 위법사항은 허위 설명 기재, 혼동을 주는 생략, 강압적인 판매 행위, 허위 광고 및 예기치 않은 변경, 부당하게 이윤을 챙기는 행위 등 5가지이다.

○ 최근 홍콩 시장에 한국 식품이나 화장품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본 법령 개정에 대응하지 못해 리콜 조치나 과징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홍콩 정부가 광고 게재 시 단속하기보다는 광고 배포 이후에 무작위로 뽑아 단속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으로 판명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비용 손해(광고 회수, 벌금 조치 등)가 발생한다.
- (예) 10년 연속 한국 판매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위법으로 단속한다.

브롬화 식물성기름(BVO) 포함 식품, 홍콩 내 판매 불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브롬화 식물성기름(BVO)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따라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함을 발표했다.

○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JEFCA)는 수크로오스 아세트산염 아이소부티레이트(INS번호 “444”)와 우드로진의 글리세롤 에스테르(INS번호 “445(iii)”)와 같은 성분을 안전성이 확인된 BVO의 대체재로 평가한다.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JEFCA의 연구 결과에 따라 BVO 첨가 식품 판매금지를 2005년 발표, 식품안전수출위원회도 2014년 6월 동의했다.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14년 5월과 6월 북아메리카에서 수입한 25개의 음료 샘플을 수집해 실험한 결과, 1개 제품이 0.9ppm 수준의 BVO를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홍콩 수입 전 선전(深圳) 첸하이 보세구(前海湾保税港区)내 냉동육 임시 보관

○ 홍콩-중국 간 첸하이 보세구 내 냉동육 임시 보관 허용 업무 협정을 합의했다.

- 2016년 4월 27일 식품환경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FEHD)와 선전출입검역부(Shenzhen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 SZCIQ)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2016년 6월 20일과 23일에 업무 협정과 관련 시행 조치들을 냉동 육류· 가금류 수입업계에 공지했다.
- 홍콩-중국 당국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조치 시행에 합의했다.

○ 협정에 따라 홍콩으로 수입되는 냉동 육류는 대홍콩 운송 전 첸하이 보세구에 임시 보관이 가능해졌다.

- 2012년부터 냉동 육류 수입업체와 냉동 창고 운영 업계는 홍콩 내 이용 가능한 냉동 창고 부족으로 거래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홍콩정부에 피력해왔다.

○ 홍콩으로 수입되는 환적 냉동 육류 화물(수입업체)이 갖춰야 할 서류

- DFEH가 검증한 원산지 발행기관의 위생증명서(사본)
- 중 첸하이 당국이 발행한 환적증명서(원본)와 공제 목록(사본)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가 발행한 수입 라이선스
- 선적 청구서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가 발행한 허가증(해당하는 경우)

○ 수입업체는 냉동 육류 전량이 홍콩에 수입 완료되는 날부터 최소 2개월간 위생증명서와 공제 목록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 제한 사항

- 첸하이를 통해 환적되는 냉동 육류는 홍콩과 수입 협의를 기 성립하고, 중국이 냉동 육류 수출을 허가한 국가·지역에서만 수입 가능하다.
- 첸하이 보세구의 환적 냉동 육류 화물 운송차량은 반드시 홍콩의 Man Kam To 통제센터를 거쳐 식품환경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후 홍콩으로 이동 가능하다.
- 화물의 대홍콩 환적 후 환적 냉동 육류는 운송하는 동안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 홍콩 식품위생관리서의 요청사항

- 냉동 육류가 홍콩에 도착하면 식품환경위생서는 냉동 육류 샘플을 채취해 조사 용도로 보관할 수 있다.

- 홍콩 내 환적 화물 조사 결과, 냉동 육류의 식용 부적절 판단 시 식품위생관리서는 냉동 육류를 압수하거나 원산지로 반려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첸하이 당국과 공유한다.

○ 관련 내용 원문 URL :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files/Guide_to_Frozen_meat_destined_for_Hong_Kong_e.pdf

참고 자료출처

웹사이트 및 관련법규 URL

홍콩 식품안전청	http://www.cfs.gov.hk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http://www.fehd.gov.hk
홍콩 무역 산업국	http://www.tid.gov.hk
홍콩 무역협회	http://bso.hktdc.com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http://www.customs.gov.hk/
홍콩 정부 물류통관	https://www.rocars.gov.hk
홍콩 농수산 협회	http://www.afcd.gov.hk
UN 식량 농업 기구(FAO)	http://www.fao.org/
미국 농업부(USDA) 웹사이트	http://www.ars.usda.gov
홍콩 식품안전청 - 냉동과자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
홍콩 식품안전청 - 육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홍콩 식품안전청 - 유제품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
위생검역관 수출입 등록부	Health Inspector Import/ExportRegistration

제5장 수입 규제 사례

제1절 대(對) 한국 수입규제 동향

1. 수입규제

수입 규제 품목

○ 홍콩은 다습한 기후로 바이러스의 전파 쉬워 사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중
- 주로 국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수산물·육류·가금류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 실시
- 특히 홍콩은 자유무역·규제 프리 정책으로 수입 규제 품목은 매우 적다.

한국 제품의 대홍콩 수입 규제 품목

○ 홍콩-한국은 상호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 사유 없이 홍콩의 대한국 수입 규제 조치 발효는 없는 편이다.

○ 한국은 생굴·가금류·육류 등 제품에 수입 규제 실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 해제되었다.
- 2006년 한국산 생굴에서 바이러스 발생해 수입 규제
- 2014년 5월부터 한국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병시 잠정적으로 한국 가금류 수입 금지
- 한편, 돼지고기는 2014년 일부 지역(전라도 및 제주도)에 한해 수입 가능
- 상호 협정 체결이 연기되었던 한국산 쇠고기는 2015년 11월 19일 홍콩 수출 관련 검역·위생 절차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 대 홍콩 수출 가능

○ 식품환경위생서, 2017년 11월 2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독감을 이유로 전라북도·경상남도·대구 지역의 달걀 및 가금류의 대홍콩 수입을 잠정 중지 발표했으나 같은 달 29일 해제

▌한국 제품에 대한 홍콩의 과거 수입 규제 사례▐

품목	사유	내 용
생굴	바이러스 발생	- 2006년 규제 실시 - 2017년 현재 별도 규제 없음
달걀 및 가금류	조류 독감	- 2014년 5월 규제 실시 - 2016년 3월 7일 수입 재개 - 2016년 3월 29일 조류독감 발병으로 경기도 지역 제품의 수입을 규제했으나, 9월 6일 해제 - 2017년 6월 8일·16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병으로 울산·제주지역 제품의 수입을 규제했으나, 10월 27일 해제 - 2017년 11월 21일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전라북도·경상남도·대구 지역산 제품 수입을 규제했으나, 같은 달 29일 해제
돼지고기(生)	구제역 발생	- 2014년 4월 9일 일부 지역 수입 재개
쇠고기(生)	상호협정 미체결	- 2015년 11월 19일 수입 승인

자료 : 홍콩 세관

○ 대 홍콩 식품 수출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의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 홍콩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가능한 준용해야 한다.
- 육류는 전염병 발병에 따른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정보와 각국의 수입 제한 조치에 유의한다.

2. 시판 중인 한국제품의 수입규정 위반사례

주요 내용

○ 홍콩은 대한국 제품에 대해 주로 영양성분 부족·라벨링 규정 등 원인으로 시판 중지를 지시했다.
- 한국산 분유의 요오드 함량 부족, 초○○○ 판매 중단 조치 등이 발생했다.
- ○○ 아몬드 크래커, 알레르기 유발 성분 라벨링 미표기로 판매중지 및 리콜 조치했다.

○ 2017년 총 3건의 제품 판매 중지 조치 중이다.
- 5월 ○○○○의 요리당 제품이, 7월 ○○미트 제품이, 9월 우동사리 제품이 라벨링 상 영양표시가 홍콩 당국의 자체 테스트와 성분 불일치 판정으로 판매중지 조치됐다.

- 11월 21일 홍콩 당국은 한국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병과 관련 전라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의 수입 중지를 발표했으나, 같은 달 29일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 요리당 판매 중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17년 5월 22일 '백* 요리당 (700g)' 제품 상 영양 라벨링 표시가 자체 테스트 성분 결과와 불일치하다고 판단해 일시 판매중지 지시했다.

○ 실제 제품에서 검출한 나트륨 함량은 26mg/100g이며, 라벨링에 기 표시한 10mg/100g과 상이하다는 결과였다.

- 이번 조치로 홍콩 당국은 제조사와 연락을 취했으며, 시판제품의 경우 매장 판매를 일시 중지토록 조치했다.

○ 관련 공고 참고 URL

- http://www.cfs.gov.hk/sc_chi/press/20170522_0849.html

○○미트 제품 판매 중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17년 7월 19일 '○○미트(340g)' 제품 상 영양 라벨링 표시가 자체 테스트 성분 결과와 불일치하다고 판단해 일시 판매중지를 지시했다.

○ 실제 제품에서 검출한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5.7g/100g로, 라벨링에 기 표시한 0g/100g와 상이하다는 결과였다.

○ 기업은 실제 제품의 영양 성분·함량 등 정보를 라벨링 상에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홍콩 영양 라벨링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관련 공고 참고 URL

- http://www.cfs.gov.hk/sc_chi/press/20170719_0892.html

○○우동 제품 판매 중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17년 9월 20일 삼립푸드의 '○○우동(250g)' 제품 상 영양 라벨링 표시가 자체 테스트 성분 결과와 불일치하다고 판단해 일시 판매중지를 지시했다.

- 또한, 10월 4일 수입 물량에서 재검출되었다.

○ 실제 제품에서 검출한 나트륨 함량은 150mg/100g으로, 라벨링에 기 표시한 69mg/100g와 상이한 결과였다.

○ 관련 공고 참고 URL
- 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70920_0930.html (9.20일건)
- http://www.cfs.gov.hk/sc_chi/press/20171004_0942.html (10.4일건)

한국산 분유 요오드 함량 부족 발표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시중 유통 분유 전면 성분 테스트를 실시했다.
- 2012년 8월 8일 한국산 분유 제품 2종류에서 요오드 함량 기준치가 국제 기준과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 앞서 홍콩은 일본산 분유 제품 2종류에 대해 요오드 함량이 낮다는 이유로 섭취 중단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결론적으로 해당 한국산 제품의 요오드 함량 부족은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한국산 분유에 대한 인지도와 안정성이 높아지자 현지의 한국 기업 견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 홍콩 언론, 분유 공포 재시작 관련 보도 이어지면서 홍콩 소비자 우려 높아지고 있다.

○ 당장 한국산 수입 분유의 홍콩 내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조치는 없었으나 한국 분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판매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 판매 중지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는 롯데 초코파이 아몬드 성분 포함 사실 미표기로 시장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몬드 성분 포함 사실을 성분 표시에 미표기한 이유
- 국별로 표기 의무사항은 상이하나 이번 조치는 캐나다 식약청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

○ 홍콩 현지 배급사와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 약 5,000박스 분량을 전량 리콜 조치했으며,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검사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초코파이는 홍콩 수출이 당분간 불가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국제조사들의 제과류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몬드 크래커 판매 중지

○ 홍콩 식품안전서는 2014년 4월 25일 한국산 아몬드 스낵인 해태 EDO Pack 아몬드 크래커의 판매 중단 및 리콜 조치를 실시했다.

○ 홍콩 식품·약물규정 제132W장에 따라 시판 전 라벨링 과정에서 불충분한 성분 표기 시 최고 5만 홍콩달러(한화 약 6백만 원 상당)의 벌금 및 징역 6개월을 구형할 수 있으니 한국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한국산 아이스크림류 판매 보류

○ 홍콩 식품안정서는 2015년 5월 한국산 빙과류의 시장 출시 전 포장 검사에서 제품에 사용한 색소에 대한 라벨링 미표기 사항을 적발했다.

- 이번 적발은 시장 유통 전 단계에서 발견되었으며 판매 보류 조치를 관련 업계와 당국에 통지했다.

○ 시장 출시 전 라벨링 관련 성분 미표기 적발 시 홍콩 식품·약물규정 제132W장에 따라 최고 5만 홍콩달러(한화 약 6백만 원 상당)의 벌금 및 징역 6개월을 구형할 수 있으니 한국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제2절 수출품 선적 시 유의사항

한국발 홍콩행 소량 수화물 선적

○ 최근 한국발 소량 수화물의 홍콩 하역 시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아져 홍콩 바이어는 과거 일본에서 수입하던 식품류를 한국산으로 일부 전환하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최근 홍콩 부두에서 한국 발송 화물이 증가했다.
- 수화물 발송에 익숙지 않은 개인 수출자의 화물이나 소량의 식품 등이 불분명한 수취인 정보 표기나 내용물 적시로 하역 시 분류·배송에 혼돈을 불러왔다.

○ 대 홍콩 소량 수출품 역시 수입사와 상의 후 박스에 정확히 수입사의 정보(이름·트레이드 마크 등)를 적시해 홍콩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반 컨테이너 선적시 대량 화물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박스 외관에 회사명 및 트레이드 마크 등 표시해 인쇄해서 발송해야 한다.
- 한편 수화물이 소량일 경우 인쇄 이미지가 없는 보통 박스에 넣어 제품을 혼합 선적하기도 한다.
- 불분명한 수취인 표기시 하역장에서 목적지에 따른 분류가 어려우며, 혼합 선적으로 컨테이너를 구분해 묶음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 또한, 박스 외관에 하역자가 알아볼 수 없는 한국어 표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적절한 부착 방법은 개별 박스로 포장한 소량 수화물 외관 양쪽에 수취인(회사) 정보를 A4 사이즈에 출력해 부착하는 것이다.
- 출력 용지 상 수취인 회사의 회사명이나 로고는 반드시 수취인과 상의·결정한다.
- 물류 회사의 하역 리스트와 일치하는 로고와 회사명을 영문으로 반드시 표기한다.
- 라벨의 정확성을 위해 수취인·내용물 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기입한다.
- 영문 사용이 어렵다면 한국 포워딩 회사에 위탁해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 화물 내용의 상세한 기입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접시 3 상자를 홍콩으로 송부 시 박스별로 정확하게 Dish 1, Dish 2, Dish 3와 같이 내용물 명칭을 적시해야 한다.
- 선적물의 배송지가 상이한 경우, Dish 1은 A지역, Dish 2는 B지역 등으로 정확히 작성하는 등 애매한 표기를 지양해야 한다.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대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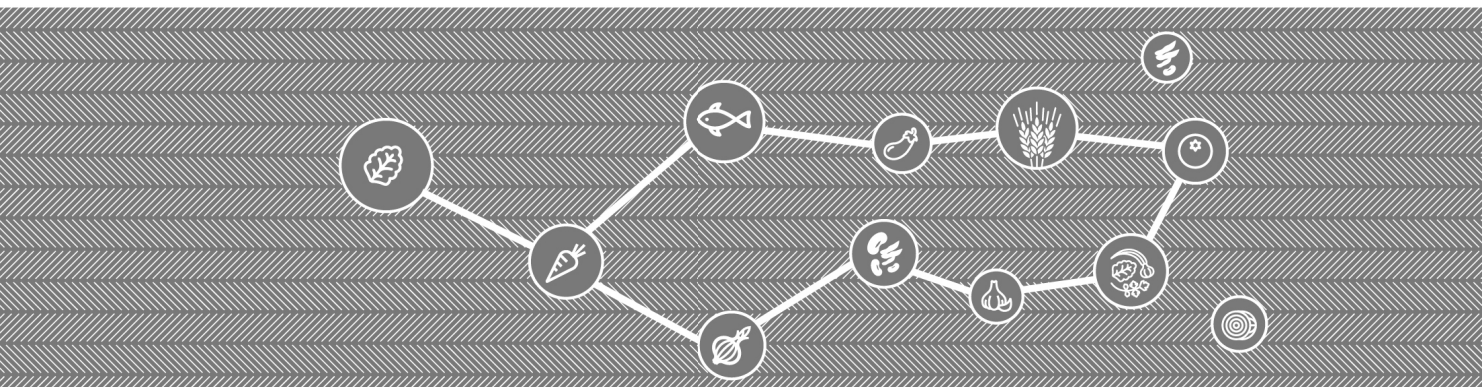

제1장 수출 현안

제2장 통관 제도

제3장 검역 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통관문제 사례

제6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부록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대 만

Contents

제1장 수출 현안 **91**
제1절 수출여건 및 식품시장동향 91
제2절 수출동향 93

제2장 통관 제도 **95**
제1절 일반사항 95
제2절 품목별 통관 제도 114
제3절 통관 이슈 사례 126

제3장 검역 제도 **139**
제1절 일반사항 135
제2절 동 · 식물 검역 141
제3절 품목별 검역제도 145

제4장 라벨링 제도 **163**
제1절 일반사항 163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 방법 195
제3절 라벨링 이슈 사례 199

제5장 통관 문제 사례 **204**
제1절 검역 이슈 사례 204

제6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214**
제1절 對 대만 수출 애로사항 214
제2절 對 대만 수출 장애 해소 방안 216

[부록 1] 식품위생안전관리법 219
[부록 2]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 방법 236
[부록 3] 2017년 대만 통관거부사례 현황 242

제 1 장 수출 현안

제1절 수출여건 및 식품시장 동향

1. 수출여건

'16년 장기적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17년 빠른 경기 회복세

○ '16년 대만은 중국과의 대외관계,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불경기가 지속되었으나 '17년 11월 기준 수출액이 USD 28,880백만불(전월 대비 14% 증가)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17년 11월말 기준 대만 경제성장률은 2.58%이며 내년도에도 2.29%로 소폭 하락 전망
- '17년 경제회복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부분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향후에도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으로는 수출 등 대외 경제 보다는 민간소비 등 내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년 11월말 기준 대만 경제 예측치▐

구 분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	2.58	2.29
1인당 GDP(USD)	24,269	25,119
민간 소비 성장률(%)	2.14	2.08
민간 투자 성장률(%)	0.09	2.83
정부 투자 성장률(%)	5.03	9.84
수입(%, 달러환산)	12.14	4.51
소비자물가 연 증가율(%)	0.62	0.96

* 자료출처 : 대만 행정원 주계처

다각적 통상협력 등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추세

○ 대만은 그동안 FTA 등 중국과의 양안 관계로 인해 외교부분에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수출 경쟁력이 취약하였다.

- 민진당 집정에 따른 대중국 양안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일본, 미국, 아세안 국가 등 협력 방안 모색 등 다각적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중 FTA체결로 인해 한국과 경쟁하는 유사 품목에 대한 위기의식 확산되었으나 사드 문제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쟁품목 대만 IT산업 및 전자부품 등의 큰 발전 양상을 보인다.

2. 식품 시장 동향

유기농식품, 친환경식품 등 웰빙 위주 식품소비 트렌드 강화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유기농·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산지, 식품성분 등을 중시하는 구매패턴이 조성되었다.

외식산업과 함께 즉석식품 시장 확대 추세

○ 외식을 좋아하는 식문화로 외식시장의 성장세는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장음식과 즉석식품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대만 내 중소형 마켓 선호도 증가 및 성장세 지속

○ 대만 로컬 슈퍼마켓 체인인 PX MART의 지속적인 확대, 대형유통매장의 중소형화 등 중소형 마켓의 선호도 및 매출액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식품의 시장 점유율 점차 확대

○ 기존 일본산 식품이 대세를 보였던 대만 수입식품 시장 내 한국산 및 동남아 식품 등의 소비 열풍이 일고 있다.(對 대만 수출실적은 지난 3년간 10~15%의 성장률을 보였다.)

- 유통업계에서는 매출 실적 확대를 위한 신규 상품 발굴, 소비자 관심 집중을 위한 이벤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기존 일본식품 외 소비자 주목을 끌만한 한국산, 동남아산 신규 상품 영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특히 한류 열풍과 한국행 대만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한국 현지 문화 및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한국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절 수출동향

1. 수출실적

■ '17.11월 말 현재 341.3백만불로 전년 동기(299.7백만불) 대비 13.9% 증가

○ 인삼(9.2백만불→17.4/87.9%)은 홍삼조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였고, 김치(3.4백만불→3.9/14.5%) 및 라면(14.8백만불→18.4/24.1%)은 각각 종주국 이미지 강화와 품목 다양화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

(단위 : 톤, 천불, %)

구 분	2016년	2016년 1~11월 (A)		2017년 1~11월 (B)		증감률(B/A)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31,976	196,755	299,682	234,207	341,288	19.0	13.9
신선	123,146	52,521	108,892	88,087	113,385	67.7	4.1
가공	172,537	139,673	157,205	141,871	181,384	1.6	15.4
수산	36,293	4,561	33,585	4,249	46,519	-6.8	38.5

2. 주요 품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

■ 증가 내역 및 사유

○ 인삼 ('16.1~11) 9,243천불 → ('17.1~11) 17,366 / 87.9 %↑

- 최근 몇 년간 경기 불경기로 인해 고가 상품인 뿌리홍삼 보다는 홍삼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뿌리인삼의 경우 주요 수입업체가 재고 관리를 위해 지난 2년간 수입을 최소화하다가 2017년도 재고량 보충을 위해 수입물량을 정상화했다.

○ 라면 ('16.1~11) 14,841천불 → ('17.1~11) 18,414 / 24.1 %↑

- 한국 라면의 맛과 제품 다양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 배추 ('16.1~11) 7,931천불 → ('17.1~11) 10,524 / 32.7 %↑

- 한국산 배추 특성 및 차별성이 인지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도 매장에서 한국산 배추를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특히 대만 현지 김치 제조 시 대만산 또는 베트남산 배추를 사용할 경우 수분이 과다 발생되어 김치 제조 시 한국산 배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 음료 ('16.1~11) 2.039천불 → ('17.1~11) 2,918 / 43.1 %↑

- 대만 내 기능성 및 과일 맛 음료, 스파클링 음료, 우수한 디자인 음료에 대한 선호도 상승 및 기존 차류에 집중된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한국산 음료의 수출 활로가 확대되었다.

○ 김 ('16.1~11) 17.502천불 → ('17.1~11) 31,248 / 78.5 %↑

- 중국의 해양 오염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해 김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한국산으로 대체함에 따라 수출이 급증했다.

감소 내역 및 사유

○ 양배추 ('16.1~11) 4,831천불 → ('17.1~11) 2,869 / 40.6 %↓

- 양배추는 배추와는 달리 중국음식에서 볶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산 양배추는 잎이 비교적 질겨 대만인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 내 태풍영향 등으로 수확량이 급감하는 경우에만 수출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대만의 작황 회복으로 한국산 수출이 급감했다.

○ 사과 ('16.1~11) 4,146천불 → ('17.1~11) 2,556 / 38.4 %↓

- 한국산 사과는 대만 시장 내 인지도가 약하고 가격 및 품질 수준이 정확한 위치 확보를 못하고 있어 동 시기 일본산 및 미국산의 출하량 및 가격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 특히 2016년 한국산 사과 품질 저하 및 경쟁국 사과 수출량 증가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다.

○ 배 ('16.1~11) 19,767천불 → ('17.1~11) 17,237 / 12.8 %↓

- 대만산 배의 품질 경쟁력 강화로 인해 선물용으로 대만산 배가 선호됨에 따라 한국 배에 대한 수요가 다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금년 주 수출시기인 설이 1월로 당겨지면서 설 준비 일부 물량이 전년 12월 수입되고 추석은 10월로 예년 대비 늦어 선물용 원황배의 수입이 현재까지 다소 감소함에 따라 수출이 감소했다.

제2장 통관 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관리 법률체계

관련법 및 규정일반

○ 대만 수출입 업무는 1967년 8월 8일 58개 조항을 시작으로 제정한 '관세법(關稅法)'을 기준으로 수정을 거쳐 2017년 현재 103개 조항을 실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관세법 실행세칙(關稅法施行細則)'으로 규정한다.

○ 화물 통관업무 관련 주요 상세 법률 및 규정 : 화물통관 자동화 실시방안(貨物通關自動化實施方案), 해상특송 화물 통관방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 관세 쿼터제 실시방법(關稅配額實施辦法), 수입화물 세칙 우선심사 실시방법(進口貨物稅則預先審核實施辦法), 수입화물 감정가 우선심사 실시방법(進口貨物估價預先審核實施辦法), 수입화물 감정가 우선심사 실시업무 규정(進口貨物估價預先審核作業規定), 상계관세 및 반덤핑세 징수 실시방법(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세관 징수비용 규칙 및 특별 감시비, 호송비의 징수기준, 납세의무자와 승인문서표(海關徵收規費規則及特別監視費, 押運費之徵收標準, 繳費義務人及核准文件表), 세관 밀수 단속 조례(海關緝私條例), 화물통관 자동화 세관가이드(貨物通關自動化報關手冊)

관리체계

○ 대만 수출입 통관 업무는 우리나라 관세청 격인 재정부 산하 관무서(關務署)에서 관할한다.
- 관무서가 관리하는 직속 세관은 지롱(基隆), 타이베이(台北), 타이중(台中), 까우슝(高雄) 등 4개의 관세국이 있고, 각 관세국 산하 10개 분국(分局)·지국(支局)으로 나뉜다.

2. 통관 수속

수속 대상

○ 통관 수속에 해당하는 방법은 해운·항공·간이 통관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 해운 통관 :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입한 물품의 통관 방법
- 항공 통관 : 항공을 이용하여 수출입한 물품의 통관 방법
- 간이 통관 : 국제 택배 및 우체국 국제 소포 등 소량 물품에 대한 간이 통관 방법

○ 각종 선박·항공기의 화물이나 여객 휴대 수화물 등 역시 통관 수속 대상이다.

수속 방법

○ 대만은 세관과 관련기관·업체의 수출입 관련 업무 전반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관련 법규

○ 화물 통관 자동화 실시방법(貨物通關自動化實施辦法)
- 관세법 제10조 제1항 '모든 수출입 업무는 세관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및 전송한다. 수출입신청·운수·도급·창고·화물집산지 및 기타 통관 업무는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서류 전송 등의 방식으로 처리함' 및 제3항 '자동화 시스템 연결 또는 등기·신청절차·관리·통관 절차·기타 관련 사항은 재정부의 화물 통관 자동화 실시방법을 기준으로 함'에 의해 실시한다.

○ 각 기관별 협조 방식
- 일반적으로 정부 통관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시스템에 접속하고 검토 내용 결과가 일치할 경우 수입신고일 익일부터 3일내 반출한다.
- 국제무역국은 표준검험국·동식물방역검역국 등 기관과 수출입 플랫폼인 「비엔지에마오이왕(便捷貿e網)」을 통해 세관 단일 창구를 직접 연결한다.
- 과학원은 민항국과 기관 자체 시스템이 통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세관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자료 심사 비준을 진행한다.

3. 화물의 통관

수출입 통관 절차

○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관 시스템에 접수하면 제품의 특징에 따라 C1~C4로 다음 검역 방법을 지정한다.

- 신청인은 세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화물검역에 응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화물 수입시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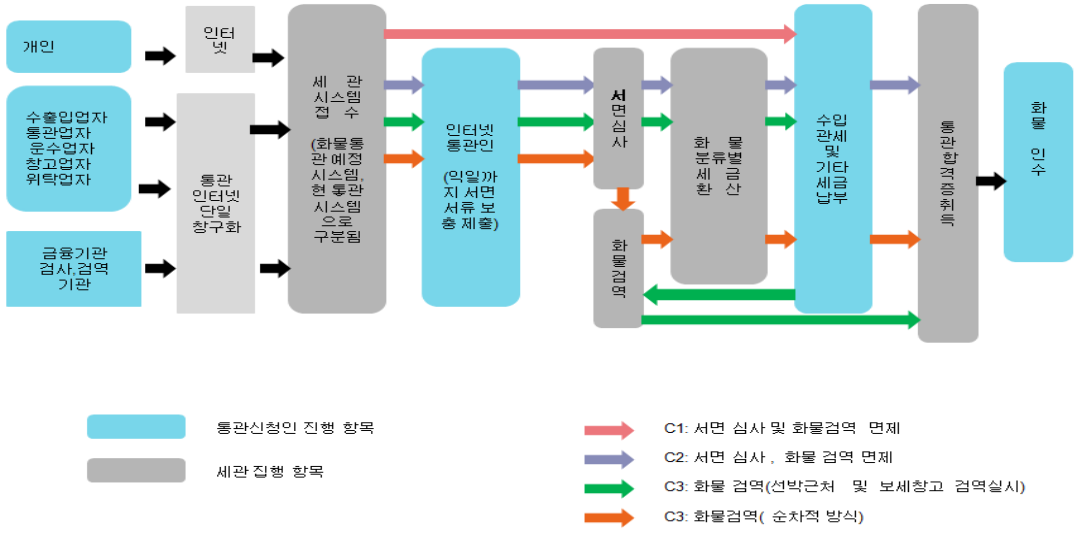

▌화물 수출시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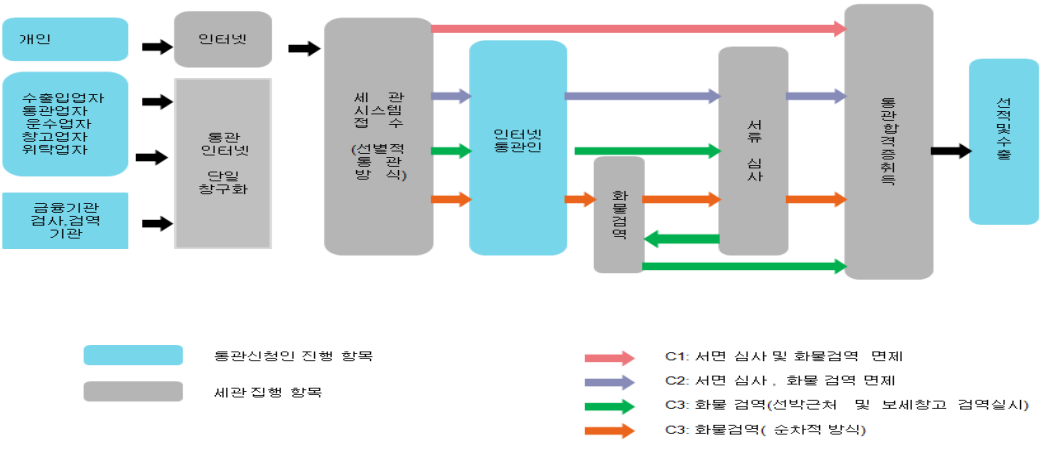

자료: 관무서

수입 통관 방식

○ 통관 신청인은 수입화물통관 신청 및 납세 의무자(수입업체·위탁관세사)가 일임한다.

○ 통관 기한

- 수입 화물 도착 후 15일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서면 수입 자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인터넷 신청 시 통관기한은 통관 인터넷 자료 전송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출입 화물선행 통관 처리준칙(進出口貨物預行報關處理準則)에 따라 수입화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사전 신고하며, 납세 의무자는 통관 시 필요한 증명서를 구비해 세관에 사전 통관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 세관항구무역원스톱창구(關港貿單一窗口)

○ 2013년 9월부터 대만 재정부·교통부·경제부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합한 통관인터넷 접속 및 단일 창구를 마련, 관련 업무 처리 시에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만의 각종 무역 심사·통관·항구신청업무를 통합하여, 각종 업무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세관항구무역원스톱창구 홈페이지 화면▐

자료: 관무서

○ 제공 서비스 : 온라인 통관신청, 세금 납부, 통합 로그인(인증서사용), 온라인 세관신청, 온라인 세관신청 위탁, 온라인 신고서 사본발급, 도서지방 면세점, 컨테이너 자료 온라인 검열조사, 우수기업(AEO) 신청 데스크, 위탁가공화물 원재료 명세, 화물 리스크 관리 시스템

○ 재정부의 통관 전용 사이트에 연결하여 INVOICE·B/L(D/O)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세관

규정 방식에 따라 입력 후 전송하면 해당 수입품의 수입방식이 선별된다.

- 이어서, C1·C2·C3 방식에 따라 수입납세통지서, 서면 및 자료수정 요청통지, 반출허가 통지 등을 요청하며 현 통관 진행 상황을 검색할 수 있다.
- 업체는 통합 인증서가 발급되면 인터넷상에서 자체적으로 통관 신청을 할 수 있다.

○ C1은 서면 서류 심사 면제 및 화물 검사 면제, C2는 서면자료 심사, C3는 서면자료 및 화물 검사 후 통관 방식이다.

- C1 방식 검험시 일부 제품의 경우 세관원의 요청에 따라 선행 통관일 익일부터 3일 내 보완 자료를 발송한다.
- 세관 시스템 선별적 통관 방식에 따라 C2·C3 방식 처리 시 통지 접수일 익일 정상 퇴근 전까지 서면 자료를 발송한다.

▌세관항구무역원스톱창구 시스템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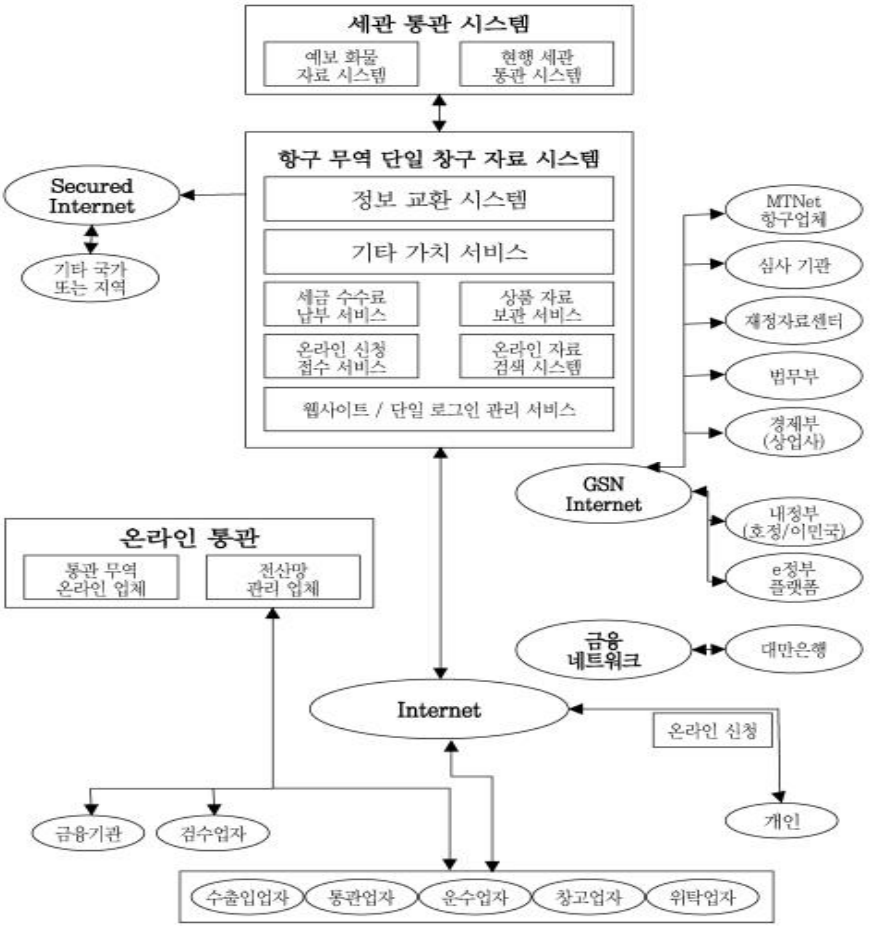

자료 : CPT 무역통관창구단일화 홈페이지

해운특송 화물통관

○ 2013년 11월 29일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제정한 해운특송 화물통관 방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에 따라 해운특송 화물 통관 실시

○ 특송화물의 분류
- 수입시 : (면세) 2,000 대만달러(NTD) 이하 물품/세금 포함, (저가) 2,001~50, 000 NTD 이하 물품/세금 포함, (고가) 50,001NTD 이상 물품/세금 포함
- 수출시 : (저가) FOB가격 50,000NTD 이하 물품, (고가) FOB가격 50,000NTD 이상 물품

○ 해운 택배 수출입 업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 수출입 신고를 통해 통관
1. 세금 포함 50, 001NTD 이상의 물품, 화물세 조항·특수 화물·노무세 조항(勞物稅條) 규정 내 고가 해운 택배 물품
2. 수출입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
3. 세금환급 및 보세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 복사본 제출
4. 반입·반출 안건은 수출 원형 반출 및 수입 면장 요구
5. 세법에서 정의한 감세 혜택 규정 범위내의 화물
6. 수입코드 「G1」(외국 화물 수입 SHEET) 및 수출코드 「G5」(국내화물 수출 SHEET)범위 외의 수입 품목
7. 화물세 조항·특수 화물·노무세 조항내 규정 화물
8. 재정부 공고 한 특별 범위내의 화물
9. 관세 대상에 해당하는 화물

○ 해운 택배 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선박이 최종도착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해운 택배 수출입 업자는 물품의 성질·가격에 따라 분류해 기재해야 한다.

○ 비매품 화물 통관 시 발송인의 서명인 들어간 내용증명서를 부착

○ 외국인의 대만 내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물품 인계 시 여권번호 및 외국인 거류증 번호 모두 기입 가능

○ 해운 특송 제한 물품
-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 제한 물품·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신선 농축수산물·살아 있는 동식물·야생보호 동식물 등 수입 금지
- 화물의 포장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이 각 70 kg을 초과하는 물품 금지

사전 통관

○ 수출입화물선행통관처리준칙(進出口貨物預行報關處理準則)
- 수입화물의 선행 통관 처리는 1975년 2월 20일 관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제정한 본 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 수입 화물은 화물 운송의 책임자 또는 수탁인이 세관에 수입 목록을 작성 해 신청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각 목록의 증명서와 함께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한다.
- 수입화물은 납세 의무인이 수입관세 혹은 보증금을 납입 한 후 수령이 가능하며, 화물 수령 시 규정상 검사 면제자 외 검사를 진행 한 후 문제가 없을 시 수령해야 함
- 해운·항공의 수입 적하목록은 분할하여 다수의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운의 경우 각 목록과 정식 수입 적하목록의 선박 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 항공으로 수입되는 신선 제품·부패하기 쉬운 화물·생물·식물·시간적 효력 제한이 있는 신문·잡지·위험물품·방사능원소·뼛가루·사체·LCL·FCL화물·기타 특수화물 등은 통관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검열한다.

○ 물·전기·석유·천연가스 등 미래형 자원의 수입 시 시스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적하목록 제출 없이 통관 신청 가능하다.
- 납세의무자는 화물 수입 후 일정기간 내에 송장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실제 수입량에 의거해 세관에 신고, 환급 또는 세금 납부한다.

4.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INVOICE(Commercial invoice) 1부 (필수 구비 항목)

○ INVOICE 상에는 수취인 명칭, 주소, 화물 명칭, 브랜드, 수량, 품질, 규격, 형태, 시리얼넘버, 단가, 운송비, 보험비, 기타 각 추가요금 항목, 수출입 감세 항목 등 명시

P/L(PACKING LIST) 1부 (필수 구비 항목)

○ 벌크 및 단일 box 포장일 경우 제출 불필요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항공화물 운송장(AWB, Air waybill) 복사본 1부 (필수 구비 항목)

○ 통관 인터넷 시스템 미실시자는 수입 신고 시 D/O 또는 AWB 1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통관 인터넷 시스템 실시자는 운송업체에서 자동적으로 별도 제공함으로 제출불요

위임서 1부

○ 서면 상 통관 대리인과 납세의무인의 공동 서명

○ 통관 인터넷 시스템 이용자에 한해 서면자료 보완 시 통관대리인 또는 관세사의 인장 날인의 면제를 허가한다.

카달로그·설명서·사진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허가증(Import Pemit : I/P) : 수입통관 완료 후 받는 허가증으로 원본 제출

○ 수입제한화물목록(貨品輸入管理辦法)에 따른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대상
-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등록된 수출입 업체, 정부기관 또는 공영사업, 사립 초등학교 이상 학교 기 입안 건(수출입 업체 수속), 입국여행 및 선박 항공기 서비스 요원 휴대 수하물(세관규정 범위 내 수량 및 금액), 해운, 항공, 국제택배 등 수입제한 품목 외 FOB조건 US20,000불 이하인 물품, 인도적 구제 물자,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등 주 대만 재외기관 서명이 된 자료를 통해 공공·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면세 협조 요청, 증여용으로 소량 수입되는 경우, 기타 경제 무역국 허가품
- 국제무역국이 편성한 세관협조검사수입품표(海關協助查核輸入貨品表)의 면제품 품목
- '便捷貿e網'을 통해 수입신고서 내용과 부합한 업체

○ 수입신고서 제출 대상
- '수입제한화물목록' 내 화물
- 중국산 물품 : 수입규정 'MP1' 표기 화물, '중국산조건적수입허가항목', '수입관리법규 총획표' 내 MXX코드 항목, '중화민국수출입화물분류표' 수입규정번호 '121' 표기 항목

(자동차 수입) 자동차 수입 신고 관련 사항 명세서 첨부

기타 규정 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 : 농약제품은 농약 허가증 및 농약판매업자격증이 필요하다.

5. 원산지 규정 사항

관련 법규

○ 원산지 증명 관련 규정은 '관세법'·'수입화물원산지인정기준(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방법(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을 기준으로 한다.
- 원산지·가공증명서 신청 시 경제부 국제무역국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신청서의 종류·내용·필수기재사항을 처리한다.

수입품의 원산지 구분

○ 일반 화물의 원산지

○ 후진국의 원산지(관세 우대국)
- 해당 수출국에서 직접 대만으로 운송해야 하며, 제3국을 경유 시에는 화물 운송 기간 내 상품의 적재 외에 가공 및 기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판단기준 : 화물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인 경우
- 해당국·지역 내 생산된 광산품·동식물·어류 및 그 취득품
- 해당국·지역 내 신청 등기한 선박이 어획한 어류 및 그 제조품
- 해당국·지역 내 해양 영역에서 발굴한 해양 상품
- 해당국·지역 내 수집한 재활용품 및 제조 후의 잉여분 또는 폐기분
- 해당국·지역 내 상기 항목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생산된 완제품

○ 대만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관세 우대국)

주요 내용

○ 원산지 인정 과정 중 의의가 있을 시 세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 증명 또는 샘플 제출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명 문건은 무역서류, 원자재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 화물의 원 포장 상 원산지 표기가 선적서류 내용과 부합해야만 기타 원산지 증명자료 요청이 면제된다.
- 수입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자료가 불충분시 세관은 기타 공공기관에 협조의뢰를 할 수 있고, 협조의뢰 후 20일 내 서면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 원산지 인정 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물품 검역 기간도 2개월로 연장되지만 단 1회에 한하며, 검사기간 연장을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 원산지 인정은 최종 가공 국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가공 기준은 아래와 같다.(국제무역국이 별도 지정한 특정 원산지 인정국 수입품은 제외)
- 원자재 가공 또는 제조 후 생산한 제품과 그 원재료가 속한 대만 CCC코드(수입세칙코드) 앞자리 6개 숫자가 상이할 경우
- 제품의 가공·제조 후 품목번호는 변치 않았으나, 부가가치율이 35%를 초과하거나 특정 제품이 국제무역국 공고의 주요제작과정에 부합할 경우 [부가가치율(%)=화물수출가격(F.O.B.)-직간접수입원료가격(C.I.F.)/ 제품수출가격(F.O.B)]
- 제품이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친 경우 비실질 변형으로 간주 : 1. 운송·저장 기간에 필요한 보존 작업 실시, 2. 제품의 판매·선적을 위한 분류 및 개별포장·포장·코드 추가·라벨 재부착 등 실시, 3. 제품의 조합·혼합작업으로 인해 이후 제품 특성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간단한 분할·접합·조립·조합 등 가공작업, 5. 검측·간단한 건조·희석·농축 작업 등으로 성질이 변치 않은 경우

○ 제품이 제3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원국의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국을 원산지로 본다.
-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그 부가치세가 50%이상이어야 한다.
- 단, 대만의 원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6. 수입품 품목분류

대만은 자체적으로 숫자 11자리의 CCC 코드를 이용하며, 앞 6자리는 HS코드와 동일

○ 관세 검색 URL : http://web.customs.gov.tw/Rateweb/search1.aspx

○ (참고)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 HS비교 URL :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련 법규

○ 중화민국 통관 수입세칙(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

관세 기준

○ 제1란(Column I) 세율은 세계무역 조직위원 또는 대만과 수혜 관계 국가의 수입품

○ 제2란(Column II) 세율은 특정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서약한 국가의 수입품

○ 제3란(Column III)은 제1란·제2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

○ 한국 수입품은 제1란 관세율 적용

7. 통관 비용

세금 완납 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CIF, 完稅價格)

○ 수입 화물의 관세 및 기타 비용을 계산 시, 그 세금 완납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정한다.
(거래가격 : 수입화물이 수출국에서 대만까지 판매되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되는 가격)

○ 세금 완납 가격 내 포함 비용
- 수입자 부담의 수수료, 수속비, 용기 및 포장비
- 수입자가 수출자와 사전 협의한 생산 및 판매단계 시 관련된 물품비 또는 용역비(원자재 조립 시 사용된 부품, 모형, 설비, 생산 시 사용되는 소모품, 용역비 등)
- 교역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하는 권리금 및 대가
-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물품 대금
- 수입 항구까지의 운임 : 선적 및 운반비
- 보험비

○ 세금 완납 가격 내 미포함 비용
- 화물 수입 후 공장, 기계설비, 건축, 설치, 조립, 수리, 기술합작 등의 비용
- 수입 후의 운임
- 물품대금 연체 및 연체이자
-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

관세

○ 세법 및 관세법세칙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 적용 방식은 3가지로 나뉜다.

○ 종량세(從量稅) : 수입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정한다. 그 각 수량 단위의 세금 완납 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CIF가격)기준으로 계산한다.
(종량세=세금 완납 가격×수량)

○ 종가세(從價稅) : 수입화물의 가격 및 그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고, 일반화물의 대부분이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된다.(종가세=세금 완납 가격×세율)

○ 복합세 : 동일 과세 코드 내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여 과세를 징수한다.

특별관세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平衡稅) : 정부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준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징수한다.

○ 반덤핑세 : 수입물품이 정상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징수한다.

무역진흥서비스비(Trade Promotion Service Fee)

○ 1993년 이후부터 실시한 무역법 제21조 무역법 세칙 17조에 근거한다.

○ 세관 수출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 완납 가격(CIF가격)의 0.04%에 해당된다.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단지, 과학공업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 수납방식
- 수입품 : 수입 세금 수납 시 동시 수취
- 수출품 : 수출 후 분기별로 세관에서 납세증 발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4일내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세증 유실 시 재발부를 요청해야 한다.

○ 미납 시 경제부 무역국의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 및 세관처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세

○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세금 적용이 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 수납해야한다.

○ 화물세 세금 완납 가격 =세금 완납 가격(CIF가격)+수입세 세율

○ 종가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 완납 가격×화물세율표(화물세조례 참조)

○ 종량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 완납 가격×화물세(단위) 세액

○ 화물세 조례에 기재된 화물세 면제 대상일 경우 수입 시 면제된다.
- 제조 후 화물세가 별도 지급되는 상품의 원료
- 전시회 참가 등 국내 비매품일 경우
- 군사 증여품
- 국방부가 허가한 직접 군용 화물로 사용될 경우

영업세(Business Tax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 5%

○ 영업세액=세금 완납 가격×영업세 세율

○ 영업세는 가치형과 비가치형으로 영업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입 시 세관에서 대리 수납한다.

담배·주류세

○ 담배세 : 세금 징수 항목 및 세액은 아래와 같다.
- 일반담배 : 1, 000개 당 NTD590 징수
- 담배가루 : 1 KG 당 NTD590 징수
- 시가렛 : 1KG 당 NTD590 징수
- 기타 담배 상품 : 1 KG당 NTD 590 징수

○ 주류세 : 세금 징수항목 및 세액은 아래와 같다.
- 양조주류 : 맥주는 1 리터당 NTD 26 징수, 기타 양조 주류는 1 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D 7 징수
- 증류주류 : 1 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D 2.5 징수
- 합성주류 : 알코올 성분이 용량 대비 20%이상인 경우 NTD185 징수
- 요리용 주류 : 1리터당 NTD 9 징수
- 기타 주류 :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D 7 징수
- 알코올 : 1리터당 NTD 15 징수

담배건강복지세 : 담배 관련 품목에 대한 별도 추징

○ 일반담배 : 1, 000개 당 NTD 1, 000 징수

○ 담배가루 : 1 킬로그램 당 NTD 1, 000 징수

○ 시가렛 : 1 킬로그램 당 NTD 1, 000 징수

○ 기타 담배 상품 : 1 킬로그램 당 NTD 1, 000 징수

수입화물 통관 비용 지급 방식

○ 인터넷 상에서 비용 자동 지급

○ 수입화물 선 방출 이후, 세금 후불 실시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 후 지급 방식

○ 송금 방식으로 거래 은행이 지정한 금융기구를 통하여 세관전용 입금계좌 및 국고입금 계좌로 송금 대행

○ 현금 지급 방식으로 세관의 세금 수납처에 직접 지급

통관관련 비용은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수입품에 한해 관세 및 특별 관세를 제외하고 세관이 일괄로 대리 수납한다.

8. 수입화물 관련 지체금

관세 납입 과태료

○ 납세기한은 납세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관세 과태료(1일당 0.05%씩 추가) = 관세×연체일수×0.05%

수입신고 지체상금

○ 수입신고는 화물 도착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그 기한을 초과 했을 시, 초과일 익일부터 일자별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부과한다.(200NTD×지체일수)

영업세, 화물세, 특종화물 및 노무세 기타 과태료

○ 지체일 30일까지 2일마다 1%씩 추가

○ 30일 이상은 일괄 과태료 이자율로 계산한다.

9. 통관규정 변동사항

해운특송 화물통관방법 및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검사방법개정

○ 해운특송 화물통관방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 2017년 6월 26일 개정

- 수입업자의 통관 편리성을 제고(해외 특송화물전용구역 수출 허가 불필요), 개인간 비상업교역에 대한 규제 강화(발송인, 내용성명서 동봉), 수입 저가물품 면세 금액 하향조정(기존 3천→2천 대만달러), 대만 내 거주 외국인의 편리성 제고(해외택배 수령시 외국인거류증의 신분증번호 기재 가능)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검사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2017년 8월 11일 수정 초안 발표하며 수정 예고

- 당국의 검사효율을 제고하고 기존 수입품의 검역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
- 검역자가 검역문서를 신청 시 전자방식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 사전반출신고제도가 제품자료에만 국한되어 식품출처추적 시 필요 자료를 포함치 못해 기존 제5조 삭제
- 컨테이너 검역·사전통관·보증금 환불 조건 추가
- 사전방출상품 신청 시 보증금액에 세금포함가격으로 수정
- 검사 신청 의무인의 재검사 신청 기한에 대한 내용 정정

▌대만 통관 규정 변동내용 ▐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7.6.26일	台財關字 제1061012938호	**〈주요내용〉** 「해운특송 화물통관방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수정 - 업자의 해운특송화물전용구역을 통한 통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하기 위해 기존의 해외의 특송화물전용구역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관 제한 규정 삭제 - 개인간 비상업교역의 해운특송 이용시 발송인의 서명이 들어간 내용성명서 동봉 - 수입 저가 면세 물품 금액 하향 조정(기존 3,000→2,000NTD) - 수취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거류증 신분증번호(統一證號)나 여권번호 중 선택해 수입특송화물간소화신청서에 기재 가능 **〈수정사항〉** **제3조** 동법의 해운특송화물은 해운특송화물전용구역에서 처리하는 통관 화물을 의미한다. 다음 규정의 화물은 해운특송화물 전용구역에서 통관을 금한다. 1.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 제한 물품,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신선 농축수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야생보호 동식물 등 수입 금지 2. 화물의 포장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이 각 70KG을 초과하는 물품은 금지 **제10조** 비매품 화물 통관시 발송인의 서명인 들어간 내용증명서를 부착 **제11조** 해운 택배 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선박이 최종도착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해운 택배 수출입 업자는 물품의 성질, 가격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 택배 서류 2. 저가 면세물품 수입 : 세금포함 2,000NTD 이하 물품 3. 저가 납세물품 수입 : 세금포함 2,001~50,000NTD 이하 물품 4. 고가 납세물품 수입 : 세금 포함 50,001NTD 이상 물품 5. 수출 택배 서류 6. 저가 수출 물품 : FOB가격 50,000NTD 이하 물품 7. 고가 수출 물품 : FOB가격 50,000NTD 이상 물품 **제14조** 발송인은 수취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취인의 신분증이나 외국인 거류증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 **제19조** 해운특송화물 수입시 개인이 수취할 경우 신분증이나 외국인 거류증 혹은 여권번호로 신고 가능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7.8.11일	部授食字 제 1042000518 호	**〈주요내용〉**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검사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수정 - 검사효율을 제고하고 기존 수입품의 검역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다. - 검역자가 검역문서를 신청 시 전자방식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 사전반출신고제도가 제품자료에만 국한되어 식품출처추적 시 필요 자료를 포함치 못해 기존 제5조 삭제 - 컨테이너 검역 조건 추가 - 사전통관 조건 추가 - 사전방출상품 신청 시 보증금액에 세금포함가격으로 수정 - 보증금 환불 조건 추가 - 검사 신청 의무인의 재검사 신청 기한에 대한 내용 정정 **〈수정사항〉** **제4조** 검사 신청 의무인은 아래문건을 구비해 검사기관에 검사신청 1.검사신청서(검사 신청 의무인은 식품약물관리서가 지정한 전자방식으로 신청), 2. 제품자료표, 3.수입신고서 사본, 4.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지정서류. 검사기관은 본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기타 필요문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신청 의무인은 회피·방해·거절할 수 없다. **제5조** 검사 신청 의무인은 검사기관에서 수입제품자료를 사전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발부한 동의서류를 가졌을 경우 제4조 규정의 검험신청 시 4조 1항 2·3번 문서를 면제한다. 검사기관이 발부한 동의 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 검험제품 신청 및 우선 심사신청 자료가 부합할 경우 검험기관은 동의서류를 폐기하며 1년 내 검사 신청 의무인의 신청을 정지시킴. **삭제** **제17조** 검사의 대조·샘플추출은 제품 보관장소에서 실시. FCL컨테이너 운송제품일 경우 집중검사구역·식품약물관리서 허가 특정구역에서 실시. 검사에 대해 검사 신청 의무인은 반드시 협조하며, 발취 샘플을 지정할 수 없다. 본 법 제51조 3항에 따라 식품 선행방출을 잠정 중단한 업체는 제품 샘플 발취가 어려운 경우 검사기관은 컨테이너 창고 입고 후 개봉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 2개 항목 검역시 의무인은 검역에 협력해야하며 샘플을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 검사기관은 테스트 기간을 5일 초과하며, 컨테이너장에서 샘플 발취가 어려워 부패·변질되기 쉬운 제품 또는 배로 화물을 운반해 부두에 제품 보관 장소가 없을 경우 검사 신청 의무인이 확약서에 보관책임 명시 후 사전반출통지서를 발급해 사전통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차수별 순차검사 제품은 계속해 잠정보관 **제19조의 1** 수입제품 신고·유기농 표기 제품은 유기농표기 동의자료 외 본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검역의무인은 확약서를 체결해 보관책임을 명시한 후 사전반출통지를 체결, 사전반입 진행 **제20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수입한 제품이 다음 상황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이전 조항 규정 부합여부를 심사 시, 보증금 납부를 지시한 후 사전반출서약을 허가 1. 강화차수 발취 검사 진행 2. 감시검사 진행 후 기간 내 검사결과가 규정에 어긋날 경우 3. 검사 신청 의무인은 '우선방출상품신청'이 3개월 초과되었으나 검사절차를 미완료했음에도 기타상품의 우선방출신청을 재신청. 이전 항목의 보증금액은 제품 세금포함가격의 2배이다. **제21조** 검사 신청 의무인의 납부 보증금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어음·수표·우편환으로 정한다. 제품이 검사규정에 부합하고 수입허가통지서를 취득하였거나 이미 검사불합격통지서를 취득했을 경우 제24조에 따라 처리. 제51조·3조 상황에 미해당할 경우 보증금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수입품이 검사규정에 어긋날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 불합격통지서를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발급. 검사 신청 의무인은 불합격통지서를 수령한 당일부터 15일 내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 횟수는 1번에 한하며, 기존 테스트 실험실에서 기존 추출 잔여 샘플로 진행 수입품 검사 결과, 규정에 어긋나거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잔여샘플은 재검사 신청기한 만료 후 소각 **제24조** 수입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 검사 신청 의무인이 다음 방법 가운데 하나에 따라 처리 1. 반송·소각 처리 2. 본 법 제17조·18조 및 제21조 1항을 위배한 경우 식품약물관리서에 기한부 소독·개조를 신청하거나 적절한 안전조치 시행 3. 라벨링이 본 법 제22조·24조·26조·27조·28조1항에 위배한 경우 식품약물관리서에 기한부 시정을 신청 검사 신청 의무인은 상기항목 가운데 2번·3번에 따라 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식품약물관리서는 심사동의 후 수입진행·제품개조·라벨링을 수정토록 한다. 수입품 검사 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미 사전반출서약을 한 제품도 검사 신청 의무인은 반송·소각 처리

자료 : 대만 재정부

10. 국제무역협정 체결 현황

체결 내역

○ 대만은 2017년 현재 20개 수교국 가운데 과반수가 중남미 수교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과 경제협력협정 타당성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체결 상황이다.

- 인도는 2013년 9월 민간 싱크탱크 내 타당성 연구팀을 마련해 공동 연구를 추진했으나 모디 정부 출범 후 연구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 인도네시아는 대만 정부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과 인도네시아 국가과학원(LIPI)이 2012년 12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말레이시아 역시 중화경제연구원과 말레이시아 아시아전략 및 리더십연구원(ASLI)이 2014년 3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만 무역협정 체결 내역▐

체결 국가	발효일	체결협정명칭
파나마	2014.1.1일	대만-파나마 FTA
과테말라	2006.7.1일	대만-과테말라 FTA
니카라과	2007.6.1일	대만-니카라과 FTA
엘살바도르	2008.3.1일	대만-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자간 FTA
온두라스	2008.3.1일	
중국	2010.9.12일	대만-중국 ECFA
뉴질랜드	2013.12.1일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 ANZTEC
싱가포르	2013.12.1일	대만-싱가포르 경제파트너협정 ASRTEP
파라과이	2017.7.12일(체결)	대만-파라과이 경제협력협정

자료: 대만 관무서

대만-파라과이 경제협력협정

○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7년 7월 12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 양국 간 교역규모는 작지만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및 제3국 시장인 남미공동시장의 FTA 체결국 등 진출기회 확보에 의미가 있다.
- 양국 2016년 교역액은 4, 754만 달러로 대만 전체 교역액의 0.009% 수준이다.
- 대만의 대파라과이 주요교역품목은 수출의 경우 플라스틱·방직·오토바이 부품 등 공산품이며, 수입은 소고기·수수·참깨 등 농산물 위주이다.

제2절 품목별 통관 제도

1. 관련 법규

수입규정

○ 대만은 중화민국 수입물품 분류표(中華民國輸入貨品分類表)에 의해 수출입이 이뤄진다.

- 대만의 품목별 통관은 수입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당기관에 검사를 마친 후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대만 내 시판이 가능하다.
- 수입 규정 URL : https://fbfh.trade.gov.tw/rich/text/fhj/asp/FHJP050Q.asp

○ 대만 CCC코드에 따른 물품 규정 검색 URL : fbfh.trade.gov.tw 〉 상품분류 및 수출입규정 시스템(貨品分類及輸出入規定系統) 선택

▌상품코드의 수입규정 분류 화면▐

자료: 대만 국제무역국

○ 수입규정은 일반적으로 3개의 숫자 혹은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이뤄진다.

▌식품 관련 주요 수입규정 ▌

규정코드	규 정 내 용
B01	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農業委員會) 동식물 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이 정한 '동·식물 검역 대상 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
F01	'식품 및 관련 제품수입검사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에 수입 검사 신청
F02	이에 속한 식품·식품기구·식품용기·포장·식품용 세정제 등은 '식품 및 관련 제품수입검사방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 신청
H01	위생복리부 공고에 따라 한약재의 수입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가 발부한 수입허가통지에 따라 수입 실시
MW0	중국지역 물품 수입 불가
W01	주류 수입은 재정부(財政部)·행정부 위생복리부의 '수입주류검사방법(進口酒類查驗辦法)'에 따라 재정부에 수입검사 신청
MP1	(1) 중국산 상품의 조건적 수입허가 규정인 '중국상품조건적수입허가 항목 및 수입관리법규정표'에 따라 실시 (1) '중국산 상품 조건부 허가항목·수입관리 법규정법'내 Mxx의 조건이 붙은 것은 국제무역국(國際貿易局)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한국산은 제외
114	북한 물품 수입 불가
442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의 동의문건 별도 첨부
451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동의문서를 첨부하거나 식량상업등기(업무종류가 수입을 포함)증명서 제출: 벼·현미는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동의 문서를 반드시 첨부
463	재정부가 허가한 담배 주류 수입업체 허가 자격증 복사본 및 재정부 동의 문서를 첨부·제출할 것 : 자가용 담배 주류는 수량이 제한 한도 이내 인 물품의 경우 제출을 면한다. (1) 일반 담배 : 1,000개, 시가렛 125개, 담배가루 5파운드 (2) 주류 : 5리터·벌크·용도가 불문명할 경우 수입업체는 생산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501	위생복리부의 동의문건 별도 첨부
502	건조제품 수입(뿌리삼 일 경우): (1) 약재상 판매 자격증이나 한의사 자격증(또는 행정원 위생복리부가 발부한 약품 제조 허가증) 복사본을 구비해 첨부 제출 (2)분말일 경우, 위생복리부가 발부한 약물허가증 복사본을 별도 첨부 (3) 화물명칭은 서류상 한약재 및 중문 약초명을 기재. 건품이 아닌 것은 상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11	타블렛형(알약형) 캡슐형 식물 제조품은 위생복리부에 '검사등록' 허가인증을 받은 후 식품 명의로 수입(허가 서류는 수입업체 본인이 신청하고 타업자는 사용 권한 없음) 샘플 증정품일 경우 위생서가 발부한 '식품(첨가물) 샘플 수입 심사 통지서' 제출

자료 : 대만 관무서

(참고) 수입식품 및 관련상품검사방법(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 〈부록 2 참고〉

○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 등 상품 수입 시 적용하는 위생안전·품질 검사

- 2001년 12월 14일 전문 24조 제정
- 2017년 8월 11일 수정

○ 주요 내용

- 수입업체·대리인은 물품의 항구 도착 전 15일 내 수입 항구 소재 담당기관에 검역 신청
- 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 1. 검역 신청서(검사 신청 의무인은 식품약물관리서가 지정한 전자방식으로 신청), 2. 수입식품 관련 자료, 3. 수입신고서 사본, 4.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지정 서류
- 수입신고상품이 동일 Lot(로트)의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물품 분류 코드·품명·성분·브랜드·제조상·생산지 등이 동일해야 한다. 수입 제품이 신선어류·냉동어류·새우·게·어패·연체류 등에 속할 경우 동일 Lot로 동시 검역 신청
- 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 방법을 단일 또는 혼용해 사용 : 1. 전수검사 : 해당 품목의 전수물량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 외관 및 라벨 심사, 샘플링 하여 지정 실험실 분석검사 실시 등을 모두 실시, 2. 발취 검사 : 수입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각 품목별 국가별로 지정(일반 발취 검사 : 2~10%, 강화 발취 검사 : 20~50%), 3. 현장심사 : 발취 검역품의 미 발취 상품에 대해 불시 현장 심사, 4 인증검사 : 중앙기관 및 수출국 수출제품의 위생 안전 관리 주관 기관과 협의서 또는 협의한 합격 증서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검역과 부합되는 협정서 또는 규정 협약된 규정의 문건을 검사, 5. 감시검사 : 검사신청 특정제품은 매 LOT 임시검사 또는 비정기 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검역 성적 우수 수입업자 식품의 검사면제 대상은 1.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품 품질관리 보고서를 제출, 심사비준을 거쳐 안건 등록을 허가 받았으며 1년간 일반차수 발취 검사를 진행해 10차수 연속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 2. 수입품을 1년간 일반차수 발취 검사를 실시해 20차수 연속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 3 수입품을 2년간 일반차수 발취 검사를 실시, 30차수 연속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이며,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한다.

2. 품목별 통관 제도

일반포장식품

○ 라면

- 인스턴트 면류는 고기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율은 20%이며, 수입 규정은 2가지 항목(F01·MW0)에 해당한다.

▌라면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23010107	인스턴트 면류 (고기 포함)	20%	F01 MW0
19023010205	인스턴트 면류 (고기 불포함)		

자료 : 대만 관무서

○ 과자류의 관세는 5~25%이며, 수입규정은 2가지(F01·MW0) 항목에 적용한다.

▌과자류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52000000	생강 과자 및 그와 비슷한 과자류	21%	F01 MW0
19053100007	단맛 과자류	25%	
19053200006	와플 및 얇은 과자류	17.5%	
19059030009	영유아 전용 과자류	5%	

자료 : 대만 관무서

건강보조식품

○ 건강보조식품 수입통관은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검험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查驗作業要點)」에 의해 통관시 검역이 이루어지며,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수입허가인증

- 특수영양식품·타블렛·캡슐 등 건강식품의 수입은 위생복리부의 수입허가인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검사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 수입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서, 수입신고서 복사본, 기타 위생안전기준에 필요한 서류
- 수입허가인증의 기한은 최장 5년이며 만기 3개월 전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연장 미완료 시 기존 허가증은 자동 소멸된다.

○ 인삼류

- 한국 인삼·홍삼(건삼) 관세는 1.5%이며, 가공제품은 첨가 성분·가공 방법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 주로 수입하는 인삼조제품은 대체로 아래 표와 같은 수입 코드로 수입하고 있다.
- 인삼·홍삼의 수입품목 분류는 뿌리건조인삼·홍삼(약재류로 분류(건삼)해 약재상 판매자격증 및 한의사 자격증 첨부를 통해 약재판매 및 수입자격이 주어지며 위생복리부에 한약재의 수입검역을 실시해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가 수입허가통지 발부 하면 수입 실시), 수삼(중국산 수입 규제 품목이며, 일반 농산품 수입방식으로 처리), 가공식품(수입식품검역 방법에 따라 수입), 캡슐형 알약류(건강식품류로 분류되어, 식품위생서에 검사등록, 샘플 송부 및 필요서류를 송부하여 수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인증은 5년에 한 번씩 재신청해야 한다.)

▌인삼 및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해당 제품	관세율	수입규정
12112020005	고려인삼·홍삼 (건삼류의 머리·뿌리 부분·분말)	뿌리인삼 및 100%분말	1.5%	502 B01 H01
12112090000	기타 인삼뿌리	기타 인삼뿌리	5%	
12119091914	기타 약용 신선 식물 및 재배용 식물 (종자·과실 포함)	수 삼	-	B01 F02
13021990003	기타 식물즙액 및 추출액 (기름 추출제외)	인삼·홍삼 농축액	5%	F01
17049000909	기타 당류 (백색 초코렛 포함, 코코아 불포함)	인삼 캔디류	27.5%	MP1 F01
20089991901	기타 방식으로 조제 ·보관되는 과실· 기타 식용할 수 있는 식물의 부분 (가당·무가당 구별치 않음)	홍삼·인삼 절편, 정과	20%	MP1 F01
21069099903	기재되지 않은 기타 식품 및 조제품	홍삼·인삼차	30%	MP1 F01
22029990309	인삼성분의 음료 (알코올 불포함)	홍삼톤, 인삼·홍삼 음료, 홍삼액	10%	F01
21069099208	캡슐 및 알약형 제품	홍삼 캡슐, 홍삼정환, 홍삼타블렛	30%	F01 511

자료 : 대만 관무서

사과·배 및 과일류

○ 사과 관련 제품의 관세는 15~26%이며 수입 규정은 신선 사과일 경우 F01(「식품 및 관련 제품수입검사방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 신청) 외에도 B01(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검역국이 정한 「동식물 검역대상 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에 해당하는 검역을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며 MWO(중국지역 물품 수입 불가)이다.

- 건조·탈수 사과와 무가당 냉동 사과는 수입 규정 F01만 해당

▌사과 관련의 제품 관세율▐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8081000002	신선 사과	20%	B01 F01 MW0
08133000001	건조 및 탈수 사과	26%	F01
08119031003	무가당 냉동 사과	15%	F01

자료 : 대만 관무서

○ 신선한 배의 관세는 종류에 따라 킬로그램당 NTD 49이거나 18%를 부과하며 수입 규정은 B01(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검역국이 정한 동·식물 검역대상 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F01(식품 및 관련 제품수입검사방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 신청), 중국산 물품 수입 금지에 해당하며, 기타 저장 배는 관세율 20%에 수입 규정 F01에 해당

▌배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8083090009	기타 신선한 배	NTD 49/kg	B01 F01 MW0
98180000004	제808309000호의 기타 신선한 배	18%	
20084000000	기타방식 제조 혹은 저장한 배	20%	F01

자료 : 대만 관무서

○ 배추의 관세율은 20%이며 수입규정은 B01(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검역국이 정한 「동·식물 검역대상 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F01(「식품 및 관련 제품수입검사방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 신청), 중국산 물품 수입 금지

▌배추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7049010008	신선한 배추 및 냉장 배추	20%	B01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

○ 마늘의 관세는 킬로그램당 NTD 27이며, 수입규정은 B01·F01 및 중국·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 식초·초산에 의해 조제된 마늘이나 캔류의 관세율은 25.5%이며, 수입규정은 F01 및 중국산 물품 수입 금지이다.

▌마늘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7032090007	기타 마늘(신선 또는 냉장한 것)	NTD 27/kg	B01, F01 MW0, 114
07129040002	건조마늘(전체·절개·분말·다진 마늘 포함)		
20019011101	식초·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마늘	25.5%	F01 MW0
20019011904	식초·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마늘·캔		

자료 : 대만 관무서

○ 파프리카의 관세율은 20%이며, 수입규정은 B01·F01이다.

▌파프리카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7096000001	고추류 및 단고추류의 과실(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01 F01

자료 : 대만 관무서

○ 김치의 관세율은 25%이며 수입규정은 B01·F01·MP1(중국산의 경우 조건별로 수입 가능) 등 3가지 이나 한국산 김치는 MP1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치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20059990996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채소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냉동 제품 제외)	25%	B01 F01 MP1

자료 : 대만 관무서

버섯류

○ 건조한 표고버섯의 관세율은 킬로그램당 NTD 369이며 수입규정은 F01 및 중국 제품 수입 금지(MW0)이다.

- 건조한 양송이·아카리쿠스·목이류·백목이·풀버섯·송로 등 관세율은 30%이며 수입규정은 목이류(MW0·중국 물품 수입 금지 및 F01)를 제외하면 F01 해당

○ 신선하거나 냉장된 버섯의 관세율은 24%이며, 수입규정은 B01·F01·MW0에 해당

▌버섯류 관련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7123920000	건조한 표고버섯	NTD369/kg	F01 MW0
07095190003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신선하거나 또는 냉장된 것)	24%	B01 F01 MW0
07095930008	송로(신선하거나 또는 냉장된 것)		
07095910002	표고(신선하거나 또는 냉장된 것)		
07095920000	풀 버섯(신선하거나 또는 냉장된 것)		
07095990103	새송이(신선하거나 또는 냉장된 것)		
07095990906	기타 식용버섯(신선하거나 또는 냉장된 것)		
07123110000	건조한 양송이	30%	F01
07123190003	건조한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		
07123200001	건조한 목이류		F01 MW0
07123300000	건조한 백목이		F01
07123910002	건조한 풀버섯		
07095110000	양송이(신선하거나 또는 냉장된 것)	24%	B01 F01 MW0
07123990005	기타 건조한 버섯류 및 건조한 송로	30%	F01

자료 : 대만 관무서

가금류

○ 삼계탕 제품의 관세율은 종류에 따라 10~20%이며, 수입규정은 B01·F01·MW0

▌삼계탕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6023220204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캔	20%	F01 MW0
16023220909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20%	B01 F01 MW0
21041011006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 육류(육류 20%이하)	10%	B01 F01
21041019008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육류 20%이하)	10%	F01

자료 : 대만 관무서

수산식품

○ 고등어의 관세율은 종류에 따라 25~30%이며 수입규정은 F01·MW0에 해당

▌고등어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3024400003	고등어(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NTD9.3/kg 또는 30% 중 높은 관세	F01 MW0
03028985007	기타 고등어(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03056940002	염장 고등어		
16041510009	조제·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또는 조각(간 것 제외), 냉동된 것		
16041590100	조제·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또는 조각(간 것 제외), 캔	25%	F01
03035400900	기타 냉동 고등어(대서양 고등어, 망치고등어, 참고등어)	NTD7.3/kg 또는 25% 중 높은 관세	F01 MW0
16041510009	건조 염장 혹은 침장 고등어 절편(단, 훈제되지 않은 것)	30%	
16041590100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간 것 제외), 캔	25%	F01
16041590903	기타 조제 또는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또는 조각(간 것 제외)		

자료 : 대만 관무서

○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2013.5.16.일부터 양식업 지원을 위해 미끼용 고등어 및 전갱이에 대한 단독 CCC코드를 신규 제정하고 관세율 인하 혜택을 줌.

- 현행 12%~50% → 변경 후 6%로 인하
- 수입·업체양식업자는 어업서의 자격심사를 거쳐 관세율인하동의서 및 자격증을 받으며, 우리기업은 자격증 소지 업체를 통해 수출 시 인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석반어 사료용 수입세칙코드 신규 제정▐

CCC 코드	품 명	일반 관세율	관세율 인하시	수입규정
03035400107	석반어 사료용, 냉동 고등어	NTD 75/kg 또는 25%	6%	442 MW0
03038984203	석반어 사료용, 기타 냉동 고등어	50%	6%	
03038985104	석반어 사료용, 기타 냉동 고등어류	30%	6%	
05119199102	석반어 사료용, 냉동 고등어 및 냉동 전갱이 (대서양 죽협어·병치매가리는 제외)	12%	6%	442

자료 : 대만 농업위원회 어업서(漁業署) 및 관무서

○ 오징어 관련 제품의 관세율은 제품에 따라 40~50%이고, 수입규정은 F01로 일부 제품은 중국 제품의 수입이 불가(MW0)하다.

▌오징어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03074221103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	NTD15/kg	F01
03074321102	냉동 오징어		
03074922105	건조 오징어	NTD219/kg 또는 50% 중 높은 관세	
03074922203	염장 오징어(훈제 제외)		
03074932005	훈제 오징어	40%	F01 MW0
16055410108	냉동의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16055410206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통조림		F01
16055410901	기타 조미·보존 처리된 오징어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

○ 김 제품의 관세율은 제품에 따라 10~25%이며, 수입규정은 F01로 구이·조미된 김은 중국 제품의 수입이 불가(MW0)하다.

▌김 관련 제품의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2122121208	건조 김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10%	F01
12122122001	냉동 김	15%	
20089950009	구이·조미된 김	25%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

(참고) 원양어선 어획 수산품에 대한 규정

○ 대만 해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상선·항공편으로 회수해 한국에 판매 시 국외 대사관·국가대표기관을 통해 대만 정부기관의 수입신고면제동의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한편, 대만 원양어선에서 어획한 수산품을 대만 내로 회수·판매할 경우 수입신고 면제

음료

○ 유제품의 관세율은 제품에 따라 6~26%로 상이하며, 수입규정은 501·F01·MW0·MP1 등으로 다양하다.

▌유제품 관련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19011000104	영·유아분유 및 영아 액체 유제품	5%	501 F01
19011000907	기타 여아 조제품	5%	F01
19019021004	조제분유, 5파운드 이하 포장품.	12%	
19019022003	기타조제분유	12%	
19019025000	조제 액체 유제품, 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함유	NTD15.6/kg	F01 MW0
19019026009	조제 액체 유제품, 미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미함유	26%	
19019027008	조제유	NTD15.6/kg	
19019029006	기타 유제품	25%	F01 MP1
19019030003	우유기초로 한 아이스크림용 혼합료	5%	F01 MW0

자료 : 대만 관무서

○ 주류의 관세율은 제품별로 면세에서부터 40%까지 다양하며, 수입규정 역시 제품별로 463·W01·MW0에 해당한다.

- 주류 수입은 「수입주류검사방법(進口酒類查驗辦法)」에 따라 재정부에 수입검사 신청
- 또한 통관시 재정부가 허가한 주류수입업체 허가자격증 복사본 및 재정부 동의문서를 첨부·제출해야 한다.

▌주류 관련 관세율 및 수입규정▐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22030000001	맥주, 기타맥아양조주	면세	463, W01
22042100005	기타 포도주, 2리터 이하 용기포장	10%	463 MW0 W01
22060010006	곡류주	40%	
22060020004	과일주	20%	
22089090115	미주 또는 미주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키거나 액화·당화·발효 증류 등으로 제작한 증류주	40%	
22089090197	기타 곡류주		
22089090204	기타 과일주		

자료 : 대만 관무서

제3절 통관 이슈 사례

1. 최근이슈

농축산품 수입할당제(額外關稅) 관련 초과물량 관세징수 사항

○ 대만은 2017년 1월 농축산품 수입쿼터 초과관세 징수에 대해 적용범위 및 기준가격을 세계무역조직농업협정 수정에 따라 재조정

○ 대만은 수량 제한을 위해 수입할당제(特別防衛措施)를 시행
- 2011년 12월 31일 제정 후 매년 개정 실시
-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해당제품의 누적 수입량이 기준량 초과 시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을 경우, 초과물량에 대해 기준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
- 해당제품은 땅콩, 동양배, 설탕, 마늘, 빈랑, 닭고기(닭다리, 닭날개, 기타 너겟류), 액체 형태 유제품(우유 포함), 다진고기 제품(가축류, 가조류), 팥, 표고버섯, 유자, 감, 말린원추리, 돼지옆구리살, 식용 쌀(곡물, 현지, 흰쌀, 쌀 제품) 등 15종

○ 부과 방법
- 누적수입량은 관세배분금액증명서를 첨부서·비관세배분증명서의 수입수량으로 하며, 운송방법에 따라 년도·세관시간 등에 의해 누적 계산
- 누적 수량이 기준 수량에 도달 할 때가 관세 계산의 시작점
- 한편, 관세분배증명서를 지참한자는 초과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여행객 소지품은 세관보고서 지참자의 신고서를 규정에 의해 누적수량에 기입. 수입신고서를 미지참하고 기준시점 이후 수입한 자는 초과관세를 지급해야 한다.
- 'G1(외국수입)신고서' 및 'D2(보세품을 보세창고서 수입)신고서'는 수입물량에 누계로 기입. 한편, 신고서 가운데 삼각무역물품·구금물품·포기물품·반품물품·국내물품 수입처리 복귀품(해관납세방법 코드 9091929471)은 제외
- 동일 시간에 세관신청량을 초과할 경우, 케이스마다 세관신고서 수입수량의 비율 계산은 초과관세 수량에서 면제. 동일 물품의 수량이 기준수량을 초과할 경우, 세금 신고서의 수량을 앞뒤로 계산해 초과 부분의 세금 납부
- 누적수입량은 대만 해관이 인터넷에 수시명시하며, 누적수입량이 기준량의 90%에 다다를때 수입상은 해관에서 요청한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시간을 확정해야 하며, 초과세금에 대한 부과를 고려해 세금 부과 후 물품을 인계받을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가 물품을 먼저

취득해야할 경우, 초과세금을 관세금액에 보증금으로 계산하여 납부 취득을 신청

- 수입상이 잘못 기입할 경우나 해관 규정의 세금규칙이 초과세금 물품의 항목일 경우, 해관 정정 시간을 기준으로 수입누적량 계산을 적용하며 기준수량물품에 도달했을 때 초과세금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세금한도는 원 지급 세금의 33.3%를 지급
- 세금 기간은 수입수량 기준에 기준점을 시점으로 매년 12월31일까지

○ 수입물량의 적용기준가격은 세계무역조직농업협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0~1992년간 평균 CIF/kg로 계산

- 부분 수입하지 않은 실적의 물품은 다른 국가의 CIF가격 및 대만 관세 등 외국 국가의 가격으로 예상한 것이다.

○ 관세법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의 세금납부완료가격을 계산 기준가격의 차액이 기준가격의 10%이상 일 시, 세계 무역 조직 농업 협정 제 5조 제5항의 규정으로 세금을 부과 하여야 하고 관세 배율 금액 증명서는 제외

- 여행객 소지 및 우체국 배송품의 수입신고서 지참 시, 초과관세 지급은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수입신고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제외

○ 세금 납부 한도

- 국내 환율로 계산한 수입가격 및 정의 기준가격의 차이가 기준가격보다 10% 작을 경우 초과 관세를 미지급 가능
- 수입가격 및 기준가격의 차이 금액이 기준 가격보다 10%·기준가격 보다 40% 작은 경우 차액은 10%의 부분 세금 30%의 초과 관세를 지급
- 차액이 40%를 초과 하면, 기준 가격보다 60% 작은 혹은 비슷한 분은 초과 기준차액을, 기준금액의 40%는 추가세금으로, 70%는 초과 관세 항목으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관세도 추가
- 차액이 60% 초과 하면, 기준 가격의 75% 작거나 혹은 비슷한 분은 초과 기준차액에서 60%는 추가관세로 지급하고 70%는 초과 관세로 지급
- 차액이 기준금액보다 75% 초과할 경우 차액의 75%는 부분과세로, 90%는 초과 관세로 지급하고 제2목 제3목 제4목의 초과 관세를 지급

▌2017년 농축산물 특별방위설비 종류 및 기준가격 ▌

항목		세칙코드	기준가격 (TWD/kg)
땅콩	껍질 있는 것	12023010, 12024100, 20081111, 20081191	11.8
	껍질 없는 땅콩, 땅콩파우더, 혼합땅콩	12023020, 120224200, 12089011, 12089021, 20081112, 20081192, 20081942	18.1
	땅콩오일	15081000, 15089000	25.9
동양 배		08083090	54.0
마늘		07032010, 07032090, 07129040	9.7
빈랑		08028000	50.0
닭고기	닭다리·닭날개	02071311, 02071411, 02109912, 169023210	30.0
	기타 닭고기류	02071100, 02071200, 02071319, 02071419, 02109919, 16023220	9.7
유제품(원/ml)		04011010, 04012010, 04014010, 04015010, 04029910, 04011020, 04012020, 04014020, 04015020, 04029920, 04029992, 04039029, 04039040, 04039059, 04039090, 18069053, 18069055, 19019025, 19019027	17.0
팥		07102910, 07133200, 11061010, 200479010, 20055110, 20055910, 20060011, 20060025	14.4
표고버섯		07123920	302.15
유자		08054020	10.4
감		08107000	23.4
말린 원추리		07129050	13.7
돼지 옆구리살		02031911, 02031991, 02032911, 02032991	30.0
식용 쌀	잡곡	10061000	6.0
	현미	10062000	7.0
	백미	1063000, 10064000	8.0
	쌀 제품	11029011, 11029019, 11031930, 11032010, 11041910, 11042920, 11081910	9.0

주 : 기준가격은 1990~1992년 평균 수량(Kg)의 CIF가격이며, 부분 무수입실적제품은 근접 국가의 CIF가격 등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자료 : 대만 관무서

▌2017년 농축산물 특별방위설비 종류 및 기준가격▐

품목		평균소비량 ('13~'14년)	평균수입량 ('13~'14년)	시장 점유율 (%)	기준률 (%)	소비변동율 ('14~'15년)	기준수량
땅콩류		64,949.2	6,633.2	10.21	110	-7,508.3	6,964.9
동양 배		133,024.3	9,623.7	7.23	125	-7,559.7	10,104.9
마늘		54,550.8	4,513.8	8.27	125	-9,909.9	4,739.5
빈랑		119,348.2	14.3	0.01	125	-8,360.6	15.0
닭고기	닭다리 및 닭날개	283,071.4	142,403.6	50.31	105	38,608.4	178,004.5
	기타닭고기류	211,122.9	1215.5	0.58	125	-3,654.9	1,276.3
유제품 (원/ml)	신선우유	315,697.4	14,582.4	4.62	125	11,599.6	18,228.0
	기타 형태	97,611.7	8,233.9	8.44	125	29,907.6	10,292.4
다진 고기	가조류	40,986.2	429.8	1.05	125	-3,828.0	451.3
	가축류	120,117.8	22,247.7	18.52	110	6,155.1	27,809.6
팥		13,307.9	2,580.4	19.39	110	1,754.9	3,225.5
표고버섯		5,243.9	167.7	3.20	125	-72.0	176.1
유자		75,163.2	0.2	0.00	125	-8,866.2	0.2
감		65,765.4	30.7	0.05	125	-11,826.4	32.2
말린 원추리		340.9	8.0	2.35	125	-8.6	8.4
돼지 옆구리살		69.362.9	10,989.9	15.84	110	3,252.0	13,737.4
식용 쌀		1,208,586.4	134,553.5	11.13	110	2,465.1	150,474.0

주 : 1. 기준 수량=전3년평균수입량*기준량+최근 년도의 소비변동량

2. 농업협정 제5조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으며 기준수량은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25이다.기준수량은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05배보다 낮을 수 없다. 땅콩, 동방배, 마늘, 빈랑, 기타 닭너겟, 가조류 다진 것, 표고버섯, 유자, 감, 말린 원추리 등은 3년간 평균량의 1.05배 원칙으로 조정 계산. 닭다리 및 날개, 유제품, 가축 다진 것, 팥, 돼지옆구리살 등은 국내소비량 미포함 계산 산출법이다.

3. 땅콩기준수량은 껍질이 있는 땅콩으로 계산하며, 기타(알맹이 땅콩, 땅콩파우더, 작은 땅콩, 땅콩오일은 누적수입량으로 계산. 땅콩관련 제품의 비율법은 해관수입세칙 제98조 주석3에 정한 계산법으로 처리

자료 : 대만 관무서

○ 우리기업은 매년 조정되는 수입쿼터량 및 기준가격을 숙지해 새로운 제도에 따라 수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사이트 URL : 관무서 홈페이지로 이동

- https://web.customs.gov.tw/cp.aspx?n=A5C28AD214C3FD7C

일본·네덜란드·스웨덴 소고기 수입 개방 예정

○ 2017년 7월 17일 대만은 일본·네델란드·스웨덴산 소고기의 수입개방 초안 발표
- 공고번호 : 部授食字 第1061301743號
- 일본·네덜란드·스웨덴산 소고기는 관련 위생증명를 제출하거나 수입가능 공장명단에 포함할 경우 대만 내 수입이 가능해질 예정

○ 대만은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발생국인 일본·네델란드·스웨덴산 소고기 전면 수입 금지 조치
- 우종시(吳宗熹) 식품약물관리서 식품조 과장은 "대만 내 광우병 발생이 점차 줄면서 미국·캐나다·호주 등 국가의 소고기 수입을 이미 재개방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같은 정부방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2017.7.18일자 대만 일간지 연합일보)
- 한편 현재 대만 내 시판 중인 소고기의 90%는 수입산

○ 수입 조건
- 대만이 허가한 수입 소고기 및 그 제품은 일본(네델란드·스웨덴)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소이거나, 해당 국에서 출생 후 사육한 지 최소 100일 이상인 소에 한한다.
- 일본산은 30개월 이하의 소, 네덜란드·스웨덴은 12개월 이하의 소로 제한
- 일본후생노동성 등록기준(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서·스웨덴 국가식품관리서등록기준)에 부합, 정기 감독 및 검사 계획을 유지, 대만이 허가한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공장 또는 시설 명단 변경 시 일본후생노동성(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서·스웨덴 국가식품관리서)이 공익재단법인 일본대만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네덜란드 무역투자사무소, 스웨덴 무역투자사무위원회 타이베이사무소) 또는 기타 일본(네덜란드·스웨덴)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해 공장·시설의 제품 수출 전 대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 수의사의 관리 아래 도살 전후 검사를 진행, 일본(네덜란드·스웨덴) 법규에 부합해야하며, 수의사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소의 연령·출생지·사육지 등 정보, 도살 과정에서 고압기체·가스 등으로 뇌 충격요법·골통과 천자법, 도살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s)·기계적 회수육(MRM)·기계적 분리육(MSM)·소머리/척주서 습득한 선진 회수육(ARM)·30개월 이상 된 소 조직·기타부위 등 사항

○ 대만 식품 방사선 안전 관리제도 관련 규정
- 특정위험물질은 모든 연령의 소고기의 회장 말단 부위 및 편도선, 30개월 이상 소의 머리·골·눈·삼차신경절·척수·척주(꼬리뼈·흉추가로돌기·허리뼈가로돌기·엉치뼈날개 미포함)와 후로신경절, 일본(네덜란드·스웨덴) 법규에 규정된 소의 부위 등을 표기한다.

○ 대만 수입 시 각 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 자료 내 포함해야 할 사항

- 소 출생지·사육 본거지
- 제품명칭(품종 포함)
- 최종 가공 공장의 포장 수량·중량
- 도살장·육류공장·저장설비 등의 명칭·주소·공장번호
- 도살일자·가공일자(일/월/년)
- 발송인·수취인 성명·주소
- 수출 증명 발급 일자·지역·기관
- 검시 수의사 성명·서명
- 컨테이너·seal 넘버
- "The beef is derived from cattle that were less than 30 months of age(본 소고기는 30개월 연령 이하의 소입니다)"·"The beef is derived from cattle that were slaughtered in establishments certifited by the MHLW(NFA, NVWA) as eligible to export beef to Taiwan and that passed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a MHLW veterinarian.(본 소고기는 일본 후생노동성(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서·스웨덴 국가식품관리서)의 허가로 대만 공장 수출가능 및 일본후생노동성 수의사 감독 하에 도살 전후 검사를 통해 생산) 등 문구

○ 광우병 문제 발생 시 일본 후생노동성(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서, 스웨덴 국가식품관리서)은 주대만 일본(네덜란드·스웨덴)대표부 또는 공익재단법인일본대만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네덜란드 무역투자사무소·스웨덴 무역투자사무위원회 타이베이사무소)를 통해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등에 통지해야 하며, 신규 발생 건의 조사 결과와 식품안전관리설비의 감독을 보강해야 한다. 신규 발생국의 소·관련 제품의 전세계 동물 위생 광우병 위험등급이 내려갈 경우, 각 국의 신규 발생 건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만 내 수입 신청을 중지하며 실지 검사를 진행한다.

○ 대만의 수입 제한 규정

- 대만으로 수입하는 일본(네덜란드·스웨덴) 공장·설비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본 후생노동성(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서, 스웨덴 국가식품관리서) 또는 기타 기관를 통해 엄중한 식품안전 위법 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대만으로 통보하거나 관련 공장 ·설비 생산제품이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 만약 즉시 미통보·미관리해 對 대만 수출을 할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서, 스웨덴 국가식품관리서) 허가 인증공장에서 개정·예방 설비 관련 문건을 대만에 제출하기 전에는 관련 공장 제품 및 소고기의 수입 신청 접수를 정지한다.

- 실지검사 결과가 엄중한 위법일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서·스웨덴 국가식품관리서)은 대만 당국의 통지를 받아야 하며, 각국 담당기관이 인정한 공장의 개선·예방조치에 대한 문건을 제출하기 전까지 대만 수입 신청 접수를 정지한다.
- 세관 수입 검사원은 검사 신청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업자에게 정정문건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향후 한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가능성에 대비해 대만 소고기 수입 규정 및 개방 방식을 사전 검토·참고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사이트 URL : 관무서 홈페이지로 이동
- https://www.fda.gov.tw/tc/site.aspx?sid=221

식품 체계성 검사 폭 확대

○ 기 식품체계성검사의 검사대상 범위 확대·원산지 증명 추가 보강 등 내용을 더욱 상세히 분류
- 기존 법안은 2014년 2월에 제정·발표했으며 2017년 8월 최신개정안 발표·시행
- 개정 전 검사대상을 육류제품 위주로 제한했으나, 개정 후 수산품·유제품을 포함시켰다.

○ 수입 식품에 실시하는 식품체계성검사는 수출국의 식품위생관리·감독 조치가 대만과 동등한 수준인지 확인하며, 수출국 수입 신청에 동의한다는 의미
- 검사절차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대만 검사기관에 신청→ 대만 검사기관의 서류 심사→ 필요시 수출국에 검사 인원을 파견하는 실지검사 진행→ 평가검토 후 수입 신청 최종 승인

○ 수입식품체계성검사실시방법(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 수정안
- 제1조 : 본 방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근거·제정
- 제2조 : 본 방법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체계성 검사 : 수출국(지)의 식품위생안전관리시스템·정부기관의 감독조치에 대한 검사
  - 검사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서면심사 : 수출국(지) 정부기관이 제공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정부기관이 감독·처리한 자료 등 검사
  - 실지(實地)검사 : 수출국(지)에 검사원을 파견해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체계성 검사실시
- 제3조 : 검사 실시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체계성검사 실시 범위▐

분류	제품 내용	참고사항
육류제품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번호(HS코드 02, 0504, 1601, 1602에 해당하는 제품	- HS코드 02, 0504, 1601, 1602에 해당하는 제품 가운데 수입규정 F01·F02인 제품 - 양서류·파충류·영장류·수생포유동물류 등 기타 축산동물류 및 관련 제품은 체계성검사 범위에 미포함
수산품	HS코드 03, 1604, 1605에 해당하는 제품	- HS코드 03, 1604, 1605 해당제품 가운데 수입규정 F01·F02인 제품 - 해당 제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
유제품	HS코드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9806에 해당하는 제품	- HS코드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9806 해당제품 가운데 수입규정 F01·F02인 제품 - 해당 제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
기타 소 관련 제품	광우병(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국의 육류 제품이 아닌 기타 소 관련식품은 체계성검사 대상에 불포함	- 체계성 검사 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1. 단백질을 미포함한 소 기름 및 기타 파생물 2. 단백질·유지질의 탄산수소칼륨 미포함한 것 3. 소 가죽 등 4. 소 가죽으로 제조한 젤라틴·콜라겐 5. 광우병 미발생국의 소 관련 제품·관련 원료나 기존 광우병 발생국의 원료 체계성 검사가 완료된 경우 원료 원산지증명 및 제품위생안전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자료 : 식품위생관리서

- 제4조 : 체계성 검사는 수출국(지) 정부기관이 대만 검사기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검사기관은 서면 심사를 진행. 필요시 서면 심사 후 실지검사를 진행하며 평가검토를 통해 식품위생관리 체계성 및 정부기관 감독 조치가 대만과 동등한 효율성이 있는 지 확인 후 수출국의 수입 신청에 동의. 검사기관이 진행 전 서면 심사 시, 심사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국(지) 정부기관에 지정기한 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제5조 체계성 검사를 완료한 수출국(지) 또는 제7조에 의해 체계성 검사가 면제 대상인 경우 아래 상황에 속하면 검사기관은 서면·실지검사를 재진행
  - 수출국(지)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 및 정부기관 검역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 수출국 내 주요 식품위생 안전사건 발생 시
  - 수출국(지)의 상품이 대만·기타 국가의 수입검사 시 엄중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체계성검사 면제 또는 3년 이상 실지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수출국(지)의 식품·관련 제품이 유해식품위생안전 문제로 인정된 경우
- 제6조 실지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수출국(지)에 제한기간 내 개선보고서를 제출, 대만 검사기관이 심사. 필요 시 개선 상황에 대한 재실지검사를 진행. 이 경우 수출국(지)이 재심사비용 부담

- 제7조 체계성검사 제품 가운데 이번 법안 실시 이전 수입 기록이 있는 경우, 기존 수입 범위 내 체계성검사 신청을 면제

○ 우리기업은 대대만 수출 희망식품의 체계성검사 대상 포함여부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규 참고 URL :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로 이동
-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732

식품 내 독성화학물질관리·사용관리사항 공고 수정

○ 대만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는 식품첨가물로 불법 사용된 13종 화학물질을 식품안전문제 발생 가능 독성 화학물질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
- 2017.09.26일 공고

○ 대만 환경보호서는 최근 몇 년 간 식품 내 불법 화학첨가물로 인한 식품안전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13종의 식품 안전 발생 가능 물질을 제 4류 독성 화학 물류로 분류지정
- 관련 화학물질을 대만 내 제조·판매·수입시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야한다.

○ 주요내용
- 신규 지정한 독성화학물질은 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 무수말레인(Maleicanhydride), 덜신(dulcin), 브룸산칼륨(potassium bromate), 디메틸푸마레이트(DimethylFumarate), 벤질바이올렛(benzylviolet), 메타닌엘로(Metanil yellow), 로다민비(rhodamine B), 디메탈옐로(dimethyl yellow), 롱갈리트(Rongalite), 멜라닌(melanin), 쿠마린 (Coumarin), 말레산 (Maleic acid) 등 13종이다.
- 독성화학물질 관리 외 용기 외표장에 중문으로 “식품에 사용금지(禁止用於食品)”라고 명시하며, 표기면적은 용기 혹은 외포장 크기에 35%이상이어야 하고 표기 글자색과 바탕색이 대비돼야 한다.

○ 우리기업은 대대만 식품 수출 시 지정 화학물질의 첨가여부 검사 실시 필요
- 한편 관련 식품 수출시 강력한 주의를 요한다.

○ 관련 법규 참고 URL : 환경보호서 독성화학물질국 홈페이지로 이동
- https://www.tcsb.gov.tw/cp-93-314-03487-1.html

제3장 검역 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관리 법률체계

관리체계

○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 대만 내 식·의약품 및 관련 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 감독

○ 경제부 표준검험국(標準檢驗局)
- 경제부 산하 국가 최고의 검역기관으로 대만에서 제조·생산·가공하는 제품과 수출입 상품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
- 검사가 필요한 제품은 표준검험국이 정한 규격에 부합해야 수출입 및 시판가능

○ 농업위원회(農業委員會)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동식물 및 관련 제품의 방역과 검역체계를 구축해 대만 반입 가능 동식물·관련 제품의 역병충해를 감지하고 해외로부터의 전염병을 예방
- 대만 내 지룽(基隆)·신주(新竹)·타이중(台中)·가오슝(高雄) 등 4개의 분국(分局)과 10개의 검역소에서 검역 집행

▌식품약물관리서, 표준검험국, 동식물방역검역국 로고▐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經濟部標準檢驗局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 Inspection, M.O.E.A, R.O.C.

行政院農業委員會 動植物防疫檢疫局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법률체계

○ 법적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동식물방역검역법(動植物防疫檢法),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담배주류관리법(菸酒管理法) 등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위생·안전·품질관리법으로 음용 식품과 그 식품의 재료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

○ 행정법규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植物防疫檢疫法施行細則)」
- 「대만수입식물/식물제품 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隻五或中華民國植品檢驗規定)」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進口檢驗作業規定)」
- 「수입식품검사방법(輸入食品檢驗辦法)」
- 「수입식품검사작업규정(輸入食品檢驗作業規定)」

2. 세관과의 관계

세관은 수입화물 통관 시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 징수 및 통관을 관리 감독

○ 수입식품 중 동·식물검역이 필요한 화물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검역 진행 → 행정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국 주관 하에 표준검역국에서 수입화물의 내용·규격·라벨링 등 사항을 검사 → 세관은 검역검험기관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통관 결정

3. 검역범위

검사대상

○ 수입식품·식품첨가물·식품조리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 등
- 식품 가운데 동식물·관련 제품 검역이 필요할 경우 해당 법규에 따라 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사기관

○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 수입식품에 관한 전권 위임
- 홈페이지 URL : www.fda.gov.tw

4. 수입식품 검역

법적근거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검험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검역내용 : 제품의 성분·규격의 해당 위생기준 부합 여부

검역범위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중앙위생기관에 의해 식품·식품첨가제·식품조리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재·식품용 세정제 등을 수입식품 검사 대상으로 지정

검사방식

○ 수입식품 검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 현장검사는 문서·일반·강화검사 등 3가지 방식으로 제품별로 검역을 실시하는 샘플의 양이 다른다.
- 실험실검사는 일반·강화·전수검험 등 3가지 방식으로 역시 제품별로 검역을 실시하는 샘플량은 상이

○ 문서검사는 각 항목의 성분, 첨가물, 내용물, 유효일자, 생산국, 수입상 자료, 영양표기 등 확인

▌대만의 수입식품 검역방식 분류▐

종 류		내 용
1	문서검사	검사면제 제품의 식품기본 자료표 등 관련 문서 조사(위생증명, 검역증, 성분, 라벨링 등)
	일반검사	제품 가운데 2~10%를 대상으로 샘플을 선정해 현장검사
	강화검사	제품 가운데 20~50%를 샘플로 선정해 현장검사
2	일반검험	제품 가운데 2~10%를 대상으로 샘플을 선정해 실험실 검사
	강화검험	제품 가운데 20~50%를 샘플로 선정해 실험실 검사
	전수검험	각 배치별 샘플을 선정해 실험실 검사 (검사신고 의무인이 실험실 검사비용 지급)

자료: 관무서

○ 샘플링 검사 및 등록
- 수입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각 품목별·국가별로 지정

○ 전수검사 과정
-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15일 이내에 수입항 소재 담당기관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 집행기관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을 채취하여 당국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
- 실험보고서의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면 수입식품 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불합격자는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받는다.

○ 같은 신고품목 명단에 있는 식품은 한 개의 배치로 검사를 실시(중앙위생기관의 관제관리 하에 있거나 불합격 기록자는 제외)
- 포장재질이나 용량이 달라도 제품분류범주·품명·브랜드·제조공장·원산지·성분이 같은 제품
- 어패류 가운데 살아있는(活) 제품, 신선제품, 냉장제품·연체류 등 4종은 1가지로 간주

제출서류

○ 검험신청서(검사 신청 의무인은 식품약물관리서가 지정한 전자방식으로 신청)

○ 식품의 기본자료표

○ 수입신고서 사본

○ 기타 중앙위생당국이 요청한 서류(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은 수입검역신청서, 검역증명서 제출)

검사절차

○ 식품약물관리서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검역은 관련 서류 제출 후 필요한 검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면 제품 특징에 따라 샘플을 선정해 검사 진행
- 규정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검역 신청서·수입식품 관련 자료·기타 관련 사항이 미비해 검역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충 통지를 받았으나 기간 내 추가 보충하지 않은 경우 검역기관이 신청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재검사 과정

- 검험 불합격의 개선조건 확인 당일부터 15일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1회로 제한
- 재검사는 동일 실험실에서 남은 표본으로 실시

▌수입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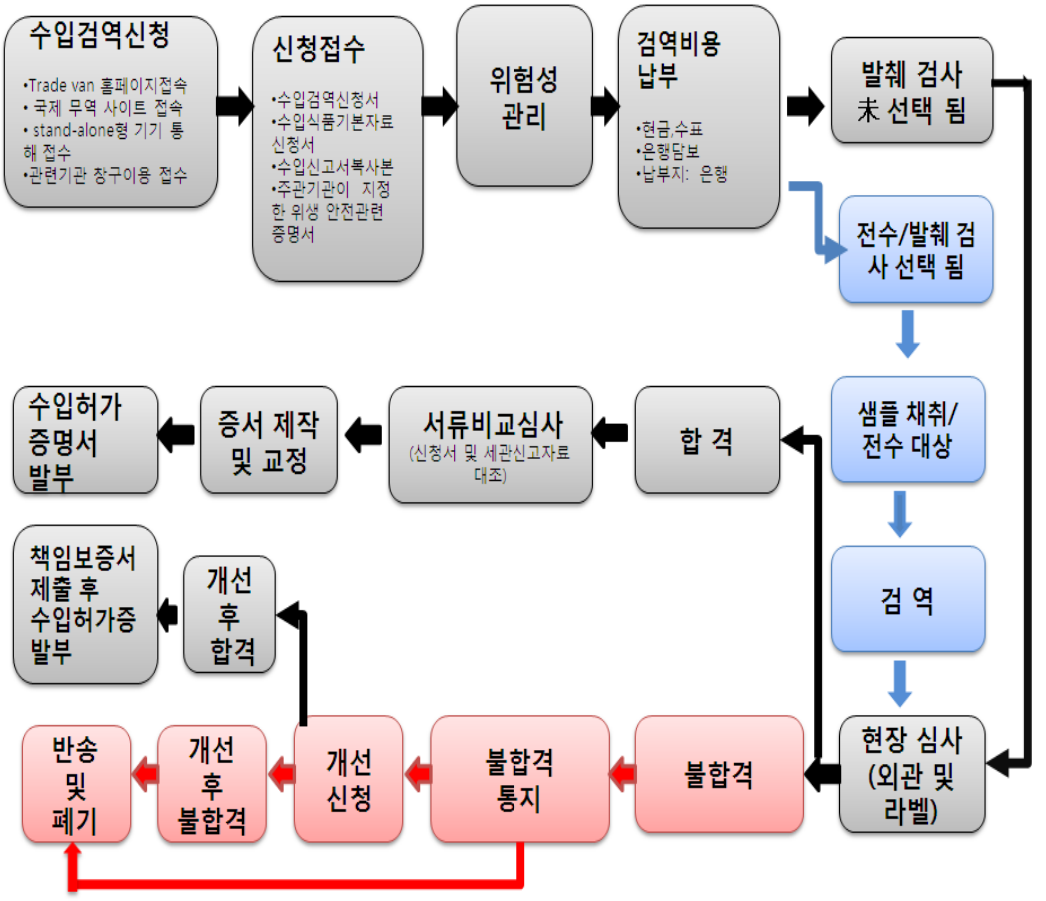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소요비용

○ 검험비용 종류는 조사비, 현장검사비, 연장조사비, 통지서 발급비, 온라인 전송 자료 수정비, 검사비로 구성

- 지급비용법(規費法) 제10조 1항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검험비용기준(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規費收費標準) 규정에 따라 산출
- 조사비 : 서류 검사비용
  - 밀·보리·옥수수·대두 조사비 : 수입품 CIF가격의 0.05%
  - 식품·식품첨가물·식품조리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재·식품용 세정제 조사비 : 수입품 CIF 가격의 0.15%. 최소 검사비는 300NTD이며 조사비가 10만NTD 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 현장검사비 : 1인이 1개 장소를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회당 500NTD이며, 근무시간 외와 공휴일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
- 연장조사비 :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외 시간 작업 시 1인당 400NTD, 휴일(오전 6시 ~ 오후 10시) 작업 1인당 1,000NTD , 야간 22시 00 ~ 익일 6시 작업시 1인당 2,000NTD
- 통지서 발급비 : 수입식품 및 상관제품의 허가통지서 발급비용으로 재발급·수정발급·추가발급 등 제반비용 포한다. 1부당 100NTD
- 온라인 전송자료 수정비 : 수정 내용 변경 등재 및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허가 통지서 1통 발급비용, 1건당 100NTD
- 검험 검역비: 검험 해당제품의 실험실 검역항목비·재검·배치별 검험비용으로 검사항목에 따라 총비용 책정. 일반 검험비(외관·평균중량·중량차이·분해·산도)는 2,300NTD, 감별비 3,800NTD , 순도측정비 4,900NTD, 함량측정비 15,100NTD

제2절 동·식물 검역

1. 관련 법규 및 일반사항

관련 법규

○ 동물및동물제품수입검역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 수입식물및식물제품 검역규정(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육가공제품포함수입검역조건(含肉加工產品之輸入檢疫條件)

검역내용

○ 제조·생산국의 전염병 유무, 제조공장 적합성, 가공제품의 가열처리·포장방법 등

제출서류

○ 동물검역 시
- 동물검역증명서(수출국의 정부기관 발행)
- 세관 수입신고서
- 선하증권 복사본
- 기타 서류

○ 식물검역 시
-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의 정부기관 발행)
- 선하증원(B/L)
- 기타서류 : 세관수입신고서 복사본, 영수증, 포장명세서

검역과정

○ 수입 동식물제품의 검역은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지정한 도착 항구·역·지정검역소에서 집행
- 수입품의 수입자나 대리인은 검역물이 항구나 역에 도착하면 검역을 신청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동·식물 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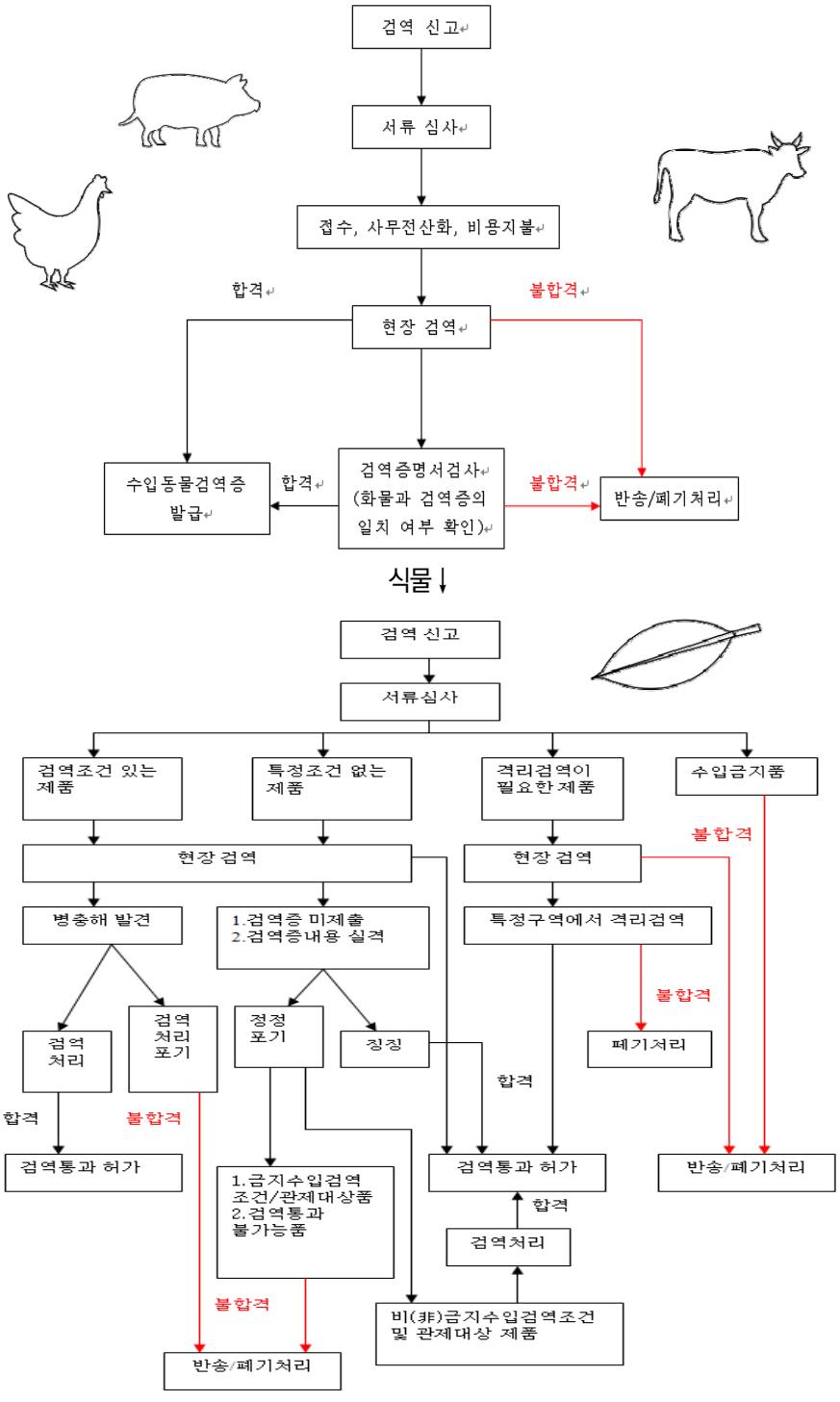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위반시 재제조치

○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은 반송·폐기처리 한다.

○ 검역결과 후 역병충해가 발견될 경우 수입 금지 및 처벌 조치한다.

○ 신고 대상 검역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객이나 승무원도 대만 입국 시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2. 검역규정 변동사항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

○ 식품약물관리서는 매년 대만 수입품목 가운데 채소·과일의 잔류농약 허용량 위반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9월 25종 채소·과일 품목에 대해 8종의 잔류농약 기준 수정
- 세부 내용은 별도 첨부('잔류농약허용기준' 참고)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5조 1항 5목 규정에 의해 위반 시 6만NTD~2억NTD(한화 218만~73억원 상당) 이하의 벌금형 조치에 처하므로 우리기업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용 약품 잔류기준 개정

○ 식품약물관리서는 식품으로 사용하는 육류·가금류 잔류 의약품 기준 수정을 2017년 8월 16일 공고
- 근거법규는 식품위생안전관리법 제10조·15조로 실시세칙인 동물용약품잔류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3조 내용 수정

○ 동물용 약품의 잔ㄹ허용기준 8개 항목 변경
- (약품명) Altrenogest : 돼지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등 4개 부위 약물 잔류허용량을 제정
- Buserelin : 돼지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등 4개 부위 약물 잔류허용량을 제정
- Dinoprost : 소·돼지·말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등 4개 부위 약물 잔류 허용량 면제
- Etiproston : 돼지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등 4개 부위 약물 잔류허용량 면제
- Flumequine : 거북류(龜鼈類)의 근육상 동물용 약품 잔류허용기준량 지정
- Oxibendazole : 돼지·소·양·염소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및 소·양·염소의 젖(乳)등 19개 항목의 약물 잔류 허용량 지정

- Oxytocin : 가축류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및 가축 젖(乳) 등 동물용 약품 잔류허용기준량 면제
- Tricaine methanesulfonate : 어류의 근육(껍질 포함)상 잔류허용량 지정

▌동물용 약품 잔류기준 수정 내용▐

약품명	잔류부위	동물종류	잔류 허용량(ppm)
Altenogest	근육	돼지	0.001
	간, 신장		0.002
	지방		0.004
Buserelin	근육	돼지	허용량 면함
	간, 신장		
	지방		
Dinoprost	근육	소, 돼지, 말	허용량 면함
	간, 신장		
	지방		
Etiproston	근육	돼지	허용량 면함
	간, 신장		
	지방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

○ 위생복리부는 식품안전을 더욱 강화코자 2017년 11월 15일 개정안을 발표
- 식품업자의 제품 및 제품 원재료 출처 관련 문서의 일정기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 법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 첨부('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안_20171115' 참고)

○ 식품업자는 제품 원재료나·반/완제품의 영수증과 같은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 위반 시 위생복리부는 기한을 주고 개정을 명령하며, 미이행 시 3만~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 상황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영업 중지 및 회사/상업/공장 등기사항·식품업자 라이선스 등 폐지 조치. 폐지한 라이선스는 1년간 재등록 신청 불가

○ 2016년 7월 1일부터 형법(刑法) 개정안 실시로 몰수·과징금·배상 등 규정 사용 불가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관련 규정 개정
- 제49조의 1, 본 법의 범죄는 범죄의 추적 범위·금액을 사실상 시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산해 인정하며, 추산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3절 품목별 검역제도

1. 육류

신선 육류 위생기준(生鮮肉品類衛生標準)

○ 가금류와 가축을 대상으로, 약물잔류량·농약잔류량·특징·라벨 규정 등을 지정

○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이물질, 기타 이상 등 기준사항 미검출

○ 식품관리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냉동육류·냉동내장류 역시 식품보관방법·조건을 라벨에 명시

▌신선 육류 위생기준 내용▐

항목 분류	신선·냉동 육류	신선·냉동 내장류
약물 잔류량	「동물용의약품잔류량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에 의거	
농약 잔류량	「농약잔류량제한기준(禽畜產品中殘留農藥限量標準)」에 의거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육류·가금류의 중금속 함량 기준(牛羊豬及家禽可食性內臟重金屬限量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습윤 중량을 포함한 납의 함량이 0.5ppm 미만으로 규정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 대만은 가축·가금류 등 식품 관련 동물에 사용하는 약품을 엄격히 관리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은 표기에 사용한 마커를 포함하여 식품에 남아있는 잔류 의약품과 의약품의 대사 검사

- 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중앙주관기관은 동물용의약품잔류 안전량 기준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년 제정
- 15조 제1항 5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 잔류량이 안전기준 위반시 제조·가공 등 제한

2. 농산물

농산품 잔류농약 허용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축·수산품을 제외한 식품의 잔류농약은 기준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이 법안은 2008년 10월 제정·발표했으며 2017년 6월 총 6,498개 항목으로 수정한다.
- 허용량 및 실측 잔류농약량은 시판형태의 중량을 산출기준으로 한다.
- 잔류농약의 검역은 농약 자체 및 함유하고 있는 대사산물을 포함한다.
- 각 식품에 따라 농약 허용치는 0.007~100ppm이다.
-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홍콩 FDA 식품약물관리서의 소비자 지식복무망(http://consumer.fda.gor.tw/Law/Pesticide List. aspx? node ID=5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중금속 제한 기준(蔬果植物類重金屬限量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소·과일·허브류 등 식품의 잔류 중금속은 기준에서 정학 수치 이하여야 한다.

- 이 법안은 2011년 5월 제정·발표했으며 2016년 2월 최종 수정

▌농산물중금속제한기준 ▐

농산품 분류	카드뮴	납
엽채류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배추속 채소류 및 브로콜리류	0.05 ppm 이하	0.3 ppm 이하
뿌리채소류	0.1 ppm 이하	0.1 ppm 이하
인경채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줄기채소	0.1 ppm 이하	-
박과 및 과실 채소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콩류 및 콩과 채소류	0.1 ppm 이하	0.2 ppm 이하
대두 및 땅콩	0.2 ppm 이하	-
딸기류 및 소형과일	0.05 ppm 이하	0.2 ppm 이하
감귤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사과 및 배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농산품 분류	카드뮴	납
견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메론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기타 아열대 과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허브 및 향신료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버섯류	3 ppm 이하	2 ppm 이하

주 : 쌀의 중금속 허용치는 수은 0.05ppm이하, 카드뮴 0.4ppm이하, 납0.2ppm이하이다.
자료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한국 신선과일·채소 수입검역 조건(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 식물방역검역법 제14조에 따라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일부 식품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대만 내 수입이 가능하다.
- 이 법안은 1999년 4월 제정·발표했으며 2016년 10월 27일 최신 수정

○ 주요 내용
-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병충해 검역
-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 운송 시 홍콩·마카오·싱가폴·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 발생국을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o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다음과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1) 완전 밀폐식 포장,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한다.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시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자를 열어선 안 된다.

-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해 수출 전에 브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시 본 검역조건은 무효
-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한국 신선과일의 對 대만 수입시 검역 필수 병충해▐

과일명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 사항
수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사과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를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Frakliniella occidentalis	
배	Carposina sasakii	
	Frakliniella occidentalis	
	Ditylenchus dipsaci(Kuhn)Filipjev)	
복숭아	Carposina sasakii	
	Frakliniella occidentalis	
딸기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
	Ditylenchus dipsaci	-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
참외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포도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레몬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
	Unaspis yanonesis	-
밀감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
	Unaspis yanonesis	-
감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석류	Frakliniella occidentalis	-

주 : 주요 병충해의 한국명칭은 서양꽃 삽주벌레(Frakliniella occidentalis),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줄기선충(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화살깍지벌레(Arrow head scale;Unaspis yanonesis)이다.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

▌한국 신선채소의 대대만 수입시 검역 필수 병충해 ▌

채소명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인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2010.10.1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옥수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7.10.27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2010.9.6일
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8.15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2017.10.27일
호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10.1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2017.10.27일
시금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10.1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당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잎이 달린 경우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Frakliniella occidentali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2010.10.1일
브로콜리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9.6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오이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年9月6日
마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2010年5月6日
느타리버섯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2009.8.14일
파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9.6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마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9.6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양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9.6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고추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10.1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채소명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가지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10.1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Phthorimaea operculella(Zeller)	2017.10.27일
토마토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9.6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사탕무	Phthorimaea operculella(Zeller)	2017.10.27일
아스파라거스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7.10.27일

주 : 주요 병충해의 한국명칭은 서양꽃 삽주벌레(Frakliniella occidentalis),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줄기선충(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화살깍지벌레(Arrow head scale;Unaspis yanonesis)이다.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

3. 수산물

수산물의 위생기준(水產動物類衛生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수산물의 최대 중금속 허용치 기준에 부합해야 대만 내 수입이 가능

- 이 법안은 2009년 11월 제정·발표했으며 2013년 8월 최종 수정
- 대만은 수산물에 메틸수은·카드뮴·납 등 3가지 중금속의 허용치 지정

▌대만의 수입 수산물 중금속 허용치▐

수산물명칭	중금속 분류		
	메틸수은	카드뮴	납
고래, 상어, 황새치, 참치, 심해어	2 ppm	0.3 ppm	0.3 ppm
줄비늘치, 가다랑어, 쌍각류, 대서양 메기, 아귀, 돔, 숭어, 가오리, 갈치, 고등어, 참다랑어, 장어, 창꼬치어	1 ppm		
그 외 어류	0.5 ppm		
조개류	0.5 ppm	2 ppm	2 ppm
두족류(내장 제외)	0.5 ppm	2 ppm	1 ppm
갑각류	0.5 ppm	0.5 ppm	0.5 ppm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해조류 식품위생기준(藻類食品衛生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해조류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식용해조류 위생기준(食用藻類衛生標準)을 폐지하고 2013년 8월 해조류식품위생기준 제정

- 변경 후 관리 범주를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남조·녹조·갈조·홍조류 등 제품으로 확대
-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중금속 제한량·페오포바이드(pheophorbide) 제한량 규정

▌해조류 식품위생기준 초안 내용▐

조 문
제1조 본 표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한다.
제2조 본 표준은 식용 가능한 남조류, 녹조류, 갈조류 및 홍조류 등 식품에 적용된다.
제3조 해조류 식품의 미생물 제한량은 식품 형태(신선 또는 가공 등)에 따라 「일반식품위생표준(一般食品衛生標準)」 「생식용식품류위생표준(生食用食品類衛生標準)」 또는 「생(生)·숙(熟)식혼합즉석식품류위생표준(生熟食混合即食食品類衛生標準)」으로 적용한다
제4조 해조류 식품 중금속함량은 아래 제한 표준량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 페오포바이드(Pheophorbide) 제한량

종 류 / 항 목	녹조류	남조류
기존 페어포바이드	60mg/100g	50mg/100g
총 페어포바이드(기존 페어포바이드+엽록소분해활성도)	80mg/100g	100mg/100g

(비고)

1. 본 표는 수분함량 7% 이하의 녹조류 및 남조류(건조량 기준)에 적용되고 신선식품 및 홍조류, 갈조류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2. 「mg/100g」은 100g 당 제품 중 기존 페어포바이드 또는 총 페어포바이드의 함량을 가리킴

제6조 본 표준은 공포일부터 시행 된다.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한국산 조개류 수입시 위생증명서 첨부

○ 식품약물관리서는 2016년 3월 21일부터 한국산 조개류에 대하여 한국 위생주관기관 발행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한다.

- CCC코드 기준 총 38개 항목의 조개류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대만, 조개류 항목 분류 및 품명▐

CCC코드	품명
03071190008	Otheroysterslive, freshorchilled
03072100005	Scallops (include full shell fish and compoy), live, fresh or chilled
03073100101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live
03073100209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fresh or chilled
03076010112	Apple snail(Pomacea canaliculata, Pomacea insularum)
03076010194	Other snail, live, other than sea snails
03076010201	Snail, fresh or chilled, other than sea snails
03077120000	Ruditapes philippinarum, live, fresh or chilled
03077130106	Hard clam, (Meretrix lusoria, Ruditapes variegatus, Paphia amabilis, Tapes literatus), live
03077130204	Hard clam, (Meretrix lusoria, Ruditapes variegatus, Paphia amabilis, Tapes literatus), fresh or chilled
03077190103	Clams (include cockles and ark shells), live
03077190210	Giant clams (tridacnidae spp.), live
03077190229	Giant clams (tridacnidae spp.), fresh or chilled
03077190906	Clams (include cockles and ark shells), fresh or chilled
03078121007	Other abalone, live, fresh or chilled, other than Haliotis diversicolor
03078122104	Abalones (Haliotis diversicolor), live
03078122202	Abalones (Haliotis diversicolor), fresh or chilled
03079130102	Top shell, live
03079130200	Top shell, fresh or chilled
03079170103	Locos, live
03079170201	Locos, fresh or chilled
03071910007	Oysters, frozen, but not smoked
03072910005	Scallops (include full shell fish and conpoy), frozen, but not smoked
03073910003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frozen, but not smoked
03076020003	Snails, frozen, other than sea snails, but not smoked
03077911003	Ruditapes philippinarum,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2002	Arcoida (Acridae),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3001	Clams (Solenidae, Solecurtidae),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4000	Hard clam (Meretrix lusoria, Ruditapes variegatus, Paphia amabilis, Tapes literatus),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9103	Giant clams (tridacnidae spp.), frozen, but not smoked
03077919906	Other clams, cockles and ark shells, frozen, but not smoked
03078911001	Abalone, frozen, other than Haliotis diversicolor, but not smoked
03078912000	Haliotis diversicolor,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1003	Arcoida (Glycymerididae, Limopsidae),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2002	Clams (Cutellidae),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3001	Top shell,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4000	Locos, frozen, but not smoked
03079945009	Conch, frozen, but not smoked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4. 유아식품 및 유제품

영아식품 위생 및 잔류농약 안전허용량 기준(嬰兒食品類衛生及殘留農藥安全容許量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15조에 따라 12개월 이하 유아의 분유·시리얼·콩으로 제조한 보조식품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아식품위생표준(嬰兒食品類衛生標準)'에서 명칭을 변경해 2014년 7월 제정

○ 주요 내용
-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변색·악취·이취·오염·곰팡이·기생충 등 포함하지 않을 것
- 총 일반세균수는 1g당 50,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대장균류 검출불가
- 호르몬·항생제·방사능 물질·농약·아플라톡신 등 오염물질과 혼합 금지
- 중금속 제한량은 납 0.02ppm·주석 50pp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잔류농약은 농약검사기준에 따라 0.01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샘플이 0.01ppm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함(최대검사정량)

유제품 위생기준(乳品類衛生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우유·유제품의 위생기준을 1987년 2월 제정하였으며 2013년 8월 최신 개정

○ 유제품의 종류를 액상우유·분유·연유·가미액상우유·크림·버터로 분류하고 제품의 상태·산도·일반세균수·대장균수·병원성대장균수·식품첨가물 등 기준을 제시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기준▐

유제품 종류		상태	산도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MPN/g)	병원성대장균수(MPN/g)	식품첨가물	비고
액상우유	유지방·저지방·탈지우유	- 부패·변색·악취·이취가 없어야 한다. - 살균우유는 응고나 침전이 있으면 안 된다.	0.18% 이하	50,000 이하	10 이하	음성	첨가 불가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검출 불가
	살균 우유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에서 7일간), 표준 저장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음성	-		

유제품 종류		상태	산도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MPN/g)	병원성대장균수(MPN/g)	식품첨가물	비고
	영양 강화 우유			50,000 이하	10 이하	음성	영양첨가제 -와카세인 첨가 가능	
분유	전지·탈지·조미·조제 분유			50,000 이하	10 이하	음성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부합	
연유	무당·가당 전지·가당 탈지연유			50,000 이하	10 이하	음성		
가미액상우유	가미우유			50,000 이하	10 이하	음성		
	살균가미 우유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에서 7일간), 표준 저장 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음성	-		
크림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버터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5. 음료 및 식수

음료류 위생기준(飮料類衛生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우유·유제품의 위생기준을 2007년 7월 제정했으며 2013년 8월 최신 개정

○ 주요 내용

-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물의 품질은 식수수질기준(飮用水水質標準)에 부합해야 한다.
-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차 및 코코아·기타 카페인 함유음료로 구분하고 지정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 기준▐

분류	내 용
커피	낮은 카페인 함유량의 커피는 카페인 함량 기준치 2 mg/100 mL(20pp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차와 코코아	카페인 함유량이 50mg/100mL(500 ppm)을 초과하지 않고, 낮은 카페인 함유량으로 분류한 것은 2 mg/100 mL(20pp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기타 카페인 함유 음료	카페인 함유량 32 mg/100 mL(320 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음료는 비소·납·구리·주석·안티몬 등 중금속의 최대 허용치를 준수해야 한다.

▌음료의 중금속 허용량▐

	중금속 분류				
	비소	납	구리	주석	안티몬
허용량(ppm)	0.2	0.3	5.0	150(캔제품류)	0.15

주 : 신선·농축 과일쥬스·야채쥬스는 제외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탄산음료·살균처리하지 않은 생과일 및 야채즙·환원 과즙 또는 야채즙(퓨레)·발효과즙 또는 야채즙·커피/코코아/차/씨리얼/콩 포함 음료·유제품을 포함한 산성음료 등은 일반세균·대장균·병원성대장균·살모넬라 등 미생물 허용치를 준수해야 한다.

▌음료의 미생물 허용치▐

음료 분류	일반세균수 (cfu/mL)	대장균수 (MPN/mL)	병원성대장균수 (MPN/mL)	살모넬라
탄산음료	10_4이하 (포장 시 100 이하)	10 이하 (포장시 음성)	음성	음성
생과일즙·생야채즙(살균처리 무)	-	10_3이하	10 이하	
환원 과즙·환원 야채즙·퓨레	10_4이하 (포장 시 200 이하)		음성	
발효 과즙·야채즙	-	10 이하 (포장 시 음성)		
커피·코코아·차·씨리얼·콩 등을 포함한 음료	10_4이하 (포장 시 200 이하)			
유제품을 포함한 산성 음료	-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식수 수질기준(飮用水水質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소비 목적으로 포장한 식수의 위생기준을 1998년 2월 제정했으며 2009년 9월 최신 개정

○ 주요 내용
- 식수의 제조에 사용한 원천수는 '식수를 위한 원천수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브론산염의 최대허용치는 0.01ppm이다.
- 식수내 대장균·분원성 연쇄 상구균·녹농균 등 미생물은 음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 식수는 비소·납·아연·구리·수은·카드뮴 등 중금속의 최대 허용치를 준수해야 한다.

▌식수의 중금속 제한량▐

	중금속 분류					
	비소	납	아연	구리	수은	카드뮴
허용량(ppm)	0.01	0.05	5.0	1.0	0.001	0.005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6. 주류

수입주류 검험관리방법(進口酒類查驗管理辦法)

○ 주류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2004년 1월 7일 '담배주류관리법(菸酒管理法)'을 발표하고, 이후 수입주류와 관련한 제39조 3항을 추가

○ 담배주류법 제39조 7항에 의거해 수입주류는 위생기준에 따라 중앙기관의 검역에 부합해야 대만 내 수입 가능
- 2005년 7월 '수입주류검험방법'을 제정하고 2015년 5월 '수입주류검험관리방법'으로 명칭을 변경, 2016년 1월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재정부 국고서(國庫署)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샘플링·검역은 경제부 표준검역국이 진행
- 검사항목은 메탄올·납·이산화황 등 포함 여부
- 검험신청서류는 신청서, 세관 수입신고서(복사본), 수입제품 자료 보고표, 원산지 증명서, 기타 검험이 필요한 서류
- 검험비용은 CIF가격 화물가치의 0.1%(각 배치별 적용)이며, 각 배치별 최소 검사비용은 200NTD, 최대 검사비용은 50,000NTD

▌항목별 검험비용 기준▐

	항목 분류					
	메틸알코올	납	이산화황	식염	방부제	방사능
금액(NTD)	2,500	2,000	2,000	1,000	5,000	2,000

자료 : 재정부 국고서

주류 위생기준(酒類衛生標準)

○ 담배주류관리법 27조 1항에 따라 주류의 첨가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 6월에 제정·발표하였고 2015년 12월 수정

○ 주요 내용

- 메틸알콜의 용량은 주류에 따라 규정(소주·맥주는 리터당 1000mg이하)
- 주류의 리터당 납 허용치는 0.3mg 이하
- 주류의 첨가물은 유독하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것을 포함하면 안 되고, 식품이나 음료에 한 번도 사용한 전례가 없거나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음

▌잔류 첨가물 허용치▐

잔류 첨가물 분류	내 용
sorbic acid	과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2g 이하
benzoic acid	알콜도수 18%이하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4g 이하
색소	주류에서 리터당 Lutein잔류량이 10mg 이하
Surfur dioxide	과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4g 이하, 맥주와 곡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03g 이하, 다른 주류에선 검출불가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7. 중약재(한약재)

관리기관

○ 중약재의 검역은 행정원 위생복리부와 중의약위원회(이하 중의약위원회) 협의 하에 경제부 표준검험국에 위탁해 집행

- 검험신청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서 접수하고 표준검험국이 중의약위원회가 발표한 CCC코드·검험기준·검험항목·검험방법에 따라 검역 진행

수입 중약재 관련 검험규정(中藥材輸入檢驗作業規定)

○ 약사법 제 71-1조에 따라 2012년 8월 수입한 중약재 가운데 검사 실시 품목 지정

○ 주요 내용

- 검험방식은 인삼·서양삼·황달·호황달·방풍·진피·귤피·황귤피만 서류심사를 하고 기타 중약재는 포장·외관·라벨링을 포함한 일반검사와 서류검사를 병행
- 검험신청서류는 검험신청서, 세관수입신고서(복사본), 중약상 자격증(복사본),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급)
- 검험비용은 상품검역수수료및비용방법(商品檢驗規費收費辦法)에 따라 수입화물 CIF가격의 0.15%. 배치별 최소비용은 200NTD, 100,000NTD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해당 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중약재의 수입검역 항목(中藥材邊境查驗之檢驗項目及基準)▐

<table>
<tr><th rowspan="3"></th><th rowspan="3">중약재명</th><th colspan="9">검험항목 및 기준</th><th rowspan="3">이산화황
(ppm)</th></tr>
<tr><th colspan="4">중금속(ppm)</th><th colspan="2">아플라톡신 (ppb)</th><th colspan="3">농약(ppm)</th></tr>
<tr><th>비소</th><th>납</th><th>카드뮴</th><th>수은</th><th>총량</th><th>아플라톡신 B1</th><th>BHC</th><th>DDT</th><th>PCNB</th></tr>
<tr><td>1</td><td>홍대추
(중약재용포함)</td><td rowspan="2">3.0</td><td>5</td><td>1.0</td><td rowspan="18">0.2</td><td>10</td><td>5.0</td><td>0.2</td><td>0.2</td><td rowspan="10">-</td><td>400</td></tr>
<tr><td>2</td><td>두충</td><td>15.0</td><td rowspan="4">1.0</td><td rowspan="9">-</td><td rowspan="9">-</td><td rowspan="9">-</td><td rowspan="9">-</td><td rowspan="3">150</td></tr>
<tr><td>3</td><td>복령·방형 복령· 복령껍질</td><td>5.0</td><td rowspan="8">5.0</td></tr>
<tr><td>4</td><td>복신</td><td>3.0</td></tr>
<tr><td>5</td><td>천궁, 궁궁</td><td rowspan="4">5.0</td><td rowspan="3">400</td></tr>
<tr><td>6</td><td>백출</td></tr>
<tr><td>7</td><td>백작약</td><td>0.3</td></tr>
<tr><td>8</td><td>지황</td><td>1</td><td rowspan="2">150</td></tr>
<tr><td>9</td><td>황귀, 홍귀</td><td>3.0</td><td>0.3</td><td>10</td><td>5.0</td><td>0.9</td><td>1.0</td><td>1.0</td></tr>
<tr><td>10</td><td>당귀·서귀각·소귀미·박미각편</td><td>5.0</td><td>1</td><td>-</td><td>-</td><td>-</td><td>-</td><td>-</td><td>400</td></tr>
<tr><td>11</td><td>감초</td><td>3.0</td><td>0.3</td><td>10</td><td>5.0</td><td>0.9</td><td>1.0</td><td>1.0</td><td rowspan="6">150</td></tr>
<tr><td>12</td><td>계피·실론계피의 껍질과 줄기</td><td>3.0</td><td>15.0</td><td>1.0</td><td rowspan="7">-</td><td rowspan="7">-</td><td>0.2</td><td>0.2</td><td rowspan="7">-</td></tr>
<tr><td>13</td><td>계피·실론계피의 기타부분</td><td>3.0</td><td rowspan="5">5.0</td><td>1</td><td rowspan="6">-</td><td rowspan="6">-</td></tr>
<tr><td>14</td><td>시호</td><td rowspan="4">5.0</td><td>1</td></tr>
<tr><td>15</td><td>황금</td><td>1</td></tr>
<tr><td>16</td><td>반하</td><td>1</td></tr>
<tr><td>17</td><td>우슬(회우슬)</td><td>1</td><td>400</td></tr>
<tr><td>18</td><td>천우슬, 두우슬</td><td>3.0</td><td>10</td><td>-</td><td>150</td></tr>
</table>

	중약재명	검험항목 및 기준									이산화황 (ppm)
		중금속(ppm)				아플라톡신 (ppb)		농약(ppm)			
		비소	납	카드뮴	수은	총량	아플라톡신 B1	BHC	DDT	PCNB	
19	대황	5.0	5.0	1							
20	인삼(길림인삼·고려인/홍삼·동양인/홍삼·기타 인삼뿌리)	3.0		1.0				0.9	1.0	1.0	
21	서양삼			1		-		-	-	-	
22	황달	5.0		1							
23	호황달	3.0		1							
24	방풍	5.0		1		10	5.0	0.2	0.2	-	
25	진피	3.0		1							
26	황귤피·귤피	3.0		1				-	-		

자료 : 위생복리부 중의약사(中醫藥司)(2017.1.5.일 수정)

▌중약재의 수입시 검역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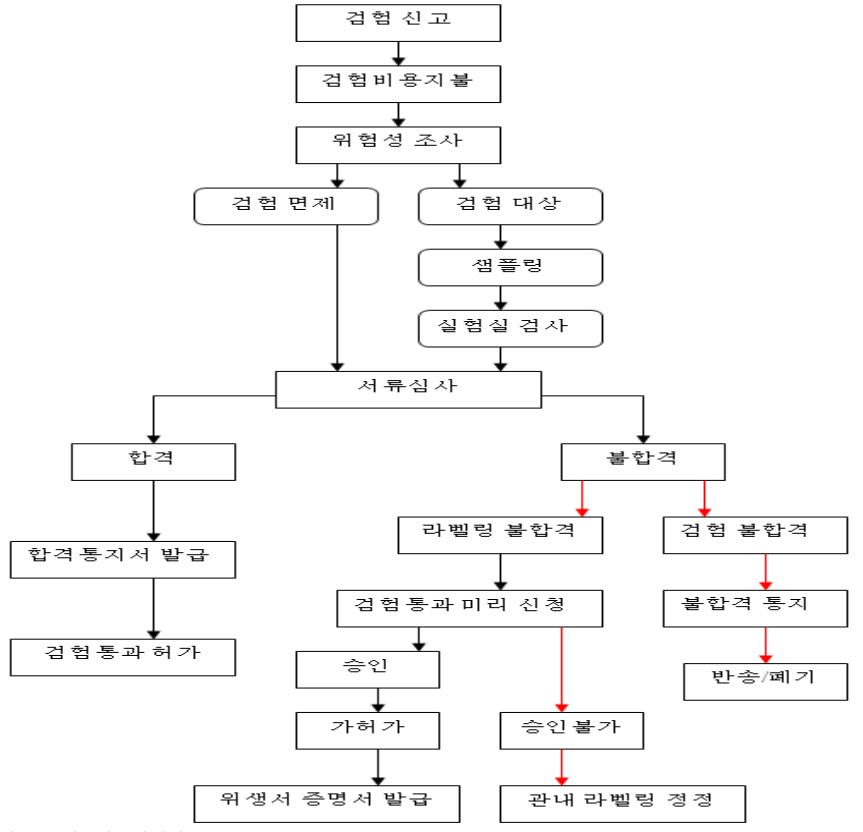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8. 일반 가공식품

일반식품 위생기준(一般食品衛生標準)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기타 특별 규정에 속하지 않는 일반식품의 위생기준이다.
- 2007년 12월 제정·발표했으며 2003년 8월 개정한다.

○ 주요 내용
- 식품은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변색·악취·이취·오염·곰팡이·기생충 등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미생물 제한치는 준비처리 없이 제공하는 일반식품의 경우 대장균·병원성 대장균수에 대해 미생물 제한치를 마련한다.

▌일반식품의 미생물 제한량▐

제품 분류	대장균 수 (MPN/g)	병원성 대장균수 (MPN/g)
준비처리 없이 제공하는 일반식품(세정·탈피·가열·조리처리 등)	103 이하	음성
준비처리 후 제공하는 일반식품(세정·탈피·가열·조리처리 등)	-	-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식품 중진균독 제한기준(食品中真菌毒素限量標準)

○ 식품위생안전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식품에 함유한 아플라톡신(Aflatoxin)·오크라톡신(Ochratoxin A)·파툴린(Patulin)·시트리닌(citrinin)의 제한치를 마련
- 2009년 12월에 제정했으며 2013년 8월에 최신 개정
- 식품 내 아플라톡신은 식품별로 15ppb~0.5ppb이하로 제한

▌식품 내 아플라톡신 허용량▐

식품 분류	아플라톡신 허용량(아플라톡신 B1, B2, G1, G2 포함)
땅콩·옥수수	15 ppb 이하
쌀·콩류·고량(高粱), 맥류·견과류	10 ppb 이하
식용 기름과 지방	
우유	0.5 ppb 이하 (아플라톡신M1)
분유	5.0 ppb 이하 (아플라톡신M1)
기타 식품	10 ppb 이하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내 오크라톡신은 쌀·맥류와 로스팅한 커피빈·커피분말에 5ppb이하로 제한

▌식품 내 오크라톡신 허용량▐

식품 분류	오크라톡신 허용량
쌀·맥류	5 ppb 이하
로스팅한 커피빈과 커피분말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내 파툴린은 사과쥬스와 사과쥬스를 포함한 혼합음료에 50ppb이하로 제한

▌식품 내 파툴린 허용량▐

식품 분류	파툴린 허용량
사과쥬스와 사과쥬스를 포함한 혼합 음료	50 ppb 이하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 식품 내 시트리닌은 붉은 누룩(홍국·紅麴)의 형태별로 2~5ppm 이하 또는 200ppb이하로 제한

▌식품 내 시트리닌 허용량▐

식품 분류	시트리닌 허용치
붉은 누룩 색소	200 ppb 이하
홍국미	5 ppm 이하
홍국을 원료로 사용해 제작한 식품	2 ppm 이하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냉동 식품류 위생기준(冷凍食品類衛生標準)

○ 식품위생안전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냉동식품 대상 위생기준을 법제화
- 1987년 5월에 제정했으며 2013년 8월에 최신 개정

○ 주요 내용
- 식품은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변색·악취·이취·오염·곰팡이·기생충 등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냉동식품 분류별 위생기준은 식품 상태에 따라 일반세균·대장균·병원성대장균·휘발성염기질소(VBN)의 식품 내 함유 기준량을 마련했다.

▌냉동식품 내 미생물 허용량▐

<table>
<tr><th>식품 분류</th><th>일반세균수
(CFU/g)</th><th>대장균수
(MPN/g)</th><th>병원성대장균수
(MPN/g)</th><th>VBN 측정량
(mg/100 g)</th></tr>
<tr><td>냉동선어개류
(냉동식용어개류 제외)</td><td>300만 이하</td><td>-</td><td>10 이하</td><td>25 이하
(판새류는 50 이하)</td></tr>
<tr><td>냉동식용어개류</td><td>10만 이하</td><td>10 이하</td><td>음성</td><td>15 이하</td></tr>
<tr><td>냉동과일류</td><td>10만 이하</td><td rowspan="3">-</td><td rowspan="3">10 이하</td><td rowspan="3">-</td></tr>
<tr><td rowspan="2">냉동야채류</td><td>10만 이하 (즉석 식품)</td></tr>
<tr><td>300만 이하 (조리 후 섭취)</td></tr>
<tr><td>기타 냉동 즉석제품
(조리 불필요)</td><td>10만 이하</td><td rowspan="2">10 이하</td><td rowspan="2">음성</td><td>-</td></tr>
<tr><td>기타 냉동 제품
(조리필요)</td><td>10만 이하
(냉동 전 열처리 한 것)</td><td rowspan="2">15 이하</td></tr>
<tr><td>냉동 즉석제품
(조리 불필요)</td><td>300만 이하
(냉동 전 열처리 하지 않은 것)</td><td>-</td><td>500이하</td></tr>
</table>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제4장 라벨링 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관련 및 법률체계

관리체계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건강식품·유기농식품·수입식품·약물 등을 포함한 시중 유통 식품·식품용기·식품기기·식품세정제 등 대만 국민의 건강 및 위생 관련 분야를 총괄해서 관리한다.

- 수입식품의 검역은 식품약물관리서가 표준검역국에 업무를 위탁해 이행한다.

법률체계

○ 식품안전위생 관련 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시행세칙(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 식품첨가물사용범위및제한함량규격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수입식품 검역 관련 법규

- 수입식품 및 관련상품검사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輸入食品檢驗作業要點), 수입유기농산품및유기농산가공품관리방법(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品加工品管理辦法)

○ 라벨링 관련 법규

- 시판포장식품영양표기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시판포장식품영양광고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2. 식품 라벨링 기준 개황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 1975년 식품·약물의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안전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제정했다.
- 2014년 12월 안전한 식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법규명칭을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으로 수정하고 식품첨가물 등 관리 법규를 추가했다.
- 2017년 11월 최종 수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내 용어
- 식품 : 사람에게 음식 및 씹는 용도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원료
- 특수영양식품 : 영아 및 유아의 분유 및 특정 질병의 처방 식품이나 기타 정부기관에서 허가한 특수 영양 수요자의 처방 식품
- 식품첨가물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 식품제조용제, 영양강화제, 항산화, 기타 불가피한 목적에 의해 식품에 첨가·접촉하는 물질
- 식품 도구 : 식품·식품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포장제품
- 식품용기·포장 : 식품·식품첨가물이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물
- 식품용 세정제 : 소독 및 세정제품, 식품기구, 식품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업자 : 식품·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식품기구, 식품용기의 포장, 세척제 제조, 가공, 수입, 수출 혹은 판매업자를 말한다.
- 표기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척제, 식품기구, 식품용기 및 포장에 기재하는 품명 및 설명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의 설명서
- 영양표기 : 식품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 영양소
- 검사 : 실사 및 검역
- 유전자 조작 : 유전자 공학 및 분자생물기술을 사용한 것. 유전자 이식 혹은 이식 세포, 생물체의 유전자 재배합 현상. 전통적인 발육 방식 및 원생물체의 융합, 잡교, 체외수정, 체세포변이, 염색체 증가 기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라벨링 표기 및 품질안전관리 범위
- '용기·포장식품'이란 고정 밀봉되어 원 상태로 장기간 보존 가능한 식품
- '고정 밀봉 포장'은 미개봉 포장식품으로, 이미 개봉한 식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별도로 표기·관리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위반 기준

○ 식품·식품첨가물이 해당 상황인 경우 제조·배합·포장·운송 저장·시판 등 불가
- 변질·부패 식품
- 미숙성·인체 건강 위해 식품
- 유독성·인체 건강 물질 발견 식품 (최근 10년간 발생된 광우병 또는 신종 플루 광우병이 발병된 지역의 쇠고기 및 성장촉진제(베타-아고니스트)가 검출된 육류 등을 포함)
- 전염병 감염 생물·유행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
- 잔류농약·동물용 약품 함량이 안전기준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 방사선 오염 물질이나 방사선 오염 물질 함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식품
- 위조 식품
- 유효기한이 지난 식품
- 인체 무해증명을 거치지 않은 식품
- 유관기관의 미인증 첨가물을 첨가한 식품

3. 식품 라벨링 기준 관련 상세규정

식품 라벨링 표기사항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식품원료의 용기·외포장 상 중문·통용부호로 아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 품명
-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첨가물원료' 글자 기입
- 식품첨가물 명칭 : 2종 이상의 혼합첨가물일 경우 구분해서 표기. 표기는 제18조 1항 규정에 의거, 품명·중앙주관기관의 공고에 따른 통용명칭을 사용
- 중량·용량·수량
- 제조기업 또는 대만 담당기업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대만기업 명칭만 표기할 경우 제조기업·위탁제조기업·수입기업 명칭·전화번호·주소를 관할 기관에 신고
- 유효기간
- 사용범위, 용량기준 및 사용제한 사항
- 원산지(국)
- 유전자 개조식품의 첨가물 원료

-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사항 : 식품첨가물 외포장에 반드시 '제품등록번호'를 표기(예:TFA000000000000), 규정위반시 3만 대만달러~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제품 전면 회수, 수입 이후 추가 라벨링은 인정치 않는다.
- 식품첨가물원료는 식품첨가물의 향료성분, 표기 준수사항 예외

○ 라벨링 표기 예외사항 별도 규정(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3조)
- 용기나 외포장의 면적·재질·기타 특수 사항으로 인해 전항 규정대로 표기할 수 없는 식품은 주관담당기관이 일부 표기에 대하여 면제를 공고하거나, 기타방식으로 표기

○ 식품첨가물의 라벨링 상세화(제24조)
- 식품첨가물·원료의 용기·외관포장 상 중문·통용부호로 아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
  - 품명,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첨가물원료' 글자 기입, 식품첨가물 명칭(2종 이상의 혼합물일 경우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표기는 제 18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품명 또는 중앙주관기관의 공고에 의거한 통용명칭에 따름), 중량·용량·수량, 제조업체·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주소, 유효기한, 사용범위·용량표준·사용제한, 원산지(국), 유전자 개조식품 첨가물의 원료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역시 명확하게 표기
  - 식품첨가물원산지등록번호표기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식품첨가물의 외포장에 반드시 '제품등록번호'의 글자·번호를 표기(예: 제품등록번호 TFA000000000000)
  - 수입 식품첨가물의 중문 라벨표시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추가 라벨표시 인정치 않는다.
- 식품첨가물 원료는 명칭·원산지·유전자개조식품첨가물 원료 등 내용을 표기치 않아도 된다.
- 국내 담당업체 명칭만을 표기하는 경우, 제조상·위탁제조상·수입상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관할 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식품기구·용기·포장 관련 상세화(제26조)
-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사항을 명확히 표기
  - 품명, 재질 명칭 및 내열온도(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일 경우 분리표기), 중량, 용량, 수량,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전화번호·주소, 원산지(국), 제조일자(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일자·기간 추가 표시), 사용법·주의·경고사항,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필수표기식품기구·식품용기및포장항목(應標示之食品器具、食品容器或包裝品項)에 따라 2017.7.1일부터 반드시 라벨링 해야 할 식품기구·용기 및 포장항목은 아래와 같다.
  - 중복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류 물병(컵)·젖병·찬합(밀폐용기포함)·쟁반·접시·그릇 등 6종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류 식품 기구, 식품용기 및 식품 포장, 일회용 플라스틱 코팅지 식기·컵·그릇·쟁반·접시·찬합 등 5종 제품

- PVC ·PVDC 재질의 경우 '고유지(油脂) 또는 고온에 사용 시 식품에 직접 사용해서 안됨' 혹은 동의어 표기
- 식품접촉면이 플라스틱 재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기구·용기·포장은 판매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6조 표기를 따라야 한다.

○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외관포장 관련 상세화(제27조)

- 식품용 세척제 용기나 외관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사항을 명확하게 표기
  - 품명, 주요성분의 화학 명칭(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 표기), 중량·용량,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전화번호·주소, 원산지(국), 제조일자(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일자·기간 추가 표시), 사용대상·용도, 사용방법·주의·경고사항, 기타 중앙담당기관의 공고사항

○ 식품 표기 광고(제28조·제29조)

-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용 세척제에 대한 표기·선전·광고는 거짓이나 과장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식품은 의료 효능의 표기·선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위생서는 특수 영양식품의 광고범위, 방식 및 장소를 제한하는 공고를 할 수 있다. 권한 위임을 받아 기계 및 방송하는 전파업자는 광고 시작일로 부터 6개월 동안 광고 위탁자의 성명 (법인 및 그룹명칭)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거주지 및 전화번호 등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사용 금지 식품 표기는 '식품표기·선전·광주용어의과장및오해소지판단기준(食品標示宣傳或廣告詞句涉及誇張易生誤解或醫療效能之認定基準)에 따르며 아래 문구의 경우 사용을 금한다.
  - 의학적 효능 포함 문구 : 예방, 개선, 감량, 진단, 질병치료 또는 특정 생리적 현상 등의 선정성 표현(예시 : 근시치료, 시력회복 등), 체내 질병과 관련된 성분을 감소 및 저하시킨다는 표현(예시 : 간 해독, 간지방 저하, 혈당 농도 억제 등), 질병 증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예시 : 소화불량 해소, 간화 감소, 인후염 개선, 신장 기능 보강 등 약재 효능에 대한 표현), 출판물·서적 인용 또는 타인 명의를 인용한 의료 효능 설명(예시 : '본초비요' 기재해 동충하초, 혈액염 방지 효능 설명)
  - 의학적 효능은 포함하지 않으나, 과장 및 오해소지의 문구 : 생리기능에 대한 언급(예시 : 세포 기능 강화 등), 한약재 효능은 언급치 않았으나 오장육부 등의 기관에 대한 표현(예시 : 눈 보호 등), 신체외관 변화에 대한 표현(예시 : 가슴풍만 등), 위생서 관련 규정 번호만을 언급하고, 공문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인지하지 않은 경우(예시 : 위생서자호 880012345 등)
  - 허위과장은 아니나, 약효 언급 및 오해소지의 문구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예시 : 치아골격의 정상 발육 및 형성 보조, 소화개선 등), 일반영양소에 서술 가능한 생리기능

효용 문구는 반드시 해당 영양소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예시 :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 유지에 도움을 줌 등)

○ 위법시 제제 조치

-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범위, 제한 표준량을 초과한 경우는 폐기·몰수한다. 단, 폐기 및 몰수 이전 소독 및 적당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한다.
- 중문 라벨링 규정 위반자는 기한 내 회수, 수정 통지하고, 수정 이전에는 판매를 금지한다.

내용물

○ 내용물 표기 세칙 규정에 따라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량, 내용량의 표기는 공식 규정된 표기 단위를 사용
- 액체와 고형물질의 혼합 식품은 내용량과 고형량(고체의 중량)을 구분하여 표기
- 내용물 함량은 식품의 성질이라고 보고 함량의 최고, 최저임을 표기
- 내용물이 2종 이상일 때 함량의 다소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표기
- '식품원료사용가능일람표(可供食品使用原料彙整一覽表)'를 참고해 원료명칭표기, 중문 명칭 표기, 식품사용 가능원료 확인 후 내용물 표기
- 캔 식품은 겉면에 표기한 내용량 및 고형량의 오차범위를 중화민국 표준 CNS974 식품 캔 검사법(캔 포장)의 규정에 따른다.
- 식품위생안전관리법 제 22조 2항은 중량, 용량 혹은 수량의 표기에 관한 규정은 제품의 각 포장물의 중량, 용량 및 수량을 뜻한다. 제품 내 원료별 성분의 중량, 용량 및 수량을 뜻하는 것은 아님.
- DHA는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이 아닌 어류 원료의 일종 성분이므로, 직접 DHA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
- 최근 원료 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원료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함량을 표기하여야 하지만, 검출되지 않았다면 표기해서는 안 된다.
- 보통 고체 상태의 제품은 중량을 표기하고 액체 상태의 제품은 용량을 표기하고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은 수량으로 표기
- 노니 주스(열대과일의 일종) 성분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하나 여전히 중국국가표준 CNS2377의 규정에 따라 그 원료 함량을 표기

식품첨가물

○ 식품 첨가물의 정의와 종류

- 식품 첨가물 정의는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항산화 혹은 기타 불가피한 목적에 의해 식품에 첨가 또는 접촉되는 물질이다.
- 식품 첨가물 종류는 방부제,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착색제, 살균제, 영양첨가제, 향료, 조미제, 점조제, 결착제, 융화제, 식품공업화학약품, 항산화제, 보색제, 팽창제, 표백제, 유화제 등이다.

○ 식품 첨가물 명칭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2조에서 공고한 '식품첨가물 품명 및 통용 명칭'에 따라 사용한다.

- 방부제, 항산화제, 인공 감미료 등에 속한 것은 동시에 그 용도 명칭 및 품명 또는 통용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 상품에 '안식향산(방부제)'라고 표기해 있는 것은 안식향산이 '벤조인'의 통용 명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한다.

○ 식품 첨가물의 표기 세칙 상세 내용

- 식품 첨가물 명칭은 본법 제 12조에서 공포한 식품 첨가물의 품명 및 통용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규격 및 사용범위 제한기준은 중앙기관이 정한 것으로 한다.
- 조미제(인공감미료, 맛 술, 카페인은 포한다.되지 않는다.), 유화제, 팽창제, 효소, 두부용 응고제, 광택제에 속한 것은 용도에 따라 명칭을 표기한 것이고, 향료는 향료로 천연 향료는 천연 향료로 표기한다.
- 방부제, 항산화제, 인공감미료에 속한 것은 용도 명칭과 품명 혹은 통용 명칭을 표기한다.

○ 식품성분에 '식용색소E133' 표기한 것은 검사결과 그 명칭이 법적으로 수록된 식품 첨가물의 품명 및 통용 명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 식품 첨가물을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료에 첨가하나, 제품이 완성 될 때까지 그 잔류 함량이 극히 적고 최종 식품에 큰 작용이 없기 때문에 표기할 필요 없다.

유효일자

○ 유효일자 표기 세칙 규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1항·제 7항에서 정한 일자의 표기는 용기나 포장지 위에

인쇄해야 하며, 바로 볼 수 있게 년·월·일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단,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년·월만 표기해도 되나, 일자는 해당 월의 말일로 추정한다.

- 유통일자의 정정은 업체에서 그 제품에 대한 포장과 보관 상황 등에 따라 자체 결정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기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이 기한 내에 모두 일에 책임져야 한다.
- 유통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생우유, 탈지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가당 탈지 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유, 합성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반드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표기해야 한다.
- 식품의 제조일자를 기원년·월·일(양력)로 표기 할 때 앞의 두 자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수입업체는 연도 국력(대만의 민국표기)·양력을 구분해 표기해야한다. 예시) 西元 年, 月, 日
- 냉동·냉장제품의 제조일자는 식품의 정상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식품의 제조일자나 보관기한을 '03.12.1991'이라고 표기했을 때 '월. 일'의 순서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월. 일. 년' 또는 '일. 월. 년'을 추가 표기
- 식품에 '7℃ 이하에서 냉장 30일, -18℃에서 냉동 90일'로 표기할 경우 유통기한 단일 방식으로 통합 표기해야 하므로, 제조일자는 유통일자 방식으로 표기. 또한 두 가지 유통일자를 표기하면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냉장·냉동 판매품을 분리 포장해 별도 유통일자를 관리토록 한다.
- 업체가 수입한 제품이 유통일자를 초과하여도 회수되지 않거나 타인에 의해 제조일자나 유통일자가 수정되어 시장에 유입 되었을 경우, 업체나 유입 시킨 자 모두 식품 위생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아야 한다.
- 식품의 보존 기한은 원료, 가공과정, 살균방법, 포장재질 및 보관조건 등 요소의 영향을 받다. 제조업자는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에 대해 보관 실험을 거쳐 유통기한을 엄격하게 제정해야 한다.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중문 표기를 직접 原 포장 위에 인쇄할 경우 [유통기한]을 퇴색하지 않는 유성잉크로 날인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유통기한만 별도로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은 안 된다. 만약 중문라벨을 스티커방식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지면에 인쇄하여 표기해야 한다.
- '유통일자'가 법적 정식표기이므로 '유통기한'을 '유통일자'로 수정 표기해야 한다.
- 유통일자를 '02MAR02'로 표기한 것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22조항의 규정에 어긋남.
- 수입식품 유통기한 표기가 원 포장에 'DOMAUG2001' 및 'DOEAUG 2004'라고 찍혀 있으면 외국어 날자 밑에 'DOM=제조일자 DOE=유효기간 AUG=8월'이라고 영문해석 라벨을 붙여야 한다. 붙일 때는 쉽게 떨어지는 재질의 것으로 붙이면 안 된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따라 용기나 포장이 된 식품에는 반드시 '유효일자'가 표기 되어야 한다. '유효일자'와 '보존기한'은 다른다.
  - 유효기간은 시간이 표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통기한·년·월·일'을 명기해야 한다.
  - 보존기한은 시간의 범위이다. 예를 들면 '보존기한 2년' 이라고 해야 한다.
- 생우유, 탈지우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우유, 합성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유효일자' 외에 '보관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유효일자 없이 제조일자와 보존기한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 되며, 제조일자와 유효일자, 보존기한과 유효일자를 동시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한다.
- 식품에 동시에 다른 보존 조건과 보존 기한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예) '상온에서 30일, 냉장보관 시에 180일, 영하 18도℃에서 365일'의 경우에는 다중 표기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유효기간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상온에서 냉장 보관 하다가 기한이 지나서도 냉동보관 하여 판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식품영양표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3항에 따라 '시판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포장식품영양표기공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규정을 제정했다.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포장식품 영양표기는 반드시 포장 외부 눈에 잘 띄는 곳에 '식품영양표기양식1'에 따라 해당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 영양표기의 표제, 열량, 단백질 함량,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 함량, 탄수화물· 당 함량, 나트륨, 기타 영양소 함량, 업자가 원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식품영양표기 양식 - (좌) 양식1 및 (우) 양식2 ▐

영 양 표 기		
매 1인분량 Og(또는 ml) 본 포장 O인분 포장		
	매분량	매 100g 당 (매 100ml 당)
열량	Kcal	Kcal
단백질	g	g
지방	g	g
포화지방	g	g
불포화지방	g	g
탄수화물	g	g
당	g	g
나트륨	mg	mg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기타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영 양 표 기		
매 1인분량 Og(또는 ml) 본 포장 O인분 포장		
	매분량	일일섭취량비율
열량	Kcal	%
단백질	g	%
지방	g	%
포화지방	g	%
불포화지방	g	*
탄수화물	g	%
당	g	*
나트륨	mg	%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기타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 표면적 100평방미터 내의 포장식품에 한해 적용
* 영양표기단위
- 매 1인분 0g(또는 ml), 본 포장 0인분 포함
- 매 분량(매 100g 또는 매 100ml 당) : 열량 0 kcal (0kcal), 단백질 0g(0g), 지방 0g(0g), 포화지방 0g(0g), 불포화지방 0g(0g), 탄수화합물 0g(0g), 당 0g(0g), 나트륨 0ml(0ml), 권장영양소(0g, mg 또는 ug), 기타 영양소 함량(0g, mg 또는 ug)

* 수치 미확정

- 1일 권장량 기준 : 열량 2000Kcal, 단백질 60g, 지방 60g, 포화지방 18g, 탄수화물 300g, 나트륨 2000mg, 권장 영양소 기준치, 기타 영양소 1일 기준량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시판포장식품표기준행사항(市售包裝食品標示遵行事項) 참고

- 표기항목에 식이 섬유를 표기코자 한다면 탄수화합물항목의 당성분 뒤에 표기하며. 콜레스테롤은 지방항목의 불포화지방 뒤에 표기
- 참고로 본 규정의 용어 정의는 1. 포화지방산 : 식품 내 비 트랜스 지방, 2. 탄수화합물 : 당류와 탄수화합물, 3. 당 : 단당과 쌍당, 4 식이섬유 : 인체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고분자 탄수화물, 5. 권장열량 : 설명·은유 또는 암시의 방식으로 식품의 특정 열량 또는 영양소 성질표기이다.

○ 식품의 열량 및 영양소 함량 표기 준수사항
- 다음 규정 가운데 선택해 표기
  • 매 분량 및 매 100g(또는 ml) 표기, 동일 상품의 매 포장 당 분량 수를 추가 기입한다.
  • 매 분량 및 1일 참고치 백분율 표기, 상품 매 포장 당 분량 수를 추가 기입한다. 확정된 1일

섭취 참고치 영양소는 각 항 영양소의 1일 섭취 참고치를 별도 표기해야 한다. 미확정 1일 섭취 참고치 영양소는 1일 참 고치 백분율에 「*」 부호를 별도 표기하고, 「* 참고치 미확정」 글자를 기입한다.

- 만 1세 미만 영아용 식품은 '양식1'로 표기 ; 알약, 캡슐(사탕종류 제외)형태 제품은 '양식2'대로 표기
- 포장식품 각 제품의 매 분량 당 중량(용량)은 '국민 식습관 및 시판 포장식품 형태의 일반 매회 섭취량'에 따르며, 캡슐 및 알약(사탕 종류 제외)는 권장 섭취량(반드시 정수)에 따라야 한다.
- 식품 영양소 표기 단위는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표기
  - 고체(반고체)는 g. 액체는 ml 표기
  - 열량은 kcal 표기
  - 단백질·지방·지방산·탄수화물·당분·식이섬유는 g 표기
  - 아미노산은 mg 표기
  - 비타민·광물질은 '1일 영양소 및 각 항 영양소 섭취' 내 규정을 따름
  - 기타 영양소는 통용단위로 표기
- 복수(復水, 기체에서 액체로 변환) 과정을 거친 식품은 과정 후 영양소를 표기 ;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복수 전·후 영양소를 모두 기입해야하며, 복수 방법은 영양표기 양식의 하단부분에 별도 기입한다.
- 포장 식품 영양표기의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당분 함량이 '열량 및 영양소 '0' 표기 조건'에 부합할 경우, 0으로 표기

▌열량 및 영양소 '0' 영양표기 조건▐

열 량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4kcal 미만인 경우
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미만인 경우
나트륨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1g 미만인 경우
불포화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1.0g 미만 또는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3g 미만인 경우
당 성분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 미만인 경우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시판포장식품표기준행사항(市售包裝食品標示遵行事項) 참고

- 식품의 1일 권장 열량 및 각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은 '1일 영양 및 각 항 영양소 섭취'를 참고

▌1일 영양소 및 각 항 영양소 섭취▐

항목	4세 이상	1~3세	임산부 및 수유부
열량	2,000 Kcal	1,200 Kcal	2,200 Kcal
단백질	60g	20g	65g
지방	60g	*	65g
탄수화물	300g	*	330g
나트륨	2,000mg	1,200mg	2,000mg
포화지방	18g	*	18g
콜레스테롤	300mg	*	300mg
식이섬유	25g	15g	30g
비타민 A	700ug RE	400ug RE	600ug RE
비타민 B1	1.4mg	0.6mg	1.1mg
비타민 B2	1.6mg	0.7mg	1.2mg
비타민 B6	1.6mg	0.5mg	1.9mg
비타민 B12	2.4ug	0.9ug	2.6ug
비타민 C	100mg	40mg	110mg
비타민 D	10ug	5ug	10ug
비타민 E	13mg	5mg	
비타민 K	120ug	30ug	
니코틴산	18mg NE	9mg NE	
엽산	400ug	170ug	
판토텐산	5mg	2mg	
비오틴	30ug	9ug	
콜린	500mg	180mg	
칼슘	1,200mg	500mg	
인	1,000mg	400mg	
철	15mg	10mg	
요오드	140ug	65ug	
마그네슘	390mg	80mg	
아연	15mg	5mg	
불소	3mg	0.7mg	
셀렌	55ug	20ug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시판포장식품표기준행사항(市售包裝食品標示遵行事項) 참고

- 식품영양소 산정방식은 반드시 검사 기관의 분석이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오차범위는 '영양표기 오차허용범위' 참고. 식품의 특정 영양소가 시간 혹은 특성에 따라 변할 경우 영양소 표기상에 표기해야 한다.

▌영양표기 오차 허용 범위▐

항 목	오차 허용 범위
단백질, 탄수화물	표기치의 80~120%
열량,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 표기치의 120%
아미노산, 비타민(A, D 불포함), 광물질(나트륨 불 포함), 식이섬유, 기타 자원 표기 영양소	≥ 표기치의 80%
비타민 A, D	표기치의 80~180%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시판포장식품표기준행사항(市售包裝食品標示遵行事項) 참고

- 식품 영양소 표기 수정 방법은 중화민국 국가표준 CNS2925의 극한값의 유효 숫자 표기법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따른다.
  - 매 포장별 분량, 1일 참고치 백분비, 나트륨의 함량은 정수로 표기
  - 매 포장별 분량, 열량,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분, 식이섬유는 정수 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
  - 열량, 단백질, 지방, 지방산, 탄수화물, 당분 함량이 제품의 용량이 적어 소수점 한자리로 표기할 수 없으며, 0의 표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기
  - 비타민, 광물질은 3자리 숫자를 벗어나면 안 된다.
- 열량 계산 방식은 다음 규정으로 산정
  - 단백질은 매g마다 4kcal로 계산
  - 지방은 매g마다 9kcal로 계산
  - 탄수화물은 매g마다 4kcal로 계산하나 식이섬유 첨가제품에는 매g마다 2kcal로 계산
  - 엘리트티톨(Erythritol)은 0kcal로 계산, 솔비톨(sorbitol)은 매g마다 2.4kcal로 계산
  - 유기산은 매 g마다 3kcal로 계산 ; 알콜은 매 g당 7kcal로 계산. 유기산 및 알콜의 영양소 표기 방법은 '영양 표기 양식'과 같다.

○ 시판 영유아식품 및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한 조제식품은 '시판 영유아 및 특정 질병을 위한 조제식품 관리 준수 사항' 규정에 따라 표기

○ 비타민, 광물질의 알약, 캡슐 포장 식품은 본 규정 미적용

○ 본 규정 시행 전 제조한 포장식품은(제조일자기준) 본 규정 미적용
- 영양표기방법 양식은 시행 전 5종에서 2015년 7월 1일 변경 후 2종으로 수정

○ 영양표시 면제 대상 식품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식품의 영양표기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22조 규정에 따른다.
  - 식용수, 광천수, 얼음

- 기타 성분 무첨가한 신선, 냉장, 냉동의 과일, 야채, 가축, 계란, 수산품
- 기타 원료 및 식품 첨가제를 미첨가한 티백, 커피, 식물 등
- 직접 식용으로 사용치 않는 조미 향료, 조리백
- 조미 향신료
- 소금 및 소금대체품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식품 원료

일반식품의 품명 표기원칙

○ 함유 원료성분에 따라 식품 품명을 정할 경우

- 식품 내 함유 원료성분에 따라 품명을 정할 시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육포(牛肉乾)가 식품 원료를 함유한 소고기의 경우 육포로 명명
  - 전복(鮑魚)이 단지 전복 소스 또는 추출을 함유한 것이 아닌(검역 시 전복 DNA 검출 되지 않는 경우), 식품 원료를 함유한 진짜 전복일 경우 전복(鮑魚으로 명명(2011년 1월 17일 FDA食字제1001300123호)
  - 고구마 분말(地瓜粉) 식품은 고구마 가루를 함유할 경우 고구마 분말이라 명명 (2010년 7월 26일 FDA食字제0991302303호)

○ 원료 품종에 따라 식품 품명을 정할 경우

- 식품원료의 품종에 따라 식품명칭을 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일본 와규(和牛)'는 그 혈통 및 사육 방식이 다른 국가 품종의 소와 달라 맛과 육질이 독특함을 나타냄 → 업자는 품종 및 원산지 증명을 구비해 제공

○ 식용 부위 통용 명칭에 따라 품명을 정할 경우

- 식품원료의 식용가능부위 통용명칭으로 품명을 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항정살(松阪豬)'은 돼지고기 경부의 통칭으로, 비계의 분포가 '소갈비(松阪牛)'와 유사해 이 명칭을 얻었다.

○ 생산지 명칭에 따라 품명을 정할 경우

- 원산지의 원료 및 제조 과정이 독특하여 식품 품명을 원산지에 따라 정할 시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완롼 돼지족발(萬巒豬腳)'은 대만 핑동(屛東)에서 생산하는 돼지족발로, 특수 가공법으로 제조해 '완롼 돼지족발(萬巒豬腳)'으로 지칭

○ 속어에 의해 품명이 지칭 되거나 국제 통용어를 중문 직역한 품명인 경우

- 속어에 의해 품명이 명명되어 소비자가 이미 그 식품에 그 원료가 함유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 또는 국제 간 통용어가 중문으로 직역된 품명으로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태양빙(太陽餅)'은 태양 성분 미함유 사실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한다.
  - '소혀 쿠키(牛舌餅)'는 소 혀 미함유 사실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한다.
  - '트리플 초콜릿(松露巧克力)'은 트리플 미함유 사실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한다.
  - '온천계란(溫泉蛋)'은 흰자와 노른자의 응고형태로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한다.
  - '파인애플쿠키(鳳梨酥)'는 동과소가 들어 있으나,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속어로 품명을 정한다.
  - '초콜릿(巧克力)', '핫도그(熱狗)' 등은 국제 통용 명칭을 중문으로 직역해 명명한다.

특정식품의 품명 표기원칙

○ 효모균 및 유산균 등 미생물 및 원료 식품은 시판 통용 명칭을 품명으로 사용한다.
- 유산균 계열은 당(醣)을 발효한 뒤 생성된 세균으로 비피더스균, 유산균, 건구균 등 포함

○ 영지, 상황버섯 등 식용 가능한 버섯균을 원료로 하여 통용 명칭 또는 분류 명칭으로 품명을 정한다.
- 영지(靈芝) 계열은 영지(Granoderma)속의 버섯균류를 말하며 나무영지(樹舌靈芝), 노루뿔영지(鹿角靈芝), 적지(赤芝) 및 송삼(松杉靈芝) 등을 포함한다.
- 버섯균사체를 원료로 첨가한 경우, '○○균사체' 글자로 표기를 해야 하고, 글자 크기는 일정해야 하며 통용 명칭이나 종류별 명칭만으로 품명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영지(靈芝)식품은 원료에 노루뿔영지(鹿角靈芝)가 함유되어 있다면 노루뿔영지(鹿角靈芝) 및 영지 등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

○ 식용 가능한 중약재로 식품 품명을 정한 경우 중(한)약재 명칭은 행정원 위생서 중약위원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식품 내용물은 반드시 성분내 중약재가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식품 원료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예 : 영양첨가제).
- 기타 식품의 성분 비율은 중약재 성분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 중(한)약재 고유 성분 및 성분 가감(加減) 방식을 품명으로할 경우 품명은 중약재 고유의 단일 성분 또는 가감된 성분을 직접 명칭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에게 중(한)약품으로 오해가

없도록 한다.

- 사물탕 (四物湯)과 비율이 다른 경우, 식품 표기는 딸기사물탕 (草莓四物湯), 철분 함유 사물탕 (含鐵四物湯) 또는 ○○사물 음료수(四物飮) 등으로 표기한다.

기타식품의 품명 표기원칙

○ 식품 내용물(원료) 및 성분을 식품 품명으로 정할 경우

- 식품 내용물(원료) 및 성분이 동일하게 식품 품명이 되는 경우, 순수성분이 행정원 위생서 공고의 '식품첨가물 사용규범 및 제한량 표준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규정에 부합하거나 식품 사용이 가능한 원료에 속해야 한다. ; 만약 식품 내용물에 직접 첨가한 원료의 순도나 공고한 식품첨가물이 규정 표준에 미달될 경우, 식품 원료 추출물 성분 중 일부이므로 순도 100% 성분 명칭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DHA는 식품 원료나 식품 첨가물에 속하지 않으며 어유(魚油)의 한 성분이므로 품명은 DHA라고 칭할 수 없고,「어유 DHA」혹은 동일한 의미의 글자로 칭해야 한다.
  - '식품첨가물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 제 8분류 첨가제 상관 규정의 엽황소에 부합할 경우 '엽황소(葉黃素)'로 지칭. 다만 금잔화 추출물 원료만을 첨가해, 순수 엽황소 함유가 아닌 경우 '금잔화 추출물(엽황소 함유, 金盞花萃取物 含葉黃素)' 또는 동의어로 표기해야 한다.

○ 식품의 영문품명 표기방식

- 식품의 영문 품명은 공급자가 제공한 영문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의료효능이 있는 상품 혹은 공급자가 영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명칭을 사용한다.
- 중문 품명은 반드시 위생관리법의 상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상품 원래 영문명이 'SOY BEAN EXTRACT TABLET'일 경우 중문명 '大豆萃取錠'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피하도록 하며, 의료 효능 입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영문 명칭을 써야 한다.
  - 상품 원래 영문명이 'SLIM TABLET'으로 신체 외형 변화를 가리킬 경우 영문명과 중문 직역명 '瘦體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입식품의 라벨링 검사

개황

○ 수입식품검역은 표준검사국 및 직할 분국에서 검역작업 실시

○ 수입식품검역기록표의 '외관검사' 필수제품으로 등록된 것 외에 현장검사 필수물품은 검역검험 신청 및 실시 이후 수입이 가능하다.

○ 외관 검사시 라벨링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관검사 해당 품목은 아래사항을 주의. 추후 불량사실은 기록으로 남다.

- 포장 및 표기 완전 여부·청결 여부·파손 여부, 상품 외부 누출·부패·해충·이물질 감염 여부, 불쾌한 냄새 유출 여부, 기타 식품안전에 유해한 현상

○ 식품첨가물은 수입신고서의 '물품명칭'란에 '식품용', '식품첨가물'을 기입해야 하며, '규격'란에는 '상품생산 LOT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한다.

수입식품의 라벨링 검사

○ 중문표기 미완성 또는 중문원본 표기내용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위반될 시 표기 불합격 처리한다.

○ 중문표기 면제품은 벌크 형태 수입(최소단위 포장 중량이 3KG 이상,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수입 후 재포장, 포장 변경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타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표기 면제 동의 물품(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동의서 복사본 제출)

○ 수입식품의 유효기간 검사 주의사항 및 처리 방식

- 원 포장 상에 직접 인쇄 방식 : 인쇄된 유효기간 글자의 탈색 및 불명확함이 없어야 하고, 스티커로 단독 부착해서는 안 된다.
- 전체 중문 라벨이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된 물품 : 그 모든 표기 항목이 원포장 인쇄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유통일자는 단독 라벨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
- 유통기한 표기 : 년/월/일로 표기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인 경우 년/월만 표기 하여도 되나, 그 일자는 반드시 당월 말일까지를 나타내야 한다.
- 검험검역 이후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은 검역허가증이 발행되지 않는다.
-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 남은 물품은 그 검사 증명의 유효기한도 상품의 유통기한 내로 제한한다.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물품은 검사증명 발행 이후 즉시 행정원 위생서로

통지하여 그 물품의 유통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중문표기 부착 시 원문 표기내용이 가려져서는 안 되며, 고의적으로 은닉한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위반으로 간주한다.
- 수입물품인 경우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 상에 〈대만 제조〉등과 같은 내용 및 글자를 표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만 국내업체의 명칭, 주소, 전화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 포장 상 표기 시 표기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 유효기한 이외 기타 항목은 2mm이하도 무방

○ 중문표기라벨 부착면제 심사

- 일반적으로 분리포장·포장변경·기타가공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식품 원료는 중문라벨 부착이 면제된다.
- 분리포장·포장변경·기타가공이 필요한 물품
  - 식품가공공장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포장변경·기타가공할 경우, 식당경영업자·패스트푸드점·베이커리 경영업자가 음식 조리 시 사용하는 경우, 수입업체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포장변경·기타가공할 경우, 기타 위생서의 특별 동의 물품
- 식품가공업체 해당 시 아래 서류를 행정원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
  - 중문표기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공장 등기증 복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具結書, 제출된 자료 모두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보증서), 상품의 원포장 및 제조업체 원포장 상 표기와 관련된 자료, 포장 변경·분리물품의 최종 상품 외포장 첨부
- 식당·패스트푸드점·베이커리 경영업자인 경우 해당 서류를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
  - 중문표기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원상품의 외포장
- 일반 수입업체인 경우 해당 서류를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
  - 중문표기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원상품의 외포장,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공장 등기증 복사본, order sheet 또는 인보이스 복사본
- 수입식품의 최소단위 포장은 1kg 이하로 포장을 밀폐 처리한 물품은 포장변경 및 분리 포장 등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중문표기 면제신청 상품은 수입 시 포장 상 원료명칭, 제조업체, 내용물, 유효기한 등 제조관련 사항이 원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것을 검험·검역 작업 근거로 삼는다.
- 표준 검역국 및 관할 분국이 수입식품 중문표기 면제를 동의한 경우, 동의서를 위생서로 통지
- 수입식품 중문 표기 면제 대상은 유효기간 2년으로(동의서 일자 기록) 지속 수입하는 업체는

만기 3개월 전 연장 신청

- 중문표기 면제 수입식품은 표준검역국 및 관할국 조사 후 실제 물품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는 모든 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중문표기·통용부호 사용

○ 포장 상 표기 글자의 길이·폭은 2mm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칭, 유효기한 이외 기타항목은 2mm이하도 무방하다.

- 국내 제조업자가 외국어 표기도 함께할 경우 중문을 주(主)로하고 외국어는 부(輔)로 한다. 단, 해외 판매용은 제한 없다.
- 수입품은 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어 표기를 해야만 수입할 수 있고, 포장 변경, 분리포장, 추가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판 전에 반드시 최종식품 포장 상 중문 표기를 해야 한다.
- 큰 포장 안에 작은 포장이 있는 식품은 즉 개별 포장으로 소매할 수 있는 것은 식품 위생 관리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기해야 한다.
- 포장 식품 표기 관리 시 '식품안전위생관리법'내 미 규정 식품은 상품 표기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적용한다.
- 수입업체, 제조일자 등 자료가 불분명하며 세관을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식품은 업체가 명확한 제조업자·제조일 등 관련서류 제출 전에는 국내에 진열 판매할 수 없다.
- 반드시 중문 번체자 기재하며, 간체자는 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고 고유의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식품 가공용 신선 농산품 수입과 관련해 마대나 편직마대(비닐 실로 짠 부대)의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중문표기 및 유효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문 표기항목에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는 통관할 때 화물검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는 확실한 수입품이라는 것만 표기되어지면 원문표기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 대형 포장식품은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문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표기는 원문 표기를 해야 한다.
- 대형포장 원료가 제 22조 항목의 중문표기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사후 관리를 위해 수입업체는 가공업자에게 관련 특정 서류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검사기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통관 시에 분쟁을 피할 수가 있다.

- 신선 야채류는 투명 플라스틱 통, 밑에 구멍이 나 있는 통, 윗면을 랩을 씌우는 방식의 포장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완전 밀폐 포장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포장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슈퍼마켓 업자가 판매하는 팩이나 랩으로 간편 포장을 하거나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임시포장은 그 목적이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장 주인이 현장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판매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따라 완전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샤브샤브용 식품표기 관리는 대형 매장업체에서 스티로폼 통이나 랩으로 싸서 파는 샤브샤브용 재료는 그 목적이 소비자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씩 따로 포장해 놓은 것으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은 아님. 소비자가 직접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다는 행위는 소비자가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이 아님.
- 수입 냉동피자를 냉장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 후 저장, 운송, 보관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품질 보증과 유통기한이 재설정되어야 판매가 가능(해동, 냉장, 유효기한 설정, 포장, 중문표기 등 가공 및 품질보증 절차를 포함)
- 즉석식품류는 냉장과 냉동의 성질을 고려해,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표기 의무화 ; 비즉석식품류(신선농축수산물제외)는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 표기 의무화,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은 1cm이상 ;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는 5cm이상,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또는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의 글자체와 글자색이 상품의 외관 포장색과 선명하게 다르며, 쉽게 눈에 띄어야한다.
- 지금까지의 식품위생관련 법령은 제품의 보험책임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만약 업체가 이 항목을 소비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자 하여도 부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허위 및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 제품의 속성이 확실히 식품이라면 증정품일 경우에도 그 표기 내용은 식품위생관련법령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 위생서에서 발급한 자유 판매 허가증은 국내 기업의 수출 식품이 국외에서 통관 시 사용하는데 협조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제품의 표기심사 진행 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는 여전히 식품안전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관리해야 한다.
- 판매방식이 만약 소비자가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단 후 봉합하는 포장방식 이라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범에 맞는 포장식품이 아님. 표기는 규정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 시에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품명, 맛, 가격, 유통기한 등

표기)를 제공하여 제품 용기 포장 및 판매의 위생 안전이 식품위생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관리

수입식품 중문 라벨링 불합격 기준

○ 수입 식품 포장 상, 원문 및 중문 라벨링 미표기

○ 유효 일자 미표기

- 원문 및 중문 유효기간 미표기
-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 초과
- 표기한 기한이 인정할 수 없는 유통일자
- 표기한 기한이 사실과 상이

○ 글자 표기가 모호해 내용 분별이 불가

○ 수입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미표기

○ 표기된 수입업체가 사실과 상이

○ 10kg 이상 유제품에 '식용'이라고 표기 안 되어 있거나, 수출국 위생기관 및 농업관련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치료 효능 등 과대 및 허위 표기

○ '경고' 특정 경고표기 식품이나, 미표기

5. 특별 품목의 라벨링 기준

유기농 농산품

○ 유기농 농산품 및 그 가공품에 표기된 문자는 중문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및 통용부호는 보조용으로 표기한다.

○ 판매 시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 규정

- 품명 (‘유기농’ 문자를 표기해야 한다.), 원료 명칭(품명과 일치하면 생략해도 무관), 수입업자 명칭·전화번호·주소, 원산지(국)(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여 원산지(국)을 표기한 경우에는 표기 면제), 검증기관 명칭, 유기농 표기 동의서 일련번호, 기타 법규로 정해진 표기사항 및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표기사항

○ 원료에 관한 표기규정

- 두 종류 이상 혼합된 원료를 가공할 시 명칭·함량 표기하나, 10% 미만일 경우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물·소금 외 원료에는 ‘유기농’ 문자 또는 기타 수식 부호를 사용해도 되고 유기농 원료 항목에도 추가 표기 가능하다.

○ 원산지 표기 규정

- 수입화물원산지인정표준(進口貨品原產地認定標準)에 의한 원산국 표기, 표기글자의 길이·폭은 6mm 초과할 것, 포장용기의 정면·중간·하단 부분에 명확히 표기한다.

○ 검증기관 표기규정

- 표기 글자 길이 및 폭은 6mm를 초과 할 것, 포장용기의 정면·중간·하단에 명확히 표기

○ 벌크 형태로 판매 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판매처에서 게시판 또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품명 및 원산지를 표기하고 유기농표기 동의서 사본을 전시해야 한다.(글자 길이 및 폭은 3cm 이상으로 표기)

○ 품명·원료 표기 외 현지어 또는 외국어로 된 ‘유기농’ 문자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유기농 마크 사용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 수입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가공품 사용 마크는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국가 및 국제인증 조직의 유기농 마크나 검증기관의 마크에 한한다.

건강식품

○ 건강식품은 건강 무해성과 보건기능이 증명된 식품으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효능에 대한 표기·광고할 수 있다. 단, 질병 치료·교정 등 의료적 효능을 말하는 것은 아님.

○ 건강식품관리법 내 해당 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은 건강식품임을 표기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 제조·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성분·규격·작용·효능·제조과정·검사규격·방법 등 자료, 라벨 및 샘플을 구비해 위생복리부에 수입허가인증·제조허가인증 발급을 신청한다.
- 허가인증을 받은 후 제조 및 허가 가능

○ 건강식품의 포장·용기 상 포함해야 할 항목
- 품명, 내용물 명칭, 식품첨가물의 명칭, 유통기한, 보존기간, 국내 업체명칭·주소, 허가 비준된 효능, 허가인증번호, '건강식품'글자 표기 및 표준마크표기, 섭취량·섭취 시 주의사항·기타 필수 경고사항, 영양성분·함량, 기타 관련기관의 공고사항

○ 건강식품의 표기·광고는 허위사실 및 과장, 보건기능 허용 기준량 초과, 의료기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중앙관련기관이 파견한 건강식품 검사에 고의적으로 거절할 경우 제조·가공·시판 등을 잠정 중단시킨다.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3개월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 불가 판단 시 허가증은 자동 실효된다.
- 허가증을 통해 수입 및 제조하였으나 중대한 위해함이 발견되었을 시 허가 인증 폐지 및 제조, 수입을 금지시키고 필요 시 식품 몰수 및 폐기한다.

주류

○ 주류 브랜드 및 명칭은 크게 표기해야 하며, 기타 문자보다 반드시 더 커야 한다.

○ 수입산 주류의 농도는 섭취 20도에서 원 내용물 중에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한다.
- 즉, 100ml 음료 중 포함된 알코올 농도이다. %, %vol 혹은 % by volume으로 표기하며, 오차허용범위는 ± 0.5도 이하이다.

○ 용량 단위 l, ml cl로 표기한다.

○ 중문 표기사항
- 주류의 상품명·종류, 성분·농도, 업체 명칭·주소·전화번호, 원산지(국)
- 유통기한은 년/월/일 표기, 단 3개월 이상일 경우 년/월로 쓰나 유통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 주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경고 문구 표기 예시
- "음주 후 운전 안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 "과다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해가된다", "미성년자 음주 금지", "화재 발생 시 분리하여 놓으시오", "눈과 피부 호흡기관을 자극할 시 반드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반드시 마개를 덮으시오" 등

○ 주류 생산 연도
- 동일 종류의 과일원료를 함유한 과일주는 적어도 85% 동일한 해에 원료를 채취·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 주령은 주류상품이 병에 주입되기 전 용기에 저장되어 성숙된 시간을 뜻하며, 기타 주령의 주류로 제조된 경우 단기간의 주령을 표기한다.
- 생산년도 표기 시, 원산국 정부 혹은 공인상공회의소의 생산년도 증명서를 통관 전 제출하여야 한다.

진균류 식품

○ 사용범위는 진균류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영지버섯, 운지버섯, 동충하초 등)이다.

○ 진균류를 포함한 식품의 외포장 상 진균류 원료의 중문명칭 및 라틴학명을 표기해야 한다. 비고란에 사용부위 및 배양방식을 표기한다.

○ 진균류 자실체를 사용한 원료를 함유한 식품의 품명은 통용명칭 또는 군족명칭에 따른다. 예를 들면 영지, 운지와 같다.

○ 진균류 균사체를 사용한 원료를 함유, 진균류 자실체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품명 및 기타 표기 또는 광고는 00 균사체로 표기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는 일치해야 하며, 외포장 상 진균류 자실체의 그림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 진균류 균사체와 자실체의 혼합을 함유한 상품은 통용명칭 또는 군족명칭을 품명으로 표기하며, 외포장 상 "본 상품은 00균사체와 자실체의 혼합임" 또는 동의어가 명기되어야 한다. 글자의 길이와 폭은 5mm를 초과해야 한다.

포장 비타민 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 식품

○ 2015년 1월 23일 시판포장 비타민 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 식품의 영양표시 방식 및 내용기준(市售包裝維生素礦物質類之錠狀膠囊狀食品營養標示方式及內容標準)이 폐지되고, 포장 비타민 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包裝維生素礦物質類之錠狀膠囊狀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이 변경·제정되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 영양 표시 사항

- 매 1인 분량 O 알 (개, 정), 본 포장 O 분. 매 분량(일일 섭취량 비율) : 비타민 O mg or ug(O%), 무기질 O mg or ug(O%), 선언의 영양소 함량 Og, mg or ug(O% or *), 기타 영양소 함량 Og, mg or ug(O% or *) * 참고치 미제정

▌포장 비타민 무기질류의 영양 표시 예시▐

영양 표시		
매 1인 분량 알(개) 본 포장 분		
	매 분량	일일 섭취량 비율
비타민	mg or ug	%
무기질	mg or ug	%
선언의 영양소 함량	g, mg, ug	%
기타영양소함량	g, mg, ug	%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포장 비타민 무기질류의 영양 표시 오차허용 범위▐

항 목		오차 허용 범위
비타민 A, 비타민 D		표기치의 80~180%
비타민(비타민 A, 비타민 D 불포함) 무기질(나트륨 불포함)		≥ 표기치의 80%
자의적 표기 가능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 표기치의 120%
	기타영양소	≥ 표기치의 80%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식품

○ 2015년 7월 1일부터 '식품 내 알레르기원 표기규정(食品過敏原標示規定)' 실시

- 판매 중인 포장 용기·제품의 성분 가운데 식약처가 지정한 6가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성분(새우·게·망고·땅콩·우유·알류)을 포함할 경우, 용기·외포장 상 경고 문구의 표기를 의무화

○ 해당 성분 및 주요내용

- 새우 및 관련 제품 : 각종 새우류 및 새우류에서 추출한 키토산(chitosan), 글루코사민(glucosamine) 등 성분. 새우 전병, 새우 소스, 새우 완자 등
- 게 및 관련 제품 : 각종 게류 및 게류에서 추출한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 성분, 게맛살, 게 완자 등 관련 제품
- 망고 및 관련 제품 : 건망고, 망고잼,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젤리, 망고케이크 등
- 땅콩 및 관련 제품 : 땅콩기름, 땅콩캔디, 땅콩분말, 땅콩잼, 땅콩소스, 땅콩전병 등
- 우유 및 관련 제품 : 우유에서 추출한 유당·카세인·유청단백질(whey protein)·락토페린(lactoferrin) 등 성분 포함 제품, 치즈, 버터, 크림, 마가린, 분유, 요구르트, 요플레, 유산균음료, 우유과자, 우유캔디 등 제품. 한편, 락티톨(lactitol) 포함 제품은 제외
- 알류 및 관련 제품 : 각종 알류(계란, 오리알, 거위알, 타조알 등) 및 알류에서 추출한 알부민(albumin) 성분, salted egg(짠계란), 피단(皮蛋), 계란말이, 계란과자, 계란 노른자 소스, 계란 샐러드, 계란 분말 등

○ 경고 표기는 "이 상품은 OO을 포함(本產品含有○○)", "이 상품은 OO을 포함하며, 알레르기 체질자의 식용에 부적합하다.(本產品含有○○ , 不適合其過敏體質者食用)" 등 문구나 동일 의미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 이밖에도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 양유(羊奶), 어류, 두족류(頭足類), 권패류, 견과류, 글루텐 포함 곡류, 콩, 키위 및 관련 제품, 아황산염·이산화유황의 잔류량 10mg/kg 이상 식품 등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했을 경우 "이 제품의 생산제조시설·생산라인에서 OO을 처리함(本產品生產製程廠房, 其設備或生產管線有處理○○)" 등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대만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제품 및 경고 문구 표기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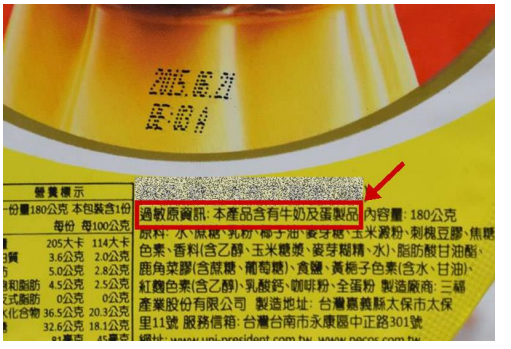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과채음료

○ 시판 중인 포장음료 가운데 과채즙을 첨가한 음료의 첨가량을 정확히 표기토록 의무화했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1항 10호 및 2항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2일 시판 과채즙 포장 음료 표기규정(宣稱含果蔬汁之市售包裝飲料標示規定)을 제정·발표했다.
- 최근 개정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과채음료의 정의는 상품 외관 포장 상 '과채(果汁)' 라는 명칭(품명 포함)이나 과채류 도안을 표기한 사람이 직접 음용하는 포장 음료이다.

○ 과채즙 함량 10% 이상 첨가 음료는 상품 외관 정면에 명확한 원액 함량을 표기한다.
- 2종 이상 혼합 과채즙 음료는 품명이 사용한 과채즙명이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른다.
  - 품명(브랜드명)에 과채명 전체를 기입하고 명칭은 함량이 높은 순서로 표기한다.
  - 품명에 과채명칭 전체를 미기입할 경우, 품명·외포장 정면에 '종합과채즙', '혼합과채즙' 문구를 표기한다.

○ 과채즙 함량 10% 미달 음료는 내용물 명칭 외에도 과채즙 등 동일의미의 문구를 표기해서는 안 되며, 상품 외관 정면에 '원액 함량 10% 미달' 또는 동일의미의 문구 표기. 한편, 실제 원액 함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 과채즙 미첨가 음료는 1. 상품 외관 정면에 '과채즙 미함유'나 동일 의미의 문구 표기, 2. '과채'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품은 품명 상 '맛', '향' 또는 동일 의미의 문구를 표기한다.

○ 외포장 정면에 원액 함유율을 표기해야 하며, '종합 과채즙 음료', '혼합 과채즙 음료', '과채즙 총 함량 10% 미만', '과채즙 미함유' 또는 동일 의미 글자인 경우 그 글자체 및 색깔은 포장 바탕색과 확연히 달라야 하며 글자크기는 규정을 따른다.

▌과채음료의 부피에 따른 원액함유율 표기 문구의 글자 크기▐

상품 부피(ml)	글자 크기(cm)
150 이하	각 0.3 이상
151~300 이하	각 0.5 이상
301~600 이하	각 0.8 이상
601 이상	각 1.2 이상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식품기구·용기·포장의 내열온도

○ 반복사용 가능한 식품용기 포함 일회용 식품용기 등에 적정온도 표기를 의무화했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26조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제조하는 식품용기·포장에 식품기구·용기·포장표시관련규정(食品器具、食品容器或 包裝標示相關規定)을 실시했다.
- 규정에 따라 식품 접촉면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반드시 재질·내열온도·중복사용가능여부 등 정보를 라벨링화 해야 한다.

▌일회용 식품용기 규정 해당 제품 예시▐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 특히 식품용기는 내열온도 표시 부합성 검측방법(耐熱溫度標示符合性試驗方法) 규정에 따라 라벨링 상 'PET재질의 용기이므로 85도 이하에서 사용해야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 대만정부는 소비자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며, 플라스틱 식품용기 사용을 점차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 및 관련 정보의 대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추세

- 식품용기 제조기업 또는 대만 관련 수출입기업은 식품약물관리서의 플라스틱식품용기홍보 홈페이지 참고
- 관련 URL : http://plasticspackage.pidc.org.tw

○ 최근 시판 중인 플라스틱 용기의 내열 온도 표기 검역을 강화 시행 중으로, 이에 따라 한국산 수입 제품 역시 내열 온도 표기 상이 등 이유로 2017년 2건이 적발되었다.

- 위반 시 전량 회수 및 최고 300만 NTD의 벌금형 조치
- 대대만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전자 변형식품

○ 2014년 12월 22일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 함유 포장식품의 표기 준수사항(包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 함유 식품첨가물의 표기 준수사항(食品添加物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 함유 벌크식품의 표기 준수사항(散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등 각 전문 4조, 5조를 제정·발표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세 규정 모두 전면 실시

▌유전자 변형식품 및 경고문구 표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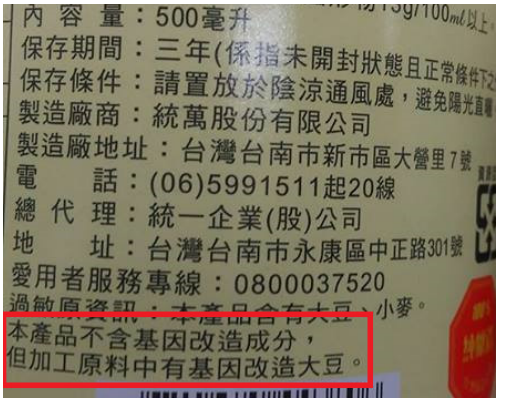

주 : 우측 사진의 빨간 네모 내 중문내용은 "이 제품은 유전자 변형 성분을 미함유하고 있으나 가공원료 가운데 유전자 변형 콩 함유"이다.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를 함유한 포장식품의 표기 준수사항(包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규정 내 지칭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는 허용 가능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이며, GMO함유 식품은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포함'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 GMO원료를 직접 사용한 포장식품은 최종 단계에서 이미 유전자 복제를 포함하지 않거나 단백질 복제의 경우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포함', '유전자 변형00사용', '본 상품은 유전자 변형00을 가공하여 제조, 단 유전자 변형성분 불포함', '본 상품은 가공원료 중 유전자 변형00 포함, 단 유전자 변형성분 불포함', '본 상품은 유전자 변형성분을 불포함하나, 유전자 변형00을 가공해 제조', '본 상품은 유전자 변형성분을 불포함하나, 가공원료 중 유전자 변형00 포함' 의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 비유전자 변형 식품원료의 수확·저장·기타 요소로 인해 비고의적으로 소량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 첨가시, 첨가 함량이 원료의 0.03%이하의 경우 비유전자 변형 식품원료로 간주한다.
- 비GMO원료 함유 포장식품이 국제적으로 이미 복제 통용, 유전자 변형 사용식품원료로 변형되었을 경우 '비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이 아님' 등 표기 사용 불가. 한편, 비고의적 투입량을 '국가00기준에 부합'으로 표기하거나, 실제 비고의적 투입량을 표기
- 품명, 원료명칭 원칙, 기타용기 및 외포장상 표기 위치, 글씨체의 길이와 넓이는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포함', '유전자 변형00사용' 등 문구표기 시 기타 문자와 구별돼야 하며, 길이와 폭은 2mm 이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비유전자 변형', '비유전자 변형함유'의 글자의 크기는 상기 규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의 표기 준수사항(食品添加物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역시 상기규정의 내용과 동일하다.

○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를 함유한 벌크식품의 표기 준수사항(散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에 따라 표기의 방식은 진열 판매되는 장소에서 마크 또는 표지판 등의 형식으로 입식, 현추식, 부착 또는 기타 명확한 방식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 마크(라벨) 표기 시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포함', '유전자 변형00사용' 등의 표기 시 글자의 크기는 2mm 초과해 표기한다.
- 기타 표기방식의 경우 글자의 크기는 2cm 초과해 표기한다.
- '비유전자 변형', '비유전자 변형함유'의 글자의 크기는 상기 규정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타 조항 상기 규정과 동일하다.

초콜릿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1항 10목 및 제 25조 제 2항 규정에 의해, 2016년 6월 24일 제정·발표(部授食字제1051301673호),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초콜릿은 코코아제품을 원료로 하며 설탕, 유제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제조한 고체형태의(소 불포함) 다크초콜릿, 밀크초콜릿 및 화이트 초콜릿을 지칭한다.
- 품명이 다크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를 혼합한 코코아 분말, 코코아 페이스트를 원료로 하며, 총 고고아고형물의 함량은 적어도 35%, 코코아버터는 적어도 18%, 무지코코아 고형물은 적어도 14%여야 한다.
- 품명이 화이트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 및 우유분말을 원료로 하며, 코코아버터 함량이 적어도 20%, 우유고형물이 적어도 14%여야 한다.

- 품명이 밀크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 및 우유분말을 혼합한 코코아 분말, 코코아 페이스트를 원료로 하며, 총 고고아고형물의 함량은 적어도 25%, 우유고형물은 적어도 12%여야 한다.
- 초콜릿을 품명으로 하는 경우 원료 및 함량은 식물성오일을 코코아버터의 대체로 첨가한 경우 그 첨가량은 제품 총 중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라벨에 '대체 코코아버터' 표기한다.

○ 표기 방식

- 포장 초콜릿은 글자 크기의 길이 및 넓이가 0.2cm를 초과해야 한다.
-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판매업자는 벌크초콜릿 판매 시 판매장소에 규정 표시 사항을 준수해 카드 표기(라벨)·표지판·입간판·걸이식·기타 방식 등 표기를 통해 명확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표기(라벨) 글자 크기의 길이 및 넓이는 0.2를 초과해야 하며, 기타 표기 형식의 경우 2cm이하여서는 안 된다.

버터·유지방·마가린·유지스프레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제 1항 제 10목 규정에 의거해 2016년 8월 30일 발표(部授食字第1051302682호),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 버터 및 유지방 제품 준수사항

- 품명이 '버터'인 경우 유제품 유도체의 유지제품에 한하며, 살균, 혼합, 정제과정을 거쳐 제조된 식용의 버터를 이른다. 유지방 함량 80%이상의 제품
- 품명이 '유지방'인 경우 유제품 중 지방을 물리적 방식으로 분리, 탈지유 형태의 지방으로 제작한 유화 제품을 가리킨다. 냉동온도이상에서 액체상태 유지, 유지방 함량 80% 이상의 제품으로 품명은 '식용크림', '생버터', '생크림'으로 표기한다.

○ 마가린·유지스프레드는 식용 유지를 적당히 첨가한 물 및 식품첨가물을 유화, 급냉, 반죽 등의 처리를 거쳤거나 급냉, 반죽 등 처리를 거치지 않고 제조한 가소성을 갖춘 또는 유동상태의 제품

○ 마가린·유지스프레드 제품 준수사항

- 유지함량이 80%이상의 경우 '마가린'으로 표기한다.
- 유지함량이 10%이상 80% 미만인 경우 '유지페이스트'로 표기한다.
- 식물성 버터를 지칭하는 단어로 상품 외포장에 표기해서는 안 된다.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 포함 포장식품의 용기 및 포장식품 원산지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2조 1항 7호에 따라 2013년 10월 2일부터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를 포함한 원료의 용기 및 포장 식품은 소고기 또는 소의 식용부위 원료 대한 원산지(국) 또는 대표성 있는 문자를 중문으로 표기한다.

- 소고기 및 소의 식용부위는 우유 및 소기름을 포함하지 않는다.
- 식품의 소고기와 소의 식용부위 원료는 그 도살한 원산지(국)를 의미한다.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 방법

1.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과자류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과자류 ○○○ 떡볶이	
성분	소맥분, 설탕, 옥수수물엿, 해바라기유, 떡볶이 소스, 향료, 미분, 팽창제, 포도당, 소금, 파슬리, 고추 추출물, 복문자 추출물, 앵두 추출물, 조미제	
중량	103g	
유효일자	본 포장 별도표기	
제조업체	HAITAI	
수입업체	**********有限公司 주소: xxx 고객상담전화번호: xxxx	
원산지	한국	
영양표기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03g 본 포장 포함량: 1분량 매 분량 당 열량 534 kcal 단백질 5.2 g 지방 26.8 g 포화지방 9.3 g 트랜스 지방 0 g 탄수화물 68 g 당 28.8 g 나트륨 420 mg	
보존기간	6개월	

2. 소스류

고추장

<table>
<tr><th>표기항목</th><th>표기 내용</th><th>관련사진</th></tr>
<tr><td>품명</td><td>○○ 고추장</td><td rowspan="10"> </td></tr>
<tr><td>성분</td><td>소맥전부, 물엿, 정제수, 고춧가루, 소금, 주정, 양파추출물, 파추출물, 생강추출물, 마늘추출물, 효모, 종국</td></tr>
<tr><td>중량</td><td>500g</td></tr>
<tr><td>유효일자</td><td>포장상 표기(서기 년/월/일)</td></tr>
<tr><td>제조업체</td><td>SINGSONG FOOD CORP</td></tr>
<tr><td>수입업체</td><td>****有限公司
주소: 新北市XXX, 전화번호: XXX</td></tr>
<tr><td>원산지</td><td>한국</td></tr>
<tr><td>영양표기</td><td>
<table>
<tr><th colspan="2">영 양 표 시</th></tr>
<tr><td colspan="2">매 1인분 10g
본 포장 50인분
매 100 g 당 함량</td></tr>
<tr><th colspan="2">매 분량 당</th></tr>
<tr><td>열량</td><td>225 kal</td></tr>
<tr><td>단백질</td><td>0 g</td></tr>
<tr><td>지방</td><td>0 g</td></tr>
<tr><td>포화지방</td><td>0 g</td></tr>
<tr><td>트랜스지방</td><td>0 g</td></tr>
<tr><td>탄수화물</td><td>45 g</td></tr>
<tr><td>당</td><td>35 g</td></tr>
<tr><td>나트륨</td><td>1,980 mg</td></tr>
</table>
</td></tr>
<tr><td>보존기간</td><td>18개월</td></tr>
<tr><td>보존방법</td><td>냉장 0~7도, 개봉 후 냉장보관</td></tr>
</table>

3. 주류

소주

표기항목	표기 내용	관련사진
품명	소주	
종류	기타 증류주	
원산지	한국	
원료	정제수, 쌀, 보리	
알콜도수/중량	20.1도/ 360ml	
제조업체	HITE JINRO	
수입업체	**********有限公司 주소: xxx 고객상담전화번호: xxxx 홈페이지: xxxx	
영양표기	주류는 표기하지 않는다.	
제조일자	하단 별도 표기(서기 년/월/일)	
유효일자	무제한	
경고 문구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로움	

4. 물·음료수

탄산수

<table>
<tr><th>표기항목</th><th>표기 내용</th><th>관련사진</th></tr>
<tr><td>품명</td><td>○○탄산수</td><td rowspan="10">
</td></tr>
<tr><td>원료</td><td>천연광천수, 천연탄산</td></tr>
<tr><td>중량</td><td>1500ml</td></tr>
<tr><td>보존기간</td><td>12개월</td></tr>
<tr><td>제조업체</td><td>ILHWA/ 주소: xxx</td></tr>
<tr><td>수입업체</td><td>**********有限公司
주소: xxx
고객상담전화번호: xxxx 홈페이지: xxxx</td></tr>
<tr><td>원산지</td><td>한국</td></tr>
<tr><td>유효일자</td><td>포장 별도 표기(서기 년/월/일)</td></tr>
<tr><td>영양 표시</td><td>
<table>
<tr><th colspan="2">영 양 표 시</th></tr>
<tr><td colspan="2">매1 분량 100ml
본 포장 포함량: 15분량</td></tr>
<tr><th colspan="2">매 분량 당</th></tr>
<tr><td>열량</td><td>0 kcal</td></tr>
<tr><td>단백질</td><td>0 g</td></tr>
<tr><td>지방</td><td>0 g</td></tr>
<tr><td>포화지방</td><td>0 g</td></tr>
<tr><td>트랜스 지방</td><td>0 g</td></tr>
<tr><td>탄수화물</td><td>0 g</td></tr>
<tr><td>당</td><td>0 g</td></tr>
<tr><td>나트륨</td><td>0 mg</td></tr>
</table>
</td></tr>
</table>

제3절 라벨링 이슈 사례

1. 라벨링 이슈

대만 유기 농산품 및 유기 가공품 「有機農業促進法(유기농업 촉진법)」 초안 통과

○ 대만 유기농 식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대만 농업위원회이며 2017년 「유기농업촉진법」 초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 초안은 대만의 첫 번째 유기농 산업의 전문법이며 유기농산품 및 가공품에 대한 관리대책 및 벌금 등 명확히 규정한다.

- 2017. 10월 기준 「유기농업촉진법」 초안에 의거 대만 농업위원회는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및 일본과 유기농 관련 상호인정 체제를 협의 중이다.

○ 대만은 현재 유기농 관련 상호 동등성 인정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 대만 유기농 식품은 유기농 명의로 수출할 수 없고 단지 22개국에 대해 일방적인 유기농 동등성 인정을 승인하여, 22개국 내 유기농국제인증기구 통과 농식품만 대만에서 유기농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 현 단계에서 해외 유기농 식품을 유기농 명의로 대만 판매 하고자 한다면 아직 참고할 만한 유기농 식품 전문규정이 없으므로, 주요 근거 법률「농산품생산및검사관리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농산품생산및검사관리법)」: 2007년 1월29일 대통령령공포를 통해 실행되고 있으며 대만농업위원회도 본 법 제5조 제2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유기농제품및유기농산가공품검증관리방법」과 「수입유기농산품및유기농산가공품관리방법」의 2가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대만산 및 수입산 유기농 제품과 유기농산가공품관리에 관련해서는 상기 2가지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 수입산 유기농 농산품 및 가공품 대만 내 신청

- 수입산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 가공품 규정에 대하여는 「수입유기농산품및유기농산가공품관리방법」에 의거 수입산 농산품 및 농산가공품을 “유기농” 명의로 대만 판매할 경우 22개국의 대만 농업위원회가 공고한 국제유기인증기구의 검증 결과에 따라 승인된다.
- 2017년 10월 기준 대만 농업위원회가 공고한 동등성 인정 국가 및 국제인증 기구 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스웨덴/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아일랜드/벨기에/포르투갈/헝가리/스위스/뉴질랜드/호주/미국/캐나다/칠레 등 22개국 (국제인증기구는 아래 링크 내 내용 참고)

http://info.organic.org.tw/supergood/ezcatfiles/organic/img/img/3608/20115 3154907055.pdf

- 22개국에 미포함 된 유기농산품 및 그 가공품이 대만 시장 내 유기농 표기를 하고자 할 때는 22개 국가의 국제인증기구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대만 내 유기농 명의로 수입 판매가 가능한다.
- 현 기준 한국은 대만 농업위원회가 공고한 22개국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기관이 대만 농업위원회에 동등성 인정 국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 내 대만은 국제유기인증기관을 지정설치, 그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된 유기농 제품은 대만 내 "유기"명의 수입 유통이 가능한다. (대만 담당 기관은 농업위원회 농량서(農糧署) 유기농업과)
- 필요문건 : 한국 유기농 담당 기관의 정식 공문 1부, 한국 유기농 법규 비교자료 1부, 한국 유기농 제품 검증 개황 1부, 한국 내 검증기구 수량, 검증통과 농장 수량 및 면적(가공 공장 수 포함), 한국 유기농 제품 검증관리 설명서 1부, 관리기구 관리대책 및 규정 위반한 유기농제품의 농산품 경영 업자에 대한 국내외 검증기구 처치 방법

번데기 동충하초 자실체 사용한정 및 식품경고용어 표시 방안

○ 대만 위생복리부는 2017년 1월 12일 사용원료인 번데기 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 자실체의 일일권장한정량 및 경고성표시 내용을 담은 초안(冬蟲夏草菌絲體食品標示相關規定) 발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2항 및 22조 1항 10번 규정에 근거

○ 식품약물관리서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혼동, 오해의 소지를 불러오는 것에 대한 대처"라고 밝혔다.

- 동충하초는 겨울철에 곤충의 유충이나 성충의 체내에 균사체가 잠복해 있다가 여름철에 자실체가 자라나는 버섯으로, 균종이 다양한다.
- 대만 식약서는 발효용 균종은 동충하초균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조사가 균종을 동충하초로부터 얻었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동충하초라는 명칭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다.

○ 공고 주요 내용

- 번데기 동충하초 자실체는 인공방식으로 동충하초의 균종을 결합· 배양하여 기본적 육성을 취득해 무총체가 없고 자실체를 체취해 소지 후 직접 식용 또는 가루분말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 가공
- 번데기 동총하초 자실체 건조품의 일일 권장량은 600mg이하이며, 추출·사용 할 시

ordycepin 및adenosine는 각 3.6mg 및 0.5mg 미만 일 것
- 번데기 동충하초 균사체는 균종액체에 재배 후 고온으로 균종 활동을 줄이는 것
- 번데기 균사체의 일일 권장량은 건조할 경우 2g이하이며 추출·사용 할 시 cordycepin 및 denosine는 각 3.6mg·0.5mg 미만 일 것
- "영유아·유아 임산부·균류 알레르기 반응자는 사용 불가한다" 및 제품이 캡슐 형태 또는 알약일 경우 "일일권장량은 몇(알)을 초과 하면 안 됨"이라는 경고성 용어 표기
- "이 제품은 중약재가 아닌 동충하초 제품입니다(本產品非中藥材冬蟲夏草之製)"라는 경고성 문구를 표시하고 문구의 글자크기는 일괄적으로 5mm를 초과해야 한다.

○ 참고 URL : https://www.fda.gov.tw/upload/133/Content/Q&A.doc

시판 버터·유지방·마가린·지방스프레드 제품명 및 표기 규정 제정

○ 대만 식약처는 버터·마가린 등 유지방 제품에 대한 정의와 관련 상품의 라벨링 표기 규정(市售奶油, 乳脂, 人造奶油與脂肪抹醬之品名及標示規定)을 제정·시행
- 2017년 2월 공고(部授食字第1051303972號) 후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

○ 소비자가 천연·가공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다.

○ 주요 내용
- 품명 표기를 버터(奶油)로할 경우 유제품에 의해 만들어진 유지방 제품이어야 하며, 살균·믹싱·정제 등을 거쳐 유중수적형태(water in oil, 에멀전형태)로 제조한 것. 한편 유지방 함량은 80%이상인 제품으로 한정
- 품명 표기를 유지방(乳脂)으로할 경우 유제품 지방을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해 유중수적 형태로 만든 것이다. 냉동 온도 이상에서는 유동적 또는 확정적인 액체 상태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유지방 함량이 10% 이상 80% 미만인 제품. 제품명은 식용크림(食用乳油)·생크림(鮮奶油· 鮮乳油)으로 표기 가능
- 마가린(人造奶油) 및 저지방마가린(脂肪抹醬, 지방스프레드)제품은 식용유(食用油) 지방에 적당한 물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유화·급냉동·반죽(급냉동·반죽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등을 거쳐 제조한 것. 가소성 및 유동성이 있는 바르는 제품. 마가린은 식용유 지방 함량이 80% 이상인 것, 저지방마가린은 식용유 지방 함량이 10% 이상 80% 미만의 것이다.
- '식물성 버터' 문구를 제품 라벨링에 표기해서는 안 된다.

○ 참고 URL :
https://www.fda.gov.tw/TC/publishotherepaperContent.aspx?id=1140&tid=1906

식품도구·용기 및 포장 표기 관련 규정 실시

○ 2017년 7월 1일부터 식품 접촉면에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염화비닐리덴(PVDC)등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판매 전 품명·재질명칭·내열온도·제조상·제조일자·중복사용 가능여부 등 사항 표기 의무화

- 또한 “고온·고지방의 식품 접촉 사용 불가” 문구 반드시 표시해야

▌식품용기 라벨링 표시 예시▐

품명 : ○ ○
중량, 용량
재질명칭 :
내열온도 :
제조상 :
전화번호 :
주소 :
원산지 :
제조일자 :
* 사용상의 주의 사항 및 담당기관의 공고 사항 표기
"본 상품은 식품과 접촉되는 용기임"
"본 상품은 재활용 사용이 가능함"
"본 상품은 "고온, 고지방의 식품과 직접 접촉 불가"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 참고 URL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316953

건강식품 추가 표기 사항 제정

○ 식품약물관리서는 2017년 8월 30일 캡슐 및 알약형태의 건강식품인 경우 반드시 용기 포장 상 ‘주의사항’에 표기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건강식품 허가증 신청부터 규정에 따라 시행

○ 대만은 건강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

- 우리기업의 건강·보건식품의 대대만 수출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

○ 주요 내용

- 용기 외포장 상 ‘주의사항’내 “이 상품은 약품이 아닌 보건용으로,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本產品非藥品, 僅供保健用, 罹病者仍需就醫)” 및 “이 제품은 보건용이며 의료 효능은 없습니다(本產品僅供保健用, 不具醫療效能)” 및 “제시한 섭취량만 음용하고 과다 투여 시 효과 없습니다(請依建議攝取量食用, 多食無益)”라는 문구 삽입

- 주의사항은 반드시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하며 글씨체는 기타 문자 및 바탕색과 명확한 구분해야 한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건강식품 허가증을 받은 제품은 공고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 허가증을 받은 제품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 유예기간이다. 2018년 7월 이후 제작제품은 반드시 공고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참고 URL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22378

▌대만 식약서, 건강식품 주의사항 추가 표시 공고 발표 모습▐

자료 : 대만위생복리부

제5장 통관 문제 사례

제1절 통관 문제 사례

1. 주요국 통관 문제 사례

검역 통계

○ 대만 위생복리부에 따르면 2016년 수입식품 검역은 675,018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이 가운데 샘플링 검역은 52,725건으로 전체 검역 제품 가운데 7.81%를 선정해 검사
- 샘플링 검역 불합격률은 1.74%로 집계되었다.

▌대만 수입식품 검역 통계▐

연도	검역		샘플링 검역			
	건수	증감률(%)	실시 합계		불합격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5	640,003	3.9	50,149	7.84	953	1.90
2016	675,018	5.5	52,725	7.81	915	1.74

주 : 검역 증감률은 전년대비 수치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 대만의 주요국별 검역 수는 일본이 16.3만 건으로 전체 검역 수 가운데 2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6만건·전체의 9.0%)·미국(4.7만건·전체의 7.0%) 순
- 주요국별 불합격률은 캐나다가 전체 검역수 대비 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0.2%)·미국(0.2%)·한국(0.2%)·일본(0.1%) 순

▌대만, 2016년 주요국 수입식품 검역수 및 불합격수 ▐

국가명	검역		불합격	
	건수(건)	전체대비 비중(%)	건수(건)	불합격률(%)
전체	675,018	100.0	953	1.9
일본	162,927	24.1	166	0.1
중국	60,517	9.0	117	0.2
미국	47,138	7.0	102	0.2
한국	15,455	2.3	25	0.2
캐나다	5,554	0.8	26	0.5

주 : 2016.1.1일~2016.12.31일 기준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 수입식품 종류별 검역은 채소(37,836건)가 가장 많았으며 샘플링 검역은 일본과 미국이 각 각 자소잎과 양파 품목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으로 인해 가장 많이 불합격되었다.

- 샘플링 검역시행 제품종류는 채소 3,970건(전체대비 10.5%), 과일 3,166건(10.7%) 등이었다.
- 샘플링 검역 불합격 원인은 주로 잔류농약 검출이 많았으며, 올 7월부터 시행한 '플라스틱재재질용기표기' 규정 실시에 따라 내열온도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도 다수였다.

▌2016년 대만 수입식품 검역 불합격 상위 5종 내역 ▐

순위	제품류	검역수	샘플링 검역				
			건수(비율%)	불합격수 (비율%)	불합격원인	제품명	주요 국가
1	채소	37,836	3,970 (10.49)	234 (5.89)	잔류농약	자소잎	일본
					중금속	양파	미국
2	과일	29,634	3,166 (10.68)	107 (3.38)	잔류농약	감귤	일본
3	식품용기	91,947	2,187 (2.38)	68 (3.11)	내열온도	운동용 물병	중국
4	향신료	3,850	410 (10.65)	63 (15.37)	잔류농약	산초	중국
						라임·레몬잎	태국
5	약재류	2,955	540 (18.27)	52 (9.63)	잔류농약	구기자	중국

주 : 순위는 샘플링 검역 시행건수 순위이다. /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농식품 통관·검역 주요 이슈

○ **(미국)** 미국산 가금류 수입검역조건 개정으로 가금류 수입 후 격리검역 실시

- 2017년 4월 1일부터 미국산 가금류 수입검역조건(自美國輸入禽鳥之檢疫條件) 개정안 시행
- 대만에서 지정한 고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미 발생 지역에서 수입하는 가금류에 한해 수입업자는 중앙주관기관의 동의서를 취득, 수입동물검역기관 수입검역조건에 따라 검역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미국산 수입 가금류(닭·칠면조·꿩·메추라기·자고·공작·타조·에뮤 등)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수출 전 3개월 또는 부화일로부터 수의사 책임 하에 질병진단·정기점검 받은 사육장서 사육
  - 사육장은 과거 1년 간 뉴캐슬병·가금류 결핵 등이 발병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6개월간 H5 및 H7 가금류인플루엔자 등 미발병
  - 수출 전 미국 농업부 위탁 수의사 감독 하에 격리검역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검역 샘플 검사 수량은 20마리를 기준으로 하며, 20마리 미만의 경우 전수 검사
  - 사육장소 운송해 수입국에 도착 전까지 기타 가금류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수입 시 미국 농업부 위탁 수의사 발행의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 증명서 상에는 수출국 발행 기관 및 인원, 검역물 식별 정보, 원산지, 목적지, 검역결과 등 영문 기재
  - 수출국 정부 인증 소독약품으로 소독한 용기에 밀봉 선적해, 운송 도중 고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지역 항구 또는 공항에서 재선적할 수 없다. 운송 도중 사료나 기타 가금류 등을 추가 선적할 수 없으며 IATA의 활동물 운송 및 재선적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수입 전 수입동물검역기관에 격리장소를 신청해 수입하며, 수입 후 10일간 격리하여 검역을 진행, 검역은 중앙주관 별도공고 시행일자에 따른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관련 5개현(후쿠시마·지바·도치기·도치, 이바라키)의 생산 수입식품 수입 규제 강화

- 대만은 2015년 4월 '일본 특정지역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 및 수입검사 신청 규정', '일본 수입식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수입검사 신청 규정'을 제정하며 발표 일본식품 수입규제 강화
- 기타 일본산 수입식품은 대만이 허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라벨링 상에는 일본의 都/道/府/縣 지역명을 상세히 표기해야 한다.
- 특정지역의 제품에 대한 방사선검측증빙자료 역시 필수 제출 사항으로 각 식품별 해당지역은 아래와 같다.

- 수산물 : 동경(도), 미야기(현), 이와테(현), 에히메(현)
- 차류 : 동경(도), 오사카(부),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 유제품·영유아식품·사탕·과자·곡류조제품 : 동경(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 대만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에 '일본수입식품방사능검측전문코너'를 별도 마련했으며, 매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5개현의 제품 검역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대만의 일본 식품 방사능 검역 통계▐

식품 종류		누적 검역 건수 (2011/3/15~2017/11/23)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검출 비율
수산물		33,500	1	1	-	0.10
과일		8,628	-	-	-	0.07
야채		4,458	-	-	-	0.04
유제품		3,586	-	-	-	0.06
광천수		926	-	-	-	
영유아 제품		10,417	-	-	-	0.01
해조류		2,630	-	-	-	
쌀		270	-	-	-	
가공식품	차 미포함	48,152	-	-	1	0.07
	차류		8	2	-	1.67

주 : 2017.11.23.일 기준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일본수입식품방사능검측전문코너(日本輸入食品輻射檢測專區)

2. 한국산 농식품 통관거부사례

한국산 검역 통계

○ 2016년 대만의 한국 수입식품 가운데 검역 불합격 건수는 총25건으로 불합격률은 0.2%

- 품목별로는 신선 배추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무지 2건, 갈비소스·당근·딸기·멜론·멸치육수·양상추·양파·인절미과자·파프리카·물병·막걸리병 각 1건 등이다.
- 신선 배추는 총중량 19톤 가량이 수입 검역에 불합격했으며 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었다.

▌2016년 한국산 주요 통관 불합격 내용 ▌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코드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기준	중량 (kg)
1.5 ('15.12.8)	딸기	0810.10.00.00.8	잔류농약 Thiacloprid 0.31ppm·Triflumizole 1.15ppm 검출	Thiacloprid 0.01ppm·Triflumizole 1.0ppm 미만	198
1.12 ('15.12.9)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02ppm 검출	0.01ppm	15,750
1.12 (11.30)	멸치육수	2103.90.90.90.5	방부제 에틸파라벤 0.13g/kg 검출	0.10g/kg 이하	240
2.16 (1.11)	인절미과자	1905.90.30.00.9	감미제 사카린 0.15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1.5
4.12 (3.8)	갈비소스	2103.90.90.90.5	방부제 에틸파라벤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80
4.19 (3.21)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Dimethoate 0.03ppm 검출	0.01ppm	16,170
6.7 (5.3)	막걸리병	3924.10.00.20.1	내열검측결과 이상, 변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40
6.21 (5.20)	파프리카	0709.60.00.00.1	잔류농약 Tetraconazole 0.09ppm 검출	0.01ppm	9,600
6.28 (5.30)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Tebufenozide 0.02ppm 검출	0.01ppm	16,170
8.9 (7.10)	양파	0703.10.10.00.6	잔류농약 Fluazinam 0.03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24,000
8.16 (7.19)	양상추	0705.11.00.00.5	잔류농약 Indoxacarb 0.16ppm ·Flufenoxuron 0.18ppm	각 0.01ppm	10,925
8.16 (7.12)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16ppm 검출	0.01ppm	16,170
8.16 (7.13)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Diniconazole 0.02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6,170
8.16 (7.15)	멜론	0807.19.10.00.2	잔류농약 Spirodiclofen 0.05ppm 검출	0.01ppm	6,400
9.13 (8.17)	단무지	2005.99.90.99.6	감미제 사카린 0.44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131.2
10.4 (9.7)	물병	3924.90.00.30.2	내열검측결과 이상, 변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135.27
11.22 (10.21)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07ppm 검출	0.01ppm	15,750
11.29 (10.26)	단무지	2005.99.90.99.6	감미제 사카린 0.65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1,200
11.29 (10.25)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04ppm 검출	0.01ppm	15,750
12.14 (11.14)	배추				16,170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코드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기준	중량 (kg)
12.14 (11.7)	배추		잔류농약 Etofenprox0.01ppm ·Flonicamid 0.03ppm 검출	Flonicamid 0.01ppm·Flonicamid 미검출	15,750
12.20일 (11.16)	당근	0706.10.00.00.5	잔류농약 Metconazole 0.05ppm 검출	0.01ppm	22,400
12.20 (11.15)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02ppm 검출		15,750
12.28 (11.24)	배추		잔류농약 Flonicamid 0.04ppm 검출		
12.28 (11.29)	배추		잔류농약 Flonicamid 0.02ppm 검출		

주 : 2016.1.1일~2016.12.31일 기준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 대만의 2017년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역 강화품목 가운데 우리나라 품목은 1건으로 신선·냉장 배추였다.

- 대만은 매년 초 주요국 대상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역 강화품목을 선정·발표
- 검역 강화 실시기간은 일괄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검역 시 타 품목보다 주의해서 기준치 초과여부를 검역
- 한국 외 타국가는 중국·일본·태국·미국 등
- 참고 URL : https://www.fda.gov.tw/upload/133/20170126175939682 73.pdf

▌2016년 국가별 대만 수입식품 검역 강화 품목▐

국가명	CCC코드	품목명
한국	0704.90.10.00.8	배추(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캐나다	0829.29.00.00.0	기타 신선한 체리
칠레	0810.40.10.00.0	신선한 블루베리
중국	0706.90.00.10.6	무(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709.60.00.00.1	고추나 피망 과실(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712.39.90.00.5	기타 말린 버섯 및 말린 알버섯
	1211.90.91.10.2	구기자
	1211.90.91.30.8	산초
	1211.90.91.50.3	건조한 국화

국가명	CCC코드	품목명
인도	1207.40.00.00.1	참깨
일본	0709.99.90.90.8	기타 야채·채소(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805.20.10.10.9	신선한 온주밀감
	0805.90.00.00.8-A	기타 신선한 귤류 과실
	0807.19.10.00.2	신선한 메론
	0902.10.00.00.7	발효하지 않은 녹차(매 포장의 중량은 3kg미만)
필리핀	1905.31.00.00.7	스위트 비스킷
태국	0709.20.00.20.6	녹색 아스파라거스(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709.99.90.90.8	기타 야채·채소류(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1211.90.92.10.1	절단된 것이나 으깬 향료용 신선식물 및 식물의 일부 (종자·과실 포함), 포함
	2005.99.20.90.0	제2006절의 제품 외 냉동하지 않은 조제 또는 저장한 마늘 (원형·절단한 것·절편·으깬 것·분말 등 형태)
	2103.90.90.90.5	제2013절에 속하는 기타 제품
미국	0703.10.10.00.6	양파(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709.99.90.90.8	기타 야채·채소류(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809.30.00.10.5	신선 복숭아
	2106.90.99.90.3	기타 조제 식품
베트남	0704.90.10.00.8	배추(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 2017년 11월 24일 기준 대만의 한국산 수입식품 가운데 통관 불합격 건수는 총31건으로 전체검역(15,146건)대비 불합격률은 0.2%

- 품목별로는 신선 배추가 17건으로 올해 역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딸기(4건), 소스류(3건, 떡볶이·양념치킨 2건), 파프리카(2건), 조미김·된장마늘쫑·단무지·깻잎(각 1건) 순으로 불합격 판정
- 불합격 품목은 시중 판매 중량 모두 전량 수거·대만 시장 판매 중단해야 하므로 우리기업의 법정 제한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2017년 한국산 주요 검역 불합격 내용 ▌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코드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기준	중량 (kg)
1.24 ('16.12.26)	딸기	0810.10.00.00.8	Indoxacarb 0.38ppm, Diflubenzuron 0.37ppm, spirotetramat 0.02ppm	Indoxacarb· Diflubenzuron 각 0.01ppm, spirotetramat 미검출	624
2.8 ('16.12.22)	깻잎 (통조림)	2106.90.99.90.3	방부제 에틸파라벤 0.02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10.5
2.8 ('17.1.4)	딸기	0810.10.00.00.8	잔류농약 Indoxacarb 0.07ppm, Diflubenzuron 0.32ppm 검출	각 0.01ppm	936
2.8 ('17.1.5)	딸기	0810.10.0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04ppm, Thiacloprid 0.02ppm 검출	각 0.01ppm	1,248
3.9 (2.6)	딸기	0810.10.00.00.8	잔류농약 Thiacloprid 0.07ppm 검출	0.01ppm	624
3.14 (2.13)	딸기	0810.10.00.00.8	잔류농약 Fenhexamid 0.04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300
4.10 (3.3)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03ppm 검출	0.01ppm	15,855
4.10 (2.28)			잔류농약 Flonicamid 0.03ppm 검출	0.01ppm	15,750
4.19 (3.13)			잔류농약 Etofenprox 0.02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5,855
4.19 (3.15)			잔류농약 Etofenprox 0.01ppm 검출		16,170
6.6 (4.26)			잔류농약 Flonicamid 0.03ppm 검출	0.01ppm	
6.6 (4.28)					
6.13 (5.11,12)			잔류농약 Flonicamid 0.05ppm 검출		
6.20 (5.5)	된장마늘쫑	2005.99.90.99.6	감미제 사카린 0.02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450
6.20 (5.12)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diniconazole 0.01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5,750
6.28 (5.16)			잔류농약 Flonicamid 0.02ppm 검출	0.01ppm	16,170
7.4 (4.21)	떡볶이 소스	2103.90.90.90.5	방부제 에틸파라벤 0.09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5.4
7.18 (6.14)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amisulbrom 0.01ppm 검출	미검출	16,170
7.18 (6.19)	파프리카	0709.60.00.00.1	잔류농약 Clothianidin 0.14ppm , Flonicamid 0.02ppm 검출	Clothianidin 0.05ppm, Flonicamid 0.01ppm	15

발표일 (검역일)	품명	CCC코드	불합격사유	법정 제한 기준	중량 (kg)
7.25 (6.16)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Etofenprox 0.04ppm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5,450
			잔류농약 Flonicamid 0.03ppm 검출	0.01ppm	15,750
7.25 (6.21)			잔류농약 Pymetrozine 0.04ppm 검출		16,170
7.25 (6.22)			잔류농약 Flonicamid 0.02ppm 검출		
8.1 (6.27)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03ppm 검출		17,250
8.8 (7.5)	단무지	2005.99.90.99.6	감미제 사카린 0.77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120
8.15 (7.11)	배추	0704.90.10.00.8	잔류농약 Flonicamid 0.02ppm 검출	0.01ppm	15,750
9.12 (7.24)	치킨소스	2103.90.90.90.5	방부제 4-Hydroxybenzoic acid· Ethyl paraben 각 0.02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18조	30
9.19 (8.14)	파프리카	0709.60.00.00.1	잔류농약 Tetraconazole 0.04ppm 검출	0.01ppm	2,000
9.19 (8.17)	양념치킨 소스	2103.90.90.90.5	방부제 Ethyl paraben 0.088g/kg 검출	0.062g/kg 미만	225
10.17 (8.25)	조미김	2008.99.50.00.9	감미제 사카린 0.02g/kg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1,028

주 : 2017.1.1일~2017.11.24일 기준

자료 : 식품약물관리서

한국산 농식품 통관·검역 주요 이슈

○ 식품첨가물 관련 대만 수입시 대만 규정 내 미등록된 감미료 '효소처리스테비아(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첨가가 적발되었다.

- 효소처리스테비아는 한국식품 가운데 소스류·간장류·음료 등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감미료로, 현재 대만 규정에는 미등록된 성분이다.
- 올해 효소처리스테비아 첨가 관련 6건의 수입 검사 반송 및 소각 처분 피해가 발생했다.
- 향후 대만 유통 식품 내 사용가능 신규첨가물 등록해야 정상 수입이 가능 하다.
- 관련 법규는 '식품첨가물사용범위·제한량·규격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으로 규정 내 미등록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은 검역을 통해 발견시 대만 내 수입이 불가하며, 시판 식품 가운데 위생검사 결과 적발 시 시장서 전면 철수·폐기 처분한다.
- 우리기업은 효소처리스테비아 성분을 대만 내 수입 가능한 식품첨가물로 대체 변경해 사용하는 등 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한국산 식품 가운데 '효소처리스테비아' 첨가 적발 사례▐

수입일자	상품명	수량(CT)/ 중량(Kg)
7.5	컵떡볶이	175 / 344.4
7.10	양념닭소스	15 / 150
9.12	불닭볶음면	1,000 / 1,920
9.9	불고기양념장	150 / 1,500
9.9	불고기양념장	30 / 480
9.22	간 장	20 / 260

주 : 2017.11.2일 기준

자료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의 수입업체 대상 불합격 통지서

○ 한국산 배추는 강화샘플링 검사 및 전수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현 대만 잔류농약초과기준 및 위반될 경우 반송 폐기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입검사단계	상품명	관리 대상 기간
전수검사	배추, 신선 냉장	2017.7.24.~10.23(수입일)
강화샘플링(샘플링 50%이하)	배추, 신선 냉장	2017.1.1.~12.31(수입일)

- 대만 주요 농산품인 배추, 양배추, 양파, 파프리카, 딸기, 멜론 등 한국 잔류농약기준과 대만 잔류농약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해 수입검사 시 반송, 폐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제6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제1절 對 대만 수출 애로사항

1. 농산품

○ 대만 농산품 수출 시 한국 농약잔류허용량기준에 근거해 수출할 경우 대만 수입 통관 검사 시 농약잔류허용량기준 초과 및 기준 상 표기 되지 않은 농약명이 검출 될 경우 모두 반송, 폐기 처리 되고 있다. 〈별첨 3 참고〉

- 대만 주요 수출 농산품 : 배추, 양배추, 양파, 배, 사과, 딸기, 멜론, 고추, 상치 등
- 잔류농약허용량기준 강화 품목 : 딸기, 파프리카, 오렌지류, 차류 등 자국산 보호 품목

○ 對 대만 수출 유망 품목 중 팽이버섯, 파프리카 등은 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므로 현 기준 수입은 대만 명절 등 성수기 및 작황상태 양호하지 않을 때에만 한국산을 수급, 팽이버섯인 경우 연중 고정적 물량 오더 방식이 아니므로 수출업체의 수출거부사례도 나타난다.

○ 배추, 양배추 등은 농산물 운송 시의 저장 온도 등 운송 환경으로 인한 품질 저하, 수량 부족, 납기일 지체 등으로 인한 크레임 및 대금 문제 발생율이 높다.

○ 한국산 사과는 일본산과 미국산의 중간에서 제 위치 확보를 못하고 있어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안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져야 하고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2. 가공 식품

○ 대만 라벨링 표기 규정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수출입 업체 모두 자주 변경되는 라벨링 표기 규정으로 인한 통관 지연, 포장지 재고 문제, 스티커 처리 등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 대만은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규범 및 제한량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에 규정된 식품첨가물만 허용을 하므로 한국 또는 기타국가에서 허용되지만 대만 규정상 표기되지 않았거나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반송, 폐기, 유통 금지처리 된다. 그러나 상기 규정에 정식 허용되는 성분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자료,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보고서 등 신청할 자료가 방대하여 한 개인 업체에서 신청 후 등록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 예 : 한국 단무지의 사카린 성분, 한국산 소스류 음료 등의 효소처리스테비아 성분 등

○ 일반 보건식품은 "건강식품" 인증이 허용되기 전에는 그 상품 기능성에 대한 표기 및 선전을 할 수 없다. 건강식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후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인증 받고 추진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 또한 한국 수출업체의 명의가 아닌 대만 사업자등록업체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여 수입업체가 건강식품 인증의 권한을 가진다.

○ 대만 시장 내 수입산 유기농 농산품 및 그 가공품이 "유기" 표기를 하여 유통될 경우 대만 농업위원회가 인정한 미국, 일본, 유럽 16개국 등 22개국의 국제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만 대만 시장 내 유기농 식품으로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 한국은 현재 22개국 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대만 시장 내 "유기" 표기 및 "유기" 제품으로 수입·유통이 불가하다.

제2절 對 대만 수출 장애 해소 방안

1. 해소 방안

○ 수출 유망 농산품인 경우 대만의 잔류농약허용량기준에 준하는 농산품을 생산하고 대만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포장, 가격을 고려한 수출 시도가 필요하다.

○ 일반 식품인 경우 대만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라벨링 규정 등을 숙지하여 문제 발생 소지의 성분의 경우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한국 식품에 보편적인 포함 성분이 대만 수출 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정부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상품에 적합한 온라인, 판촉, 옥외 광고 등 대만 소비자의 인지도 확보를 위한 홍보사업도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

○ 대만 식품 수입 관련 규정, 라벨링 규정 등 변경 사항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여 실제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해야 한다.

○ 한국산 유기 농산품 및 유기 가공품이 대만 시장 내 유기 명의로 수입 유통이 불가하다. 한국 "유기"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보다 고급화된 상품으로 수입 유통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할 수 있다

- 한국 "유기" 농산품 및 "유기" 가공품이 대만 내 "유기" 명의로 수입 유통 가능 방법

1. 한국 정부의 유기농산품 동등성 인정 국가 심의 신청 및 한국 내 대만이 지정한 국제유기 인증기구 설치 후 그 지정 인증기구의 인증을 제출할 경우
2. 대만이 인정한 22개국 국제인증기구를 통해 유기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경우

[부록]

자료출처

1. 통관 제도

웹사이트

○ 관무서(關稅總局) URL : http://www.customs.gov.tw

○ 타이베이관세국(台北關稅局) : http://taipei.customs.gov.tw

○ 지롱관세국(基隆關稅局) : http://keelung.customs.gov.tw

○ 타이중관세국(台中關稅局) : http://taichung.customs.gov.tw

○ 까우슝관세국(高雄關稅局) : http://kaohsiung.customs.gov.tw

○ 관정사(關政司) : http://doca.mof.gov.tw

○ 전국법률자료사이트 : http://law.moj.gov.tw/

○ 행정원 공고 사이트 : http://gazette.nat.gov.tw/egFront/index.jsp

○ 세관항구무역원스톱창구 : https://portal.sw.nat.gov.tw/PPL/

○ 국제무역국 수입규정 및 관세 검색 : fbfh.trade.gov.tw/rich/text/indexfh.asp

참고 서적

○ 화물통관자동화수첩(貨物通關自動化報關手冊)

○ 중화민국통관수입세칙(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

2. 검역제도· 라벨링 제도

웹사이트

○ 행정원 위생서 URL : www.doh.gov.tw

○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물관리서 : www.fda.gov.tw

○ 행정원 위생서 중의약위원회 : www.ccmp.gov.tw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 www.baphiq.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 : www.bsmi.gov.tw

○ 재정부 국고서 : www.nta.gov.tw

○ 수입식품 검역 불합격 사례 검색 :
https://consumer.fda.gov.tw/Food/UnsafeFood.aspx?nodeID=170

[부록 1]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1975년 1월 28일 총통령 공포

..

2017년 11월 15일 총통령 수정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위생안전·품질을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을 특별 제정

제2조 본 법의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 위생복리주관기관이, 직할시는 직할시정부가, 현(시)는 현(시)정부가 맡는다.

제2조 1항 전국 식품안전 사무의 협조·감독·추진·수사의 강화를 위해 행정원은 식품안전회보(食品安全會報)를 설치하고 행정원장이 의장을 담당한다. 회보의 수장·전문가·민간단체대표는 공동으로 구성하고 식품안전위험평가 및 관리조치는 서로 협조해 담당. 식품안전위생 예고 및 제도 감사 등을 건립하는데 적어도 3개월마다 1회에 걸쳐 임시회의를 소집. 의장은 정무위원 1명 및 식품안전회보 집행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중앙주관기관이 상위 사무를 담당한다.

각 직할시·현(시)정부는 식품안전회보를 반드시 설치하고 각 직할시·현(시)정부 수장이 의장을 맡는다. 각국·처는 부서 간 협조 하에 식품안전위생관리조치를 담당하며, 적어도 3개월에 1회 회의를 진행한다.

제1항 식품안전회의 결정 사항은 각 관련 부회에서 집행·실시하고 행정원은 매분기 대외 공개·관리·감사. 또한, 매년 입법원에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항의 식품안전회보의 구성·임무·의사과정·기타준행사항은 행정원이 결정한다.

제3조 본 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 사람에게 음식이나 씹는 제품 또는 원료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2. 특수영양식품 : 유아와 비교적 큰 유아의 제조식품·특정질병 제조식품·기타 중앙주관기관이 허가한 특수영양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제조식품을 뜻한다.
3. 식품첨가물 : 식품에 착색·양념·부패 방지·표백·유화·향미 증진·품질 유지·발효 촉진·농도 추가·영양 강화·산화 방지·기타 목적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접촉·첨가하는 것을 뜻한다. 종합식품첨가물(複方食品添加物)에 사용하는 첨가물은 중앙주관기관이 허가하는

식품첨가물로 구성해야 한다. 일방적 식품첨가물(單方食品添加物)은 중앙주관기관이 허가한 허가번호(許可字號)를 가진다.

4. 식품기구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접촉하는 기계·도구·용기를 뜻한다.
5. 식품용기·포장 :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물
6. 식품용 청결제 : 식품·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 등을 소독·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7. 식품업자 :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보관·판매·수입·수출에 종사하거나, 식품기구·용기·포장·세정제 등을 제조·가공·수입·수출·판매하는 업자를 뜻한다.
8. 표시(標示·라벨링): 식품·식품첨가물·식품용 세정제·식품기구·식품용기·포장상 품명을 기록하거나 설명하는 문자·그림·기호·부가설명서 등을 포한다.
9. 영양표시 : 식품용기·포장 상단에 식품의 영양성분·함량·영양표명 등을 기록한 것
10. 검사 : 조사와 검역
11. 유전자개조 : 유전자 공학이나 생물분자기술 등을 사용해 유전물질을 전이하거나 인간의 세포나 생명체에 이식하는 등 유전자를 개편하는 현상이며, 외부 유전자에서 보이는 특성을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 특정 유전자로 표현하는 관련 기술. 한편, 전통적인 육종·같은 종의 세포나 원생체질의 융합·교배·변이 유도·체외수정·체세포 변이·염색체 증가 등 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장 식품안전위험관리

제4조 주관기관은 식품안전관리조치를 채택·이행해 리스트 평가를 토대로 국민 건강 향유·식품안전·알권리·과학증거원칙·사전예방원칙·자료투명원칙을 만족케 하는데 부합. 리스크평가와 자문시스템을 건립한다.

앞서 서술한 위험평가는 중앙주관기관이 식품안전·독극물·리스크평가 등 전문가와 민간단체를 구성해 식품 리스크평가자문회의를 소집한다.

제1항에 언급한 자문시스템은 식품위생안전·영양·유전자개조식품·식품광고라벨링·식품검사방법 등 자문회(諮議會)를 설립하고 식품안전·영양학·의학·독극물·리스크관리·농업·법률·인문사회 등 영역 관련 학자로 구성해 소집한다.

자문회의 구성·의사·절차·범위·기타 준행사항의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중앙주관기관은 중대하거나 갑작스런 식품위생안전사건 발생시 위험평가나 유행병조사 결과를 시행해야 하며 특정제품이나 특정지역제품에 다음과 같은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1. 수입검험·제조·가공등 방식·조건의 제재·중지 2. 판매 중지·격리·기한부 회수·기한부 개조·몰수·소각

제5조 각급 주관기관은 과학실증에 의해 식품위생안전검측시스템을 건립. 검측에서 유해식품을 발견하거나 위생안전의 우려되는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경고나 관리조치를 발표한다. 앞서 언급한 적극적 검사·경고나 관리조치 발표는 주관기관이 샘플링검사·원재료 출처 추적·제품 이동경로·검사결과 발표·조사자료 발표 등을 시행해야 하며 식품업자가 주도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각급주관기관은 공고시스템을 건립하고 식품이 발생·감염케 하는 바이러스를 구분한다.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나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주관으로 식품 바이러스사건의 통보를 수집·처리한다.

의료기구는 환자 진료시 식품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 우려될 경우 24시간내 관할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식품업자의 위생관리

제7조 식품업자는 식품안전검측계획에 따른 자주적 관리를 시행해 식품위생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식품업자는 제품원재료·반/완제품을 스스로 또는 검사기관(구)·검역단체·법인에 송치해야 한다.

상장하거나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자는 실험실을 설치해 자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안전검측계획의 식품업자유형·규모는 제2항의 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식품업자유형·규모, 최저검험주기, 기타 관련 사항 등 내용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다.

식품업자는 제품의 위생안전 유해여부 발견시 주동적으로 제조·가공·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관할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식품업자의 작업자·작업장소·위생관리설비·품질보장제도는 모두 식품의 양호위생규범준칙(良好衛生規範準則)에 부합해야 한다.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준칙(食品安全管制系統準則)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자는 중앙·직할시·현(시) 주관기관에 등록·영업해야 한다.

제1항 식품의 양호위생규범준칙, 제2항 식품안전관리시스템준칙, 상기 식품업자 등록신청의 조건·절차·등록사항·신청변경·등록폐기·취소·기타준행 사항의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자는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의 검증을 취득해야 한다.

상기 검증은 중앙주관기관이 인정한 검증기관에서 시행. 관련 인증 신청·취소·폐기의 조건이나 사유는 검증의 수납·절차·방식·기타 관련 사항의 관리 방법 집행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9조 식품업자는 제품 원재료나·반/완제품의 출처 관련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자는 산업모델에 따라 제품 원재료·반/완제품 공급 출처 추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안전위생·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추적시스템을 확립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재고하며, 상기 업자는 역추적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전자영수증 사용할 것으로 공고한다.

중앙주관기관은 제2항의 추적시스템을 건립해야 하며, 식품업자는 전산방식으로 추적시스템의 자료를 신고해야 한다. 전산신청방식·규모는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의 보존 문서 유형·기간·제2항의 추적시스템의 건립·필수 기록사항·검사·기타 준행사항의 방법은 웅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0조 식품업자의 공장설립 등기는 중앙주관기관·중앙공업주관기관이 처리한다.

식품공장의 건축·설비는 공장설립기준(設廠標準)에 부합해야 한다. 기준은 중앙주관기관과 중앙공업주관기관이 함께 정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공장은 반드시 단독 설립해야 하며, 식품이 아닌 제품을 같은 공장부지에서 동시에 제조·가공·배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중앙주관기관이 조사해 약물우량제조준칙(藥物優良製造準則)의 약품 겸 식품제조업자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자는 본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중앙주관기관은 수정조문시행 후 6개월 내 공고하며, 2014년 10월 18일 수정 조문 시행 전, 상술한 공장 미(未) 단독 설립자는 공고 후 1년 내 처리를 완성해야 한다.

제11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자는 위생관리원을 둬야 한다.

위생관리원의 자격·훈련·직무·기타준행사항 등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2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의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식품·영양·요식 등 전문가를 두고 식품위생안전관리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설치·직무·업무 등 실행·관리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3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자는 반드시 제품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품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계약내용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조 공공요식장소위생관리방법은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에 의해 중앙주관기관이 제정한 각 위생기준·법령에 따른다.

제5장 식품위생관리

제15조 식품·식품첨가물이 다음과 같을 경우, 제품의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보관·판매·수출입·샘플 제조·공개 진열 등을 금지한다.

1. 변질·부패, 2. 미성숙·인체 건강에 유해, 3. 독성·인체유해성분·이물질 등 함유 4. 병원성 생물에 감염됐거나 유행성 바이러스 등에 중독된 식품, 5. 잔류농약·동물용 약품 함량이 안전허용치 초과, 6. 방사진·방사능에 피폭돼 함량이 안전허용치 초과, 7. 위조품, 8. 유통기한 초과, 9. 국내 제공을 위한 음식이 아니거나, 인체무해 증명 없음, 10. 중앙주관기관이 허가한 첨가물 첨가, 앞서 언급한 잔류농약·동물용약품 안전허용치 및 방사진·방사능오염 안전허용치 기준은 중앙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이 정한다.

앞서 언급한 인체유해 물질은 비전염병 유행지역이나 최근 10년 내 광우병·신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발병 국가·지역의 소 뼈·뇌·눈알·척수·간 고기·내장·기타 관련 제품을 포함한다.

국내외 육류나 관련 제품은 중앙주관기관이 국민식사습관에 근거해 위험평가에서 정한 안전허용 기준자 외에 FDA승인 에너지 재배분제(β-agonists) 검출이 불가하다.

식용안전허용잔류 β-agonists 육류제품이 국내외서 중독 사례 발견 경우, 즉각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국내에서 관련 사항 확인 후 정부는 보호 책임이 있으므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협조한다.

제15조 1항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으로 제공 가능한 원료에 제조·가공·배합 방식이나 조건·식용부위·사용량·완제품형태 등을 제한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제한하는 원료품질 및 제한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다.

제16조 식품기구·용기·포장·식품용 세정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제조·판매·수출입·사용을 금한다.

1. 유독성, 2. 불량화학작용, 3. 건강 유해 가능, 4.기타 위험평가를 거쳐 건강유해가 예상될 경우

제17조 판매하는 식품·식품용 세정제·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은 반드시 위생안전·품질 기준(衛生安全及品質之標準)에 부합해야 한다. 기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8조 식품첨가물의 품명·규격·사용범위·한도기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앞서 언급한 기준의 제정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예상효과의 최소양을 한도로 한다. 국민식습관에 근거해 위험평가를 하며, 반드시 규격기준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 중앙주관기관은 돌발사건 긴급응변 필요에 따라, 제15조 2항 및 2조의 기준 미 제정 전, 충분한 실험자료를 취득할 수 없을 때 잠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20조 도살장 내 가축도살 및 분해의 위생 검사는 농업주관기관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운송과정의 도축체·내장·기타 분해한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보관·판매·수출입의 위생관리는 각급 주관기관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식품업자가 보유한 도축체·내장·기타 분해한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보관·판매·수출입의 위생관리는 각급 주관기관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항 위생검사의 규범은 중앙주관기관과 중앙농업주관기관이 함께 제정한다.

제21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는 제조·가공·배합·재포장·수출입시 중앙주관기관을 거치지 않은 검역등기·허가문서 발급을 금한다. 등기사항 변동시 사전에 중앙주관기관에 검사·허가를 신청한다.
식품 내 포함한 유전자 변형식품 원료는 중앙주관기관의 건강위험평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검사등기 허가증을 취득할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중앙주관기관 검사 후 발부한 허가증의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는 수입업자가 제9조 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공급출처·내역의 추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1항·2항 허가증 유효기간은 1~5년이며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기간 만료 후 계속 제조·가공·배합·재포장·수출입할 경우 기간만료 3개월 내 중앙주관기관의 연장허가를 신청. 한편, 매회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2항 허가증의 폐기·허가증의 발급·정정·연기·재발급·이전·말소 등 관리사항의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2항의 검사등기는 기타기구에 위탁해 실행하며, 위탁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본 법은 2014년 1월 28일 수정 전, 제2항의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 검사등기 미시행했을 경우 발표 후 2년 내(2016년 1월 28일)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제5장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관리

제22조 식품·식품원료의 용기·외 포장은 중문·통용부호로 표시해야 한다. 명확한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품명, 2. 내용물명칭(두 종류 이상 혼합 시, 함량이 비교적 높은 순으로 표시), 3. 실중량·용량·수량, 4. 식품첨가물 명칭(두 종류 이상 혼합 시, 효능에 따라 첨가물 명칭을 분류해 표시), 5. 제조상·국내업체 명칭·연락처·주소(농산품 생산 검증을 통과했을 경우, 추적 가능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중앙농업주관기관이 공고한 생산시스템 해당자는 생산시스템 표시), 6. 원산지(국), 7. 유통기한, 8. 영양표시, 9.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 10.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사항

내용물의 주성분은 퍼센트(%)로 표기. 표기할 제품·주성분·표시내용·방식·실시일자는 중앙주관기관이 별도 지정한다.

라벨링 준행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다.

국내업체 명칭만 작성할 경우 제조상·수탁제조상·수입상의 명칭·연락처·주소를 관할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기타주관기관과 공동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23조 식품 용기·외포장의 면적·재질이나 기타 특수요인 때문에 앞서 규정한 라벨 표시가 어려울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라벨링 면제 규정을 공고하고 기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 식품첨가물 및 첨가물 원료의 용기·외포장은 반드시 중문·통용부호로 아래사항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1. 품명, 2. '식품첨가물(食品添加物)' 또는 '식품첨가물 원료(食品添加物原料)' 문구, 3.식품첨가물 명칭(두 종류 이상 혼합 시, 분류해 표기. 표시는 제18조 2항에서 정한 품명·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통용명칭으로 함), 4. 실중량·용량·수량, 5. 제조상·국내업체 명칭·연락처·주소, 6. 유통기한, 7. 사용범위·용량기준·사용한도, 8. 원산지(국), 9.유전자 변형 식품첨가물의 원료, 10.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사항

식품첨가물의 원료는 앞서 언급한 제3·7·9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관 식품첨가물의 향신료성분 및 제9관 표시의 준행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의 공고에 따른다.

국내업체 명칭만 작성할 경우 제조상·수탁제조상·수입상의 명칭·연락처·주소를 관할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기타주관기관과 공동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중앙주관기관은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제공 특정식품의 경우 원산지·기타 표시사항을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한다.

특정 소포장 식품 판매자는 판매 장소·방식에 제한을 두고, 중문으로 품명·원산지(국)·유전자 변형 식품원료·제조일자·유통기한·기타사항을 표기. 대만 내 농산품생산검험을 통과한 경우, 추적 가능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중앙농업주관기관이 공고한 생산시스템을 갖춘 경우, 생산시스템을 표시해야 한다.

특정 식품의 식품 항목·표기사항·방법·범위 및 특정 소포장 식품의 항목·제한방식·표시사항 등은 중앙주관기관의 공고에 따른다.
추적 가능한 출처 및 생산시스템 표시 등 규정은 2015년 1월 20일 개정 공표 후 6개월 후 실시(2015년 7월 20일)

제26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 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은 중문·통용부호를 반드시 사용하고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1. 품명, 2.재질명칠·내열온도(두 종류 이상 혼합했을 경우, 분류해 표기), 3. 실중량·용량·수량, 4. 국내업체 명칭·연락처·주소, 5. 원산지(국), 6. 제조일자(유통기한이 있을 경우 별도 기입), 7. 사용시 주의사항이나 전자렌지 사용 불가 등 경고 문구, 8.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사항

제27조 식품용 세정제의 용기·외포장은 중문·통용부호를 반드시 사용하고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1. 품명, 2. 주요성분의 화학명(두 종류 이상 성분 구성시 분류해 표기), 3. 실중량·용량, 4. 국내업체 명칭·연락처·주소, 5. 원산지(국), 6. 제조일자(유통기한이 있을 경우 별도 기입), 7. 사용대상·용도, 8. 사용방법·사용주의사항·경고문구, 9.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사항

제28조 식품·식품첨가물·식품용 세정제·기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은 라벨링·홍보·광고시 부실하거나 과장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식품은 의료효능의 라벨링·홍보·광고를 사용하지 못한다.
중앙주관주관기관은 특수영양식품·만성병 유발·유아사용금지·특수수요자장기복용금지 식품에 마케팅·광고를 제한해야 한다. 식품의 항목·마케팅·광고의 제한·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기타 준행사항의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29조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을 위탁받은 미디어업자는 광고 기간 6개월 동안 위탁 광고자의 성명·명칭·신분증 번호·회사·상호·법인 및 단체의 설립등기문서번호·거주지·사무소·영업소·연락처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제출 요청시 회피·집행 방해·거절할 수 없다.

제6장 식품수입관리

제30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유전자 변형 식품원료·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의 수입 시, 반드시 대만 해관의 화물분류코드에 따라 중앙주관기관에

검험을 신청하고 제품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규정 실시 전, 검험 실적이 우수한 업자는 중앙주관기관이 우대 조치를 취한다.
앞서 언급한 제품을 비매품 용도로 수입할 경우, 금액·수량이 중앙주관기관 공고에 부합하거나 중앙주관기관 허가를 취득한 자에 한해 검험신청을 면한다.

제31조 앞서 언급한 제품의 검험·수입 신고는 중앙주관기관의 위임·위탁기관(구) 또는 법인·단체에서 처리한다.

제32조 주관기관은 추적 또는 식품위생안전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시 식품업자·비식품업자·대리상에게 수입제품의 관련 기록·문서·전자문서·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식품업자·비식품업자·대리상은 주관기관의 제출 요청에 회피·집행 방해·거절할 수 없다.
식품업자는 반드시 앞서 언급한 관련 제품·유전자 변형 식품원료의 수입 기록·문서·데이터베이스 등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반드시 보존해야할 자료·방식·범위는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다.

제33조 수입제품의 성질·검험시간 등이 특수한 조건일 경우, 식품업자는 검험기관에 사전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특정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검사기관 심사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할 경우 납부 후 사전반출 서약서 제출을 허가한다.
사전반출 서약서 제출 제품은 식품업자·대리상에 의해 보관장소를 지정한다. 수입허가 취득 전, 이동·사용·판매 등을 금지한다.
제품 수입의 검역·수입 신청·검험의 위탁·우수업체의 수입 검사·수입 신고의 우대 조치·수입제품의 사전반출 조건·심사 보증금 기준·기타 준행사항 등 관련 사항의 처리는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34조 중앙주관기관은 중대한 식품위생안전사건 발생 또는 수입제품의 불합격 사유가 엄중할 경우 관련 업자·원산지·제품 등의 검사 신청을 중지한다.

제35조 중앙주관기관은 안전위험정도가 비교적 높은 식품을 관리·제어하기 위해 수입 전 체계성 검사를 실시한다.
체계성검사 제품의 범위·정도 등 관련 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중앙주관기관은 근원지 관리 수요 또는 개별식품위생안전사건에 바탕을 두고 국외로 조사자를 파견해 수입식품의 위생안전관리 등 사항을 검사한다.
식품업자는 수입식품 첨가물이나 포함해 제조할 경우, 원산국의 제조사 또는 책임자에게 제품성분보고서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 위생증명을 요청해야 하며, 각급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향신료의 경우 관련 없다.

제36조 국외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는 국민의 신체·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중앙주관기관이 판단할 경우 여행객의 반입 역시 반드시 원산국의 위생주관기관이 발부한 위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 신체·건강에 엄중한 유해 제품일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여행객의 대만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관련 제품 반입시 전부 몰수·폐기한다.

제7장 식품검험

제37조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의 검험은 각급 주관기관 또는 관련 기관(구)·법인·단체에서 위임·위탁받아 처리한다.
중앙주관기관은 위임·위탁한 관련 기관(구)·법인·단체에 인증을 처리. 필요시 인증작업 역시 위임·위탁한 관련 기관(구)·법인·단체서 처리한다.
검험의 위임·위탁한 관련 기관(구)·법인·단체의 조건·절차·위탁은 인증작업의 절차·기타 관련항의 관리 방법 등 처리는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각급 주관기관은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의 검험을 집행하며, 검험방법은 식품검험방식자문회(食品檢驗方法諮議會諮議)를 거쳐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검험방법 미지정 제품은 국제간 통용방법으로 처리한다.

제39조 식품업자는 검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15일 내 검험 받은 기관(구)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리 기관(구)는 반드시 3일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검사체가 자료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일 경우 처리하지 않는다.

제40조 식품위생검역 결과 발표 시, 반드시 검험방법·검험기관·결과판독증거 등을 함께 밝혀야 한다.

제8장 식품검사 및 관리단속

제41조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은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를 본 법규에 맞도록 확실히 보장하며, 다음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업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회피·집행 방해·거절할 수 없다.
1. 수입품의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보관·판매 장소 현장검사 및 샘플링검사를 실시한다,
2. 앞서 언급한 1번 내용의 샘플링 검사 시, 수입품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보관·판매하는 장소의 식품업자는 원료·제품출처·수량·작업·품질보장·판매대상·금액·기타 증거자료·증명·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열람·구류·복제해야 한다, 3. 검사결과증거가 본 법규의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 내용에 부합할 경우 봉인한다, 4. 제8조 1항·제15조 1항 및 4항·제16조를 위반했을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제17·18·19조 기준에 따라 식품업자의 작업·판매를 중지시키며, 해당 제품을 봉인한다, 5. 애매모호한 식품 바이러스 안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식품업자에게 기한을 주고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각급 주관기관이 허가한 기관(구)이 파견한 조사자에게 최소 4시간의 식품 바이러스 방지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 동안 잠시 작업 중지·판매 정지·소독진행하며 해당 제품은 봉인해야 한다.

제42조 앞서 언급한 식품검사 및 관리단속은 기타 준행사항 방법을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42조-1 식품안전위생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업자가 위법행위시 경찰기관이 인원을 파견해 주관기관에게 협조한다.

제43조 주관기관은 본 법규의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의 표시·홍보·광고를 위반한 식품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검거인의 신분자료를 비밀로 하고 사정을 참작한다. 공무원의 기밀 누출시 법에 따라 형사·행정책임을 물을 것이다.
주관기관이 수리한 검거안의 관할·처리기간·비밀보안·검거인장려·기타준행사항의 처리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검거인 신분자료의 비밀보장은 소송절차와 역시 동일하다.

제9장 벌 칙

제44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6만~2억 대만달러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경과가 중대할 경우 일정기간 영업중지 또는 회사/상업/공장 등기사항·식품업자 라이선스 등 폐지 조치한다. 폐지한 라이선스는 1년간 재등록 신청이 불가하다.
1. 제8조 1·2항 규정 위반자는 개정기간 내 개정 불이행, 2. 제15조 1·4항 및 제16조 규정 위반, 3. 주관기관의 제52조 2항 규정에 따라 회수·소각을 불이행, 4. 중앙주관기관의 제54조 1항에서 정한 제조·판매·수출입금지 공고 위반
범칙금 기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5조 제28조 1항 또는 중앙주관기관의 제28조 3항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자는 4만~4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제28조 2항 위반자는 6천만~5백만 대만달러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한편, 재위반시 일정기간 영업정지 및 회사/상업/공장 등기사항·식품업자 라이선스 등 폐지 조치. 폐지한 라이선스는 1년간 재등록 신청이 불가하다.
광고 규정을 위반한 식품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방송정지 처분한다.
제28조 관련 광고규정 가운데 위반 사항이 있거나 위반내용이 엄중할 경우 앞서 언급한

처분 외 주관기관은 판매·진열·공급금지 등 명령을 내릴 것. 한편, 처분서 송부일 기준 30일 내 원 방송물과 동일 시간·길이로 일정 횟수에 걸쳐 정정광고를 방송해야 한다. 내용은 사과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했으나 계속 판매·공급·진열·광고 미수정한 자는 12만~60만 대만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제46조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방송업자는 6만~3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한다.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은 제45조 1항 처벌시, 광고업자와 관련 직할시·현(시)의 주관기관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방송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방송을 중지해야 한다.
광고업자가 중앙주관기관의 광고 제한 법규를 어겼을 경우 12만~6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한편, 방송 중지 명령을 한다.
광고업자는 통지를 받은 후 방송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직할시·현(시)주관기관은 기존 벌칙외 광고업자의 직할시·현(시)의 주관기관이나 방송주관기관에 법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통지한다.

제47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3만~300만 대만달러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 영업 중지 및 회사/상업/공장 등기사항·식품업자 라이선스 등 폐지 조치. 폐지한 라이선스는 1년간 재등록 신청 불가하다.
1. 중앙주관기관의 제4조 공고 위반, 2. 제7조 5항 규정 위반, 3. 식품업자가 제8조3항·제9조2항·제9조4항내 규정한 부실한 자료의 등록·건립·신고의 경우 또는 제9조3항의 전자영수증이 부실해 식품추적검사에 영향이 있을 경우, 4. 제11조1항·제12조1항 규정 위반, 5. 중앙주관기관의 제13조에서 정한 제품책임보험의 규정 위반, 6.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의 제14조 관리방법 가운데 유관 공공요식장소위생 규정 위반, 7. 제21조1·2항 및 제22조 1·2·3항 공고 사항 또는 제24조1·2항 및 제26·27조 규정 위반, 8. 제48·9조 규정 위반 외 중앙주관기관의 제18조 기준 가운데 식품첨가물 규격·사용범위·제한량의 규정 위반, 9. 중앙주관기관의 제25조 2항 공고 위반, 10. 본 법에서 정한 검사·검역·압수·봉인 등을 회피·방해·거절할 경우, 11. 본 법규에서 정한 제공 자료를 거절하거나 부실하게 제공한 경우, 12. 본 법규의 영업·판매 중지를 미이행할 경우, 13. 제30조 1항 규정을 위반해 수입제품 정보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로 신고했을 경우, 13. 제53조 규정 위반

제48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한을 주고 개정을 명령하며, 미이행 시 3만~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영업 중지 및 회사/상업/공장 등기사항·식품업자 라이선스 등 폐지 조치. 폐지한 라이선스는 1년간

재등록 신청 불가하다.

1. 제7조 1항 식품안전검측계획 미이행, 2·3항 실험실 미설치, 2. 제8조 3항 등록 미이행 또는 제8조 5항 검증 미취득, 3. 제9조 1항 문서 미보존 및 규정기한 미달, 4. 제9조 2항 추적시스템 미건립, 5. 제9조 3항 전자영수증 미실시로 식품 추적 불가할 경우, 6. 제9조 4항 전자방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중앙주관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규격 미신고시, 7. 제10조 3항 규정 위반, 8. 중앙주관기관의 제17·19조 기준 위반, 9. 식품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중앙주관기관의 제18조 식품첨가물 규격·사용범위·제한량 규정 위반, 10. 제22조 4항·24조 3항 규정 위반으로 관할지역 주관기관에 미통보, 11. 제35조 4항 규정 제품성분보고서·수출국 국가기관 위생증명서 미제출, 12. 중앙주관기관의 제15조 3항 공고의 제한사항 위반

제48조의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3만~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영업 중지 및 회사/상업/공장 등기사항·식품업자 라이선스 등 폐지 조치한다. 폐지한 라이선스는 1년간 재등록 신청이 불가하다.

1. 본 법의 수탁처리에 따라 식품업자가 위생안전관리 검증 시 제8조 5항의 관리규정을 위반, 2. 본 법에서 인정한 검험기구·법인·단체가 제37조 3항의 인증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본 법의 수탁처리 검험기관(구)·법인·단체가 인증 시 제37조 3항의 위탁인증관리 규정 위반

제49조 제15조 1항 3·7·10관 또는 제16조 1관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대만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8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제44조부터 28조 행위를 한 경우 상황이 중대해 인체건강을 위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인체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앞서 언급한 범죄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7년 이상 징역과 2억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한편, 중대한 상해를 입힐 경우 3~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5천 대만달러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제1·2항의 과실범의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단기 징역 및 600백만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인 대표·법인 또는 일반인의 대리인·종사자 또는 기타종사자는 업무를 실행하였으므로 제1~3항의 범죄를 지었다고 판단, 처벌자 외 법인·일반인 역시 각 항의 10배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은 형법 제58조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의 1 본 법의 범죄는 범죄의 추적 범위·금액을 사실상 시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산해 인정한다. 추산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49조의 2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유형·규모의 식품업자는 제15조 1·4항 및 제16조 규정 위반, 또는 제44~48조의 행위로 인체건강을 위해할 경우 모든 재산·관련 이익 몰수·추징한다.

주관기관은 상당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처분을 피하거나 재물·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제3자가 받은 이익을 몰수한다. 전부 또는 일부분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금액·재산을 추적해 과징한다.

재물·재산의 몰수·추징을 보전하기 위해 주관기관은 본 법에 따라 행정원에 구류·가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은 면한다.

주관기관은 본 법에 따라 위반한 재물·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과징금 또는 배상재산의 추징 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50조 고용주는 노동자가 주관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본 법의 위반행위를 폭로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의 증인·참여거절 등 원인으로 해고·인사이동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고용주나 대표고용주의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앞서 언급한 규정으로 노동자를 해고·강등·임금 삭감할 경우 무효처리한다.

고용주 외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데 참여한 자는 형사책임이 있으며 주관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고용주의 위반사실을 폭로한 자는 형을 면하거나 경감한다.

제51조 다음과 같은 경우 주관기관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제47조 13관 규정에 따라 식품업자·대리인은 제30조 1항 규정의 검사신청을 잠시 중지시킴. 제품이 이미 시판 중이나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식품업자에게 회수·소각·반송을 지시, 2. 제30조 3항 규정 위반 시 수입검험의 제품 제공·판매자는 검험 신청을 1년간 하지 않는다. 3. 제33조 2항 규정 위반 시 제품 수입 허가 취득 전 멋대로 이동·사용·판매할 경우 또는 보관장소 미이행 시 지급한 보증금을 몰수하고 1년간 관련 식품업자의 보관서 제출을 잠정 중단. 판매자는 판매가격의 1~20배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제52조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은 제41조 규정의 검험·검험자에 따라 관할 직할시·현(시)의 주관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 1·4항 및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몰수·소각, 2. 중앙주관기관이 정한

제17·18조 기준에 부합할 경우 또는 제21조 1·2항 규정 위반시 제품과 관련 원료의 제품은 몰수·소각. 한편, 소독·합당한 안전조치 시행 후 식용으로 제공이 가능하거나 국민건강에 영향이 미미할 경우 소독기간·개조 및 안전조치 시행 기간 통지. 통지기간 내 미시행할 경우 몰수·소각, 3. 제22조 1·2항·3항 및 제24조 1·2항 및 제26·27·28조 1항 공고의 라벨링 위반자는 회수·개정 기간을 통지, 개정 전 판매를 금지한다. 기간 내 미이행 시 제28조 2항 위반으로 보고 몰수·소각, 4. 제41조 1항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 및 판매 정지 등 보관 제품 또는 3번 내용의 위반자는 처분을 취소하고 제품을 개봉할 수 있다. 1~3번의 몰수된 제품은 제조·판매·수입자가 즉시 사용·식용을 정지할 것을 공고하고 회수·소각해야 한다. 필요시 관할 직할시·현(시)의 주관기관이 대리 회수·소각할 수 있으며 필요비용을 청구한다.

회수·소각 제품의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 1관 또는 2관 제품의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판매·수출입 식품업자는 현지 직할시·현(시)주관기관이 상업번호·주소·책임자성명·상품명·위반상황을 발표한다.

수입시 통관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중앙주관기관이 수입을 관리감독하며, 제1항 각 관 및 2항 또는 이전 항의 처분을 시행한다.

제53조 직할시·현(시)의 주관기관은 제52조 1항 규정에 따라 제한기간 내 회수·소각 제품 또는 기타 처치 후 식품업자는 처리과정·결과·개선상황 등 자료를 관할 직할시·현(시)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4조 식품·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는 52조 1항 및 제1·2관 상황일 경우, 제52조 규정의 처분 외 중앙주관기관이 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을 금지한다.

앞서 공고한 금지제품은 중앙주관기관의 등기검사를 위해 허가문건 발급허가를 폐지한다.

제55조 본 법에서 정한 모든 처벌은 별도 규정 외 직할시·현(시)주관기관이 처리. 필요시 중앙주관기관이 처리. 한편, 관련 회사·상업·공장의 전부 또는 부분 등기사항의 폐지는 직할시·현(시)주관기관이 영업 정지 처분 확인 후 공·상업주관기관 또는 영리사업주관기관이 처리한다.

제55조의 1 본 법의 행정처벌 및 행위 인정 기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56조 식품업자가 제15조 1항 3·7·10관 및 제16조 1관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식품업자가 당사의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보관·판매·수출입 등 원인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손해 발생 방지에 상당부분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는 비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나 상당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47·55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소송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거나 실제 손실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 침해경위를 청구해야 하며 1인당 1건에 한해 500~3,000 대만달러 이하로 계산한다.
직할시·현(시)정부가 같은 원인의 사건을 소비자 20명 이상이 소송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소비자보호단체가 소비자를 대리해 위임 소비자보호법 제49조 1항 소송의 변호사는 소송의 청구보수를 한다. 소비자 보호법 제49조 2항 후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6조의 1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안전사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기금을 설립하고 기타기구(관)·법인·단체에 위탁해 처리한다.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본 법 위반 벌금의 부분 사용, 2. 본 법 위반 과징금 및 위반 몰수 제품의 현금 및 매각소득, 3. 본 법 또는 행정처벌법규가 정한 몰수·추징·저당한 부당이득 부분 사용, 4. 기금 증액 수입, 5. 기부수입, 6. 순환예산 절차의 지출, 7. 기타 관련 수입
1·3의 출처는 처분유효기간을 2013년 6월 21일 이후 분부터 사용
1의 기금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보호단체가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식품위생안전사건 및 소비소송의 변호사 임금 또는 소송 관련 비용으로 보조, 2. 공고의 특정식품위생안전사건 및 인체건강 위험평가비용으로 보조, 3. 노동자가 고용주의 본 법 위반사항 고발 시 고용주의 해고·직위조정·기타불이익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조. 임금·손해보상소송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로 사용, 4. 제43조 2항에서 정한 장려금으로 보조, 5. 기타 식품안전 촉진 관련 비용 보조
중앙주관기관은 기금의 운영관리 감독팀을 설립하고 자·전문가·소비단체·사회공정인사 조직에게 보조업무를 감독케 해야 한다.
제4번 기금의 보조대상·신청자격·심사절차·보상기준·보상폐지·기금운용 관리 감독팀의 구성/운영/기타 준행사항의 처리는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0장 부칙 (아동용 장난감)

제57조 본 법은 식품기구·용기 관련 규정으로 아동이 직접 입에 접촉하는 장난감에 적용한다.

58조 중앙주관기관은 본 법에 따라 식품업자 심사를 신청·검사·허가증발부 등을 처리하며, 심사비·검험비·증서비 등을 수리. 비용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59조 본 법의 실행세칙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60조 본 법은 제30조 신청제도·제33조 보증금수납규정·제22조 1항 5관·제26조·27조는 공표 후 1년 실행 외 공표일에 시행한다.
제22조 1항 4관 2014년 6월 9일 실시
본 법은 2014년 1월 28일 수정조문인 제21조 3항은 발표 후 1년 시행
본 법은 2014년 11월 18일 수정조문이며, 제22조 1항 5관 라벨링 출처소급이나 생산시스템 규정 외 발표 후 6개월에 실시한다. 제7조 3항 식품업자의 실험실 설치 규정 및 제22조 4항·제24조 1항 식품첨가물의 원료 라벨링 사항 규정 및 24조 3항·35조 4항규정은 발표 후 1년 시행하며, 공표일에 실시한다.

[부록 2]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방법

위생복리부 2014년 1월 27일 부수식자 제1022051463호령 수정
위생복리부 2015년 6월 24일 부수식자 제1042000518호령 수정
위생복리부 2017년 8월 11일 부수식자 제106200160호령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방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이하 '본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 신청 의무인 : 식품·식품 첨가물·식품기구·식품포장·식품용 세정제 등 관련 제품(이하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
2. 검사기관 : 중앙주관기관 또는 중앙주관기관이 위임·위탁한 기관(구)·법인·단체
3. 대조 : 검사 인원이 제품 품명·규격·포장을 대조·확인하고 해당 외관·성질·형상·라벨링·기타 법규에 부합하는 검사
4. 검험 : 검사 인원이 샘플을 추출하여 실험실에 교부하며, 감관·화학·생물 ·물리성 진행 검사·화학 실험

제2장 검사 신청

제3조 검사 신청 의무인·대리인은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15일 내 수입 항구 소재지의 검사기관에 검사 신청. 검사 신청을 대리인이 한 경우 위탁 대리서류를 구비.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검사 신청 ·신고 대리를 업무로 하는 사업자는 통관(검사신청) 업무 증명서와 회사·상호 등록 증명 문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4조 검사 신청 의무인은 아래문건을 구비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한다.

1.검사신청서(검사 신청 의무인은 식품약물관리서가 지정한 전자방식으로 신청), 2. 제품자료표, 3.수입신고서 사본, 4.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품약물관리서') 지정서류. 검사기관은 본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기타 필요문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신청 의무인은 회피·방해·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됨

제6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검사 신청한 동일 차수의 제품은 수입신고서·상품분류 코드·품명·성분·브랜드·제조업체·생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수입제품이 생물·미가공 생산물·또는 냉장 물고기·새우·게·조개·연체류 등 가운데 동일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수로 합쳐서 검사를 신청한다.

제7조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 의무인이 다음의 상황 가운데 한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검사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1. 제4·6조 규정에 따라 검사 미신청, 2. 검사신청서·제품자료표·기타 관련 사항 부실하거나 검사기관에서 수정기한을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수정 하지 않은 경우

제3장 검사 절차

제8조 검사기관이 수입품에 대해 검사 실시 시 다음 방식을 단일·혼용해 실시한다.

1. 전수검사 : 검사를 신청한 각 제품에 대해 현장 대조 및 샘플 추출 테스트 진행
2. 발취 검사 : 검사 신청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취 검사율에 따라 차수 발취를 진행 전수검사하며, 추출 제품에 대해 현장 대조 및 샘플 테스트를 진행. (1) 일반 발취 검사 : 발취 검사율 2~10%, (2) 강화 발취 검사: 발취 검사율 20~50%
3. 현장심사 : 검사 신청 각 차수 제품에 대해 모두 현장 대조 실시
4. 인증검사 : 중앙주관기관과 수출국 수출품 위생안전 관리기관이 협정·협약을 체결해 정한 합격검증업체에 대해 해당 업체가 구비한 협정 ·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문서로 검사 진행
5. 감시검사 : 검사를 신청한 특정 제품은 각 로트 별로 현장 대조·샘플 추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를 받지 않고 검사 방식규제를 하향 조정

검사 기관은 위생 안전을 고려하여 발취 검사에서 미추출한 제품에 대해 현장 대조·샘플 추출 테스트를 진행. 현장심사 제품은 샘플 추출 테스트를 진행

제9조 수입 제품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1. 국내외 제품 위생 안전 정보 또는 과학적 증거에 따라 인체에 유해
2. 식품약물관리서에서 정한 제품연간검사보고서(이하 '검사 보고서')에 따라 전수검사
3. 검사 신청 의무인의 이전 차수가 강화 발취 검사 진행 제품과 동일한 생산지·동일 상품 분류 제품이며 검사결과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
4. 감시 검사 진행 제품이 두 차수 연속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
5. 검사 기관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전수검사 제품의 검사 절차를 완료하기 전 검사를 재신청한 제품 역시 전수검사 방식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수입제품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강화차수 발취 검사를 진행한다.

1. 검사 보고서에 따라 강화 발취 검사에 속한 경우
2. 기존 전수검사에 속해 검사를 신청한 제품을 동일 검사 신청 의무인이 동일 생산지·동일 상품 분류코드 제품을 연속해 다섯 차수 수입해 검사에서 모든 규정에 부합한 경우. 한편, 해당 동일 검사 신청 의무인이 다섯 차수 연속 수입해 규정 부합 제품 바로 이전 차수가 테스트에 불합격한 제품인 경우에는 연속 다섯 차수를 수입해 합격한 제품 수량이 바로 이전 차수의 불합격 제품 수량의 3배여야 한다.
3. 검사 신청 의무인의 바로 이전 차수가 일반 발취 검사를 진행한 제품과 동일 생산지·동일한 상품 분류코드 제품으로 테스트 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검사기관이 강화 발취 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기존 전수검사를 진행한 제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이전 항목 제2조 규정을 미적용

제11조 수입품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반 차수 발취 검사를 진행한다.

1. 차수별 순차검사·강화차수 발취 검사·검증검사·감시검사 미진행 제품
2. 기존 강화차수 발취 검사에 속해 검사 신청 제품을 동일 검사 신청 의무인이 동일 생산지·상품분류코드·제품을 연속 다섯 차수 수입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한 경우. 한편, 해당 동일 검사 신청 의무인이 다섯 차수 연속 수입하여 규정에 부합한 제품 바로 이전 차수가 테스트에 불합격한 제품인 경우에는 연속 다섯 차수 수입해 합격한 제품 수량이 바로 이전 차수의 불합격 제품 수량의 3배여야 한다. 기존 강화차수 발취 검사 진행 제품에 대해 검사 기관은 위생안전을 고려해 이전 항목 제2조 규정 미적용

제12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수입한 제품이 현장대조 결과 규정에 상이해 동일 생산지·상품분류코드·제품을 재수입해 제8조 제1항 제2조의 차수 발취 검사 진행 시 추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차수별 순차대조를 실시한다.

이전 항목의 차수별 순차대조에서 동일 검사 신청 의무인이 세차수 연속 수입하여 규정에 부합하며, 해당 총 수량이 바로 이전 차수의 규정에 부합치 않은 제품 수량의 2배인 경우 현장 심사를 면제한다.

제13조 검사 기관이 위생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특정제품에 대해 감시 검사 실시한다.

제4장 우수업체 우대조치

제14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다음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무인이 수입한 제품은 일반 발취 검사 가운데 최저 발취 검사율로 진행한다.

1.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품 품질관리보고서를 제출, 심사비준을 거쳐 안건 등록을 허가 받았으며 1년간 일반차수 발취 검사를 진행해 10차수 연속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
2. 수입품을 1년간 일반차수 발취 검사를 실시해 20차수 연속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
3. 수입품을 2년간 일반차수 발취 검사를 실시, 30차수 연속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

이전 항목의 일반차수 발취 검사 최저 발취 검사율을 적용한 제품이 국내외 샘플 추출 테스트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전 항목 우대 조치 적용 중지한다.

제15조 제14조 1항 1조 규정에 부합하고 일반차수 발취 검사 최저 발취 검사율이 실시일부터 2년간 모두 규정에 부합한 경우 제4조 규정 서류심사만 진행한다.
검사기관은 필요 시 이전 항목 제품에 대해 여전히 현장 대조· 샘플 추출 테스트 진행. 검사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전 조항·항목의 우대 조치 적용을 중지한다.

제5장 검사 작업

제16조 검사 기관은 검사 처리에 필요한 샘플을 무상으로 취득. 검사수량은 테스트에 필요한 만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제한. 샘플 추출 시 샘플 추출 증명서를 작성해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제공한다.

제17조 검사의 대조·샘플추출은 제품 보관장소에서 실시. FCL컨테이너 운송제품일 경우 집중검사구역·식품약물관리서 허가 특정구역에서 실시. 검사에 대해 검사 신청 의무인은 반드시 협조하며, 발취 샘플을 지정할 수 없다.
본 법 제51조 3항에 따라 식품 선행방출을 잠정 중단한 업체는 제품 샘플 발취가 어려운 경우 검사기관은 컨테이너 창고 입고 후 개봉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 2개 항목 검역시 의무인은 검역에 협력해야하며 샘플을 지정할 수 없다.

제18조 수입품의 테스트는 순서대로 샘플을 추출·진행
한편, 본 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 기관은 사전에 테스트를 진행한다.

제6장 사전 반출 서약

제19조 검사기관은 테스트 기간을 5일 초과하며,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샘플 발취가 어려워

부패·변질되기 쉬운 제품 또는 배로 화물을 운반해 부두에 제품 보관 장소가 없으면 검사 신청 의무인이 서면확약서에 보관책임을 지겠다고 명시 후 사전반출통지서를 발급하여 사전통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차수별 순차검사 제품은 계속해 잠정보관한다.

제19조의1 수입제품 신고·유기농 표기 제품은 유기농표기 동의자료 외 본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검역의무인은 확약서를 체결해 보관책임을 명시한 후 사전반출통지를 체결하고, 사전반입을 진행한다.

제20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수입한 제품이 다음 상황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이전 조항 규정 부합여부를 심사 시, 보증금 납부를 지시한 후 사전반출서약을 허가

1. 강화차수 발취 검사 진행
2. 감시검사 진행 후 기간 내 검사결과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검사 신청 의무인은 '우선방출상품신청'이 3개월 초과되었으나 검사절차를 미완료했음에도 기타상품의 '우선방출상품신청'을 재신청. 이전 항목의 보증금액은 제품 세금포함가격의 2배

제21조 검사 신청 의무인의 납부 보증금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어음·수표·우편환으로 정한다. 제품이 검사규정에 부합하고 수입허가통지서를 취득하였거나 이미 검사불합격통지서를 취득했을 경우 제24조에 따라 처리. 제51조·3조 상황에 미해당할 경우 보증금을 반납해야 한다.

제7장 증서 발급

제22조 수입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한 경우 검사 기관은 수입 허가통지서를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발급한다. 검사 신청 의무인은 검사기관에 서면 수입 허가통지서 발급을 신청한다. 검사 신청 의무인은 허가통지서를 수령한 익일부터 15일내 샘플 추출 증명서에 따라 잔여 샘플을 수령한다. 기한 만료 후 미수령하거나 샘플 특성 상 장기 보관이 부적절한 경우 검사기관이 처리한다.

제23조 수입품이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 불합격통지서를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발급한다.

검사 신청 의무인은 불합격통지서를 수령한 당일부터 15일 내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 횟수는 1번에 한하며, 기존 테스트 실험실에서 기존 추출 잔여 샘플로 진행한다.

수입품이 검사 결과 규정에 어긋나거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잔여샘플은 재검사 신청기한 만료 후 소각한다.

제24조 수입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검사 신청 의무인이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

1. 반송·소각 처리
2. 본 법 제17조·18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21조 1항에 위배한 경우 식품약물관리서에 기한부 소독·개조를 신청하거나 적절한 안전조치 시행
3. 라벨링이 본 법 제22조·24조·26조·27조·28조1항에 위배한 경우 식품약물관리서에 기한부 시정을 신청

검사 신청 의무인은 상기항목 가운데 2번·3번에 따라 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식품약물관리서는 심사동의 후 수입진행·제품개조·라벨링을 수정토록 한다.

수입품 검사 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미 사전반출서약을 한 제품도 검사 신청한다. 의무인은 반송·소각 처리한다.

제8장 기타 검사 규정

제25조 동일 검사 신청 의무인이 수입한 동일 생산지·상품분류코드·제품이 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 내 테스트를 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2차에 달하면 식품약물관리서는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기한부 서면 자료 제공 및 불합격원인·개선·예방 조치 등 설명을 요청한다.

동일 생산지·상품분류코드·제품이 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6개월 내 테스트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3차에 달하면 식품약물관리서는 수출국(지역) 정부에게 기한부 서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불합격원인·개선·예방 조치 등을 요청한다.

제26조 검사 신청 의무인 또는 수출국(지역) 정부가 기한 내 서면 자료를 미제공하거나 통지서를 수령한 후 재검사 신청제품이 테스트에서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식품약물관리서는 관련 업자와 생산지 제품에 대한 검사 수리를 중단한다.

제9장 부칙

제27조 검역원은 본 방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진행할 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28조 본 방법은 2014년 1월 27일 수정·발표한 제20·21조를 2014년 6월 19일부터 실행하는 것 외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3]

2017년 대만 통관거부사례 현황

연번	발생일자	상품명	문제사유구분	문제사유
1	1월	신선 딸기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인독사카브 0.38 ppm, 디플루벤주론 0.06 ppm, 스피로테트라맷 0.02 ppm 검출
2	2월	매콤한 깻잎	방부제 검출	방부제 파라벤 0.02 g/kg 검출
3	2월	신선 딸기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루페녹수론 0.04 ppm, 티아클로프리드 0.02 ppm 검출
4	2월	신선 딸기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인독사카브 0.07 ppm, 디플루벤주론 0.32 ppm 검출
5	3월	신선 딸기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Fenhexamid 0.04 ppm 검출
6	3월	신선 딸기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0.07 ppm 검출
7	4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3 ppm 검출
8	4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3 ppm 검출
9	4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에토펜프록스 0.01 ppm 검출
10	4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에토펜프록스 0.02 ppm 검출
11	6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2 ppm 검출
12	6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디니코나졸 0.02 g/kg 검출
13	6월	양념 마늘쫑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사카린 0.05 ppm 검출
14	6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5 ppm 검출
15	6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5 ppm 검출
16	6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3 ppm 검출
17	6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3 ppm 검출
18	7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3 ppm 검출
19	7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에토펜프록스 0.04 ppm 검출
20	7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피메트로진 0.04 ppm 검출
21	7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2 ppm 검출
22	7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아미설브롬 0.01 ppm 검출
23	7월	파프리카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카니딘 0.14 ppm, 플로니카미드 0.02 ppm 검출
24	7월	떡볶이 소스	방부제 검출	방부제 에틸 파라-히드록시 벤조에이트 0.09 g/kg 검출
25	8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2 ppm 검출
26	8월	단무지	사카린 검출	감미료 사카린 0.77 g/kg 검출
27	8월	배추(신선 배추)	잔류농약 검출	플루니카미드 0.03 ppm 검출
28	9월	갈릭 치킨 소스	방부제 검출	방부제 파라벤 0.02g/kg, 방부제 에틸 파라-히드록시 벤조에이트 0.02g/kg 검출
29	9월	파프리카	잔류농약 검출	테트라코나졸 0.04ppm 검출
30	9월	닭강정 소스	방부제 검출	방부제 에틸 파라-히드록시 벤조에이트 0.088g/kg 검출
31	10월	구운 김	사카린 검출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감미료 사카린 0.02 g/kg
32	12월	배추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 에토펜프록스 0.14ppm 검출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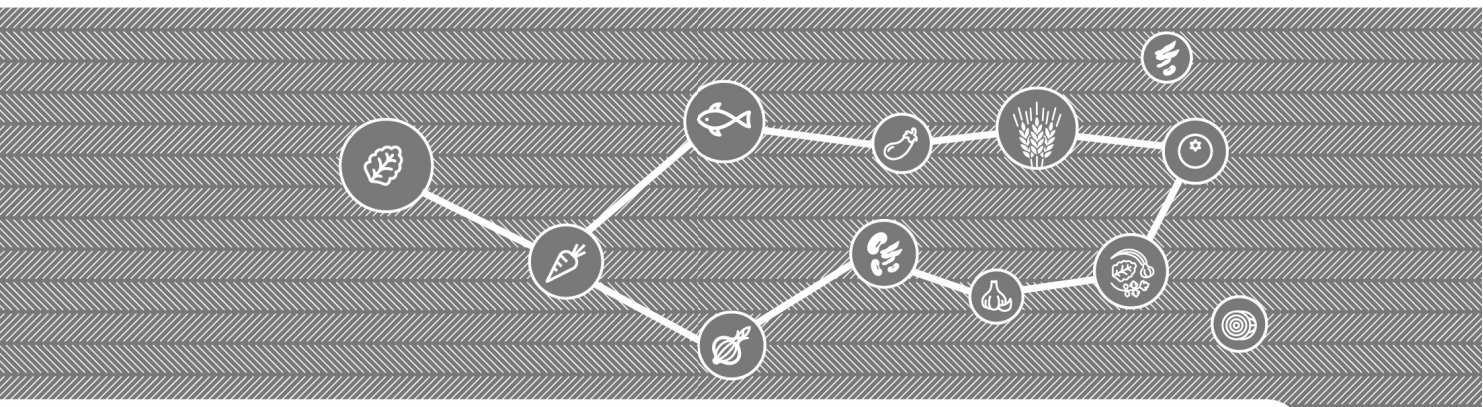

제1장 통관 제도
제2장 관세 제도
제3장 검역 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부록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베 트 남

Contents

1. 통관 제도 **247**

제1절 통관 제도 일반 247

제2절 원산지 규정 260

제3절 통관부서 연락처 263

제4절 관세 행정조직 264

2. 관세 제도 **265**

제1절 관세 정책 265

제2절 관세 제도 269

제3절 분쟁 해결제도 272

3. 검역 제도 **274**

제1절 검역 제도 274

4. 라벨링 제도 **280**

제1절 라벨링 제도 일반 280

제2절 품목별 표기 방법 284

제3절 자료출처 292

부록 **294**

[부록 1]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관한 통보 294

[부록 2]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 발급 요청서 300

[부록 3] RPA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302

[부록 4] 병충해 위험성 분석 기간 306

[부록 5]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 308

[부록 6] 수입물품신고서 312

[부록 7] 관세가치신고서 314

[부록 8] 식물검역신청서 319

[부록 9] 수입식품 검사신청서 322

[부록 10]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식품확인 결과 통보서 326

[부록 11] 통관 거부 사례 330

제 1 장 통관 제도

제1절 통관 제도 일반

1. 통관 관리

통관 절차, 세관검사, 세관 감독의 원칙

○ 물품, 운송수단은 통관 절차를 거치고 세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세법' 제54/2014/QH13호와 '세관 절차, 세관검사·감독·조사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Đ-CP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국경 세관 또는 기타 정해진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 물품은 세관 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된다.

○ 세관의 감독, 검사는 국가의 세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보장하고 수출입, 출입국, 국경 통과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 통관 절차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인력의 배치 및 업무 시간은 수출입, 입출국, 국경 통과 활동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관신고

○ 세관신고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고인은 재정부 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전자적 방식의 세관신고절차를 수행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세관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진행된다.
- 국경 주민의 수출입물품

-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출입국자의 수출입물품
- 긴급구호물품, 인도적 지원 물품
- 개인의 증정품, 선물, 유동자산
- 임시 수입 후 재수출, 임시 수출 후 재수입 규정에 따라 이동되는 물품
-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위해 출입국자가 소지하는 임시 수입 후 재수출, 임시 수출 후 재수입 물품
- '전자세관 데이터처리시스템', '전자세관 신고시스템'의 전자거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그 원인이 단수, 복수의 시스템 오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인한 경우('전자세관 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세관 기관은 해당 전자거래가 처리되지 못하는 시점부터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세관 전자정보 페이지를 통해 통보할 책임이 있다.)
-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물품

○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 상의 정보를 충분, 정확, 진실, 명확하게 작성하고 확정 세액 및 기타 납부액을 계산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신고인이 세관에 신고 시에는 '전자세관 신고시스템'을 통해 '세관신고서'의 신고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정보가 '전자세관 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해 세관 기관에 제출되며 신고인은 세관 기관의 안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수출입물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해당 종류에 부합하는 신고서를 가각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 다수의 계약 또는 주문 형태의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의 신고서 작성을 통해 신고한다.

○ 신고인이 일정 품목을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동일 매도인,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입하는 경우, 1년이 넘지 않는 기간에 세관신고서를 1회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전자 '세관신고서'는 세금,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은행을 통한 요금 납부 절차 및 기타 행정 절차 등에 활용되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합법성 검증 시에도 활용된다.

통관 절차 대리인

○ 통관 절차 대리인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절차에 관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세관신고인이다.

○ 통관 절차 대리인은 관세법과 세관신고 업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법률적 책임을 진다. 관세총국의 총국장은 통관 절차 대리인의 등록과 활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2. 통관 절차

통관 절차 진행 시 각 관계 당사자의 책임

○ 통관 절차 진행 시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 세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통관 서류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 검사를 위해 규정된 장소로 물품, 운송수단을 이동한다.
- 법률 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다.

○ 통관 절차 진행 시 세관 기관, 세관 공무원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 통관 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다.
- 통관 서류를 심사하고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을 검사한다.
- 세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법과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납부액을 징수한다.
- 통관 절차가 완료된 물품의 통관, 물품의 출고, 운송수단의 확인 등에 대해 결정한다.

통관을 진행하는 장소

○ 통관을 진행하는 장소란 세관 서류의 접수, 등록 및 검사, 물품 및 운송수단의 실물을 검사하는 세관 기관 장소를 말한다. 세관 서류의 접수, 등록 및 검사를 하는 장소는 관세총국, 관세국이다.

○ 물품의 실물 검사 장소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 육로, 국제 열차의 철도역, 국제 민용 공항, 국제 우체국, 수출입·입출국 및 국경 통과 활동을 수행하는 항만, 내륙 수로항, 내륙에 설립된 물품의 수출입항 등의 관문 검사 장소
- 관세지국
-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른 중점 검사 장소
- 생산 기반 및 시설의 검사 장소, 박람회 및 전람회가 진행되는 장소
- 보세창고, 관세 유보 지역, 컨테이너 화물 집하장 구역의 검사 장소
- 육로의 수출입 구역 내 인접국과 베트남 세관 기관 간의 일반 검사 장소

- 관세총국 총국장의 필요에 의해 결정한 기타 장소

세관신고 및 서류 제출 기한

○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기한 내에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 수출 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은 물품이 국경 세관 등의 지점에 도착하고 난 뒤 세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4시간 전에는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물품이 속달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2시간 전에는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 수입 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 세관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한다.
- '세관신고서'는 해당 신고서의 등록일로부터 15일 동안 세관 절차 진행의 효력을 지닌다.
- 전자 세관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 기관은 세관 서류의 심사, 물품의 실물 검사를 진행하고 그때 세관신고인은 세관 서류 관련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단, 해당 증명서가 국가의 정보시스템 중 하나에 이미 저장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세관신고서'의 신고 시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의 등록에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한다.

세관 공무원의 통관 절차 진행 기한

○ 세관 공무원은 세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 후 관세법 제54/2014/QH13호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 검사한다. 세관 공무원이 통관 서류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인에게 그 거절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세관 신고인이 법에서 정한 통관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세관 공무원이 물품과 운송수단의 실물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서류의 심사는 세관 기관이 세관 서류를 모두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물품의 실물 검사는 세관 신고인이 세관 기관에 물품을 모두 제시하는 시점부터 늦어도 8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른 품질, 보건위생,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안전 분야 관련 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의 실물 검사 완료 기한은 해당 전문분야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 물품의 수량이 많거나 종류가 다양한 경우 또는 검사업무가 복잡한 경우 해당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의 세관장은 물품의 실물 검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기간의 연장은 최대 2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세관 기관은 수출입물품의 상·하역, 승객의 출입국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휴일, 휴일, 근무 외 시간에도 세관 절차를 진행한다.

통관 서류

○ 통관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체하는 증서
- '상업송장'
- '물품 매매 계약서'
- '운송장'
-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 '수출입 허가서'
- 검사 결과 또는 전문분야의 '검사 면제 통보서'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물품 관련 증서

○ 세관 서류에 해당하는 증서에는 종이 증서, 전자 증서가 있다. 전자증 서는 '전자거래법' 제51/2005/QH11호에 따라 지정된 형식을 취하고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

○ 세관 서류는 세관 기관이 있는 해당 주소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재정부 장관은 '세관신고서'의 양식, '세관신고서'의 사용 업무, '세관신고서'를 대체하는 증서, 기타 관련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정한다.

물품의 통관

○ 물품은 통관 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된다.

○ 통관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세관신고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하였거나 완납하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미납한 세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세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기한이 적용될 때 물품이 통관된다.

○ 화주가 물품의 수출입 허가를 받았으나 세관으로부터 벌금 형태의 행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화주는 관할 정부기관 또는 세관 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행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이 납부를 보증하도록 하여 물품은 통관시킬 수 있다.

○ 물품의 수출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검사, 분석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분석, 감정 및 검사 면제 통보 등의 결과를 통하여 물품의 수출입

여부를 결정한 후 물품의 통관을 진행한다.

○ 긴급 요청 서비스 물품, 안보·국방 서비스에 전용하는 물품, 특혜 또는 면제권이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의 수하물, 외교·영사 행낭은 '관세법' 제54/2014/QH13호의 제50조, 제57조 규정에 따라 통관된다.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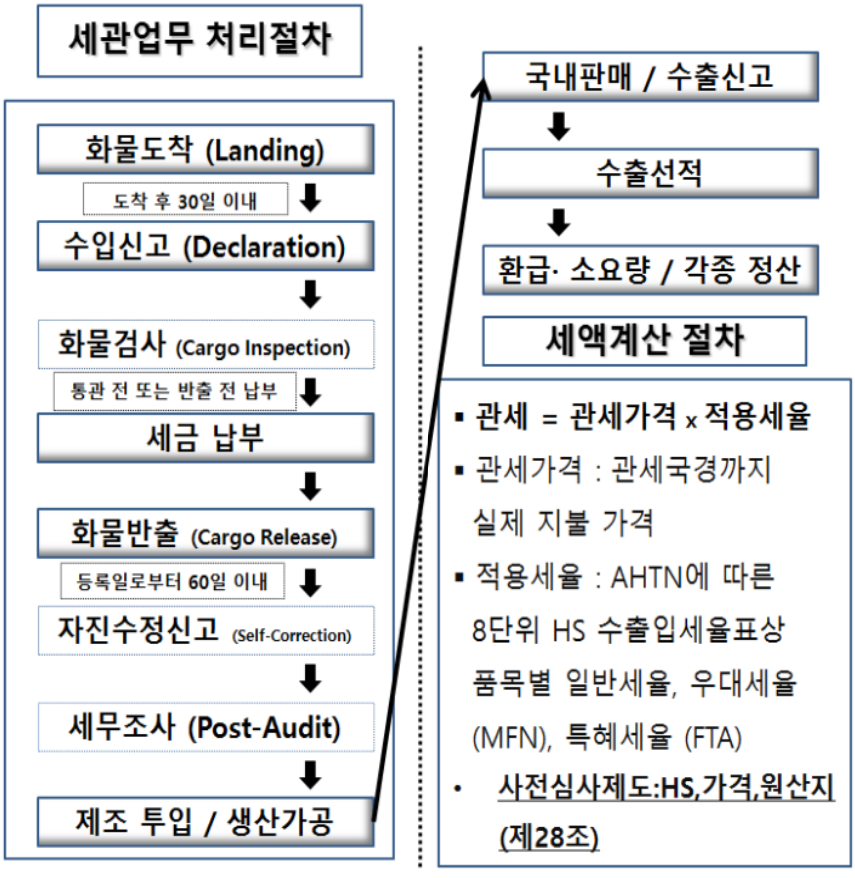

○ 수입업자, 수입업체의 처리 절차

- 통관 절차 시 세관에 관련 서류 제출

○ 국가 행정기관의 처리 절차

- 1단계: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실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화물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 서류 접수
- 세무 코드가 입력된 세관신고서의 조건 심사(품목별 정책, 위반, 강제 사항)
- 신고인의 정보 입력과 신고 시 자동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
- 신고서 등록(접수번호 작성)
- 세관의 검사 방식, 검사 수준 및 양식의 통보
- 서류 심사
- 화물의 실물 검사와 서류의 심사 결과 결정
- 부서장의 승인 후 시스템에 관련 검사 정보의 입력 및 결과 처리
- 세관 절차의 완료 후 실물 검사가 면제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3단계로 이동하고 검사가 필요한 화물의 경우는 2단계로 이동

- 2단계: 실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화물의 실물 검사 및 통관
  - 화물의 실물 검사 이전에 신고인이 보완 신고 후 심사 요청 시 재심사
  - 실물 검사 결과의 기록 및 통보
  - 검사 결과 처리
  - 세관 절차의 완료 인증
- 3단계: 세관 비용 및 세금의 납부, 세관 절차의 완료 인증 날인을 하고 '세관신고서'를 신고인에게 반환
- 4단계: 세관 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 심사

진행 방법

○ 세관 신고인은 세관신고 업무를 진행하고 세관 서류, 물품 실물을 세관 기관에 제출한다.

○ 세관 공무원은 세관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통관을 진행한다.

○ 구비서류

- '수입 물품 신고서'(부록6 서식 참조)
- '상업송장' 촬영본 1부(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화주가 베트남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세관 기관은 베트남에 있는 매도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송장을 받는다.

* 세관신고인이 우대기업이거나 외국 상인과의 가공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또는 '세관신고서' 상 '관세가치'란을 통해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신고인의 경우에는 '상업송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 물품의 송장이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신고인이 관세평가 확정에 관한 재정부의 안내에 따라 관세평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 해상, 항공, 철도, 기타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운송된 물품의 경우 해당 운송을 증명하는 '화물 운송장' 또는 기타 운송 증서 (단, 육로로 국경 관문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 베트남 국내 또는 세관 구역에서 매매하는 물품, 수하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입국자의 수입 물품은 제외한다.)
- '물품 수입허가서'는 수입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제출하며 세관에 따라 1회 수입 시 한 부의 원본을 제출하거나 한 부의 촬영 사본을 제출하게 된다.
-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면제 통보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원본 한 부를 제출한다.
- 세관 신고인은 '세관신고서'상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세 가치신 고서'(부록7 서식 참조)를 전자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세관 기관을 통해 두 부의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원본 한 부를 제출하거나 전자데이터증명서로 제출하게 되며,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특별우대세율의 적용에 관한 합의를 한 국가 또는 집단의 원산지 물품(수입자가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 환경 위생 또는 공동체의 건강, 사회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통제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베트남 또는 국제단체에서 통보하는 물품
  - 덤핑방지관세, 보조 관세, 차별 방지 관세, 보호관세, 할당관세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베트남에서 통보하는 물품
  - 수입 물품의 경우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수입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 물품, 운송수단 관련 세관 절차 비용

번호	등록 내용	비용
1	세관신고서 등록비	20,000동
2	세관검사, 감독 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요청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의 임시 중단 비용	200,000동
3	물품의 국경 통과비	200,000동
4	육로 국경 통과 수단에 대한 비용(차량,트레일러,트랙터 등)	200,000동
5	수로 국경 통과 수단에 대한 비용(선박 등)	500,000동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

○ 세관신고인은 기한 내에 충실히 신고하고, 세액을 산정, 납부하며 본인의 신고, 산정에 대하여 책임진다.

○ 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에 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고인은 이 사실을 통관 절차를 진행한 세관 기관에 통보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정한다.

○ 신고인은 '수출입 세법' 제107/2016/QH13호와 '물품, 국경운송 비용의 납부에 관한 시행규칙' 제274/2016/TT-BTC호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와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 신고인은 세액과 수수료 관련 세관 기관의 결정을 이행한다.

과세 시점, 납부기한

○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시점, 납부기한은 '세금관리법' 제78/2006/QH11호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 수출, 수입 물품의 과세 시점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시점으로 한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출, 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37조 규정에 따라 통관 또는 물품의 출고 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관세법' 규정에 따른 우대제도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통관 또는 물품이 출고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며, 그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관리법' 제78/2006/QH11호에 따라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가격

○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출입 세법' 제107/2016/QH13호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 정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수입관세 산정 방식

○ 제품 수입 납부금액 = A + IT + (SCT) + VAT

- A = 제품 가격, IT = 수입관세 = A * 수입세율,
- *SCT = 특별소비세 = (A+IT) * 특별소비세율
- VAT = 부가세 = (A+IT+(SCT)) * 부가세율

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자동차, 담배, 주류 등)에 따라 적용된다.

수출, 수입 물품 품목 분류 및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

○ 수출, 수입 물품 품목 분류는 '관세법'의 물품 분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의 확정은 현행 세율표에 근거한다.

- 세관신고인이 품목 분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 기관에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분석, 분류, 세율 확정을 위해 참고한 수출, 수입 물품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물품의 견본을 추출할 수 있다. 세관 신고인이 세관 기관의 분석, 분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민원의 제기 및 해결은 '제소법' 제02/2011/QH13호 규정에 따른다.

○ 정부, 재정부 장관은 수출, 수입 물품 품목 분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수입식품 검사 절차

○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 검사 기관이란 베트남 보건부가 지정한 식품 상품에 경험이 있고 검사업무의 수행 기술 능력 및 조건을 갖춘 기관, 업체를 말한다.

○ 검사 방식은 통상적으로 감각기관, 라벨 기재 사항, 포장상태, 특별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며, 서류 및 대표 견본의 확인 및 추출을 통해 검사가 진행된다.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베트남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에 상품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에는 사전에 진행한 인증서 상의 성분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물품 검역 시 확인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통관이 결정된다. 세부적인 수입식품 검사 절차는 아래의 가)~바)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 수입식품 신고
  - 베트남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수입 물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수검사가 원칙이다.
- 신청 서류
  - 수입식품검사 신청서(부록9 서식 참조)

-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또는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와 관련하여 상인의 승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인터넷을 통해 출력된 서류 또는 서류 대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본을 포함하는 상인의 확인 또는 증명을 나타내는 복사본(부록1, 1-1, 1-2 서식 참조)
- 간소화 검사 방식의 적용을 허가하는 보건부 식품안전국의 통보(있는 경우에 한함)
- 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상인이 해당 권리를 식품을 수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위임하는 서류(있는 경우에 한함)
- '포장명세서' 사본
- 화주의 확인 및 증명에 필요한 '선하증권', '상업송장' 사본

- 신고 서류 심사
  -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였거나 도착하기 전에 화주는 검사기관 또는 국가의 전자 통신망을 통해 '수입식품검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 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검사기관은 '수입식품검사 신청서'의 심사를 진행한다.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
  - 간소화 검사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이내에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식품 확인 결과 통보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부록10 서식 참조)
  - 통상적인 검사 방식, 상세 검사 방식의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이내에 검사의 수행을 위한 견본을 추출해야 한다. '수입식품검사 신청서'를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그 물품이 도착했음을 통보하는 화주의 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이내로 견본을 추출해야 한다.
  - 검사기관은 통상적인 검사 방식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6영업일 이내, 상세 검사 방식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8영업일 이내에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식품 확인 결과 통보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또는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상의 내용과 물품의 라벨 기재 사항, 식품안전, 품질에 관한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검사할 책임이 있다.
  - 검사 품목이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식품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화주는 검사기관에 검사 결과의 재확인, 물품의 처분 방법 또는 재검사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 화주가 물품의 처분 방법에 관한 서류를 검사기관에서 받은 시점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관한 처분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공문을 발급해야 한다.

- 검사 인증서 발급
  - 국가 품질관리 대상 수입식품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시하는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검사 결과의 조치
  - 위생·안전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한 수입식품의 경우, 인증서가 세관 기관에 통보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식품은 베트남 식품관리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처리, 폐기 또는 반송된다.
  - 베트남 식품관리국에서 재처리 승인을 받아 재처리한 식품은 재검사 후 검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화주는 검사기관에 해당 처분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낼 책임이 있다.

식품의 위생·안전 업무 관련 비용

○ 식품안전 분야의 유통, 수입, 확인, 공포 관련 허가서 발급 심사비는 다음과 같다.

번호	내용	비용
1	미세 영양소 강화식품, 기능성식품에 대한 규정 부합 공포 및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서류 심사	
	최초 공포	상품별 회당 1,500,000동
	재공포	상품별 회당 1,000,000동
2	식품첨가물, 식품가공 보조 물질, 포장가공을 마친 식품, 용구, 포장자재, 식품 함유물의 규정 부합 공포 및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서류 심사, 담배의 규정 부합 공포(1번에 속하는 식품을 제외)	
	최초 공포	상품별 회당 500,000동
	재공포	상품별 회당 300,000동
3	생산시설, 슈퍼마켓, 4성급 이상의 호텔 내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공포 서류 심사	상품별 회당 150,000동
4	수입식품 품목 확인(분석검사 비용 불포함)	품목별 1,500,000동+ (품목수×100,000동), 최대 품목별 10,000,000동
5	식품의 분석검사 유통 신청서의 심사	검사별 회당 3,000,000동

▌식품관리국의 수입식품검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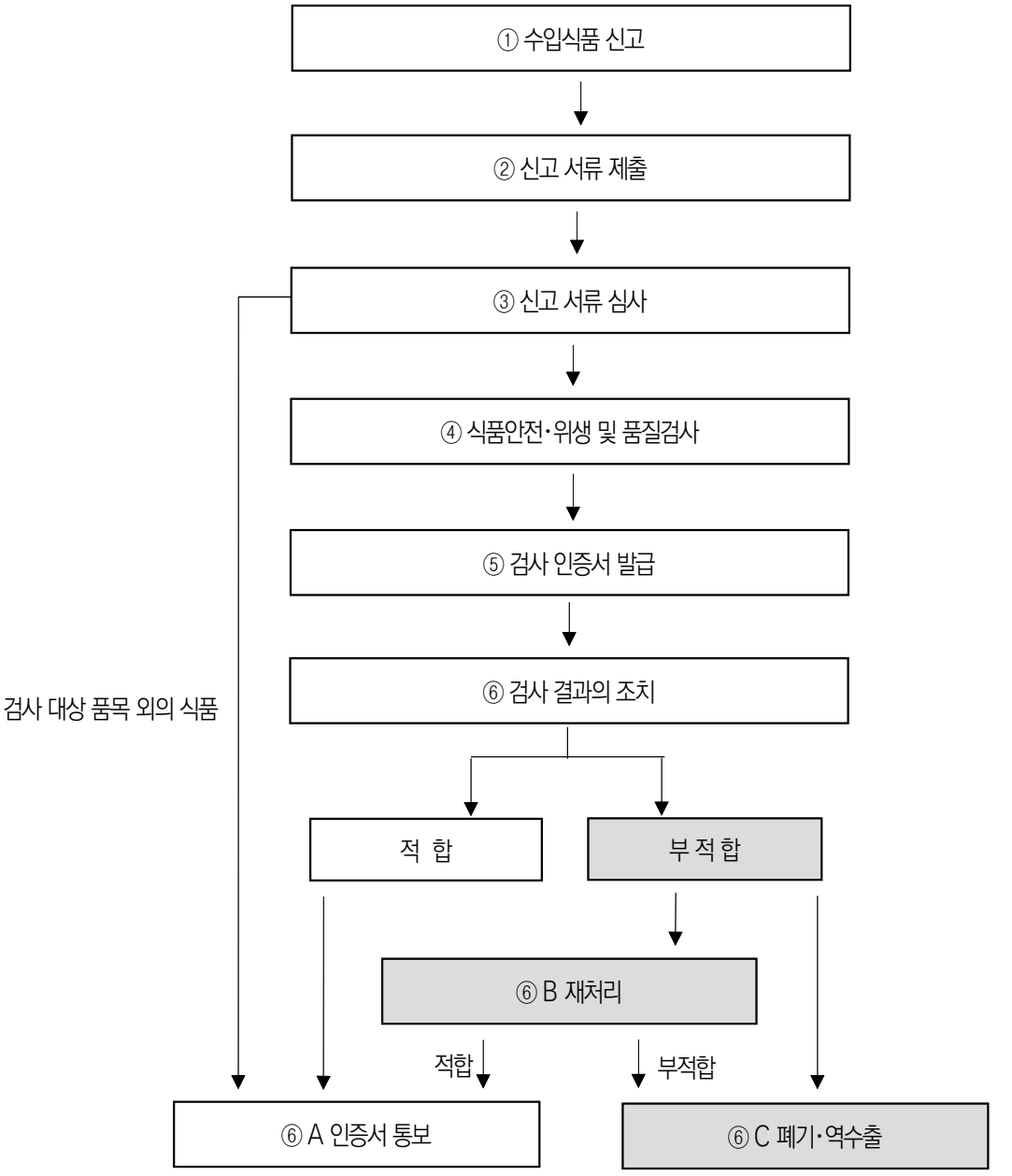

제2절 원산지 규정

1. 특혜 원산지 규정

국제조약에 따른 특혜 원산지 규정

○ 베트남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그 조약과 함께 상세 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수출,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물품은 세금 우대 및 비관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특혜 관세제도와 기타 일방적 특혜에 따른 특혜 원산지 규정

○ 수출 물품의 원산지 확인 시 일반 특혜 관세제도와 기타 일방적 특혜는 그 특혜를 받는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다.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원산지가 있는 물품

○ 다음의 경우는 원산지가 있는 물품으로 본다.
- 완전한 원산지
-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완전한 원산지가 있는 물품의 확인

○ 완전한 원산지가 있는 물품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관련 국가 및 지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증한다.

가)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수확된 농작물이나 농작물로부터 나온 상품
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살아있는 동물
다) 나)항에 해당하는 동물로부터 나온 상품
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수렵, 덫 설치, 어획, 채집 과정을 통하여 얻은 상품
마) 해당 국가나 지역의 토지, 수역, 해저에서 추출된 가)항부터 라)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광산과 자연생성 물질
바) 국가 및 지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에서 얻은 상품의 경우 해당 국가, 지역은 국제법에

따라 그 수역, 해저에 대한 개척 권한이 있다.

사) 영해에서 어선을 통해 어획된 상품과 기타 해산물의 경우 해당 영해의 관할 국가에 등록되고 해당 국가의 국기 사용이 허가된다.

아)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 중 어선 위에서 즉시 가공 또는 생산된 상품의 경우 해당 국가, 지역에 등록되고 해당 국가의 국기 사용이 허가된다.

자)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될 수 없고 수리 또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폐기 또는 재생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원료, 자재로 사용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있는 물품

차) 가)항부터 자)항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상품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존재하는 물품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물품의 확인

○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물품의 확인과 관련하여 한 국가, 지역에서 최종적인 가공 단계를 수행하며 물품의 기본적 성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물품은 성질이 변경된 국가, 지역으로 그 원산지를 정한다.

○ '물품 코드 변경' 기준은 물품의 기본적 성질 변경에 따라 확정된다.

○ '가치의 백분율 비율' 지표와 '물품의 제조 및 가공 단계' 지표가 물품의 기본적 성질의 변화에 확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지표는 보충적 지표로 사용되거나 원산지 변경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지표에 관한 자료는 산업무역부에서 발행한다.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물품 원산지 검사 절차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규정

○ 다음의 경우 수입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통관 절차 시점에 세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자가 특혜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세금 우대 및 비관세 제도의 혜택이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의 원산지를 가진 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그 혜택이 적용된다.
- 쌍방적 또는 일방적 기준에서 베트남이 정한 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의 원산지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국가의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보증해야 하며 그 보증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타국,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가 그룹의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조약에 따라 지정되는 물품의 경우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 사회 안정, 공동체의 건강 또는 위생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통제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베트남 또는 국제단체가 지정하여 통보하는 물품의 경우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 덤핑방지관세, 보조 관세, 보호조치, 할당관세 조치, 수량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시점에 베트남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의 경우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수입 물품 원산지 사전 인증

○ 수입자가 수입 화물의 대한 원산지를 사전에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예정인 화물의 원산지 관련 공문 및 서류를 수입 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정 및 검사 절차

○ 수입자의 통관 신고서를 받은 후에 세관 기관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사전 인증 시에 제시된 물품과 같은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재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수입된 화물이 원산지 사전 인증 시에 제시된 물품과 같지 않은 경우 세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재확인한다.

○ 원산지 및 관련 정보의 신뢰도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관련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검사의 요청 시 검사 사유, 원산지 증명서와 물품의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 사유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 물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세관 절차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다.

○ 검사 결과는 수입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하며 늦어도 150일을 넘지 않는다.

제3절 통관부서 연락처

1. 관세총국

○ 주소: Lô E3 - Đường Dương Đình Nghệ, Yên Hòa, Cầu Giấy, Hà Nội
○ 전화번호: (+84-24) 3944 0833
○ 웹사이트: www.customs.gov.vn
○ 이메일: webmaster@customs.gov.vn

2. 하노이 관세국

○ 주소: 129 Nguyễn Phong Sắc, Cầu Giấy, Hà Nội
○ 전화번호: (+84-24) 3791 0169
○ 웹사이트: http://www.hanoicustoms.gov.vn
○ 이메일: hqhanoi@customs.gov.vn

3. 호치민 관세국

○ 주소: 02 Ham Ngi Str, Ben Nghe Ward, 1 District, HCM City
○ 전화번호: (+84-28) 3829 1422
○ 팩스: (+84-28) 3829 0096
○ 웹사이트: www.haiquan.hochiminhcity.gov.vn
○ 이메일: webmasterhcm@customs.gov.vn

제4절 관세 행정조직

1. 조직구조

- 본청(관세총국)-지방청(시·성 관세국)-일선 세관(관세지국)의 3중 구조
- 전국 63개 시·성 중 34개 지역에 관세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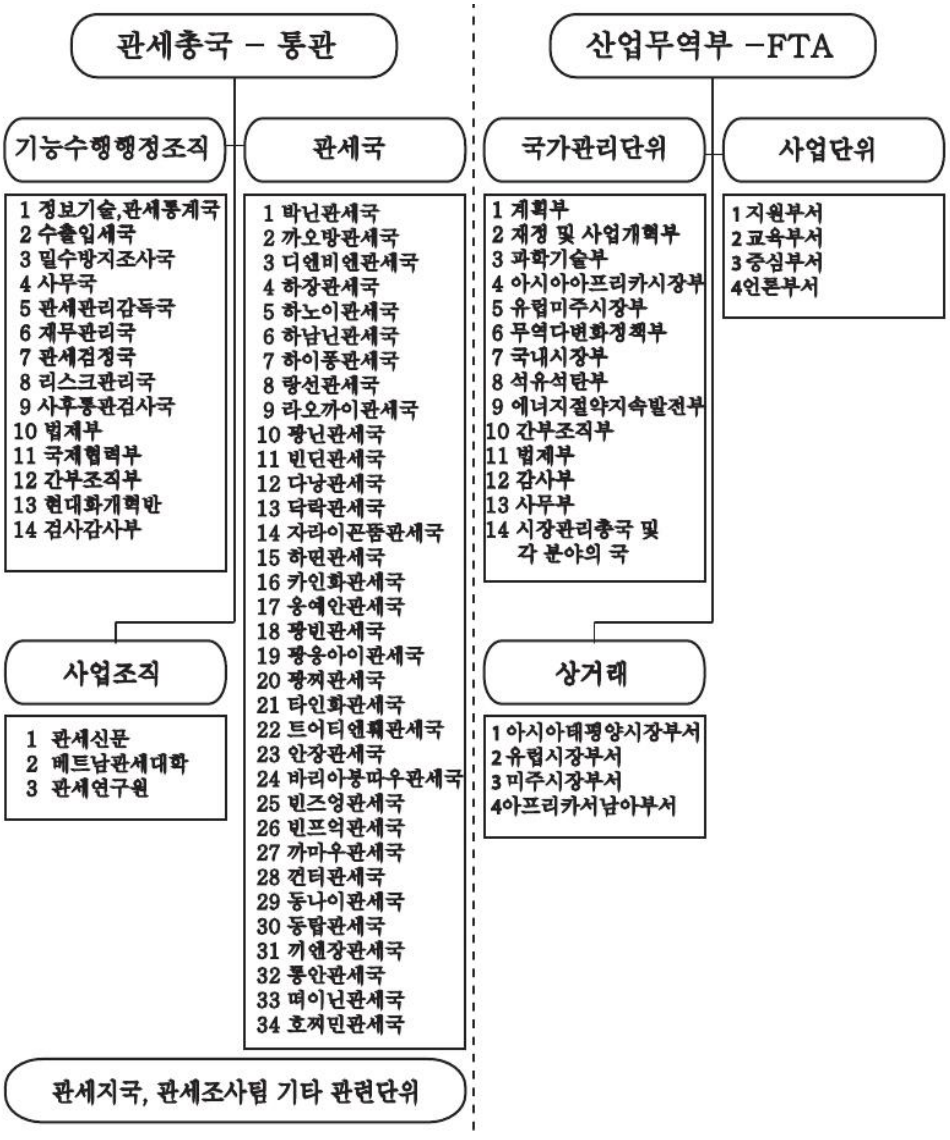

제2장 관세 제도

제1절 관세 정책

1. 수출입 세법

적용 범위

○ '수출입 세법' 제107/2016/QH13호는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하여 규정하며, 국경지역 거주민의 국경을 통한 매매, 교환 물품 및 기타 교환 물품은 수출입 물품으로 간주한다.

수출세, 수입세 과세대상

○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입물품

○ 베트남 내 시장에서 세관 구역을 통해 수출하는 물품과 베트남 내 시장으로 세관 구역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

○ 현장에서 수입, 수출하는 물품과 수입권, 수출권, 배포권을 행하는 기업의 수출입 물품

○ 정부가 정하는 기타 물품

수출세, 수입세 비과세대상

○ 베트남 국경, 국경 세관을 거쳐 이동되는 물품, 중계무역 물품

○ 인도적 원조 물품, 무상 원조 물품

○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 수출 시 국가자원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 가스 물품

납세대상

○ '수출입 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 속하는 수출, 수입 물품을 수출입하는 법인, 개인은 세 납세대상에 해당한다.

용어 해설

○ '보세구역'이란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한 경제구역으로 지리적인 구역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 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과 외부 구역간의 매매, 교환관계는 수출입 관계로 간주한다.

○ '자위를 위한 관세 조치'란 국내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베트남에 과도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를 말한다.

○ '과도하게 수입되는 물품'이란 물품의 수량 또는 가액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또는 유사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직접 경쟁 물품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한 물품을 말한다.

○ '종량세'는 수출, 수입 물품 단위당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되는 세액이다.

○ '이동자산(이사화물)'은 베트남 내 또는 외국에서 거주를 종료하고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개인, 가정, 법인의 생활,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칭한다.

○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 물품'은 국경지대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다.

○ '혼합과세방식'이란 백분율 비율과 절대과세방식에 따른 과세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제조약의 적용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이 법률에 규정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 물품에 대한 세액

○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시기별로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적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과세방법 및 과세통화

○ 수출세, 수입세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 백분율에 따른 세율이며,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 및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이다

○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가격 및 과세 시점 세율표에 기재된 품목별 세율과 곱하여 납부해야 한다.
- 종량세 적용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 시점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절대세액과 곱하여 납부해야 한다.

○ 납세통화는 베트남 통화며, 외화납부가 허가된 경우 교환이 자유로운 외화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가격, 과세환율 및 과세시점

○ 수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 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다.

○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고 계약에 따라 최초수입 국경 관문에서 실제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다.

○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트남 통화와 외국통화 간 환율은 베트남중앙은행이 과세 시점에 발표한 교환 환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과세가격의 확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수출입 물품의 과세시점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는 시점으로 한다.

세율

○ 수출 물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은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을 포함한다.

- 우대세율은 무역 관계에서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 지역의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된다.
-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 지역의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된다.
- 일반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의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된다. 일반세율은 정부 규정에 따라 품목별 우대세율의 1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제2절 관세 제도

1. 관세의 종류

'관세법'에는 일반관세, 특혜관세, 특별 특혜관세 등이 있다.

○ 일반관세율(Ordinary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된다.
- 특혜관세율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다.
- 우대관세의 150%에 해당하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특혜관세율(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특혜(MFN)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본, 미국, EU 등 163개국이 적용대상이다.
- 개념상 특별 특혜관세율 적용국가도 포함된다.

○ 특별 특혜관세율(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물품에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아세안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실효 특혜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협정관세,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협정관세가 이에 해당한다.
  * 특혜관세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 이외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특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다.

2. 관세 부과 대상 및 세율

세금 부과 대상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이며 세율은 품질, 성질,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 수출품은 FOB 가격, 수입품은 CIF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며 과세가격은 베트남 화폐를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이다.

○ '상업 송장'이 없는 경우와 정부 또는 관세총국이 정한 최저가격표 금액의 7할을 밑도는 경우, 수입 관세는 최저가격표 금액에 기인하여 과세한다.

일정 품목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한다.

○ 상품판매 결제가 현금이나 물물교환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된다.

○ 농산물 수입 관세는 30~50% 정도이며 주류, 담배 등은 100~120%로 높은 편이다.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한 제품의 저가신고(UNDER VALUE)

○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하여 대부분 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 저가신고 적발 시 세관에 비치된 자체 세율 기준으로 과세한다.

○ 자체 세율표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 시장가격조사 및 가격산정까지 소요기간 예측 불가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

3. 관세 면제

'수출입 세법'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우대 및 면제권이 있는 외국 개인, 단체의 수출입물품, 입출국자의 면세수하물 기준 내의 물품,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출 상품 가공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자재·부품, 상품 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완전 수입 상품, 수출 가공 상품

○ 수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자재, 부품

○ 견본, 견본을 대체하는 사진·영상·모형, 소량의 광고 인쇄물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

○ 관할 국가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입이 필요한 식물 보호 약품

및 비료, 농작물류, 가축류

○ 환경보호를 위해 수출입하는 물품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 반입

○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 수출 가공구에서 수출입하는 물자, 단 수출 가공구를 통해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제외

○ 인도적 원조, 교육, 연구기관의 연구 및 과학탐구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 정부가 기타 관세 면세대상을 정한다.

4. 세액 환급

‘수출입 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의 환급을 받는다.

○ 납세자가 수입세, 수출세를 납부했으나 수입 물품, 수출 물품을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한 수입세, 수출세에 해당하는 물품 수량보다 더 적은 물품을 수입, 수출한 경우

○ 납세자가 수출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 물품이 재수입되고 수입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수입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 물품이 재수출되고 수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생산, 거래를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수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되었고 수출된 경우

○ 납세자가 임시수입 후 재수출 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의 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외로 재수출되었거나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 단, 투자프로젝트, 건설시공, 가설공사, 생산서비스는 제외

제3절 분쟁 해결제도

1. 분쟁 해결 절차

베트남은 모든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조정 우선주의를 채택한다.

○ 외자기업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베트남 측 경제주체와 발생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타협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 협상과 화해로 양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베트남 경제 중재 기구나 다른 중재 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 외자법상으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베트남 중재 기관, 제3국 중재 기관, 혹은 국제 중재 기관 및 당사자 간에 의해 선정된 중재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서 국제 중재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져 국제 중재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외자기업과 베트남기업과의 국제 경제 분쟁은 중재에 의한 베트남 법에 근거하는 피고주의를 채택한다.

○ 외국 출자자가 원재료와 기자재를 본국에서 조달하여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수출한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회사가 있는 베트남의 제도와 법률을 적용한다.

2. 국제중재센터

베트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하여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으로는 1993년 4월에 설립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가 있다.

○ 중재 분야로는 무역, 투자, 관광, 수송, 국제보험, 기술이전, 국제금융, 국제간의 대금결제 등이 있다.

○ 중재 심리는 3인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1인 중재도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중재 심리는 하노이에서 열리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베트남 내 다른 곳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중재 심리 취하는 원고의 중재 취소, 그 외 원고가 필요한 행동을 6개월 이상 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고 중재판정이 나면 30일 이내에 결석자에게도 중재판정서가 송부된다.

○ 사용언어는 베트남어이나 자기 부담으로 통역과 번역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중재판정은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소수의견도 중재 판단서에 명기된다.

○ 베트남에 설립된 국제중재원(VIAC)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의 별도 집행 승인 없이도 즉시 집행권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54/2010/QH12호는 2010년 6월 17일에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3장 검역 제도

제1절 검역 제도

1. 검역대상 신선농산물

식물검역대상(농업농촌개발부가 2014년 9월 5일 발행한 30/2014/TT-BNNPTNT 시행 규칙에 의거)

○ 나무와 나무의 살아있는 부분

○ 나무 상품

○ 버섯류

○ 누에고치, 연지벌레

○ 과학연구와 생물학의 감정, 교육, 방지 작업에 제공되는 곤충, 거미, 버섯, 병균, 선충,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이드 및 잡초

○ 식물검역대상의 보관, 운송수단

○ 식물 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해 식물 검역대상에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물질

수입하기 전에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위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입 신선 식물

○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되는 나무 종자

○ 신선 과일 및 구근(球根)

○ 잔디 및 잔디 종자류

○ 식물 보호 분야에서 사용 시 유익한 생물

○ 베트남 식물 검역대상으로 적발된 수입 식물

○ 식물 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해 식물 검역대상에 동반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 식물 검역을 받는 물질

위험성 분석을 위한 검역의 면제 대상

○ 과학연구에 제공되는 농작물 종류

○ 과학연구에 제공되는 유익한 생물

○ 식물 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한 기타의 경우

○ 위의 세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규정에 따른 수입식물검역과 식물검역이행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2. 식물검역 대상 물질의 위험성 분석과정

농업농촌개발부는 2014년 10월 31일 '식물검역 대상 물질의 위험성 분석과정에 관한 규정' 제36/2014/TT-BNNPTNT를 공포하였다.

식물검역대상의 위험성 분석과정이란 위해생물의 유입과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선택과 평가 과정을 말한다.

범위 및 적용 대상

○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 보호국은 진행된 위험성 분석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 여부를 평가 및 결정한다.

○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 단계

-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 단계는 위험성 분석과정의 착수, 위험성 분석과정 수행 결과의 재검토, 위험성 내용 평가, 위험성 관리로 나뉜다.
  -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의 착수
  - 병충해 위험성 분석 수행에 착수한다.
  - 해를 끼치는 생물이 유입,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식물검역대상을 확인하거나 식물검역대상에 속하는 위해생물을 확인하는 경우 파급로 차단을 위한 위험성 분석을 시작한다.
  - 위해생물종으로부터 위험성 분석을 시작한다.
-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 수행 결과의 재검토
  - 해병충해 위험성 분석 수행 결과를 검토하고 만약 위험성 분석에 관한 충분한 사전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인용한다.
  - 해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이미 수행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상품의 실상을 검토한다.
- 위험성 내용 평가
  - 해베트남으로 수입된 식물검역대상에서 발견된 위해생물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입된 상품에서 위해생물이 발견된 경우 관련 수치의 총합계를 산정한다.
  - 해지리적 분포, 생물학적 특징, 위해 방식, 파급로, 적용되고 있는 위해생물의 관리방안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위해생물의 등급을 나눈다.
  - 해수출국에서의 분포 여부, 위험성 분석을 통한 물질 추적 가능 여부, 식물검역대상이 될 가능성 여부의 지표를 통해 식물검역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생물을 확정한다.
  - 해숙주와 기후 관련 위해생물 간의 관계, 숙주 영향력, 발산 가능성, 경제적 파장, 환경적 파장의 요소를 기준으로 유입 효과를 평가한다.
  - 해수입하여 위험성 분석을 하는 매년의 물질량, 처리 후 위해생물의 생존 가능성, 운송과정 중 위해생물의 생존 가능성, 국경 관문에서 위해생물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 위해생물의 생산에 적합한 숙주 등의 기준으로 유입 가능성을 평가한다.
  - 해위해수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위해생물에 대한 식물검역방안을 요구한다. 위해 수준은 낮은 위기, 중간 위기, 높은 위기의 3단계로 나뉘며, 낮은 위기의 경우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중간 위기의 경우 구체적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위기의 경우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병충해 위험성 관리
  - 해수출국이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에 대한 구체적 식물검역방안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베트남으로 수입 시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의 수출에 관하여 수출국과 협력한다.
  - 해병충해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질의 수입 금지,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부록5 서식 참조)의 요구, 수출국에서의 검사, 수출국에의 식물검역처리방안 요구,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이 위해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도록 요구, 국경 관문에서의 검사 및 처리, 수입 후 식물검역 등이 있다.

- 해병충해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의 작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경제, 환경, 사회, 실현 가능성, 적용 중인 규정과의 부합 여부, 신규 방안의 적용에 필요한 시간 등의 지표에 의해 이뤄진다.
- 해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 관련 수입식물 검역을 위해 구체적 식물검역 대상에 부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 해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위험성 분석보고 초안을 작성한다.
- 해위험성 분석보고를 완료하고 수입식물검역을 요구한다.

3. 수입식물 검역절차

농업농촌개발부는 2014년 10월 30일 '수입, 수출, 국경 통과 식물의 검역절차 및 식물검역에 해당하는 물질의 수입 후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범위 및 적용 대상

○ 이 시행규칙은 수입 후 식물검역과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의 수입, 수출, 국경 통과 시 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수출입, 국경 통과의 활동을 하는 베트남 국내외의 개인, 단체로서 베트남에서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입한 자를 이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

수입식물 검역 증명서 발급 절차 및 비용

○ 발급 절차

- 신청인은 식물검역기관에 수입식물검역 등록서류 1부를 직접 제출한다.
- 식물검역기관은 서류를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그 서류의 적합성을 즉시 검사할 책임이 있다. 서류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서류의 보완, 완성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 서류의 접수결과를 토대로 식물검역기관은 장소를 정하고 물질을 검사할 공무원을 즉시 배치한다.
- 식물검역기관은 전염되지 않은 식물검역대상, 베트남 필수 조사대상, 또는 위해식물의

검역을 시작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수입, 국경 통과 및 내륙운송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 전문기술 관련 요청이 있거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발급이 2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물검역기관은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사유를 통보하거나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 신청 방법

- 식물검역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구비서류

- '식물검역신청서' (부록8 서식 참조)
- 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 국경 통과 및 내륙운송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식물 검역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

○ 신청 대상

- 식물검역 대상 물질의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 비용

- '식물 보호 영역의 비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231/2016/TT-BTC에서 관련 비용의 수준, 납부 제도, 비용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의 행정위반처분

○ 적용 범위

-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의 행정위반처분 시행령'은 위반행위, 처벌형식 및 수준,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극복방안,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 관한 행정위반 문서의 작성과 처분 심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적용 대상

- 베트남 영토에서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관련 행정위반행위를 한 개인, 단체는 행정위반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 행정위반처분의 시효

-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관련 행정위반처분의 시효는 1년으로 한다. 단, 농작물류 관련 지식재산권, 농작물 종자의 생산·수출·수입·사업, 식물 보호 약품, 식물, 식물상품의

경우에는 행정위반처분의 시효를 2년으로 한다.

○ 처분의 형태

-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 관련 행정위반행위를 한 개인, 단체는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과태료 수준

-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개인은 최대 5천만 동, 단체는 최대 1억 동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법률 규정에 따른 식물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식물 보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 동에서 5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의 수입, 수출, 국경 통과 전에 식물검역신고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1백만 동에서 2백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4장 라벨링 제도

제1절 라벨링 제도 일반

1. 일반조항

적용 범위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 상품의 라벨에 대하여 관리하고, 라벨의 내용 및 작성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 다음의 물품은 이 시행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
-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 상품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 국경 통과 물품, 재수출 물품, 환적 물품
- 출입국자의 수화물, 유동자산
- 경매로 판매하기 위해 몰수된 물품
- 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신선식품, 날식품, 가공식품
- 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연료, 원료(농산, 수산, 광산), 건축자재(벽돌, 기와, 석회, 모래, 돌, 자갈, 시멘트, 황토, 모르타르, 콘크리트 혼합물), 폐기물(생산, 사업 중 발생하는 것)
- 포장하지 않고 컨테이너, 레미콘에 담긴 유류, 액화가스(LPG, CNG, LNG), 시멘트
- 중고품
- 베트남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품
- 안보, 국방 영역에 해당하는 물품, 방사성 물질, 재난, 질병 극복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물품, 철도, 수로, 항로의 교통수단

적용 대상

○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 상품을 수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된다.

라벨링 의무사항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 상품은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링 위치

○ 상품의 라벨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해야 하고, 라벨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품 일부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 외부 포장을 열 수 없거나 열면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면 위에 라벨이 위치해야 하며 그 라벨에는 필수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링 크기

○ 상품의 라벨 기재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는 라벨의 크기, 라벨에 표현되는 글자와 숫자의 크기를 자체적으로 확인 및 기재해야 하며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상품의 라벨링 필수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글자와 숫자의 크기가 도량형 단위로 측정되어 표현되는 경우 '도량형법' 제04/2011/QH13호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상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포장된 식품의 가공 보조 물질인 경우 라벨에 기재되는 필수 내용의 글자 높이는 1.2㎜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라벨을 기재하는 상품의 면이 80㎠(봉합 부분을 제외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도 글자 높이는 0.9㎜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라벨링 색상

○ 상품의 라벨에 기재된 문자, 숫자, 그림, 사진, 부호, 기호의 색은 뚜렷해야 한다. 규정에 따른 필수 내용인 문자, 숫자의 색은 상품의 라벨 배경색상과 대조되는 색이어야 한다.

라벨링 표기언어

○ 상품 라벨의 필수 내용은 베트남어로 기재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인체에 사용되는 약품의 베트남명이 없는 경우 그 약품의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 화학 공식, 화학물질의 구조식, 약품, 약재, 약품 성분이 포함된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거나 베트남어로 번역 후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상품의 성분, 성분별 중량의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 상품의 생산에 관련된 외국 기업의 명칭과 주소

○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상품의 경우 라벨의 필수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라벨에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외국어로 표시하는 내용은 베트남어로 표시할 때의 내용과 같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글자의 크기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의 글자 크기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 중 라벨에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아직 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도록 별도의 라벨을 추가해야 하며, 본래의 라벨 또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어로 표시하는 내용은 본래의 라벨링에 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상품의 라벨 기재 책임

○ 상품의 라벨 및 부가 라벨의 내용은 진실성, 명확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가 해당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품의 라벨 기재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가 다른 개인, 단체에게 라벨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요청을 한 개인, 단체에게 여전히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수출품이 수출되지 않거나 수출 후 반품되어 베트남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그 상품을 유통하는 개인, 단체에게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수입품에 부착된 라벨이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제품을 수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처리

상품 라벨링에 대한 행정 위반 처분권

○ 인민 경찰 기관, 항구에 설치되는 세관사무소, 시장관리 및 상품의 품질관리 전문 검찰관 및

기타 기관은 부여된 직능, 책임, 권한 범위 내에서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행위 탐지 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이 있다.

생산, 유통 및 수출입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위반 처리

○ 상품의 라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개인, 단체는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상품의 표준, 도량 및 품질 영역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제119/2017/NĐ-CP호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국가 관리기관 소속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위반 처리

○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여 상품의 라벨에 관련한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위반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1. 라벨링 표시사항

상품의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 다음의 내용을 상품의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상품명
-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 상품의 원산지

○ 이 필수표시사항 이외에도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의 부록I에 명시된 상품의 특성에 따른 라벨링 필수표시사항을 반드시 해당 상품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의 특성에 따른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 곡물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있는 경우에 한함)

○ 식품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사용 및 보관 안내

○ 음료수(술 제외)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사용 및 보관 안내

○ 술
- 중량
- 에탄올 함량
- 유통기한(있는 경우에 한함)
- 보관 안내(와인의 경우)
- 주의사항(있는 경우에 한함)
- 생산로트 인식코드(있는 경우에 한함)

○ 담배
- 중량
- 제조일자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유통기한
- 일련번호, 바코드

○ 식품 첨가물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별 중량
- 사용 및 보관 안내
- “식품첨가물” 문구 기재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있는 경우에 한함)

○ 사료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별 중량
- 사용 및 보관 안내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있는 경우에 한함)

○ 건강보조식품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성분별 중량 및 영양 가치
- 사용 및 보관 안내
- 위험에 관한 권고 사항 표시
- “건강보조식품(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문구 기재
- “이 식품은 약이 아니며, 치료약을 대체하는 효능이 없습니다. (Thực phẩm này không phải là thuốc, không có tác dụng thay thế thuốc chữa bệnh.)” 문구 기재

○ 방사선조사식품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방사선 조사 식품(Thực phẩm đã qua chiếu xạ)” 문구 기재

○ 유전자 변형식품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유전자 변형 원료 성분명 옆에 “유전자 변형 식품(Thực phẩm biến đổi gen)” 또는 “유전자 변형(biến đổi gen)” 문구를 함량과 함께 기재

○ 미세영양소
- 중량
- 제조일자
- 성분
- 사용 및 보관 안내
- “식품에 사용(Dùng cho thực phẩm)” 문구 기재

○ 식품 원료
- 원료명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사용 및 보관 안내

상품명

○ 상품의 라벨에 표기되는 상품명은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

○ 상품명은 상품의 라벨에 표기되는 다른 내용보다 더 큰 크기로 표기되어야 한다.

○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는 라벨에 기재되는 상품명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상품의 본질, 효능, 성분에 관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다.

○ 성분명이 상품명으로 사용되거나 상품명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그 성분의 중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단, 색상, 향,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 첨가물이 상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그 첨가물의 중량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 상품의 라벨에 기재되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는 약자로 쓸 수 없다.

○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생산시설의 주소를 기재한다.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그 상품을 수입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다.

○ 외국 상인이 베트남으로 수입한 상품을 직영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개인, 단체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 대리하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다.

○ 특정 개인, 단체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업 허가를 받은 상품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함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명칭과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 단체가 조립, 포장, 봉인하는 경우 그 조립, 포장, 봉인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라벨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립, 포장, 봉인 전에 해당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허락을 받은 뒤 그 개인, 단체의 명칭 또는 명칭과 주소, 그리고 기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의 중량

○ 측정단위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베트남 '도량형법'에 따라 그 중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 수량으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그 수량을 자연수로 표기하여야 한다.

○ 다수의 상품 단위가 함께 단일 포장된 상품의 경우 개별 상품 단위의 중량과 단일 포장된 상품의 총중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 상품명과 함께 자연 원료 추출물, 물질명을 기재하는 경우 그 추출물, 물질의 성분별 중량을 기재하거나 해당 추출물,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의 질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상품의 중량을 기재하는 방법은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의 부록 II에 규정되어 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며 일, 월, 년의 순서로 기재한다.
-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표시하고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네 자릿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일, 월, 년을 나타내는 숫자는 같은 줄에 표기하여야 한다.
- 제조일자를 제조월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양력을 기준으로 월, 년의 순서로 기재한다.
- 제조일자를 제조년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양력을 기준으로 년을 나타내는 숫자 네자릿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라벨에 "제조일자", "유통기한"으로 기재하거나 "NSX", "HSD" 또는 "HD"의 약자 형태로 기재할 수 있다.

○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의 부록I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의 시점으로 기재해야 하며 제조일자는 유통기한보다 일정 기간 이전의 시점으로 기재해야 한다.

○ 분배, 분할 포장, 혼입, 재포장하는 경우 그 분배, 분할 포장, 혼입, 재포장한 날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은 라벨에 원래 표시된 제조일자로부터 계산한다.

○ 제조일자, 유통기한의 표기법은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부록 III의 항목 1에 규정되어 있다.

○ 상품의 기타 기간에 관한 표기법은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부록 III의 항목 2에 규정되어 있다.

상품의 원산지

○ 상품을 제조, 수입하는 개인, 단체는 자체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 원산지에 관한 법률 또는 베트남이 참여 또는 체결한 협정을 정확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서 생산(sản xuất tại)" 또는 "~에서 제조(chế tạo tại)", "생산국(nước sản xuất)", "원산지(xuất xứ)" 또는 그 상품의 생산 국가명 또는 지역명이 포함된 "~생산(sản xuất bởi)"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 상품의 생산 국가명 또는 지역명은 약자의 형태로 기재할 수 없다.

성분, 성분별 중량

○ 성분 기재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포함한 원료명과 변경된 원료 형태를 포함한 성분의 존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상품의 라벨에 성분명을 기재하는 경우 그 성분의 중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단, 색상, 향,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 첨가물이 상품명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성분별 중량 기재란, 성분별 중량과 함께 성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특성, 상태에도 불구하고 성분별 중량은 상품의 한 측정 단위인 성분의 질량 형식으로 표기하거나 질량/질량, 질량/체적, 체적/체적, 질량 백분율, 체적 백분율 비율 중 하나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 일부 상품류의 성분, 성분별 중량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 경우 질량이 큰 성분부터 작은 성분의 순서로 기재한다.
- 성분이 첨가물인 경우 첨가물 분류명, 첨가물의 이름 또는 국제번호제도(INS) 코드 (있는 경우에 한함)를 기재해야 한다. 첨가물이 향료, 감미료, 착색제인 경우 그 향료, 감미료, 착색제 분류명을 기재하고 물질명을 기재하며(있는 경우에 한함) 그 물질명이 자연 물질인지 자연 유사물질인지 또는 합성 물질인지 인공 물질인지 여부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 이 상품의 성분, 성분별 중량 기재 기준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는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부록 IV에 규정되어 있다.

기술적 변수, 주의사항

○ 기술적 변수와 허용 오차(있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할 책임이 있다.

○ 라벨에 표기하는 주의사항은 국제 규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글자, 사진, 기호의 형태로 기재할 수 있다.

○ 식품의 영양 가치를 기재하는 경우 개인, 단체는 그 식품의 영양 가치가 상품의 라벨에 표시되고 관련 법률 규정과 적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사용량이 정해져 있고 지정목록에 포함된 방부제를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에 해당하는 상품의 성분 또는 복합 성분 내 물질이 사람, 동물 및 환경에 자극 또는 해를 끼치는 경우 해당 성분에 포함된 물질명을 기재해야 한다.

○ 방사선에 노출되었거나 유전자 변형기술이 적용된 상품 또는 상품의 성분은 법률의 규정과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조약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 상품의 기술적 변수, 주의사항이 위의 기준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는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제43/2017/NĐ-CP호 부록 V에 규정되어 있다.

라벨에 표시하는 기타 내용

○ 상품의 라벨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는 라벨에 일련번호, 바코드, 규격 표기, 기타 추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품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라벨에 기재된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그 내용을 위조해서는 안 된다.

○ 상품의 라벨은 주권 분쟁에 관련된 사진, 내용과 베트남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관계,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민감함 내용을 표현할 수 없다.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간단히 포장한 상품, 식품첨가물, 화학 물질인 낱개 판매 상품, 포장이 없는 상품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단체는 다음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상품명
- 유통기한

- 안전 경고
-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 사용 안내

APPLE JUICE - CERES - NO SUGAR ADDED

Tên: Nước Táo Ép Nguyên Chất - CERES

Thành phần: Nước Táo Ép 100% , Vitamin C.
CTDD: Xem nutrition information trên nhãn
SD: Uống trực tiếp. Để lạnh uống ngon hơn.
Bảo quản: Để nơi khô sạch, thoáng mát
Ngày SX: Xem production date/"P" trên đầu hộp
HSD: Xem Expiry date/"E" trên đầu hộp
Thể tích thực: 1 lít
Xuất xứ: Ceres Fruit Juices (Pty) Ltd.
Số 32A Market, Paarl, 7646. Nam Phi
NK &PP: Công ty TNHH Hùng Dũng.
216 Nguyễn Văn Linh, Tân Thuận Tây, Quận 7 , HCM.
Phone : 08-38724447 Fax: 08-38724234.
www.hungdung.com.vn
PP Phía Bắc: Công ty Tân Ngọc Lan.
35 A Phù Doãn-Hàng Trống - Hoàn Kiếm - Hà Nội. Đt 043.9286694

HUNG DUNG VIETNAM 848729/2
APPLE 1000ml

수입식품 라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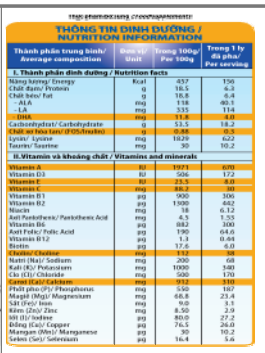
THÔNG TIN DINH DƯỠNG / NUTRITION INFORMATION

Thành phần trung bình/ Average composition	Đơn vị/ Unit	Trong 100g/ Per 100g	Trong 1 ly đã pha/ Per serving
I. Thành phần dinh dưỡng / Nutrition facts			
Năng lượng/ Energy	Kcal	457	156
Chất đạm/ Protein	g	16.5	6.3
Chất béo/ Fat	g	16.8	6.4
- ALA	mg	118	40.1
- LA	mg	113	114
Carbohydrat/ Carbohydrate	g	53.5	18.2
Chất xơ hòa tan/ FOS/Inulin	g	0.36	0.3
Lysin/ Lysine	mg	1029	622
Taurin/ Taurine	mg	30	10.2
II. Vitamin và khoáng chất / Vitamins and minerals			
Vitamin A	IU	1971	670
Vitamin D3	IU	506	172
Vitamin E	IU	23.5	8.0
Vitamin C	mg	88.2	30
Vitamin B1	µg	900	306
Vitamin B2	µg	1500	442
Niacin	mg	18	6.12
Axit Pantothenic/ Pantothenic Acid	mg	4.5	1.53
Vitamin B6	µg	882	300
Axit Folic/ Folic Acid	µg	190	64.6
Vitamin B12	µg	1.3	0.44
Biotin	µg	17.6	6.0
Choline/ Choline	mg	112	38
Natri (Na)/ Sodium	mg	200	68
Kali (K)/ Potassium	mg	1000	340
Clo (Cl)/ Chloride	mg	500	170
Canxi (Ca)/ Calcium	mg	912	310
Phốt pho (P)/ Phosphorus	mg	550	187
Magiê (Mg)/ Magnesium	mg	68.8	23.4
Sắt (Fe)/ Iron	mg	9.0	3.1
Kẽm (Zn)/ Zinc	mg	8.50	2.9
Iốt (I)/ Iodine	µg	80.0	27.2
Đồng (Cu)/ Copper	µg	76.5	26.0
Mangan (Mn)/ Manganese	µg	30	10.2
Selen (Se)/ Selenium	µg	16.4	5.6

유제품 영양표시

Sản xuất bởi Công ty TNHH Nước Giải Khát Coca-Cola Việt Nam, 485 xa lộ Hà Nội, P. Linh Trung, Q. Thủ Đức, Tp. Hồ Chí Minh. Theo sự cho phép của Công ty Coca-Cola..

Coca-Cola là thương hiệu đã được đăng ký của Công ty Coca-Cola..

GIÁ TRỊ DINH DƯỠNG TRONG 100 ml

Năng lượng	42 kcal
Chất béo	0 g
Chất đạm	0 g
Carbohydrate	11 g
Đường	11 g
Sodium	< 23 mg

Thành phần: Nước bão hoa CO_2, đường HFCS, đường mía, màu thực phẩm (150d), chất điều chỉnh độ axit (338), hương cola tự nhiên và caffeine.

음료수 영양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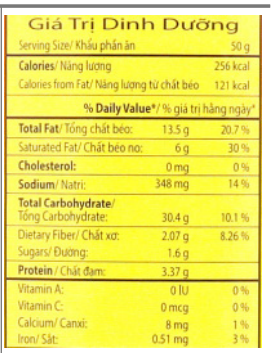
Giá Trị Dinh Dưỡng

Serving Size/ Khẩu phần ăn	50 g	
Calories/ Năng lượng	256 kcal	
Calories from Fat/ Năng lượng từ chất béo	121 kcal	
	% Daily Value*/ % giá trị hàng ngày*	
Total Fat/ Tổng chất béo:	13.5 g	20.7 %
Saturated Fat/ Chất béo no:	6 g	30 %
Cholesterol:	0 mg	0 %
Sodium/ Natri:	348 mg	14 %
Total Carbohydrate/ Tổng Carbohydrate:	30.4 g	10.1 %
Dietary Fiber/ Chất xơ:	2.07 g	8.26 %
Sugars/ Đường:	1.6 g	
Protein / Chất đạm:	3.37 g	
Vitamin A:	0 IU	0 %
Vitamin C:	0 mcg	0 %
Calcium/ Canxi:	8 mg	1 %
Iron/ Sắt:	0.51 mg	3 %

스낵류 영양표시

제3절 자료출처

1. 웹사이트

○ www.customs.gov.vn (베트남 관세총국)

○ www.moh.gov.vn (보건부)

○ www.mard.gov.vn (농업농촌개발부)

○ www.vfa.gov.vn (식품안전국)

○ www.cucthuy.gov.vn (수의국)

○ www.most.gov.vn (과학기술부)

○ www.ppd.gov.vn (식물 보호국)

○ www.nafiqad.gov.vn (농림수산품질관리국)

2. 관련법규

○ 관세법: 54/2014/QH13 (제정일: 2014년 6월 23일, 시행일: 2015년 1월 1일)

○ 식품안전법: 55/2010/QH12 (제정일: 2010년 6월 17일, 시행일: 2011년 7월 1일)

○ 수출입 세법: 107/2016/QH13 (제정일: 2016년 4월 6일, 시행일: 2016년 9월1일)

○ 도량형법: 04/2011/QH13 (제정일: 2011년 11월 11일, 시행일: 2012년 7월 1일)

○ 전자거래법: 51/2005/QH11 (제정일: 2005년 11월 29일, 시행일: 2006년 3월 1일)

○ 제소법: 02/2011/QH13 (제정일: 2011년 11월 11일, 시행일: 2012년 7월 1일)

○ 세관 절차, 세관 검사·감독·조사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08/2015/NĐ-CP (제정일: 2015년 1월 21일, 시행일: 2015년 3월 15일)

○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시행령: 19/2006/NĐ-CP (제정일: 2006년 2월 20일, 시행일: 2006년 3월 16일)

○ 식품안전법의 일부 상세규정 관련 시행령: 38/2012/NĐ-CP (제정일: 2012년 4월 25일,

시행일: 2012년 6월 11일)

○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의 행정위반처분 시행령: 31/2016/NĐ-CP (제정일: 2016년 5월 6일, 시행일: 2016년 6월 25일)

○ 상품의 표준, 도량 및 품질 영역의 행정처분에 관한 시행령: 119/2017/NĐ-CP (제정일: 2017년 11월 1일, 시행일: 2017년 12월 15일)

○ 수입동물 식품위생 안전 검역 검사 규칙: 25/2010/TT-BNNPTNT (제정일: 2010년 4월 8일, 시행일: 2010년 7월 1일)

○ (신선 농산물) 수입 식물 병충해 위험 검역에 관한 결정: 48/2007/QĐ-BNN (제정일: 2007년 5월 29일, 시행일: 2007년 7월 7일)

○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43/2017/NĐ-CP (제정일: 2017년 4월 14일, 시행일: 2017년 6월 1일)

○ 식물 검역대상 목록, 수입 전 위해 분석을 위한 식물검역대상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 30/2014/TT-BNNPTNT (제정일: 2014년 9월 5일, 시행일: 2015년 1월 1일)

○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에 진행하는 식물 검역대상 물질의 위험성 분석과정에 관한 시행규칙: 36/2014/TT-BNNPTNT (제정일: 2014년 10월 31일, 시행일: 2014년 12월 1일)

○ 식품안전 위생업무 시의 비용 수준, 접수 제도, 납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79/2016/TT-BTC (제정일: 2016년 11월 14일,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물품, 국경운송비용의 납부에 관한 시행규칙: 274/2016/TT-BTC (제정일: 2016년 11월 14일,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식물 보호 영역의 비용 관리 및 사용, 납부, 납부제도, 수준에 관한 시행규칙: 231/2016/TT-BTC (제정일: 2016년 11월 11일,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보건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수출식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서류 및 절차,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의 안전 관련 국가의 검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 52/2015/TT-BYT (제정일: 2015년 12월 21일, 시행일: 2016년 2월 23일)

○ 수입, 수출, 국경 통과 식물의 검역절차 및 식물검역에 해당하는 물질의 수입 후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33/2014/TT-BNNPTNT (제정일: 2014년 10월 30일, 시행일: 2015년 1월 1일)

○ 세관 절차, 세관 검사·감독, 수출입세,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금관리 시행규칙: 38/2015/TT-BTC (제정일: 2015년 3월 25일, 시행일: 2015년 4월 1일)

[부록 1]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관한 통보

BỘ Y TẾ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Số: 1114 /TB-ATTP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Hà Nội, ngày 11 tháng 5 năm 2014

THONG BÁO
Về việc ban hành các mẫu giấy chứng nhận sản phẩm thực phẩm

Để thực hiện tốt công tác quản lý sản phẩm thực phẩm,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thông báo về việc thay đổi một số mẫu giấy chứng nhận sản phẩm thực phẩm, cụ thể như sau:

1. Thay đổi các mẫu giấy chứng nhận sản phẩm thực phẩm dưới đây (có mẫu giấy kèm theo):

- Giấy tiếp nhận bản công bố hợp quy.
- Giấy xác nhận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2. Các mẫu giấy được nêu tại điểm 1 của Thông báo này bắt đầu được thực hiện từ ngày 09/6/2014.

3. Các loại giấy được nêu tại điểm 1 của Thông báo này đã được cấp trước ngày 09/6/2014 vẫn có giá trị đến hết thời hạn hiệu lực của giấy.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thông báo để các cơ quan liên quan,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và người tiêu dùng được biết./.

Nơi nhận:
- Thứ trưởng Nguyễn Thanh Long (để b/c);
-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để biết);
- Tổng Cục Hải quan; Cục Quản lý chất lượng nông lâm thủy sản - Bộ NN&PTNT; Vụ Khoa học công nghệ - Bộ CT; Tổng Cục tiêu chuẩn đo lường chất lượng - Bộ KHCN (để biết);
- Các cơ quan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TTP nhập khẩu (để biết);
- Website Cục;
- Lưu:VT, SP.

CỤC TRƯỞNG

BỘ Y TẾ *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

Trần Quang Trung

보건부
식품안전국

번호: 1114/TB-ATTP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하노이, 2014년 5월 11일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관한 통보

식품 상품의 수월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품안전국은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다음의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첨부파일 참조)
   -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2. 이 통보서 제1항에 제시한 인증서 양식은 2014년 6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2014년 6월 9일 이전에 발급한 이 통보서 제1항에 제시한 인증서 양식은 해당 인증서의 효력 기한까지 유효하다.

식품안전국은 관련 기관, 식품을 생산, 취급하는 개인 및 단체, 소비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한다.

수신처:
- Nguyen Thanh Long 차관
- 식품을 생산, 취급하는 개인 및 단체
- 관세총국, 농림수산품질관리국, 기술과학부, 품질도량표준국
- 수입식품안전 관련 국가검사기관

국장

Tran Quang Trung

[부록 1-1]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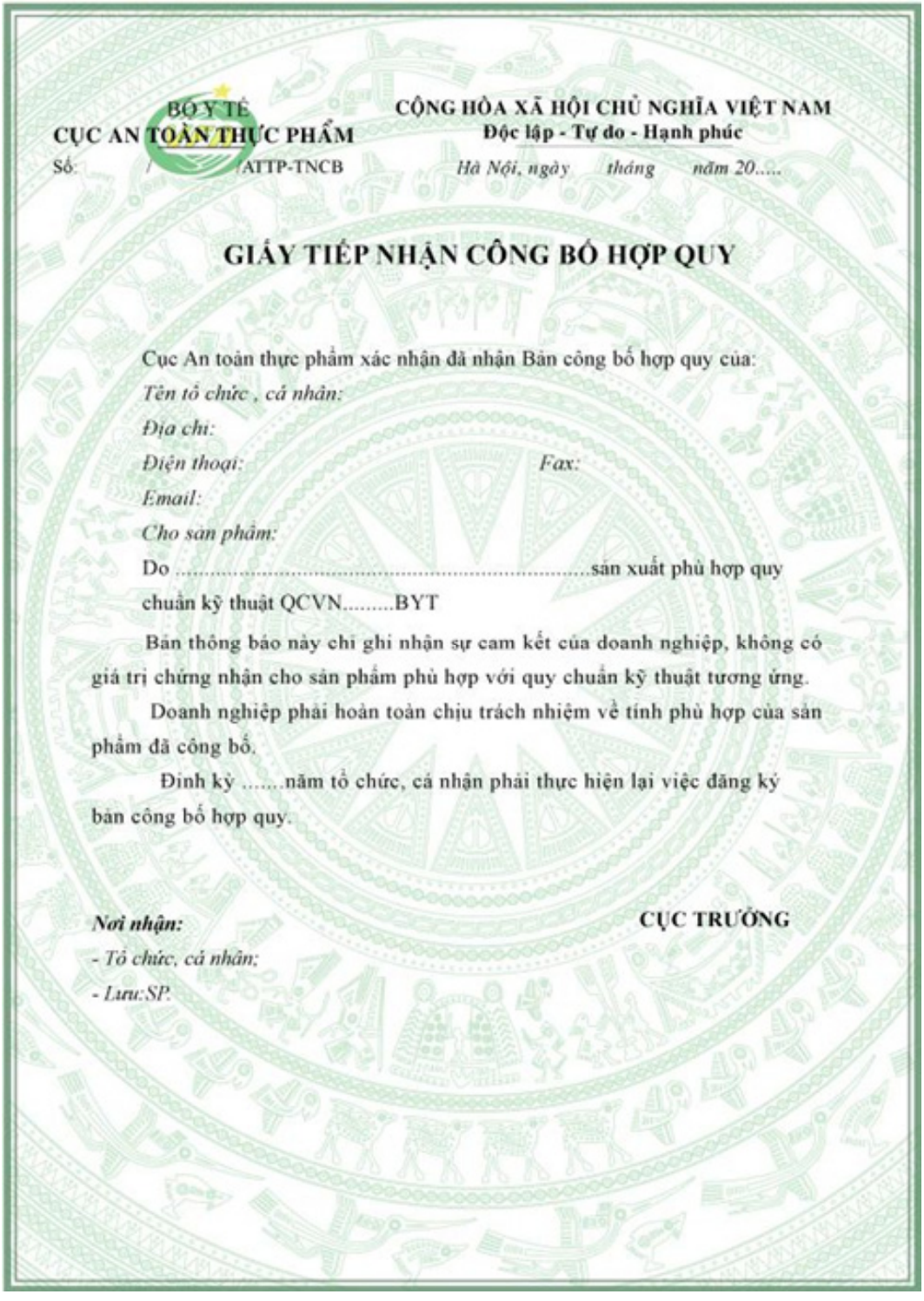

BỘ Y TẾ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Số: /ATTP-TNCB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Hà Nội, ngày tháng năm 20.....

GIẤY TIẾP NHẬN CÔNG BỐ HỢP QUY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xác nhận đã nhận Bản công bố hợp quy của:

Tên tổ chức , cá nhâ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ho sản phẩm:

Do .....sản xuất phù hợp quy chuẩn kỹ thuật QCVN.....BYT

Bản thông báo này chỉ ghi nhận sự cam kết của doanh nghiệp, không có giá trị chứng nhận cho sản phẩm phù hợp với quy chuẩn kỹ thuật tương ứng.

Doanh nghiệp phải hoàn toàn chịu trách nhiệm về tính phù hợp của sản phẩm đã công bố.

Định kỳ .....năm tổ chức, cá nhân phải thực hiện lại việc đăng ký bản công bố hợp quy.

Nơi nhận:
- Tổ chức, cá nhân;
- Lưu:SP.

CỤC TRƯỞNG

보건부
식품안전국

번호: / /ATTP-TNCB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하노이, 20 년 월 일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식품안전국은 다음 대상의 규정 부합 공포 서류의 수취를 확인한다.

개인, 단체명:

주소:

연락처: 팩스:

이메일:

대상 상품:

..... 상품은 베트남 보건부의 번호 ..... 기술 규정에 부합하여 생산되었다.

이 인증서는 단지 상기 업체의 서약만을 인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임을 인증하는 가치는 없다.

상기 업체는 공포한 상품의 부합성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 년마다 개인 및 단체는 규정 부합 공포를 신청해야 한다.

수신처: 국장

- 개인 및 단체
- 내부 저장

[부록 1-2]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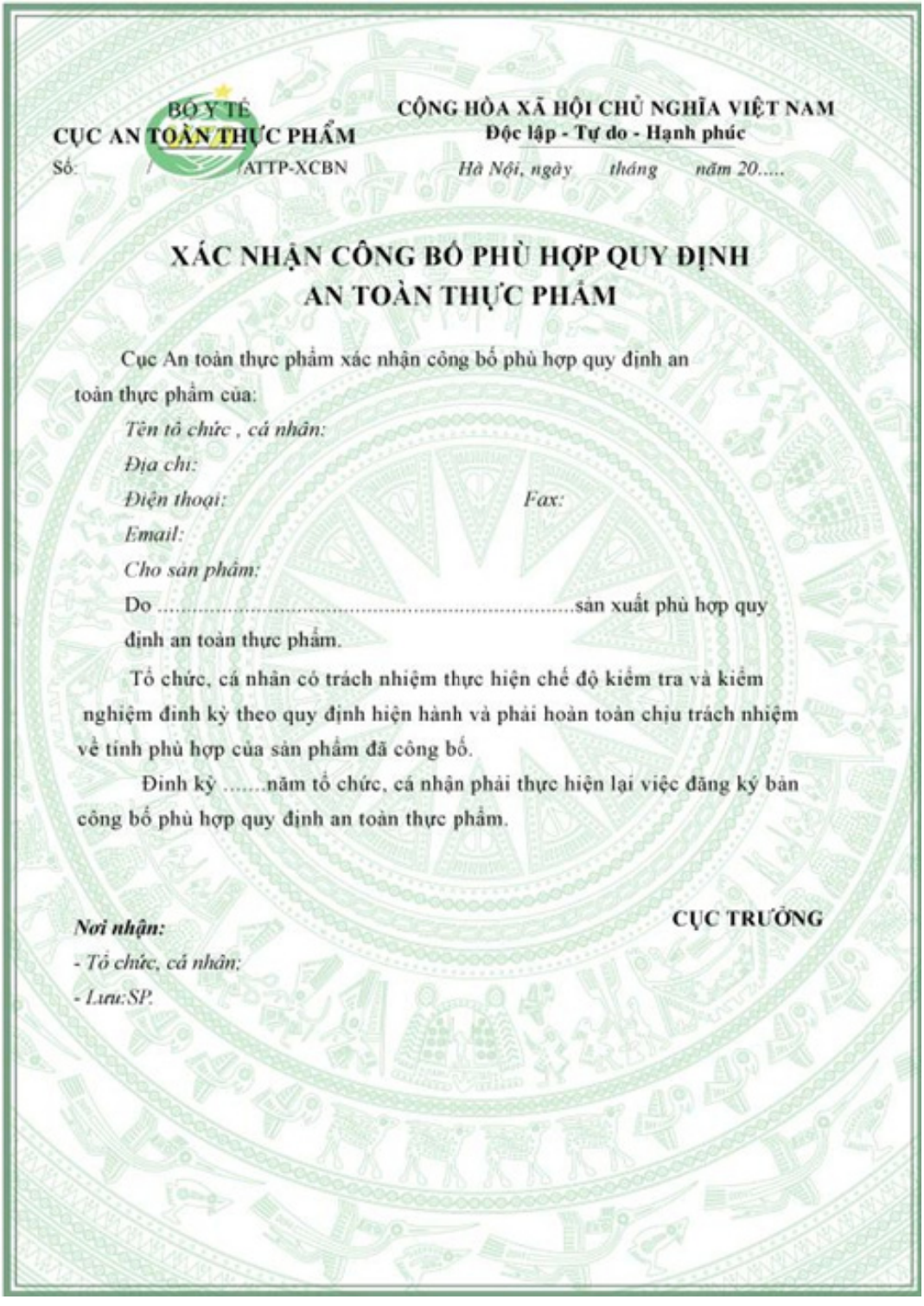

BỘ Y TẾ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Số: /ATTP-XCBN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Hà Nội, ngày tháng năm 20.....

XÁC NHẬN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xác nhận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của:

Tên tổ chức , cá nhâ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ho sản phẩm:

Do .....sản xuất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Tổ chức, cá nhâ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chế độ kiểm tra và kiểm nghiệm định kỳ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và phải hoàn toàn chịu trách nhiệm về tính phù hợp của sản phẩm đã công bố.

Định kỳ .....năm tổ chức, cá nhân phải thực hiện lại việc đăng ký bản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Nơi nhận:
- Tổ chức, cá nhân;
- Lưu:VP.

CỤC TRƯỞNG

보건부
식품안전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 /ATTP-XCBN

하노이, 20 년 월 일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식품안전국은 다음 대상의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를 확인한다.

개인, 단체명:

주소:

연락처: 팩스:

이메일:

대상 상품:

..... 상품은 식품안전 규정에 부합하여 생산되었다.

개인 및 단체는 현행 규정에 따라 상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분석 실험검사를 하며 공포한 상품의 부합성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 년마다 개인 및 단체는 식품안전규정부합공포를 신청해야 한다.

수신처:

국장

- 개인 및 단체
- 내부 저장

[부록 2]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 발급 요청서

PHỤ LỤC 1

(Ban hành kèm theo Quyết định số 48/2007/QĐ-BNN ngày 29 tháng 05 năm 2007 của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ĐƠN ĐỀ NGHỊ CẤP GIẤY PHÉP KIỂM DỊCH THỰC VẬT NHẬP KHẨU

Số : .....

Kính gửi:.....

Tổ chức, cá nhân:.....

Địa chỉ:.....Điện thoại :.....

Đề nghị quý cơ quan cấp Giấy phép kiểm dịch thực vật nhập khẩu cho lô vật thể dưới đây của cơ quan chúng tôi:

Tên vật thể: .....

Tên khoa học :.....

Trọng lượng :.....

Số lượng:.....

Phương thức đóng gói :.....

Vùng sản xuất : .....

Nước xuất khẩu : .....

Phương tiện vận chuyển :.....

Cửa khẩu nhập :.....

Địa điểm sử dụng : .....

.....

Thời gian lô vật thể nhập khẩu : .....

Hồ sơ kèm theo :.....

Vào sổ số : .....ngày ___/___/____ **Cán bộ nhận đơn**
(Ký tên)

, ngày..... tháng.....năm.....
Đại diện cơ quan
(Ký tên)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2009년 5월 29일 발행한 결정 제48/2007/QĐ-BNN호에 첨부하여 발행함)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 발급 요청서

번호:.....

수신:.....
개인, 단체:.....
주소:.....연락처:.....

우리 기관의 다음 품목에 대한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품목명:.....
과학명:.....
중량:.....
수량:.....
포장방식:.....
생산지:.....
수출국:.....
운송수단:.....
수입국:.....
사용장소:.....
수입시간:.....
첨부서류:.....

접수번호:...../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부록 3] RPA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PHỤ LỤC 2.

(Ban hành kèm theo Quyết định số 48/2007/QĐ-BNN ngày 29 tháng 05 năm 2007 của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NHỮNG THÔNG TIN CẦN THIẾT ĐỂ THỰC HIỆN PRA

Những thông tin cung cấp phải được cập nhật hoặc có giá trị sử dụng của cơ quan kiểm dịch thực vật nước xuất khẩu.

1. Thực vật và sản phẩm thực vật

1.1 Tên khoa học;

1.2 Tên thông thường;

1.3 Giống chống chịu hoặc không chống chịu dịch hại;

1.4 Nước đã từng nhập khẩu hàng hoá này.

2. Vùng sản xuất

2.1 Khu vực sản xuất: xã , huyện, tỉnh;

2.2 Vị trí khu vực sản xuất trên bản đồ (quốc gia và tỉnh);

2.3 Năng lực xuất khẩu (tấn/năm).

3 Phương pháp canh tác

3.1 Những chương trình giám sát chung và quản lý dịch hại;

3.2 Thông tin từ những khu vực không nhiễm dịch hại;

3.3 Phương pháp và thời gian thu hoạch;

3.4 Biện pháp bảo vệ thực vật tại địa phương (nhằm loại trừ dịch hại tại vườn).

4 Danh mục dịch hại

4.1 Tên khoa học;

4.2 Vị trí phân loại;

4.3 Tên gọi khác;

4.4 Tên thông thường;

4.5 Những ký chủ (giống bị sâu bệnh hại);

4.6 Bộ phận cây bị hại;

4.7 Triệu chứng bị hại;

4.8 Phân bố;

4.9 Tình trạng dịch hại (phổ biến hoặc thỉnh thoảng xuất hiện);

4.10 Biện pháp quản lý;

4.10.1 Canh tác (nhổ bỏ cây bị bệnh, luân canh cây trồng, khử trùng vệ sinh vườn, dùng bẫy bắt côn trùng...);

4.10.2 Sinh học (sử dụng thiên địch phòng trừ dịch hại, bỏ vụ, giống chống chịu...);

4.10.3 Vật lý;

4.10.4 Hóa học (loại thuốc phòng trừ dịch hại, phương pháp, thời gian, số lần sử dụng...);

4.11 Tài liệu tham khảo về đặc tính sinh học của dịch hại;

4.12 Cơ sở dữ liệu về các vấn đề đã nêu.

5. Bao gói hàng hoá

5.1 Phương pháp bao gói;

5.2 Quy trình kiểm tra, tỉ lệ kiểm tra;

5.3 Biện pháp xử lý sau thu hoạch;

5.4 Điều kiện và sự an toàn của kho bảo quản.

6. Chương trình xuất khẩu (chính sách/hoạt động)

6.1 Các đối tác thương mại;

6.2 Thủ tụ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đang áp dụng (theo tiêu chuẩn/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các giấy tờ khai báo bổ sung).

7. Bản sao các tài liệu liên quan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2009년 5월 29일 발행한 결정
제48/2007/QĐ-BNN호에 첨부하여 발행함)

PRA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출하는 서류는 가장 최신의 자료이거나 수출국 식물 검역기관의 사용 가치가 있는 서류여야 한다.

1. 식물과 식물 상품

1.1 과학명:
1.2 일반명:
1.3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 또는 병충해를 극복할 수 없는 종자:
1.4 이 물품을 수입한 적이 있는 국가:

2. 생산지

2.1 생산 구역: 사(동), 현(구), 성(시):
2.2 지도상의 생산 구역 위치(국가와 성):
2.3 수출 능력 (ton/년).

3 재배방법

3.1 일반적인 검사 관리 프로그램 및 병충해 검역 관리:
3.2 병충해에 전염되지 않은 구역 정보:
3.3 수확 방법과 수확 기간:
3.4 지방에서의(수출국) 식물 보호 검역 방법.

4 병충해 목록

4.1 과학명:
4.2 분류 위치:
4.3 기타명:
4.4 일반명:
4.5 병충해에 걸린 종자:
4.6 병충해에 걸린 나무의 부분:

4.7 병충해 증상:
4.8 구분:
4.9 병충해 상태 (보편적이거나 가끔 출현하는 병충해):
4.10 관리 방법:
4.10.1 재배 (병충해에 걸린 나무뿌리의 제거, 밭의 살충제 소독, 곤충 채집 기구의 사용, 윤작 등):
4.10.2 생물학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의 선택, 농작을 거르는 등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물학적 방법 사용):
4.10.3 물리:
4.10.4 화학 (농약 종류, 사용 방법, 시간, 사용 횟수):
4.11 병충해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참고 자료:
4.12 위에 대한 관련한 자료.

5. 물품 포장

5.1 포장방법:
5.2 검사 방법 및 검사 비율:
5.3 수확 이후의 처리 방법:
5.4 보관 창고의 안전도와 조건.

6. 수출 프로그램

6.1 사업 파트너:
6.2 적용 중인 검역 증명서를 발급 절차 (기준에 따름 / 특별한 경우, 관련 보충 신고서).

7. 관련 자료 사본

[부록 4] 병충해 위험성 분석 기간

PHỤ LỤC 3

(Ban hành kèm theo Quyết định số 48/2007/QĐ-BNN ngày 29 tháng 5 năm 2007 của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THỜI GIAN PHÂN TÍCH NGUY CƠ DỊCH HẠI

STT	Vật thể	Thời gian
1	**Giống cây trồng**	
	- Đã có kết quả phân tích nguy cơ dịch hại và thời gian theo dõi	3- 10 ngày
	- Lần đầu tiên nhập khẩu	1-3 năm
	- Có xuất xứ mới	1-3 năm
	- Có bằng chứng về sự bùng phát dịch hại kiểm dịch thực vật tại nước xuất khẩu	30 ngày
	- Phát hiện dịch hại thuộc diện điều chỉnh.	30 ngày
2	**Quả tươi**	
	- Đã có kết quả phân tích nguy cơ dịch hại và thời gian theo dõi	3- 10 ngày
	- Lần đầu tiên nhập khẩu	1-3 năm
	- Có xuất xứ mới	1-3 năm
	- Có bằng chứng về sự bùng phát dịch hại kiểm dịch thực vật tại nước xuất khẩu	90 ngày
	- Phát hiện dịch hại thuộc diện điều chỉnh.	60 ngày
3	**Các tác nhân phòng trừ sinh học**	30 ngày
4	**Các sinh vật sống khác nhập khẩu**	30 ngày
5	**Các vật thể khác có nguy cơ cao**	60 ngày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2009년 5월 29일 발행한 결정
제48/2007/QĐ-BNN호에 첨부하여 발행함)

▌병충해 위험성 분석 기간 (서류심사) ▌

순서	식물 품목	기간
1	**나무 종자**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오는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하는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의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이 필요한 병충해인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이나 검역 검사를 받는 시점에 베트남에 정한 금지 및 관리 대상의 병충해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2	**과실**	
	검역 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오는 경우	3~10일
	처음 수입하는 경우	1~3년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의 경우	1~3년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시킨 증거가 있는 경우	90일
	조정이 필요한 병충해인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이나 검역 검사를 받는 시점에 베트남에 정한 금지 및 관리 대상의 병충해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0일
3	**생물적 병충해 예방 약물**	30일
4	**기타 수입 생 · 식물**	30일
5.	**기타 높은 위험도가 있는 식물 품목**	60일

[부록 5]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

PHỤ LỤC 4

(Ban hành kèm theo Quyết định số 48/2007/QĐ-BNN ngày 29 tháng 5 năm 2007 của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CỤC BẢO VỆ THỰC VẬT
SỐ: ..... /BVTV-KD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GIẤY PHÉP KIỂM DỊCH THỰC VẬT NHẬP KHẨU

Theo pháp luật về bảo vệ và kiểm dịch thực vật của nước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căn cứ vào:

Đơn đề nghị cấp Giấy phép Kiểm dịch thực vật nhập khẩu của.....
.....

.....

Báo cáo kết quả phân tích nguy cơ dịch hại số .... ngày .....tháng ....năm.....

Cục Bảo vệ thực vật đồng ý về mặt kiểm dịch thực vật (KDTV) để tổ chức, cá nhân có tên và địa chỉ dưới đây :

.....

.....

Nhập vào Việt Nam từ nước :

.....

Những vật thể thuộc diện KDTV sau :

.....

.....

.....

Tên khoa học :.....

.....

Với điều kiện phải thực hiện những yêu cầu KDTV sau đây:

1/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xử lý tại nước xuất khẩu:

Khử trùng: Loại thuốc:..... Liều lượng:.....Thời gian:.....

Chiếu xạ: Nguồn:..... Liều lượng:.....Thời gian:.....

Được sản xuất từ khu vực không nhiễm dịch hại thuộc diện điều chỉnh của Việt Nam;

Biện pháp khác: .....

2/ Có Giấy chứng nhận KDTV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về bảo vệ/KDTV của nước xuất khẩu cấp;

3/ Những vật thể trên:

Chỉ được phép đưa vào qua các cửa khẩu sau đây :

.....

Phải được hoàn tất thủ tục KDTV tại:.....

4/ Lộ trình vận chuyển: .....

5/ Địa điểm sử dụng:.....

.....

6/ Khi tới nơi qui định, chủ vật thể trên phải thực hiện những nội dung sau đây:

Khai báo với Chi cục Bảo vệ thực vật các tỉnh, thành phố địa điểm gieo trồng để tiếp tục theo dõi tình trạng dịch hại;

Khai báo với Trung tâm KDTV sau nhập khẩu ...;

Chỉ được đưa ra sản xuất sau khi có kết luận của cơ quan KDTV.

Yêu cầu KDTV khác:.....

.....

.....

.....

.....

7/ Giấy phép này có hiệu lực đến ngày ..... tháng .... năm 200...

Hà Nội, ngày .... tháng ... năm 200..

CỤC TRƯỞNG

(Ký tên, đóng dấu)

Ghi chú :

1. Giấy phép KDTV nhập khẩu này được lập thành 4 bản :

- Một bản do cơ quan đặt hàng giữ;

- Một bản do cơ quan nhập khẩu giữ;

- Một bản lưu tại cơ quan KDTV của địa bàn có cửa khẩu mà hàng thực vật nhập vào;

- Một bản lưu tại Cục Bảo vệ thực vật.

2. Cơ quan KDTV nơi nhận phải tiến hành thống kê nghiêm ngặt những Giấy phép KDTV nhập khẩu nhận được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2009년 5월 29일 발행한 결정
제48/2007/QĐ-BNN호에 첨부하여 발행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검역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BVTV-KD

수입식물 검역 허가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식물 보호 및 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허가서를 발급한다.
□ .....의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 발급 신청서:
□ 병충해 위험성 분석 결과 보고 번호:....., 년.....월.....일:
식물 보호국은 다음의 이름과 주소의 개인, 단체를 위한 식물 검역에 동의한다.
상호:.....
주소:.....
수출국:.....

식물 검역을 받은 품목:
.....
.....
.....
과학명:.....
.....

다음의 식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 수출국에서의 처리 방법 적용:
□ 살충: 살충제:..... 복용량:..... 시간:.....
□ 방사선 처리: 처리원:..... 정량:..... 시간:.....
□ 베트남의 조정이 필요 없는 병충해가 없는 구역에서 생산되었다: 유□ 무□
(베트남의 금지 및 관리 대상인 병충해인지의 검사)
□ 기타 방법:

2/ 수출국의 보호 관할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첨부:
3/ 이 수입식물 품목은 다음의 지정된 세관 기관에 들어올 수 있다.
.....
.....
.....

식물 검역 절차는 .....에서 완료해야 한다.
4/ 운송 일정:.....
5/ 사용 장소:.....
6/ 지정된 장소에 도착 시 품목의 소유주는 다음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 수입 이후 지속적인 검사를 위해 품목을 재배할 지방의 식물검역국에 통보한다.
□ 수입 이후 식물검역국에 통보한다.
□ 식물 검역기관의 결론이 나온 뒤에 생산한다.
□ 기타 식물 검역 요청:.....
.....
.....
.....

7/ 이 허가서는 .....년.....월.....일까지 유효하다.

하노이, ...년.....월.....일
국장
(서명날인)

[부록 6] 수입물품신고서

HẢI QUAN VIỆT NAM **TỜ KHAI HÀNG HÓA NHẬP KHẨU**

Cục Hải quan:

HQ/2015/NK

Chi cục Hải quan đăng ký tờ khai: **Chi cục Hải quan cửa khẩu nhập:**	**Số tham chiếu:** **Ngày, giờ gửi:**	**Số tờ khai:** **Ngày, giờ đăng ký:** **Số lượng phụ lục tờ khai:**	**Công chức đăng ký tờ khai**
1. Người xuất khẩu:	5. Loại hình:		
2. Người nhập khẩu: MST	6. Hóa đơn thương mại:	7. Giấy phép số: Ngày Ngày hết hạn	8. Hợp đồng: Ngày Ngày hết hạn
3. Người ủy thác/người được ủy quyền: MST	9. Vận đơn (số/ngày):	10. Cảng xếp hàng:	11 Cảng dỡ hàng:
4.Đại lý Hải quan: MST	12. Phương tiện vận tải: Tên, số hiệu: Ngày đến		13. Nước xuất khẩu:
	14. Điều kiện giao hàng:		15. Phương thức thanh toán:
	16. Đồng tiền thanh toán:		17. Tỷ giá tính thuế:

Số TT	18. Mô tả hàng hóa	19.Mã số hàng hóa	20. Xuất xứ	21. Chế độ ưu đãi	22. Lượng hàng	23. Đơn vị tính	24. Đơn giá nguyên tệ	25. Trị giá nguyên tệ
1								

Loại thuế	Trị giá tính thuế/ Số lượng chịu thuế	Thuế suất (%)/ Mức thuế	Tiền thuế
26. Thuế nhập khẩu			
27. Thuế TTĐB			
28. Thuế BVMT			
29. Thuế GTGT			

30. Tổng số tiền thuế (ô 26+27+ 28+29):
Bằng chữ:

31. Lượng hàng, số hiệu container

Số TT	a. Số hiệu container	b. Số lượng kiện trong container	c. Trọng lượng hàng trong container
1 2			Cộng:

32. Chứng từ đi kèm	33. Tôi xin cam đoa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nội dung khai trên tờ khai Ngày tháng năm *(Người khai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34. Kết quả phân luồng và hướng dẫn làm thủ tục hải quan 35. Ghi chép khác:	36. Xác nhận của hải quan giám sát	37. Xác nhận giải phóng hàng/ đưa hàng về bảo quản/chuyển cửa khẩu	38. Xác nhận thông quan

베트남 세관
세관국

수입물품신고서

HQ/2015/NK

신고서등록세관지국 수입관문세관지국	참조번호 일자, 송부시각	신고서번호 일자, 등록시각 신고서부록수량	신고서등록공무원
1. 수출자	5. 종류		
2. 수입자	6. 상업영수증	7. 허가번호 일자 종료일자	8. 계약 일자 종료일자
MST	9. 운송장(번호/일자)	10. 적재항	11. 하역항
3. 위탁자/수탁자			
MST	12. 운송수단 명칭, 번호 도착일		13. 수출국
4. 세관대리	14. 인도조건		15. 대금지급방식
MST	16. 대금지급화폐		17. 세금 계산율

Số TT	18. 물품명	19. 물품코드	20. 원산지	21. 우대 제도	22. 물량	23. 계산단위	24. 단가	25. 원가치
1								

세송	과세가격	세율	세액
26. 수입세			
27. 특별소비세			
28. 환경보호세			
29. 부가가치세			

30. 총세액(26+27+28+29)
문자표기:

31. 물량, 컨테이너 번호

Số TT	a. 컨테이너 번호	b. 컨테이너 내 적입단위수량	c. 컨테이너 내 적재물중량
1 2			총합계:

32. 부속증서	나는 신고서상의 신고내용에 관하여 법률앞에서 확약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 월 년

34. 분류결과 및 세관절차 안내 35. 기타 기재사항	36. 세관감독의 확인	37. 물품 출고 확인	38. 통관확인

[부록 7] 관세가치신고서

Phụ lục III
Mẫu tờ khai trị giá hải qua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39/2015/TT-BTC ngày 25 tháng 3 năm 2015)

HQ/2015-TG1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TỜ KHAI TRỊ GIÁ HẢI QUAN

Kèm theo tờ khai hàng hoá nhập khẩu số ..... ngày...../...../20
Trang số ...../..... (tổng số trang)

1. Ngày xuất khẩu: Ngày tháng năm 20.....

ĐIỀU KIỆN ÁP DỤNG TRỊ GIÁ GIAO DỊCH

2. Người mua có đầy đủ quyền định đoạt, quyền sử dụng hàng hoá sau khi nhập khẩu không ?	☐ Có	☐ Không
3. Việc bán hàng hay giá cả có phụ thuộc vào điều kiện nào dẫn đến việc không xác định được trị giá của hàng hoá nhập khẩu không ?	☐ Có	☐ Không
4. Người mua có phải trả thêm khoản tiền nào từ số tiền thu được do việc định đoạt, sử dụng hàng hoá nhập khẩu không?	☐ Có	☐ Không
Nếu Có, có phải là khoản tiền khai báo tại tiêu thức 9 (P) không ?	☐ Có	☐ Không
5. Người mua và người bán có mối quan hệ đặc biệt hay không ?	☐ Có	☐ Không
Nếu Có, nêu rõ mối quan hệ đó Mối quan hệ đặc biệt có ảnh hưởng đến trị giá giao dịch không ?	☐ Có	☐ Không

TRỊ GIÁ HÓA ĐƠN VÀ CÁC KHOẢN ĐIỀU CHỈNH

STT	Mặt hàng số	Trị giá giao dịch			Các khoản điều chỉnh cộng			Các khoản điều chỉnh trừ		TGHQ (nguyên tệ)	TGHQ (USD)	TGHQ (VND)
		8			9			10				
6	7	(8a)	(8b)	(8c)	....	.....	.....	.....	.....	11(a)	11(b)	12
13. Tổng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14. Tổng cộng				Σ			Σ		Σ	Σ		Σ
Ghi chú												

15. Tôi xin cam đoan và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những nội dung khai báo trên tờ khai này.
Ngày..... tháng..... năm .....

(Người khai hải quan ghi rõ họ tên, chức danh, đóng dấu)

PHẦN DÀNH RIÊNG CHO CÔNG CHỨC HẢI QUAN

16. Ghi chép của công chức hải quan tiếp nhận tờ khai

(Ký, ghi rõ họ tên)

17. Ghi chép của công chức hải quan kiểm tra trị giá hải quan

(Ký, ghi rõ họ tên)

TRỊ GIÁ GIAO DỊCH (8), bao gồm:
(8a) Giá mua ghi trên hóa đơn
(8b) Khoản thanh toán gián tiếp
(8c) Khoản tiền trả trước, ứng trước, đặt cọc

CÁC KHOẢN ĐIỀU CHỈNH CỘNG (9), ghi số tiền tương ứng với từng mặt hàng và ghi các mã điều chỉnh tương ứng ô (...) dưới đây:
"A" Phí hoa hồng bán hàng, phí môi giới
"B" Chi phí bao bì được coi là đồng nhất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C" Chi phí đóng gói hàng hóa
"D" Các khoản trợ giúp người mua cung cấp miễn phí hoặc giảm giá
"E" Phí bản quyền, phí giấy phép
"P" Các khoản tiền mà người nhập khẩu phải trả từ số tiền thu được sau khi bán lại, định đoạt, sử dụng hàng hóa nhập khẩu
"F" Chi phí vận tải hàng hóa tính đến cửa khẩu nhập đầu tiên
"I" Chi phí bảo hiểm hàng hóa tính đến cửa khẩu nhập đầu tiên
"N" Khác

CÁC KHOẢN ĐIỀU CHỈNH TRỪ (10), ghi số tiền tương ứng với từng mặt hàng ghi các mã điều chỉnh tương ứng ô (...) dưới đây:
"U" Chi phí cho những hoạt động phát sinh sau khi nhập khẩu, gồm các chi phí về xây dựng, kiến trúc, lắp đặt, bảo dưỡng hoặc trợ giúp kỹ thuật, tư vấn kỹ thuật, chi phí giám sát và các chi phí tương tự
"V" Phí vận tải phát sinh sau khi hàng hóa được vận chuyển đến cửa khẩu nhập đầu tiên
"H" Phí bảo hiểm phát sinh sau khi hàng hóa được vận chuyển đến cửa khẩu nhập đầu tiên
"T" Các khoản thuế, phí, lệ phí phải nộp ở Việt Nam đã nằm trong giá mua hàng nhập khẩu
"G" Khoản giảm giá
"S" Các chi phí do người mua chịu liên quan đến tiếp thị hàng hóa nhập khẩu
"L" Tiền lãi phải trả do việc thanh toán tiền mua hàng
"N" Khác

관세가치신고서

수입품 신고서 No. ..... 날짜 20 /...월/...일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1. 수출일자	
거래평가적용조건	
2. 매수자가 물품 수입 후 물품의 결정권, 사용권을 충분히 가지는가?	□ 예 □ 아니오
3. 물품의 판매 또는 가격이 수입 물품의 가치 결정과 연계된 조건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4. 매수자가 수입 물품의 사용, 결정 시의 지급액 이외에 추가 지급액이 있는가? 있다면, 9번 표식의 신고액이 맞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송장 가격 평가 및 중재 조항

STT	품목 번호	교역가치			가산조정항목			차감조정항목		관세가격	TGHQ (USD)	THHQ (VND)
		8			9			10		11(a)	11(b)	12
6	7	8(a)	8(b)	8(c)								
13. 계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14. 총계		Σ			Σ			Σ		Σ		Σ
	비고											

15. 이 신고서상 신고한 내용에 관해 법률 앞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세관 신고자의 이름, 직급, 인감)	세관 담당 공무원용	
	16. 신고서 접수 담당 공무원 기입란 (서명, 본명으로 할 것)	17. 세관 가격 검사 담당 공무원 기입란 (서명, 본명으로 할 것)

거래 가격 평가는(8) 다음을 포함한다.
(8a) 송장(인보이스) 상 구매가격
(8b) 간접 지급액(indirect payments)
(8c) 선급금, 선납금, 보증금
포함되는 조항(9) : 다음 중 해당하는 조항에 액수를 적으시오
“A” 판매 수수료, 중개료
"B” 상품으로 취급되는 포장(포장 자체가 상품)에 대한 비용
“C” 상품 포장비
“D” 구매자를 지원(보조)하는 무료 지급액 혹은 할인액
“E” 로열티, 인허가 비용
“P” 수입 상품의 재판매, 처분, 사용을 통해 얻은 금액 중 수출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F” 수출입 게이트까지의 상품 운송비
“I” 수출입 게이트까지의 상품 보험료
“N” 기타
제외되는 조항(10) : 다음 중 해당하는 조항에 액수를 적으시오
“U” 수입 이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 : 건설, 건축, 설치, 관리비용, 혹은 기술 지원 및 자문비용, 감사비용 및 이에 해당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함.
“V” 상품이 수출입 게이트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운송비
“H” 상품이 수출입 게이트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보험료
“T” 수입 상품 구매가격 중 베트남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 비용, 요금
“G” 할인액
“S”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출입 상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
“L” 상품 대금 결제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이자
“N” 기타

[부록 8] 식물검역신청서

Phụ lục I: Mẫu Giấy đăng ký kiểm dịch thực vật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33 /2014 /TT-BNNPTNT ngày 30 tháng 10 năm 2014 của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ngày.....tháng.....năm.....

GIẤY ĐĂNG KÝ KIỂM DỊCH THỰC VẬT (*)

Kính gửi: .....(**).....

Tên tổ chức, cá nhân đăng ký:

Địa chỉ:

Điện thoại:.....Fax/E-mail:

Số Giấy CMND: Ngày cấp: .....Nơi cấp: .....

Đề nghị quý cơ quan kiểm dịch lô hàng nhập khẩu sau (***):

1. Tên hàng: ..... Tên khoa học: .....
   Cơ sở sản xuất: .....
   Mã số *(nếu có):* .....
   Địa chỉ: .....
2. Số lượng và loại bao bì: .....
3. Khối lượng tịnh: .....Khối lượng cả bì: .....
4. Số hợp đồng hoặc số chứng từ thanh toán *(L/C, TTr...)*: .....
5. Tổ chức, cá nhân xuất khẩu: .....
   Địa chỉ: .....
6. Nước xuất khẩu: .....
7. Cửa khẩu xuất: .....
8. Tổ chức, cá nhân nhập khẩu: .....
   Địa chỉ: .....
9. Cửa khẩu nhập: .....
10. Phương tiện vận chuyển: .....
11. Mục đích sử dụng: .....
12. Giấy phép kiểm dịch nhập khẩu *(nếu có):* .....
13. Địa điểm kiểm dịch: .....
14. Thời gian kiểm dịch: .....
15. Số bản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cần cấp: .....
16. Nơi hàng đến: .....

Chúng tôi xin cam kết: Bảo quản nguyên trạng hàng hoá nhập khẩu, đưa về đúng địa điểm, đúng thời gian được đăng ký và chỉ đưa hàng hoá ra lưu thông sau khi được quý Cơ qua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

Tổ chức cá nhân đăng ký

(Ký, đóng dấu, ghi rõ họ tên)

Xác nhận của Cơ quan Kiểm dịch

Đồng ý đưa hàng hoá về địa điểm:.....

để làm thủ tục kiểm dịch vào hồi .....giờ ngày ..... tháng.....năm.....

Lô hàng chỉ được thông quan sau khi có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Vào sổ số....., ngày.....tháng .....năm .....

.....(*).....

(Ký, đóng dấu, ghi rõ họ tên)

Xác nhận của Cơ quan Hải quan

(trong trường hợp lô hàng không được nhập khẩu)

Lô hàng không được nhập khẩu vào Việt Nam vì lý do:.....

.....

....., ngày ....tháng ... năm .....

Chi cục Hải quan cửa khẩu.....

(Ký, đóng dấu, ghi rõ họ tên)

(*) Đăng ký theo Mẫu này được thể hiện trên 2 mặt của tờ giấy khổ A4;

(**) Tên cơ quan Kiểm dịch;

(***) Phải có đầy đủ các tiêu chí theo đúng thứ tự và khai các tiêu chí thích hợp đối với lô hàng;

(****) Cam kết này chỉ ghi khi đăng ký kiểm dịch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Lưu ý: Cá nhân đăng ký không có con dấu phải ghi rõ số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ngày tháng và nơi cấp.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년 월 일

식물검역신청서

수신자: .....(**).....

신청하는 개인,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FAX/E-mail: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다음 수입품목의 검역을 요청합니다.(***):

1. 품목명:..... 과학명:.....
   생산장소:.....
   일련번호(있는 경우에 한함):.....
   주소:.....
2. 수량 및 포장방식.....
3. 용량:..... 포장용량:.....
4. 계약번호 또는 대금지급증서:.....
5. 수출하는 개인, 단체:.....
   주소:.....
6. 수출국:.....
7. 수출 관문:.....
8. 수입하는 개인, 단체:.....
   주소:.....
9. 수입 관문:.....
10. 운송수단:.....
11. 사용 목적:.....
12. 수입검역허가서(있는 경우에 한함):.....
13. 검역지점:.....
14. 검역시간:.....
15. 긴급검역인증서 정보:.....
16. 물품도착지:.....

수입 물품을 원상태로 보관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신청대로 이송하며 검역인증서의 발급 후 유통함을 약속한다(****)

신청하는 개인, 단체의 서명

검역기관의 확인

년 월 일에 검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점에 물품제시를 동의한다.

검역인증서의 발급 후 품목이 통관된다.

등록번호....., ...년 .....월 .....일
.....(*).....
(서명)

세관의 확인

(품목이 수입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품목은 다음의 이유로 베트남에 수입될 수 없다:.....
.....

.....년 .....월 .....일
관문의 세관지국.....
(서명)

(*) A4용지 양면으로 인쇄된 본 샘플에 따라 등록
(**) 검역 기관명
(***) 선적과 관련하여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본 서류는 수입 상품에 관한 검역 등록 시에만 기재함
주의 : 등록자의 인감이 없는 경우 신분증 번호와 발급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부록 9] 수입식품 검사신청서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52/2015/TT-BYT ngày 21 tháng 12 năm 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Y tế)

Tên Chủ hàng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GIẤY ĐĂNG KÝ KIỂM TRA THỰC PHẨM NHẬP KHẨU

Số ...../20..../ĐKNK

1.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chủ hàng:

2.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thương nhân chịu trách nhiệm về chất lượng hàng hóa;

3.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thương nhân xuất khẩu:

4. Số vận đơn (*Bill of lading*);

5. Danh sách hàng hóa (*Packing list*).

6. Số hóa đơn (*Invoice*):

7. Thời gian nhập khẩu dự kiến:

8. Cửa khẩu đi:

9. Cửa khẩu đến:

10. Thời gian kiểm tra:

11. Địa điểm kiểm tra:

12. Dự kiến tên cơ quan kiểm tra:

13. Thông tin chi tiết lô hàng

TT	Tên mặt hàng	Nhóm sản phẩm (Theo hồ sơ công bố)	Ký hiệu mã mặt hàng (nếu có)	Tên và địa chỉ nhà sản xuất	Số công bố	Số lượng	Khối lượng*	Giá trị	Phương thức kiểm tra	Số văn bản xác nhận phương thức kiểm tra**
(1)	(2)	(3)	(4)	(5)	(6)	(7)	(8)	(9)	(10)	(11)
Tổng (7,8,9)										

** Khối lượng khai báo là khối lượng tịnh*

*** Số văn bản xác nhận phương thức kiểm tra là số thông báo của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cho phép mặt hàng được kiểm tra theo phương thức giảm hoặc số 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không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tại lần kiểm tra trước. Riê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6 thì do cơ quan kiểm tra xác nhận và thông báo lại cho chủ hàng trước khi lấy mẫu kiểm tra.*

Chủ hàng (Ký tên đóng dấu)	**Cơ quan kiểm tra nhà nước** (Ký tên đóng dấu)
Ngày …. tháng… năm…	Ngày …. tháng… năm…

(의약부 2015년 12월 21일 지침 52-2015-TT-BYT에 따라 공포함)

화주명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수입식품검사신청서

NO...../20..../TBNK

1. 화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2. 물품의 품질을 책임지는 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3. 수출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 선하증권 번호(Bill of lading):
5. 포장명세서(Packing list):
6. 송장번호(Invoice):
7. 예상 수입시간:
8. 출발 관문:
9. 도착 관문:
10. 검사시간:
11. 검사지점:
12. 예상 검사기관명:
13. 품목의 상세정보:

번호	품목명	상품 그룹	품목 코드 기호	생산 자명, 주소	공포 번호	수량	부피	가치	검사 방식	검사 방식 확인 문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계 (7,8,9)										

* 신고 시 무게는 순수 질량으로 신고할 것

** 검사 방식이 확인된 문서번호' 란 식품안전국이 실시한 검사에 따라 상품이 허가되었다는 통보 번호 혹은 이전에 시행한 검사에서 수입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식품에 대한 확인 결과에 대한 통보 번호입니다. 6절 3항 b번에 규정된 각 경우에는 검사 샘플을 받기 전 검사 기관이 확인 및 상품 소유자에게 재통보합니다.

화주

(서명날인)

....년 ....월 ....일

국가검사기관

(서명날인)

....년 ....월 ....일

[부록 10]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식품확인 결과 통보서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52/2015/TT-BYT ngày 21 tháng 12 năm 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Y tế)

Cơ quan kiểm tra nhà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ĐẠT/ KHÔNG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Số ...../20...../TBNK

1.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chủ hàng:

2.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thương nhân chịu trách nhiệm về chất lượng hàng hóa:

3.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thương nhân xuất khẩu:

4. Số tờ khai hải quan:

5. Số vận đơn *(Bill of lading)*:

6. Danh sách hàng hóa *(Packing list)*:

7. Số hóa đơn *(Invoice)*:

8. Cửa khẩu đi:

9. Cửa khẩu đến:

10. Thời gian kiểm tra:

11. Địa điểm kiểm tra:

12. Thông tin chi tiết lô hàng:

TT	Tên mặt hàng	Nhóm sản phẩm (Theo hồ sơ công bố)	Ký hiệu mã mặt hàng (nếu có)	Tên và địa chỉ nhà sản xuất	Số công bố	Phương thức kiểm tra	Số lượng	Khối lượng*	Giá trị	Xác nhận đạt/ không đạt yêu cầu	Lý do không đạt	Dự kiến các biện pháp xử lý mặt hàng không đạt yêu cầu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Tổng (8,9,												

10)												

** Khối lượng khai báo là khối lượng tịnh*

Nơi nhận:
- Chủ hàng: ……;
- Hải quan cửa khẩu: ……

Cơ quan kiểm tra nhà nước
(Ký tên đóng dấu)

Ngày …. tháng… năm…

의약부 2015년 12월 21일 지침 52-2015-TT-BYT에 따라 공포함)

국가검사기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수입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식품확인결과보고서

NO...../20..../TBNK

1. 화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2. 물품의 품질을 책임지는 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3. 수출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 세관신고서번호:
5. 선하증권 번호(Bill of lading):
6. 포장명세서(Packing list):
7. 송장번호(Invoice):
8. 출발 관문:
9. 도착 관문:
10. 검사시간:
11. 검사지점:
12. 품목의 상세정보:

번호	품목명	상품 그룹	품목 코드 기호	생산 자명, 주소	공포 번호	검사 방식	수량	부피	가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불충 족 사유	불충 족품 목의 예상 처분 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8,9,10)												

* 신고 시 무게는 순수 질량으로 신고할 것

국가검사기관

(서명날인)

수취 장소:

- 화주: ……;
- 관문세관: …….

….년 ….월 ….일

[부록 11] 통관 거부 사례

구분	내 용	참조사진
발표일	2016년 10월 17일	
상품명	땅콩(Arachis hypogaea)	
수출국	수단(Sudan)	
내용	별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Everts), 땅콩 벌레(Caryedon serratus Olivier) 위해 가능성	
처리	임시수입금지	

구분	내 용	참조사진
발표일	2017년 3월 1일	
상품명	땅콩(Arachis hypogaea) 카시아(Cassia spp.) 테오브로마 카카오(Theobroma cacao) 강낭콩, 팥, 녹두 등(Phaseolus spp.) 타마린드(Tamarindus indica)	
수출국	인도(India)	
내용	땅콩 벌레(Caryedon serratus Olivier) 위해 가능성	
처리	임시수입금지	

구분	내 용	참조사진
발표일	2016년 10월 17일	
상품명	주정박(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 - DDGS)	
수출국	미국(U.S.A.)	
내용	붉은 무늬 곡식 수시렁이(Trogoderma variabile Ballion)	
처리	임시수입금지	